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21호

2021.9.30.(목)



서울특별시

목 차

자치법규

[조 례]

제81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6
제8128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12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13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131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132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8133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13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30
제8135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8136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37
제8137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8138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8139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8140호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46
제8141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142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8143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8144호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51
제8145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8146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8147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8148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8149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8150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815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815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66
제8153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815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815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8156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8157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8158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15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816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8161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816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8163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16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8165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166호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167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8168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6
제816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8170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8171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8172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8173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95
제8174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8175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817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8177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8178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8179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18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818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818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818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818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8185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81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8187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818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8189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819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8191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819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8193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8194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8195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8196호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8197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1
제81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44
제82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147
제8201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82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82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152
제82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82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56
제82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제820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입법예고]

제2021-24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5
제2021-24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6
제2021-249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7
제2021-249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9

고 시

제2021-52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70
제2021-531호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 고시	174
제2021-535호	도시관리계획(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5
제2021-536호	도시관리계획(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9
제2021-537호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83
제2021-538호	봉계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4
제2021-539호	연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7
제2021-540호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8
제2021-541호	계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23
제2021-542호	개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2
제2021-543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368
제2021-544호	도시관리계획(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70

제2021-545호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명단	382
제2021-5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387
제2021-547호	중랑구 목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388
제2021-5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406

공 고

제2021-243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10
제2021-2439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439
제2021-2460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444
제2021-246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53
제2021-247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455
제2021-2474호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457
제2021-247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465
제2021-249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486
제2021-2495호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결정을 위한 재열람 공고	487
제2021-2497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488
제2021-250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89
제2021-2502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공고	490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입법예고]

제2021-2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91

구 고 시

제2021-1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종로구)	493
제2021-197호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동대문구)	495
제2021-190호	도봉구 쌍문동 380-1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497
제2021-19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503
제2021-14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506
제2021-2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 폐지(취소) 고시(동작구)	508
제2021-2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512

제2021-23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524

제2021-20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강동구)	531

구 공 고

제2021-1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534

제2021-18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구로동 1-4 도서관 건립)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538

제2021-1830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구로구)	540

제2021-16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547

제2021-16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51

제2021-163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55

제2021-163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58

제2021-16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63

사업소고시

제2021-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69

제2021-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69

사업소공고

제2021-34호	청문실시통지서 공고(관악소방서)	570

정 정

제2021-2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구로구)	572

자치법규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1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이 변경되는 조문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를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 를 “「지방자치법」 제129조” 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 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64조” 를 “법 제73조” 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를 “「지방자치법」 제47조” 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를 “「지방자치법」 제13조” 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를 “「지방자치법」 제28조” 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 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를 “「지방자치법」 제13조” 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로, “「지방자치법」 제90조” 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단서 중 “법 제166조부터 제171조까지” 를 “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7조

부터 제190조까지” 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를 “「지방자치법」 제47조” 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7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2조”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 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을 “법 제51조제1항” 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 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6조” 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 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 및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각각 “법 제126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하고, “소속하에서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를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각각 “법 제127조”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하고 “정하는계량기의검정·검사”를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검사”로 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9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각각 “법 제127조”로 한다.

제122조, 제125조 및 제128조제1항 중 “법 제116조”를 각각 “법 제129조”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89조제1항 각 호” 를 “영 제89조제1항 각 호” 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3조”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택시물류과장” 을 각각 “택시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별표 2 II 제2호나목 중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 을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 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재생실장” 을 각각 “균형발전본부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생정책과장” 을 “균형발전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생정책과” 를 “균형발전정책과” 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실’ ” 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본부’ ”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를 “「지방자치법」 제28조” 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표 감면대상란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표 감면대상란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 를 “「지방자치법」 제166조” 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6항” 을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 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로 한다.

별표의 □ 노동민생정책관 표 제목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주관부서란 중 “거점성장추진단” 을 “전략산업기반과” 로 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주관부서란 중 “택시물류과” 를 “택시정책과” 로 하고, 택시정책과(중전의 택시물류과) 제15호란을 삭제하며, 택시정책과(중전의 택시물류과) 제16호란을 제15호란으로 하고, 택시정책과(중전의 택시물류과) 제15호란(중전의 제16호란) 다음에 물류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류정책과	1.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구청장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식품안전과”를 “식품정책과”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제목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건축기획과 제1호가목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건축기획과 제2호나목 사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공동주택과”를 “전략사업과”로 하고, 전략사업과(중전의 공동주택과) 제3호란 및 제4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전략사업과(중전의 공동주택과) 제2호란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주택지원과	1.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제1항	
	2.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구청장

제50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

156조” 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로 한다.

제6조 중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 를 “「지방자치법」 제196조” 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 를 “「지방자치법」 제176조” 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을 “시민협력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갈등조정담당관” 을 “갈등관리협치과장” 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제3조의(기금의 존속기한)” 을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을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3호 표의 구분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제3호 표의 구분란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4호 표의 구분란의 제외면적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를 “주택법 제2조” 로, “제6호” 를 “제13호” 로, “제7호” 를 “제14호” 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0조”를 각각 “제2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단서” 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협력상생담당관” 을 “대외협력담당관” 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기획조정실장

나. 국제협력계정 : 시민소통기획관

제72조(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을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로 한다.

제8조제4항제9호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29조제9호 중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을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2호중 “한국토지주택(LH)공사” 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2조제2호자목 중 “「지적법」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점용허가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를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태양에너지 설비의 점용료란 중 “에너지조례 제25조”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9조”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담당관”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3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시재생실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도시재생실장” 을 “균형발전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5호) 중 “주택건축본부장” 을 “주택정책실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택시물류과장” 을 “택시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권익담당관” 을 “권익보호담당관” 으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관국(과)란 중 “여성권익담당관” 을 “권익보호담당관” 으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1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거점성장추진단장” 을 “신성장산업기획관” 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건축본부장” 을 “주택정책실장” 으로, “도시재생실장” 을 “균형발전본부장” 으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을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바목 중 “「철도건설법」” 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 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을 “경제정책실장” 으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 제37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

4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2조, 제125조,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38조의 개정규정, 제39조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1조 중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2조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 제43조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48조 중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조의 개정규정, 제49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0조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제52조 중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3조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 제54조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5조 중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6조 중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제57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 등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 102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 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및 그 밖의 오기 사항 등 정비

서울특별시조례 제8128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상생교류 사업 자문·심의를 위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을 추가함(제9조).

나.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의2).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9조의3 및 제9조의4).

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제9조의5).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함(제9조의6)

서울특별시조례 제812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21조제3항” 을 “제21조제2항” 으로, “2021년 10월 31일” 을 “2022년 10월 31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6905호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3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처분 불복기간” 을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조례에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 시점만 명시하고 있음.

나. 이에 수사기관에 법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점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의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제3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31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자동차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에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제2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32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33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3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120다산콜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20다산콜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제16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3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 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10. 1인가구의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3. 1인가구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수행
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5.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
6.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7. 1인가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8.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지원센터와 제13조의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센터나 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2.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관련 소관 실·본부·국장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자치구별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세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는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유명사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1인가구”의 용어 사용례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정비함.
-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적용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로 보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확대함(제11조).
- 1인가구 지원센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 관련단체와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 표창 및 포상 등을 규정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8135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본문 중 “총리령” 을 “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7조의 조제목 “성과중심의 보상” 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의 항 번호를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1.6.9)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실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함(제15조제1항).
-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36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 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온라인상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성상 피해 영상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공유되는 문제로 인해 온라인상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7조).
- 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마.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37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 를 “혼인·임신” 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 를 “제4조”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일부개정(2017.3.21.)되어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이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를 수정함(제2조제1호).
- 연도별 시행계획에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38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제21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7(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8(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

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9(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2조의2) 제4항 중 “조사과정”을 “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으로, “처리”를 “처리, 심의”로, “조사 과정”을 “조사나 심의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를 “조사와 심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그 동안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서울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 강화 및 중요성 인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폭력’과 ‘2차피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의2 제3호 및 제4호 신설).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39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을 “다음” 으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제3항 중 “인권 등” 을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으로,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보육인의 화합과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 교육의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추가하고 해당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 보호자 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을 추가하고, 시장이 보호자 교육을 의무 실시 하도록 규정함(제23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40호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양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에게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양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양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3. “양육재난지원금”이란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양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장기적인 휴원 등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가정 내 영유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재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로 양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함(제2조).
- 양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41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을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는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인종’ 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종류로 ‘국적’ 은 일정한 사람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나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적’ 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조항에 ‘국적’ 을 추가함(제4조제1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142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지방정부청사 내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슈된 바 있음.
- 오래전부터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규정함(제8조제8호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43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표창)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제13조의2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44호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2.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4.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
 5. 그 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3. 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
4. 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법률·세무 등)
5. 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소셜벤처 육성·지원 관련 정책 연구
7. 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4. 소셜벤처 공간 지원
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

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 협력 등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셜벤처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1.7.21)에 따라 서울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셜벤처의 정의(제2조)

나.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다.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제5조), 실태조사 및 평가(제6조)

라.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마. 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제10조)

바. 소셜벤처 경영지원(제11조) 및 재정지원 등(제12조)

사. 소셜벤처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제16조)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45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을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모” 를 “부모”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로,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를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2015년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과학관, 주차장 등의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바 있으나,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 및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과 대우 등의 혜택 방안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임.
- 이에 예우대상자 이외에도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2020년 말 기준, 전국 병역명문가 6,395가문)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또한, 조례의 근거 규정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제2조제1호, 제3호).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확대하고, 시설물 감면료에 주차료를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46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를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5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영상정보처리기에”를 “영상정보처리기기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
2.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화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CCTV의 임의조작 방지, 영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나 그 밖의 장비의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구축·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된 통합관제센터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년 11월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 소방, 재난상황실의 협조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공동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가 관련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해왔음.
- 이에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두고, 기존 조례에 탈락한 자구와 법령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47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을 “혁신기술”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16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① 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증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서비스

2.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3. 그 밖에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서비스
- ④ 시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상시 또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의 실증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실증단지 지정·조성 등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 또는 소속기관을 정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실증사업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들 중에서 적정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 수행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 공유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공개,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혁신기술 경진대회)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학,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 대학, 기업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심의·점검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을 “시장과 위촉직”으로, “호선한다”를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1호 중 “전담기관”을 “관련 산하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과 경진

대회, 관계기관의 지정·운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적극행정의 면책)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증사업이나 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1.7.20.)된 바 있음.
-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성 우려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 기술 진흥 조례”가 폐지되었고,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등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다만, 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주요 정책을 조례로 규정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실증사업 및 경진대회, 적극행정의 면책 조항과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기능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혁신기술 등의 용어 정의(제2조제2호, 제3호).
-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추진 근거와 선정 기준을 정함(제8조 신설).
- 혁신기술 경진대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9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함(제10조 및 제11조).
-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제15조 신설).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제17조).
- 적극행정의 면책 조항을 신설함(제18조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48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0분의 3” 을 “100분의 4”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일자리 환경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 분의 4 이상으로 확대함(제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49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를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1인 가구 중 경제적”을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독사의 원인을 1인가구의 증가로 국한시킴으로써 사회 내 1인가구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기에, 이에 따라 조례의 주요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다시 정의함(제1조).
- 1인가구를 정의하는 호를 삭제함(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150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의 공간으로 기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격리형 시설이 아닌 야외 운동시설의 조성이 필요함.
- 노인 건강증진 및 친목 도모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5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제5조제2항).
-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제5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5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 정보 접근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은 없음.
-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4조까지).
- 편의시설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편의보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53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일부를” 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따른” 을 “따른 보조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 및 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절차를 따름(제8조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5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저상버스가 다수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기준을 신설함(제10조제7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5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중 “요양소” 를 “요양병원”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최고한도란 중 “200㎡당” 을 “122㎡당” 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마목 중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을 “시설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내 일부 용도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 외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물 규정을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156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을 “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으로, “지출로 한다”를 “용도로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관리계정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환경개선과 주차질서유지, 그리고 특별회계의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에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등의 지출을 추가함(제7조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57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2년” 을 “3년” 으로 하고, 같은 항 중 “3억원” 을 각각 “4억 5천만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을 위한 점용허가 갱신 자산기준이 3억원 미만이며, 2년마다 자산조회를 하고 있음.
- 자산조회 시 고령의 운영자들이 2년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예년 대비 자산한도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존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산한도액 기준 증액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산한도액 기준을 증액하고 자산조회 주기를 조정하여 운영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운영자의 자산조회 주기(2년→3년) 및 자산가액의 한도(3억원 미만→4억 5천만원 미만)를 변경함(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58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말한다)”를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8세 미만의 아동을 규정함(제9조제5호).
- 여가교육이 가능한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규정함(제10조제4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15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3월 말” 을 “2월 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세종문화회관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종문화회관의 결산 완료시점을 2월 말로 하고자 함(제15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6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3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61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이 신설되어 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 추가 및 변경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제7조제6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16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3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문화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문화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제13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63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진흥과” 를 “진흥 및 통합관리와” 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진흥” 을 “진흥 및 통합관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가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16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3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디자인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디자인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제15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65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6. 문화체육관광부)에 근거 서울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하여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 점검 사항들을 위해 조례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정책 기능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166호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3조” 를 “제2조” 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린뉴딜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 등)” 을 “(위원회의 설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 “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부서의 장” 을 “실·본부·국의 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시장이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하나를 ‘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 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뉴딜의 위상에 맞는 직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조를 수정함(제5조).
- 위원회의 위원 중 하나를 기존 ‘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 에서 ‘시 그린뉴딜 관련 실·본부·국의 장’ 으로 변경함(제9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167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제6조).
- 자원순환우수업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68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나. 서울특별시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그 밖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치구 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공공기관의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 관리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 융자 절차와 조건 및 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

3.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동 조례 간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함.
-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16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양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불용물품을 타시도 및 자치구, 단체 등에 양여할 경우 이에 대한 조례상 근거와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불용물품 양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불용물품 중 사용 가능하거나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이 가능한 물품 등이 있기에 이러한 불용물품이 특정 단체 또는 자치구에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를 공개 하도록 함(제72조).
-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용도, 양여하는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제7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70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를 같은 항 제14호로 하고 제1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스마트관광산업

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함 (제8조제3항).
-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제8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171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3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관광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관광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제15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72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2,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4.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정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5월 18일)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고자 함.
-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한 의미전달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일반이용자,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1호의2, 제2조제14호·제15호 신설).
-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예방조치 마련시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제4조제2항 신설).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18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조례」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체육인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체육진흥협의회가 수행토록 규정된 바, 이를 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4조(설치) 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도록 함(부칙 제2조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73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
2.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국
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등) ① 시장은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
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에서 태권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기원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태권도 진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태권도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 대한 지원 및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제3항).
- 시장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함(제5조).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함(제6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제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74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 내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로 인한 집단감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를 명령하는 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확대된 바 있음.
- 따라서 이를 조례에도 반영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75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 7. 21.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의무가 명시되었음.
- 이에 개정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7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일에 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

제5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를 “제5조”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보건소장이 의뢰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한다.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유급병가 한시적 지원 및 적용기간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유급병가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관계법령 수정사항 등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유급병가 지원대상자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자’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유급병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3항).
- 조례의 적용조항 오류를 현행화함(제5조, 제6조 및 제1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기간 등을 정비함(제6조).
- 위원회의 회의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4조 및 제1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77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에 근거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명시해,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9조의2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178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 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문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반려동물 주인이 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다른 이용객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어서 반려동물 주인의 연령 제한과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등의 사전안내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혼란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179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2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함(제4조,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을 삭제함(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 대상을 확대함(제5조제3항).
-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을 삭제함(제10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8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관한 사항” 을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사의 전문성 확보와 대형 건설사의 공사수급 독식 방지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의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법령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분리발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분리발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분리발주 제도의 예외 사유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대형·특정공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사가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분리발주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 여부를 심사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함(제3조제1항제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8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시의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한다.”를 “협력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효과적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안전 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안전총괄실 조직개편(' 20.11.1.)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다른 자치단체 등과 안전 분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분야 협력구축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 담보를 위해 반기별 실적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사 지정에 조직 개편사항(' 20.11.1.)을 반영함(제12조제5항).
-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4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안전분야 협력사업시행 관한 임의규정을 추가 신설함(제50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8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

제20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등에 따른 긴급주거지원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서울시 지역 주거복지센터 및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확보한 장기 미임대주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었음.
- 이에 서울시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으로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하여금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1호).
-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제9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18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제19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5호 중 “철거 및 철거보상비”를 “해체 및 해체보상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종전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개정('21.7.9. 시행)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지정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해체심의대상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해체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7조제1항제2호마목 개정)

2. 주요내용

-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9조제4항 및 제5항).
- 해체심의 대상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해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7조제1항제2호마목, 제50조제2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18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을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 이하 이목에서는 같다)수가 가장 많은 층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이하 “클린업시스템”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클린업시스템(이하 “중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클린업시스템”을 “중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클린업시스템”을 “중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소형주택 건설비용 등)”을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1조의5 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 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를 “199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을 말하며,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시스템”이라 한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클린업시스템”을 “정보공개”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사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클린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e-조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회계관리 및 문서”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정보공개”로, “공개”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비사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2. 조합업무지원 : 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업무 등 처리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클린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클린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호수밀도 산정 시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개별 운영 중인 정비사업관리시스템(클린업, e조합, 분담금 프로그램)을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구축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가구수를 1동으로 산정함(제2조 제5호).
- 공공재개발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가능함(제30조제3항).
- 공공재건축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은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가능함(제30조제4항).
-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기준일을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함(제46조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4호).
- 정비사업시스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등의 용어를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히 함(제6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85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내 약 270동 가량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은 관련 법령 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님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위험 상황에 방치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 지원해왔음.
-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5)됨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시장이 자치구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2조의1).

서울특별시조례 제81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를 “(이 항 제3호에 한함)”으로,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완화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식견이 풍부한 자의”를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64조제2항제4호 중 “심사 및 자문” 을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로 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자연경관지구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 지역,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해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2항)
-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 사전승인이 필요한 구청장 출석·발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삭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제60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제64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65조).
- 종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제66조 및 제67조 삭제).

서울특별시조례 제8187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시” 이” 를 “ “시” ” 로, “ “시장” ” 을 “ “시장” 이” 로,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로 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를 “지적재조사지구” 로 한다.

1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제1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을 “위원” 으로, “당연직 위원”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제2항 전단 중 “있다고 판단되는” 을 “있는” 으로, “그 위원” 을 “위원회에 그 위원” 으로, “기피신청” 을 “기피 신청” 으로, “있으며,” 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제3항 중 “또는 제2항”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회피할 수 있다” 를 “회피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직무” 를 “업무”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회의)” 를 “(위원회의 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지” 를 “통보” 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작성·비치하여야” 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두되” 를 “두며” 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회의록” 을 “회의록의”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견을 청취할” 을 “그 의견을 들을” 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위촉위원” 을 “위원” 으로,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 를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직접” 을 “직접적으로” 로 한다.

제12조 중 “장에서 규정한 것 외” 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2013년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음.
- 반면 근거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 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규정함(제3조제1호의2 신설).
- 종전의 모호한 규정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제2조 등)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5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8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을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선진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옥외광고대상전,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89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을 “조형물등”이라 한다.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광화문광장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등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광화문광장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광화문광장 내에 전시관 및 동상과 부속조형물등으로 명확성과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함(제3조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9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의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중, 아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훈대상자를 감면규정에 포함하여,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대상자를 예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중,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함(제20조제1항9호부터 13호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8191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을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로, “정하여” 를 “규정하여” 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아숲 교육” 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 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 을 “산림교육” 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운영과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제2항).
- 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9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의 호 번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제3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별표 2의 가목제2호 중 “업종 및 사용여부에” 를 “업종 구분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지하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생활용수 등 도시 가용수자원이나 하천용수로의 배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34조제1항제12호).
- 유출지하수 이용 및 하천 직접 배출 등과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34조제1항제13호).
- 중증장애인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의 경우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함(부칙).

서울특별시조례 제8193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를 “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구경에 대한”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계량기와” 를 “수도계량기와” 로, “계량기가” 를 “수도계량기가” 로, “계량기 전” 을 “수도계량기 전”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량기에” 를 “수도계량기에” 로, “계량기는” 을 “수도계량기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 를 각각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등록을 받은” 을 “등록의 대상이 된”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계량기 분리설치)” 를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 를 각각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를 “(인입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의” 를 “수도계량기의” 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를 각각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연습용” 을 “소방연습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용” 을 “공공용”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계량기” 를 각각 “수도계량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량기 구경” 을 “수도수도계량기 구경”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량기와 주계량기” 를 “수도계량기와 주수도계량기” 로, “계량기에 대하여만” 을 “수도계량기만”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량기” 를 각각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수도사용자 등” 을 “수도사용자등”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계량기” 를 각각 “수도계량기” 로, 같은 항 중 “잔여 량” 을 “남은 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와 호별 수도계량기” 로, “계량기의” 를 “수도계량기의” 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사용자 등이” 를 “수도사용자등이” 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계량기 점검” 을 “수도계량기 점검” 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급수과정 수질관리) ①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배출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을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량기” 를 “수도계량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건물증축 시 정액공사비 산정기준인 ‘증축면적’ 을 해당 ‘구경’ 으로 변경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업종을 현 업종 구분에 따라 ‘공공용’ 으로 정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건물증축에 따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해당 구경에 따라 산정함(제7조제3항).
-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업종 구분을 ‘공공용’ 으로 함(제19조제3항).
- 오염된 수돗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수과정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0조의6).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194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소요되는” 을 각각 “드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단수된지역” 을 “단수된 지역”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요된” 을 각각 “든”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포함)

제4조제2항제4호 중 “따른다.다만” 을 “따른다. 다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산정한다” 를 “산정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한다.다만” 을 “계산한다. 다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물에 대하여 는” 을 “건물은”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아니 된다” 를 “안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였으나” 를 “않았으나” 로, “아니 된다” 를 “안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 를 “긴급한 공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제8조 중 “한다.다만” 을 “한다. 다만” 으로 하고, 단서 중 “비용에 대하여는” 을 “비용은”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한다.다만” 을 “한다. 다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를

“제2항에 따른”으로, “아니할”을 “않는”으로,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중”을 “설치 중”으로, “단서 조항”을 “단서”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용에 대하여”를 “비용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반조치”를 “모든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지하철, 도로, 하수도 공사 등 공사구역내 원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지장 상수도관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하고 있으며, 상수도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시공 중 잦은 누수, 수질사고 발생 및 자재방치, 세척 불량 등 공사품질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원인자 이설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정급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항목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195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반사항” 을 “모든 사항” 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한강수계내” 를 “한강수계 내” 로 한다.

제5조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부합되도록” 을 “일치하도록”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는”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를 “감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을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로, “감면 등에 관하여” 를 “이용료 감면 등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취소하는” 을 “취소할”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실비수준” 을 “실제 비용 수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에 대하여” 를 “단체에게” 로, “범위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을 각각 “따른”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내” 를 “구역 내” 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해서는 안 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한한다” 를 “것만 해당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그러지 않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유어행위” 를 “유어행위(遊漁行爲)”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유어행위에 대하여” 를 “유어행위(遊漁行爲)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는 단속전” 을 “사람은 단속 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곤란한” 을 “어려운”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 를 “감면 받은 자에게” 로, “면제 받은 금액” 을 “감면 받은 금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는” 을 “등은” 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항의” 를 “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가격범위 내” 를 “가격범위” 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을 “사람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 을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 을 “공무원인 위원” 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를 “그 직위에” 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1이상” 을 “1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의회” 를 “서울특별시의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또한, 면제와 감면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감면으로 통일하고 전체 문맥과 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함.
- “면제” 를 “감면” 으로 통일함(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유어행위” 에 대해 한자를 병기함(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18조제1항).
-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함(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196호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운영과 관련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을 “사업시행자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 를 “사항을”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를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시” 를 “운영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을 “사업시행자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서” 를 “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 을 “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 을 “제5조제4항” 으로, “연도별” 을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 로 한다.

제7조 중 “그에 관한 완료내역” 을 “완료내역”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를 “사업시행자에게” 로, “사항에 의하여” 를 “사항에 대하여” 로, “에 대하여” 를 “을” 로, “하여야” 를 “취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 를 “제2항에 따라” 로, “승인” 을 “확인” 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한” 을 각각 “관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확보계획의” 를 “확보계획”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을 “사람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원” 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으로, “민간단체·법인·기업·학계” 를 “민간단체·법인·기업·학계”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차례에 한정하여” 를 “차례만”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하여야 한다” 를 “제척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중” 을 “수행 중” 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 를 “적당하지 않다고” 로 한다.

제16조 중 “자,” 를 “사람,” 으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 를 “시행완료 시까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197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①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2.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한강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한강 수상레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한강 수상레저시설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1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 근무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4.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 및 조치)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직원등의 보호·지원)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피해직원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조사·상담·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상담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담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상담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조례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제2조)
- 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제4조)
- 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물인터넷 기반 인재양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유사한 자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또는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수업지원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개발과 보급
3.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6.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 대상 교육 지원)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의 경제·사회구조 혁신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함

2. 주요내용

- 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라.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01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2호가목 중 “80㎡”를 “60㎡”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10대 이상”을 “3대 이상(피아노 과정은 6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나)을 삭제하고, 같은 란 가) 중 “5대”를 “3대”로 하며, 같은 표 제53호가목 중 “80㎡”를 “60㎡”로 하고, 같은 란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정별 기준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2종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 관내 음악 및 미술학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의 학원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제받고 있어 학원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로운 기자재의 등장,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습과정별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음악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수정 (별표 4 제52호가목)
- 나. 미술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수정 (별표 4 제53호가목)

서울특별시조례 제82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화장실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말한다.
2.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점검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확충) ①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의2)
- 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라.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불법촬영 신고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조례에 반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함(제8조의2제3항 신설).
- 나.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규정함(제8조의2제4항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2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1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4.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연수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제2조).
- 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위원회 설치 사항을 정함(제7조).
- 라.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비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 중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

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을”을 “교육감은 기금을”로, “교육감 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6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으로 한다”를 “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시행일로부터 5년으”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는 제12조로 하고 제14조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2020. 6. 9.)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 변경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제1조 및 제6조)
- 나. 기금 통합 설치 및 계정 구분(제2조)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 다. 통합 계정의 재원 및 용도 신설(제3조)
- 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 구체화(제4조)
- 마.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명칭 변경(제5조 및 제10조)
- 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문장 정비(제5조 및 제6조, 제8조, 제11조) 및 시행규칙 삭제(제1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0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62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059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9		28	11	
4·5급	9		7	2	
5급 이하 소계	6,976				
전문경력관 소계	8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565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7명 → 9명)
 - 교육지원청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0명 → 2명)
 - 5급 이하 소계 정원 감원: 감 2명 (6,978명 → 6,976명)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로7017 운영사무 이관(푸른도시국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푸른도시국의 사무분장 중 서울로7017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안 제19조제8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기관별 안전보건관리 인력 보강, 시설 운영의 직영화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 기록관리 및 생태연구전문인력 확보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027명에서 19,056명으로 29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인력 증원(5급 이하 +20명)
 - (본 청) 안전총괄실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 소방재난본부 +2
 -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3, 서북병원 등 +8
- 나. 서울로7017 및 서울숲 운영의 직영화 전환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5급 이하 +8명)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
- 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멸종위기종 생태연구 전문인력 증원(연구직 +2명)
 - 서울기록원 기록연구사 +1,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
 - ▶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명: 임기제 장기결원과 상계조정(일반직 5급 이하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9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 소관 부서 조정,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소관부서 조정

- (1) 문화본부 내 ‘지방문화원’,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지도·감독’ 사무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정책과로 이관(안 제14조)
- (2) 기후환경본부 내 ‘녹색제품, 석면 등’ 사무 조정(안 제15조)
 - ▶ 환경정책과 → 환경시민협력과(녹색제품 구매,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 ▶ 생활환경과 → 대기정책과
(석면관리, 석면피해 구제, 보건환경연구원 석면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
 - ▶ 기후변화대응과 → 환경정책과(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3) 주택정책실 내 ‘건축기본계획 수립’ 사무를 도시공간기획과에서 건축기획과로 이관(안 제20조의2)
- (4) 균형발전본부 내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 사무를 균형발전정책과에서 광화문광장추진단으로 이관(안 제22조)
- (5) 보건환경연구원 내 ‘연구논문 발간, 학술활동 지원’ 사무를 식품의약부에서 연구지원부로 이관(안 제42조 및 제43조)
- (6)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건제순 변경(안 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
 - ▶ ‘물환경연구부’ : 5번째 → 4번째, ‘생활환경연구부’ : 4번째 → 5번째

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 (1)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조직담당관 내 ‘자치경찰제 도입’ 사무 삭제(안 제10조)
- (2) 역사문화재과의 사무분장 현행화를 위해 ‘서울역사편찬원 운영 및 지도·감독 사무’ 추가(안 제14조)
- (3) 기후환경본부 각 부서의 소관 업무 현행화 및 정비(안 제15조)

- ▶ (환경정책과) 사업 종료에 따른 ‘원전하나줄이기 기획·추진’ 사무 삭제,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그린뉴딜 추진계획 수립’ 사무 신설 등
- ▶ (대기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된 ‘대기환경정보센터 관리’ 사무 삭제, 사무분장 현행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사무 추가
- ▶ (기후변화대응과) 국가사무인 ‘기후정보포털 구축·운영’ 사무 삭제, 신규사업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사무 및 ‘수소산업 육성·지원’ 사무 신설 등
- ▶ (자원순환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사무 삭제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사무 신설, 주민지원기금 관리 사무 추가 등
- ▶ (환경시민협력과) 사무분장 현행화를 위해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 사무 추가, 원전하나줄이기센터 → 기후에너지정보센터로 명칭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9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본관 간담회장 운영, 아리수 수질 관리 강화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 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해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관 간담회장 조리사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1명)

(위생7급 △1 → 조리7급 +1)

나. 유충 예방 등 정수처리공정 관리인력을 보강하고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결원(3명) 및 기타 장기결원 정원(7명)과 상계 조정하여 정원조정(10명)

- (퇴 직) 전기운영7급 △1, 전기운영8급 △1, 사무운영8급 △1

- (장기결원) 식품위생6급 △1, 운전6급 △2, 방호8급 △1, 위생8급 △1, 시설관리8급 △1, 운전8급 △1

- (증 원) 공업(화공)9급 +10

다.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실시를 위한 정원 조정(10명)

- 소방사 △10 → 소방령 +10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2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자료 지정 내용

- 지정 종별 및 번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98호
- 지정 명칭 :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
【玉水洞 彌陀寺 極樂殿과 獨聖殿】

○ 문화재 지정대상

- 건물 2동, 토지 1필지 129㎡

소재지	지번	명칭	수량	지적면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성동구 옥수동	395-1	극락전	건물1동	2,571	114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독성전	건물1동	2,571	15	
총 계	1필지		건물2동	2,571	129	

- 별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없음

○ 지정 사유

-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미타사는 한양도성 남쪽 외곽의 한강변, 매봉산과 달맞이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능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보면 사찰은 응봉 남동쪽에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변을 마주한 속칭 두모개 승방이라고 불리던 두모리에 자리하고 있다. 완만한 경사지에 매봉산을 마주하는 서향의 극락전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대방 형식의 관음전을 두고 좌측에는 1칸 규모의 독성전이, 우측에는 5칸 규모의 노전(爐殿)이 자리하고 있다. 대방(관음전) 양측에서 시작된 담장이 극락전과 독성전, 노전을 에워싸서 극락전을 중심으로 별원(別院)을 구성한 모습은 조선후기 사찰배치의 특성으로 이곳 미타사에 잘

남아 있다. 또한 종남산 미타사 약지, 상량목서 등 영건활동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어 대상 건축물의 창건과 중창 시점은 물론 관련 인물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극락전의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를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이익공을 다포처럼 배치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극락전 지붕의 합각면에는 전돌을 이용하여 문양을 장식하였는데 이는 궁궐의 전당건축과 유사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공포는 팔각주두에 이익공으로 되어 있으며 주상포의 사이에 2개의 익공과 운공을 두어 다포처럼 구성하였고, 보머리의 봉두와 파련문양을 한 몸으로 조각하는 등 매우 특이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내부의 천장은 주심에서 중도리까지 빗반자로 구성하였고 중도리 사이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 극락전의 편액은 순조의 어필로 추정되며 사룡을 고정하던 두석 첩편의 흔적이 보이는 등 매우 귀중한 유물로서 왕실과 관련된 미타사의 사격(寺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 왕실 후원으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구조 방식이나 건축 양식적으로 볼 때 궁궐건축과 불전건축의 수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18세기 이후 화성행궁과 경복궁 등 관영건축에 주로 적용되었던 운공의 사용법과 사찰건축 특유의 장엄성과 의장성이 결합된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1827년 초창 이후 현재까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불전으로 서울 근교 소재 불전건축 가운데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화계사 대웅전, 흥천사 극락보전과 명부전, 봉은사 판전, 봉원사 칠성각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 지정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에 맞배지붕인 미타사 독성전은 익공의 양식과 운공의 배치, 조각수법 등이 극락전과 동일하여 1887년 극락전 중수 당시 같이 중창 또는 중수한 건물로 추정된다. 공포는 전면에만 초익공을 올리고 측면과 후면은 도리집으로 구성한 독특한 모습이다. 작은 규모의 전각임에도 익공을 올리고, 기둥사이 주심도리 밑에 운공을 배치한 모습은 같은 규모의 여느 건축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높은 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면의 의장성에 비해 측면과 후면은 도리집으로 처리한 모습에서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축물의 의장성을 어떻게 유지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독성전은 사찰 내에서 부속 전각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주불전인 극락전과 같이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불전과 부속 전각의 위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불교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익공과 운공의 의장을 극락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작은 규모의 전각치고는 보기 드문 장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타사 독성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이에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한다.

○ 문화재 지정 도면 : <첨부자료> 참조

2.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제21조(허가기준)·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제24조(신고사항) 및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제

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 제56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허가신청)·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 등의 적용 대상이 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동 문화재의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 적용 대상이 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 지정 도면



○ 문화재 지정대상

－ 건물 2동, 토지 1필지 129㎡

소재지	지번	명칭	수량	지적면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성동구 옥수동	395-1	극락전	건물1동	2,571	114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독성전	건물1동	2,571	15	
총계	1필지		건물2동	2,571	129	

－ 별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31호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제작된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6개 주제도 및 토지별 비오톱 등급)의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가.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자료로 환경성검토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재정비·제작된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의 시행을 알리고자 함

나. 고시내용 : 도시생태현황도(6개 주제도)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다. 열람방법 :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SHP파일) 및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2.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 고시

가.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대상)에 따라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자 함

나. 고시내용 :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다. 열람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필지별) 참고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조회가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35호

도시관리계획(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9.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아현시장의 입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어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의 원활한 건축을 위해 주차장 설치완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장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수요 유발용도에 대한 과도한 주차장 완화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주거용도를 30% 이상 포함하는 건축계획에 한해 조건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	39,965	-	39,965	서울시고시 제2017-210호 (17.6.1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965	-	39,965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232	-	7,232	18.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37	-	14,937	37.4	-
	준주거지역	17,685	-	17,685	44.3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1	-	111	0.3	-

나. 용도지구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아현동 ~ 신촌로타리 (아현동346-21~노고산동31-21)	67,440	건고727호 (63.12.13)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

■ 용적률

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적용(서고제2019-313호)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적용(서고제2019-313호) 단 주차장설치완화구역에서는 미적용

다. 건축물 높이(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중 ‘주차장설치완화구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필지 및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적용	-
변 경	•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필지 및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	-

■ 주차장설치완화구역

구 분	번 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결정도 위치표기)
변 경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비주거 용도 도입 시, 비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주) 1. 주차장설치 미완화 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2. 주차장설치완화구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서고제2019-313호) 미적용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에 해당됨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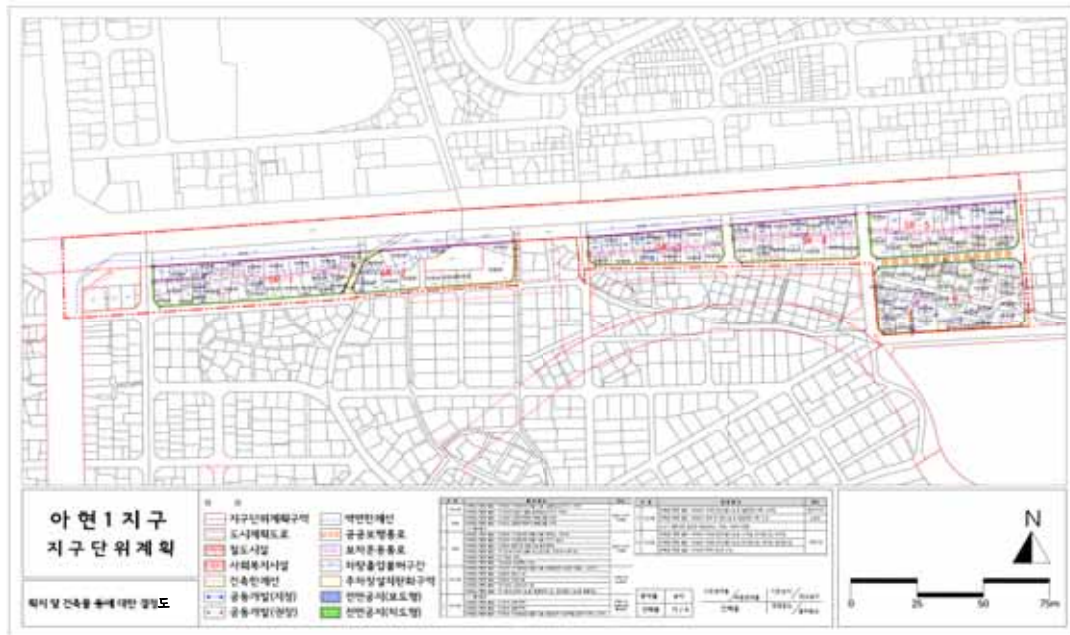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36호

도시관리계획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9.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아현시장의 입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어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의 원활한 건축을 위해 주차장 설치완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장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수요 유발용도에 대한 과도한 주차장 완화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주거용도를 30% 이상 포함하는 건축계획에 한해 조건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아현동 331번지 일대	41,230	-	41,230	서고149호 (96.6.3)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1,230.0	-	41,230.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3,969.4	-	23,969.4	58.1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6,646.6	-	6,646.6	16.1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14.0	-	6,614.0	16.1	-
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4,000.0	-	4,000.0	9.7	-

나. 용도지구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아현동~신촌로타리 (아현동331-11~아현동329-1)	67,440 (1,621)	건고727호 (63.12.13)	-
기정	-	방화지구	아현동327-30 일원	849.6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나. 유통 및 공급시설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변경)

■ 용적률

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적용(서고제2019-313호)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적용(서고제2019-313호) 단 주차장설치완화구역에서는 미적용

다. 건축물 높이(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주차장설치완화구역

구 분	번 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결정도 위치표기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변 경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비주거 용도 도입 시, 비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주) 1. 주차장설치 미완화 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2. 주차장설치완화구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서고제2019-313호) 미적용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에 해당됨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37호

**중랑구 면목동 297 - 1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 면 적 : 1,114.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9월 30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동성건설
- 대표자 성명 : 이용희, 이진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회경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5096030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면목동	297-16	묘	838	838	주식 회사 동성 건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휘경동)	100%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 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2	면목동	297-19	대	132	132	주식 회사 동성 건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휘경동)	100%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 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3	면목동	297-33	묘	144	144	주식 회사 동성 건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휘경동)	100%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 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합 계				1,114	1,114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면목동	297-19	대	단독 주택	벽돌 구조	1990.11.1 5	226.26	1	2	주식 회사 동성 건설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 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합 계							226.2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	증)1,114.0	1,114.0	-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3) 및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116-38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 면 적 : 1,114.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면목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동성건설
- 대표자 성명 : 이용희, 이진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회경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5096030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114.0	100.0	임대주택
합 계	1,114.0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171인

2) 주택건설계획 : 80세대(공공임대 14세대, SH선매입 2세대, 민간임대 64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33 type	3	3.8	3	1.8	신혼부부
	49 type	4	5.0	11	6.2	신혼부부
	57 type	7	8.8	19	10.8	신혼부부
	소 계	14	17.5	32	18.8	-
SH 선매입	23-A type	2	2.5	2	1.2	청년(일반형)
	소 계	2	2.5	2	1.2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3-A type	7	8.8	7	4.1	청년(일반형)
	23-B type	3	3.8	3	1.8	청년(일반형)
	33 type	4	5.0	4	2.4	청년(일반형)
	34 type	3	3.8	3	1.8	청년(일반형)
	35 type	1	1.3	1	0.6	청년(일반형)
	36 type	2	2.5	2	1.2	청년(일반형)
	45 type	7	8.8	19	10.8	신혼부부
	49 type	14	17.5	37	21.7	신혼부부
	57 type	23	28.8	61	35.6	신혼부부
	소 계	64	80.0	137	80.0	-
합 계		80	100.00	171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획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토양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면은 지양하고, 우수 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

장을실시 하여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

- 생태면적을 확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구내 보도, 광장 등은 점토벽돌포장, 화강석 포장, 사고석포장, 인조잔디 등의 투수성(보수성) 포장재를 사용토록 할 계획
- 가용할 수 있는 자연지반녹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옥상녹화를 도모하여 온실가스 흡수, 옥상을 이동경로 사용할 수 있는 조류의 식이 및 휴식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시공토록하여 거시적인 녹지축의 징검다리 역할 도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고, 서울특별시 및 중랑구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며,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계획구역 내 조경녹지를 조성하여 녹지축 형성으로 주변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태양복사 변화에 대한 열섬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시설계시 에너지 효율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임
-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따라 에너지사용자로서 효율이 향상된 기자재(펌프류, 조명시설 등)를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적정화 할 계획임

라. 신재생에너지사용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및 자립률 향상을 위한 건축물 설계기법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에 의거하여 향후 건축설계시 고효율 조명기기, 절수기기 등 에너지 절약 제품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중랑구 면목동 297-1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	증) 1,114.0	1,114.0	-

-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사유
신설	중랑구 면목동 297-1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114.0	-	1,114.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14.0	감) 1,114.0	-	0.0	
준주거지역	-	증) 1,114.0	1,114.0	100.0	

※ 상기 면적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랑구 면목동 297-16 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1,114.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해당사항 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	1,114.0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1,114.0	-

-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결정사유
-	-	1,114.0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획지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불허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소 이와 비슷한 게임관련시설 •격리병원, 요양병원,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제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장례식장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오피스텔 제외)임

-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결정사유
-	•지정용도, 불허용도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용도로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계획내용	•60% 이하	준주거지역

■ 용적률

구분	용적률	비고
계획내용	•기본용적률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423.65% 이하^{주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

주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을 준용

■ 건축물 높이

구분	높이	비고
계획내용	•최고높이 : 40.0m 이하^{주1)}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서울시 공고 제2019-2호)」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높이 기준을 준용.

—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결정사유
-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결정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개발밀도계획 결정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 사항)

구분	기준	계획사항	완화내용
공공기여율	①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70.15㎡ (15.27%) [기본용적률 400% 기준]	기본 용적률 400%, 상한 용적률 423.65%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② 완화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 131.98㎡ (11.85%) [완화용적률의 50% : 11.83% 이상]	
비주거비율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90.49% : 9.51%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14세대) - 전용 25㎡, 37㎡, 44㎡ •SH선매입(2세대) - 전용 18㎡ •민간임대주택(64세대) - 전용 18㎡, 25㎡, 26㎡, 27㎡, 37㎡, 44㎡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사시설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구분		기준	계획사항	완화내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시설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호 미만 : 100㎡ 이상	지상2층에 청년층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178.27㎡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변경사유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적용함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면목로72길변	3m	결정도 참조

－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변경사유
-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면목로72길변에 건축한계선 3m 결정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면목로72길변 3m)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결정도 참조

나) 공공기여 계획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계획내용	비고
기본 용적률	① 공공임대 주택	4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준주거지역]	•부지면적의 15%이상 - 167.10㎡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 170.15㎡ (15.27%)	총 12세대
상한 용적률	② 공공임대 주택	법적용적률 이하 [423.65%]	•완화용적률의 50%이상 - 131.73㎡ 이상 (11.83% 이상)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31.98㎡ (11.85%) → 부속토지 환산면적 - 31.60㎡ (2.84%) [완화용적률 기준]	총 2세대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1) 호수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면목동	297-16	묘	838	838	주식회사 동성건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휘경동)	100%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2	면목동	297-19	대	132	132	주식회사 동성건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휘경동)	100%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3	면목동	297-33	묘	144	144	주식회사 동성건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302호(휘경동)	100%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합 계				1,114	1,114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면목동	297-19	대	단독 주택	벽돌 구조	1990. 11.15	226.26	1	2	주식 회사 동성 건설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은평 신용 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합 계							226.26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중랑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토지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 계	1,114.0	100.0	-	-	-
주택건설용지	1,114.0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38호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97.0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93호(2001.6.11.)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호(2020.01.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공원 경계, 면적 등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1-2번지 일대

3. 면 적 : 370,891.5㎡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강서구 공원녹지과(☎ 02-2600-4182)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1-2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 면 적 (㎡)		
계		917,917.60	77,316.00	8	1,532.80	2,597.55	395	370,891.5	71,131.07	8	2,581.29	3,869.55	352	감) 6,184.93㎡
기 반 시 설	소 계	20,471.0	20,471.0	-	-	-	9	14,156	14,156				4	감) 6,315㎡
	도 로	19,426.00	19,426.00	-	-	-	-	13,780	13,780					감) 5,646㎡
	광 장	1,045.00	1,045.00	-	-	-	9	376	376					감) 669㎡
조 경 시 설		11,548.00	11,548.00	-	-	-	46	11,888	11,888				38	증) 340㎡
휴 양 시 설		5,761.00	5,761.00	2	366.00	1,370.00	91	5,834	5,834	2	366	1,370	67	증) 73㎡
유 희 시 설		2,377.00	2,377.00	-	-	-	78	1,992	1,992				72	감) 385㎡
운 동 시 설		10,873.00	10,873.00	1	811.8	872.55	125	10,362	10,362	2	1,784.22	1,844.97	125	감) 511㎡
교 양 시 설		24,363.00	24,363.00	-	-	-	46	24,632.07	24,632.07	1	276.07	499.58	46	증) 269.07㎡
편 익 시 설		1,723.00	1,723.00	3	155.00	155.00	-	2,207	2,207	2	95	95		증) 484㎡
관 리 시 설		200.0	200.0	2	200.0	200.0	-	60	60	1	60	60		감) 140㎡
녹지 및 기타	녹지	840,601.60	-	-	-	-	-	299,760.43						감) 540,841.17㎡
시 설 율 (법정 40%)		(77,316.00 / 917,917.60) x 100 = 8.42%						(71,131.07 / 370,891.5) x 100 = 19.17%						
건 폐 율 (법정 10%)		(1,532.80 ÷ 917,917.60) x 100 = 0.17%						(2,581.29 / 370,891.5) x 100 = 0.69%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917,917.60	77,316.00		8	1,532.80	2,597.55	395			370,891.5	71,131.07		8	2,581.29	3,869.55	352	감) 6,184.93㎡
기 본 시 설	소 계			20,471.0	20,471.0					9			14,156	14,156					4	감) 6,315㎡
	도 로		전지역	19,426.00	19,426.00							전지역	13,780	13,780						감) 5,646㎡
	광 장	가		1,045.00	1,045.00					9	가	2개소	376	376					4	감) 669㎡
		가-1	화곡동 산41-6	(90.00)	(90.00)															폐지
		가-3	화곡동 산25-9	(218.00)	(218.00)					3										폐지
		가-4	화곡동 산24-31	(222.00)	(222.00)					2										폐지 (도자구역)
		가-5	화곡동 산22-21	(378.00)	(378.00)					1	가-5	화곡동 산22-21임	239	239					1	감) 139㎡
		가-6	화곡동 산5-3	(137.00)	(137.00)					3	가-6	화곡동 산5-15임	137	137					3	
조 경 시 설	소 계			11,548.00	11,548.00					46			11,888	11,888					38	증) 340㎡
	잔디광장	나		1,985.00	1,985.00					8	나	2개소	9,306	9,306					8	증) 7,321㎡
		나-1	화곡동 산47-16	(1,348.00)	(1,348.00)					1	나-1	화곡동 산47-16공	9,116	9,116					1	증) 7,768㎡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나-2	화곡동 산47-16	(293.00)	(293.00)															폐지
		나-3	화곡동 산22-20	(206.00)	(206.00)					7	나-3	화곡동 산22-86임	190	190					7	감) 16㎡
		나-4	화곡동 42-114	(138.00)	(138.00)															폐지
	조각공원	다	등촌동 산23-4	506.00	506.00					10	다	등촌동 산23-4임	506	506					10	
	미니수목원	라	화곡동 산22-1	416.00	416.00						라	화곡동 산22-102임	337	337						감) 79㎡
	산마루공원	마	화곡동 산1	751.00	751.00					20	마	화곡동 산1-1임	751	751					20	
	조경녹지	바	2개소	7,890.00	7,890.00					8										
		바-1	화곡동 산47-16	(7,788.00)	(7,788.00)					8										폐지
		바-2	화곡동 산42-1	(102.00)	(102.00)						바	화곡동 산42-10임	102	102						부호변경 (바-2→바)
	치유의숲										머	화곡동 산48-3임	886	886						신설
휴양 시설	소 계			5,761.00	5,761.00	R.C조	2	366.00	1,370.00	91			5,834	5,834	R.C조	2	366	1,370	67	증) 73㎡
	휴게소	사		4,731.00	4,731.00					87	사	12개소	5,107	5,107					63	증) 376㎡
		사-1	화곡동 산22-4	(1,337.00)	(1,337.00)					24	사-1	화곡동 산22-89임	1,337	1,337					2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2	화곡동 산5-3	(392.00)	(392.00)					8	사-2	등촌동 산89-6임	392	392						8	
	사-3	화곡동 산221	(232.00)	(232.00)					4											폐지
	사-4	등촌동 산24-2	(110.00)	(110.00)					3											폐지 (도자구역)
	사-5	화곡동 산47-16	(321.00)	(321.00)					2	사-5	화곡동 산47-16공	321	321					2		
	사-6	화곡동 산42-1	(285.00)	(285.00)					1	사-6	화곡동 산42-10임	285	285					1		
	사-7	등촌동 산87	(124.00)	(124.00)					17											폐지 (도자구역)
	사-8	화곡동 산5-5	(506.00)	(506.00)					12	사-8	화곡동 산5-5	506	506					12		
	사-9	화곡동 산5-5	(187.00)	(187.00)					3	사-9	화곡동 산5-6임	187	187					3		
	사-10	화곡동 산5-3	(398.00)	(398.00)					3	사-10	등촌동 산5-12임	398	398					3		
	사-11	화곡동 산41-7	(638.00)	(638.00)					10	사-11	화곡동 산41-16임	249	249					10	감) 389㎡	
	사-12	화곡동 42-114	(201.00)	(201.00)																폐지
										사-13	화곡동 680-50도	224	224							신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14	화곡동 680-10도	325	325						신설
											사-15	등촌동 산86임	745	745						신설
											사-16	화곡동 산204-3임	138	138						신설
	경로당	①	화곡동 산47-16	160.00	160.00	R.C조	1	46.00	90.00		1	화곡동 산47-16공	160	160	R.C조	1	46	90		부호변경 (①→1)
	노인복지 회관	②	화곡동 산41-7	870.00	870.00	R.C조	1	320.00	1,280.00	4	2	화곡동 산41-16임	567	567	R.C조	1	320	1,280	4	감) 303㎡ 부호변경 (②→2)
유회 시설	소계			2,377.00	2,377.00				78			1,992	1,992					72	감) 385㎡	
	어린이 놀이터	아	8개소	2,377.00	2,377.00				78	아	5개소	1,992	1,992					72	감) 385㎡	
		아-1	화곡동 산47-16	(208.00)	(208.00)				3	아-1	화곡동 산47-16공	208	208					3		
		아-2	화곡동 산22-15	(911.00)	(911.00)				21	아-2	화곡동 산22-73임	911	911					21		
		아-4	등촌동 산24-2	(174.00)	(174.00)				5										폐지 (도자구역)	
		아-5	등촌동 산24-2	(211.00)	(211.00)				1										폐지 (도자구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6	등촌동 산86	(323.00)	(323.00)					6	아-6	등촌동 산86임	323	323						6	
		아-7	화곡동 산22-20	(107.00)	(107.00)					1	아-7	화곡동 산22-86임	107	107						1	
		아-8	화곡동 산53-1	(443.00)	(443.00)					41	아-8	화곡동 산53-4임	443	443						41	
운동 시설	소계			10,873.00	10,873.00		1	811.8	872.55	122			10,362	10,362		2	1,784.22	1,844.97	125	감) 511㎡	
	모험 놀이시설	자	화곡동 473-13	2,364.00	2,364.00					18	자	화곡동 476-13임	1,914	1,914						18	감) 450㎡
	배드민턴장	차	2개소	3,431.00	3,431.00					21											
		차-1	화곡동 산47-16	(657.00)	(657.00)					8	차	화곡동 산47-16공	657	657						8	부호변경 (차-1→차)
		차-3	화곡동 산22-80임	(2,774.00)	(2,774.00)		막구조			13											감) 2,774㎡ 시설명 변경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부호변경 (차-3→7-2)
	농구장	카	1개소	519.00	519.00																
		카-1	화곡동 산47-16	(519.00)	(519.00)																감) 519㎡ 시설명변경 (농구장→족구장)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죽구장										카	화곡동 산47-16공	519	519						증) 519㎡ 시설명변경 (농구장→죽구장)
	게이트볼장	타	화곡동 산47-16	509.00	509.00															폐지
	다목적 운동장	파	1개소	792.00	792.00															
		파-1	화곡동 산47-16	792.00	792.00					3	파	화곡동 산47-16공	651	651					3	감) 141㎡ 부호변경 (파-1→파)
	다목적 체육관	머	화곡동 산22-32	1,285.00	1,285.00	파형 강판조	1	811.80	872.55	16	7	2개소	4,059	4,059		2	1,784.22	1,844.97	29	
											7-1	화곡동 산22-32	1,285	1,285	파형 강판조	1	811.80	872.55	16	부호변경 (머→7)
											7-2	화곡동 산22-80	2,774	2,774	철골조	1	972.42	972.42	13	증) 2,774㎡ 시설명 변경 (베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부호변경 (차-3→7-2)
	체력단련장	하	4개소	1,973.0	1,973.0					64	하	8개소	2,562	2,562					67	증) 589㎡
		하-1	화곡동 42-114	(1,360.00)	(1,360.00)					44	하-1	화곡동 42-125대	1,360	1,360					44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2	화곡동 산204	(397.00)	(397.00)					6	하-2	화곡동 204-3임	397	397						6	
		하-3	화곡동 산48-2	(106.00)	(106.00)					5	하-3	화곡동 42-125대	106	106						5	
		하-4	화곡동 산42-1	(64.00)	(64.00)					9	하-4	화곡동 산42-10임	64	64						9	
		하-5	화곡동 산47-16	(46.00)	(46.00)					3	하-5	화곡동 산47-16공	46	46						3	
											하-6	등촌동 산87-5임	247	247							신설
											하-7	화곡동 산5-5임	167	167							신설
											하-8	화곡동 산5-5임	175	175							신설
교양 시설	소계				24,363.00	24,363.00				46			24,632.07	24,632.07		1	276.07	499.58	46		
	자연체 험학습 원	거	1개소	23,171.00	23,171.00					26	거	1개소	23,447.07	23,447.07		1	276.07	499.58	26		
		조경녹지	거-1	화곡동 산42-6외	(19,792.00)	(19,792.00)					14	거-1	화곡동 산42-6외	19,792	19,792					14	
		광장	거-2	화곡동 산43-20	(1,576.00)	(1,576.00)						거-2	화곡동 산43-20	1,576	1,57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파고라	거-3	화곡동 산42-6	(42.00)	(42.00)					1	거-3	화곡동 산42-6	42	42						1	
		육각정 자	거-4	화곡동 산42-6	(25.00)	(25.00)					1	거-4	화곡동 산42-6	25	25					1	
		어린이 놀이터	거-5	화곡동 산41-6	(731.00)	(731.00)					1	거-5	화곡동 산41-6	731	731					1	
		감성 놀이마 당	거-6	화곡동 산43-20	(163.00)	(163.00)					5	거-6	화곡동 산43-20	163	163					5	
		다목적 운동장	거-7	화곡동 산42-6	(842.00)	(842.00)					4	거-7	화곡동 산42-6	842	842					4	
		봉제산 책삼터										거-8	화곡동 산41-6	276.07	276.07	철근콘	1	276.07	499.58		증) 276.07㎡
	봉수대		너	화곡동 산42-1	1,192.00	1,192.00					20	너	화곡동 산42-1임	783	783					20	감) 409㎡
	유아등네 숲터											서	2개소	402	402						
												서-1	화곡동 산48-3임	237	237						신설
												서-2	화곡동 산86임	165	165						신설
편익 시설	소계				1,723.0	1,723.0		3	155.00	155.00				2,207	2,207		2	95	95		증) 484㎡
	주차장		더	3개소	1143.00	1143.00						더	4개소	1,621	1,621						증) 478㎡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더-1	화곡동 산47-16	(593.0)	(593.0)	아스콘					더-1	화곡동 산47-16공	593	593	아스콘						
		더-2	화곡동 산42-1	(346.00)	(346.00)	투수블 력					더-2	화곡동 산42-7임	529	529	투수블 력						증) 183㎡
		더-3	화곡동 산42-1	(204.00)	(204.00)	투수블 력					더-3	화곡동 산41-11임	319	319	투수블 력						증) 115㎡
											더-4	화곡동 42-114대	180	180	잔디블 력						신설
	약수터	러	2개소	150.00	150.00																
		러-1	화곡동 산1	(50.00)	(50.00)																폐지
		러-2	화곡동 산1	(100.00)	(100.00)						러	화곡동 산5-7임	23	23							감 77㎡ 부호변경 (러-2→러)
	화장실										3	5개소	425	425	R.C조	2	95	95			
		③	화곡동 산47-16	310.00	310.00	R.C조	1	35.00	35.00		3-1	화곡동 산47-16공	310	310	R.C조	1	35	35			부호변경 (③→3-1)
		④-1	화곡동 산22-83	60.00	60.00	R.C조	1	60.00	60.00		3-2	화곡동 산22-83임	60	60	R.C조	1	60	60			부호변경 (④-1→3-2)
		④-2	화곡동 산22-80임	60.00	60.00	R.C조	1	60.00	60.00												폐지 (도자구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3-3	화곡동 42-134대	20	20						신설
											3-4	화곡동 산22-32임	20	20						신설
											3-5	화곡동 산23-4임	15	15						신설
	전망대										버	2개소	138	138						
											버-1	화곡동 산42-14임	115	115						신설
											버-2	화곡동 산210임	23	23						신설
관리 시설	소 계			200.0	200.0		2	200.0	200.0				60	60		1	60	60		
	관리사무소	⑤	화곡동 산43-1	140.00	140.00	R.C조	1	140.00	140.00											폐지
		⑥	화곡동 산47-16	60.0	60.0	R.C조	1	60.0	60.0		6	화곡동 산47-16공	60	60	R.C조	1	60	60		
녹지및 기타	녹 지		전지역	840,601.60								전지역	299,760.43							감) 540,841.17㎡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634.00	19,426.00				
변경					6,738	13,780				
당초	소로	소 계			1,513.00	4,983.00				
변경					941	3,058				
당초		3	1	3.0	325.00	975.00	진입도로	국립동물검역소	휴게소 7-6	
변경		3	1	4.0	153	482	진입도로	등촌동 산23-36임	휴게소 (사-6)	
당초		3	2	6.0	370.00	2,220.00	진입도로	노인복지회관	배드민턴장 10-2	
변경		3	2	6.0	274	1,653	진입도로	화곡동 산41-15임	산책로 58	
당초		3	3	3.0	36.00	108.00	진입도로	화곡 산42-3임	배드민턴장 10-2	
변경		3	3	3.5	12	42	진입도로	산책로 27	배드민턴장 (차-3)	
당초		3	4	1.5	64.00	96.00	진입도로	화곡 680도	배수지	
폐지										
당초		3	5	3.0	204.00	612.00	진입도로	어린이놀이터 8-4	모험놀이시설 9-2	
변경		3	5	2.0	214	427	진입도로	어린이놀이터 (아-2)	모험놀이시설 (자)	
당초		3	6	1.5	222.00	333.00	진입도로	광장 1-4	화곡 산22-16임	
변경		3	6	1.5	91	136	진입도로	산책로 73	모험놀이시설 (자)	
당초		3	7	1.5	70.00	105.00	진입도로	장수공원입구	약수터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7							
당초		3	8	1.5	88.00	132.00	진입도로	등촌 산86-3임	등촌 산86임	
변경		3	8	1.5	69	104	진입도로	등촌동 산87-5임	산책로 40	
당초		3	9	3	134.0	402.0	진입도로	화곡 산22-24임	다목적체육관 (머)	
변경		3	9	3.0	128	214	진입도로	화곡동 산22-24임	다목적체육관 (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소 계			8,121.0	14,443.0				
변경					5,797	10,722				
당초		3	1	1.5	680.00	1,020.00	산책로	화곡 산210임		
변경		3	1	2.0	202	403	산책로	도자구역	화곡동 산211임	
당초		3	2	1.5	148.00	222.00	부진입 도로	광장 1-1	화곡 산204임	
변경		3	2	1.5	171	253	부진입 도로	등촌동 366-157도	산책로 1	
당초		3	3	1.5	72.00	108.00	등산로	화곡 산204임	모험놀이시설 9-1	
변경		3	3	1.5	73	110	등산로	산책로 2	체력단련장 (하-2)	
당초		3	4	1.5	166.00	429.00	등산로	모험놀이시설 9-1	체력단련장 14-1	
변경		3	4	1.5	200	303	등산로	체력단련장 (하-2)	산책로 7	
당초		3	5	1.5	310.00	465.00	산책로	모험놀이시설 9-1	휴게소 7-2	
변경		3	5	1.5	46	60	산책로	도자구역	체력단련장 (하-2)	
당초		3	6	1.5	182.00	273.00	등산로	그리스도신학대	화곡 산24-2임	
변경		3	6	1.5	51	77	등산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3	7	2.5	114.00	285.00	부진입 도로	화곡 42-114	체력단련장 14-1	
변경		3	7	2.5	35	99	부진입 도로	도자구역	체력단련장 (하-1)	
당초		3	8	2.0	75.00	150.00	등산로	광장 1-2	체력단련장 14-1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8							
당초		3	9	1.5	86.00	129.00	등산로	등촌 산24-2임	등촌 산24-2임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9							
당초		3	10	1.5	220.00	330.00	부진입 도로	휴게소 7-2	체력단련장 14-1	
변경		3	10	1.5	2	3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4	
당초		3	11	1.5	20.00	30.00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8-2	휴게소 7-2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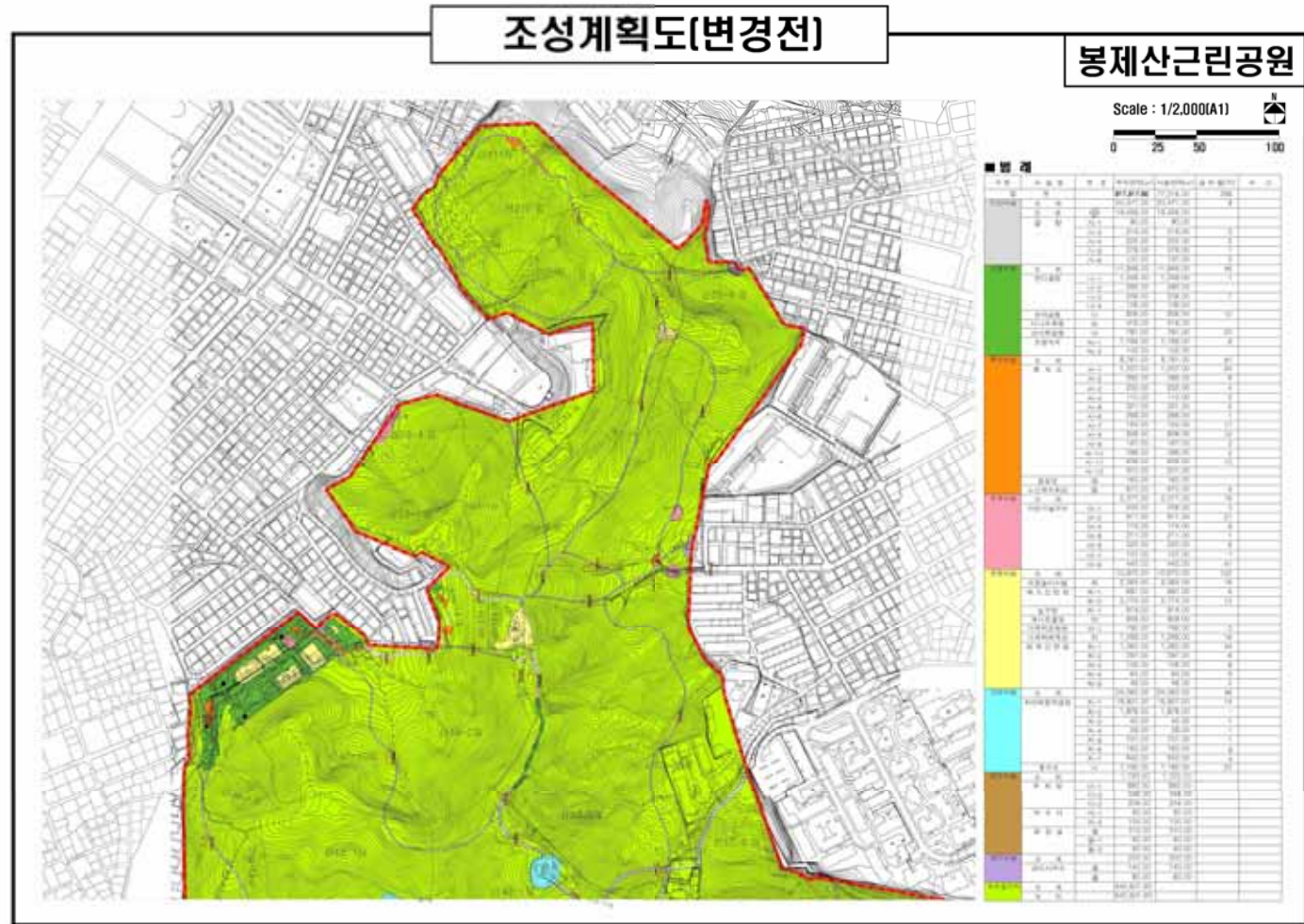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2	1.5	24.00	36.00	부진입도로	광장1-2	어린이놀이터 8-2	
폐지										
당초		3	13	1.5	404.00	606.00	산책로	등촌 산24-2임	연화사	
변경		3	13	1.5	203	313	산책로	도자구역	소로 3-1	
당초		3	14	1.5	90.00	135.00	부진입 도로	화곡 42-114대	체력단련장 14-2	
변경		3	14	1.5	94	135	부진입 도로	화곡동 42-114대	체력단련장 (하-3)	
당초		3	15	2.0	11.00	22.00	등산로	체력단련장 14-2	화곡 42-125대	
변경		3	15	2.0	11	23	등산로	체력단련장 (하-3)	산책로 16	
당초		3	16	3.0	62.00	186.00	등산로	체력단련장 14-1	조각공원	
변경		3	16	3.0	62	171	등산로	체력단련장 (하-1)	조각공원 (다)	
당초		3	17	2.0	223.00	446.00	산책로	잔디광장 2-2	자연학습원 15-1	
변경		3	17	1.5	193	282	산책로	도자구역	자연학습원 (거)	
당초		3	18	1.5	408.00	612.00	등산로	배드민턴장 10-1	화곡 42-1임	
변경		3	18	1.5	18	26	등산로	도자구역	산책로 20	
당초		3	19	3.0	38.00	114.00	등산로	화곡 산 42-1임	조각공원	
변경		3	19	3.0	31	115	등산로	산책로 20	조각공원 (다)	
당초		3	20	3.0	76.00	228.00	등산로	화곡 산 42-1임	봉수대	
변경		3	20	3.0	82	230	등산로	산책로 19	봉수대 (너)	
당초		3	21	3.0	96.00	288.00	산책로	연화사	미니수목원	
변경		3	21	3.0	95	288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22	
당초		3	22	3.0	564.00	1,692.00	등산로	봉수대	화곡 산5-1임	
변경		3	22	3.0	560	1,679	등산로	도자구역	봉수대 (너)	
당초		3	23	1.0	30.00	30.00	등산로	휴게소 7-6	체력단련장 14-3	
변경		3	23	1.0	22	22	등산로	도자구역	산책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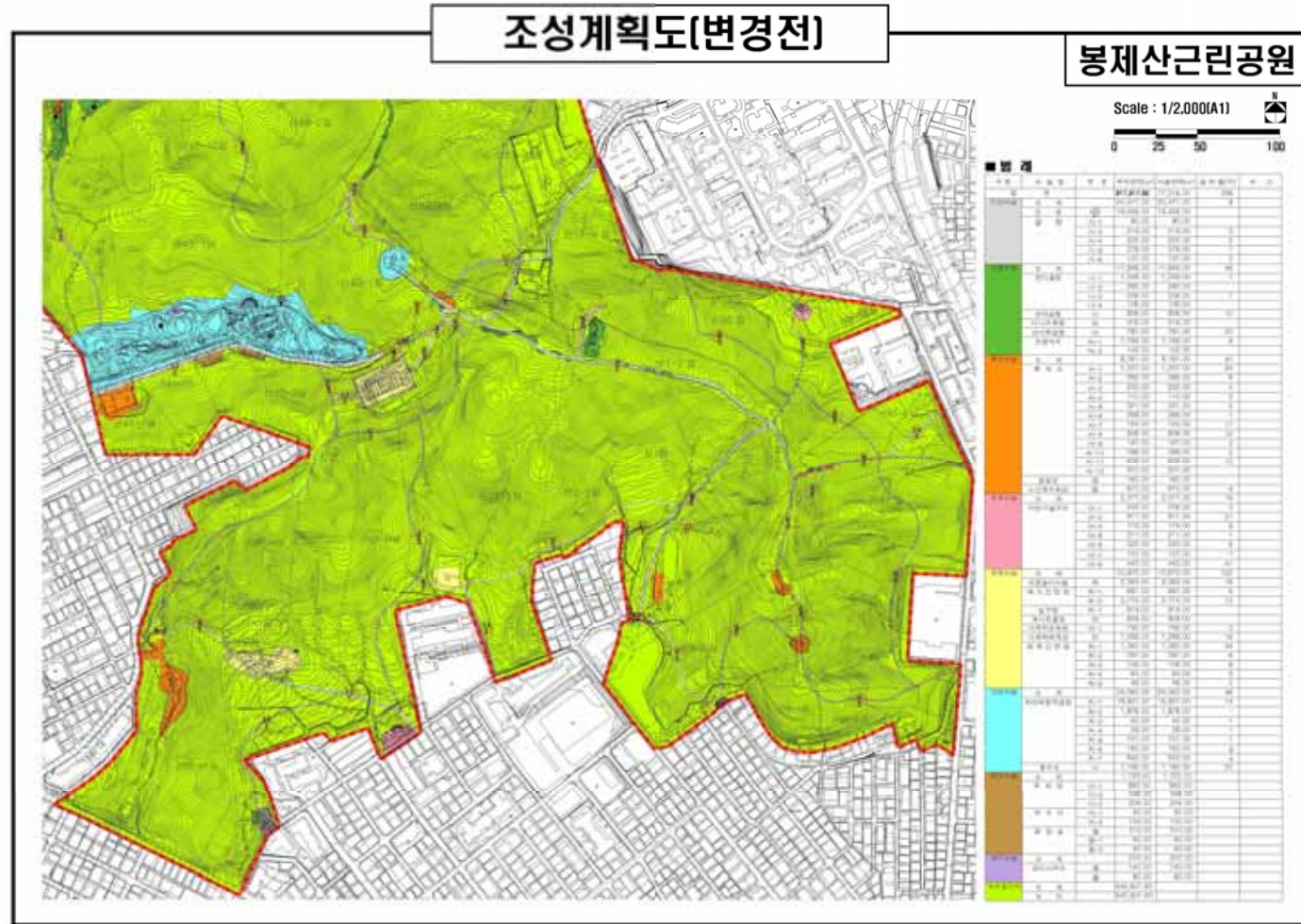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24	2.5	92.00	230.00	등산로	화곡배수지	체력단련장 14-3	
변경		3	24	3.0	7	23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2	
당초		3	25	3.0	31.00	93.00	등산로	화곡 산22-1임	체력단련장 14-3	
폐지										
당초		3	26	2.5	52.00	130.00	산책로	배드민턴장 10-2	화곡 산42-1임	
변경		3	26	2.3	50	115	산책로	도자구역	배드민턴장 (차-3)	
당초		3	27	1.5	596.00	894.00	산책로	휴게소 7-7	화곡 산42-1임	
변경		3	27	1.5	368	545	산책로	휴게소 (사-1)	산책로 22	
당초		3	28	3.0	80.00	240.00	산책로	산마루공원	산마루공원	
변경		3	28	2.0	99	198	산책로	산책로 22	도자구역	
당초		3	29	1.5	224.00	336.00	부진입 도로	등촌 산15-3임	등촌 산86임	
변경		3	29	1.5	205	307	부진입 도로	등촌동 산15-3임	산책로 30	
당초		3	30	1.5	178.00	267.00	부진입 도로	어린이놀이터 8-3	화곡 산5-1임	
변경		3	30	1.5	170	253	부진입 도로	등촌동 산86임	산책로 22	
당초		3	31	1.5	90.00	135.00	산책로	화곡 산42-3임	화곡 산22-13임	
변경		3	31	1.5	13	20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7	
당초		3	32	1.5	456.00	684.00	등산로	어린이놀이터 8-4	화곡 산22-2임	
변경		3	32	1.5	21	32	등산로	산책로 34	다목적체육관 (7)	
당초		3	33	1.5	34.00	51.00	산책로	휴게소 7-7	화곡 산22-4임	
폐지										
당초		3	34	1.5	112.00	168.00	산책로	휴게소 7-7	모험놀이시설 9-2	
변경		3	34	1.5	92	138	산책로	휴게소 (사-1)	모험놀이시설 (자)	
당초		3	35	1.5	26.00	39.00	산책로	화곡 산22-2임	배드민턴장 10-3	
폐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37	1.5	292.00	438.00	산책로	배드민턴장 10-3	화곡 산1임	
변경		3	37	1.5	96	144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3	38	1.5	136.00	204.00	등산로	휴게소 7-10	화곡 산5-1임	
변경		3	38	1.5	18	27	등산로	도자구역	산책로 22	
당초		3	39	1.5	88.00	132.00	산책로	등촌 산86임	등촌 산87임	
변경		3	39	1.5	126	188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30	
당초		3	40	1.5	214.00	321.00	등산로	등촌 산87임	휴게소 7-8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40							
당초		3	41	1.5	130.00	195.00	등산로	휴게소 7-8	휴게소 7-11	
변경		3	41	1.5	112	191	등산로	휴게소 (사-10)	산책로 22	
당초		3	42	1.5	66.00	99.00	등산로	휴게소 7-8	화곡 산5-2임	
변경		3	42	1.5	36	58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41	
당초		3	43	1.5	312.00	468.00	부진입 도로	등촌 산87임	등촌 산89-5임	
폐지										
당초		3	44	1.5	146.00	219.00	부진입 도로	광장 1-5	휴게소 7-10	
변경		3	44	1.5	33	50	산책로	도자구역	휴게소 (사-8)	
당초		3	45	1.5	168.00	252.00	부진입 도로	광장 1-5	휴게소 7-12	
변경		3	45	1.5	39	58	부진입 도로	광장 (가-6)	휴게소 (사-2)	
당초		3	46	1.5	58.00	87.00	등산로	휴게소 7-11	휴게소 7-12	
변경		3	46	1.5	58	87	등산로	휴게소 (사-10)	휴게소 (사-2)	
당초		3	47	1.5	244.00	366.00	부진입 도로	등촌 산89-5임	휴게소 7-12	
변경		3	47	1.5	88	132	부진입 도로	도자구역	휴게소 (사-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48	2.0	29.0	114.0	산책로	화곡 산47-16	화곡 산47-16	
폐지										
당초		3	49	3.0	12.00	36.00	산책로	화곡배수지	화곡배수지 화장실	
변경		3	49	3.5	17	64	산책로	배드민턴장 (차-3)	도자구역	
당초		3	50	1.5	86.00	129.00	산책로	화곡 산48-2	화곡 42-114	
변경		3	50	2.0	51	102	산책로	산책로 14	화곡동 42-114	
당초		3	51	4.0	70.00	280.00	부진입 도로	까치산로 18길	까치산로 18라길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51							
신설		3	52	1.5	133	199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1	
신설		3	53	2.0	194	388	부진입 도로	도자구역	화곡동 산211임	
신설		3	54	1.5	2	3	산책로	잔디광장 (나-1)	산책로 18	
신설		3	55							(도자구역)
신설		3	56	2.0	15	29	산책로	주차장 (더-1)	산책로 57	
신설		3	57	2.0	26	50	산책로	화곡동 산47-16공	잔디광장 (나-1)	
신설		3	58							(도자구역)
신설		3	59	2.0	242	485	산책로	휴게소 (사-1)	별빛공원 (서)	
신설		3	60	1.5	33	52	산책로	산책로 27	휴게소 (사-1)	
신설		3	61	1.5	86	129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아-8)	산책로 7	
신설		3	62	2.0	58	115	산책로	주차장 (더-1)	산책로 14	
신설		3	63	1.5	228	342	산책로	산책로 27	도자구역	
신설		3	64	1.5	4	7	산책로	산책로 22	도자구역	
신설		3	65	1.5	27	40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41	
신설		3	66	3.0	127	376	산책로	체력단련장 (하-7)	화곡동 488-47대	
신설		3	67	2.0	3	6	산책로	산책로 66	휴게소 (사-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3	70	1.5	23	35	산책로	휴게소 (사-8)	도자구역	
신설		3	71	2.0	2	4	산책로	체력단련장 (하-7)	도자구역	
신설		3	72	2.0	104	208	산책로	별빛공원 (서)	잔디광장 (나-3)	
신설		3	73	1.8	143	257	부진임도로	자연학습체험장	산책로 17	무장애데크
신설		3	74	1.8	149	268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17	무장애데크
신설		3	75	1.8	109	196	산책로	산책로 53	산책로 17	무장애데크
신설		3	76	1.8	3	5	산책로	산책로 52	책쉼터	무장애데크





조성계획도[변경후]

봉제산근린공원

Scale : 1/2,000(A1)



구분	구분명	단위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실적	2020년 12월 31일 현재 실적	비고
자산	총 자산	원	14,186,112,187	14,186,112,187	
	유형자산	원	10,700,172,200	10,700,172,200	
	무형자산	원	3,485,940,000	3,485,940,000	
	현금	원	1,792,124	1,792,124	
	예치금	원	1,000,000	1,000,000	
	금융자산	원	10,800,000,000	10,800,000,000	
	투자자산	원	1,000,000,000	1,000,000,000	
	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유형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무형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부채	총 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유형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무형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금융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연방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지방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외국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민간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보증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기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이익잉여금	총 이익잉여금	원	13,186,112,187	13,186,112,187	
	유형이익잉여금	원	10,700,172,200	10,700,172,200	
	무형이익잉여금	원	3,485,940,000	3,485,940,000	
	현금	원	1,792,124	1,792,124	
	예치금	원	1,000,000	1,000,000	
	금융이익잉여금	원	10,800,000,000	10,800,000,000	
	투자이익잉여금	원	1,000,000,000	1,000,000,000	
	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유형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무형부채	원	1,000,000,000	1,000,000,0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39호

연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476호(2005.12.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839호(2012.12.3.)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연의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사무소를 생태학습관으로 변경하여 증축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320-9 일대
3. 공원면적 : 37,513.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및 양천구 공원녹지과(☎2620-3590)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연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양천구 신정3동 1320-9일대)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7,513.8	6,914.62	1	187	319	144	37,513.8	7,120.08	1	354.96	700.89	144	
기 반 시 설	소계	3,986.89	3,986.89					3,986.89	3,986.89					
	도로	2575.65	2575.65					2,575.65	2,575.65					
	광장	1,411.24	1,411.24					1,411.24	1,411.24					
조경시설		1,806.96	1,806.96				36	1,806.96	1,806.96				36	
휴양시설		698.38	698.38				61	698.38	698.38				61	
운동시설		234.42	234.42				8	234.42	234.42				8	
관리시설		187.97	187.97	1	187	319	39							감 187.97
교양시설								393.43	393.43	1	354.96	700.89	39	증 393.43
녹지및기타		30,599.18						30,393.72						감 205.46
시설율		(6,914.62 / 37,513.80) × 100 = 18.43%					(7,120.08 / 37,513.80) × 100 = 18.98%							
건폐율		(265.29 / 37,513.80) × 100 = 0.71%					(574.05 / 37,513.80) × 100 = 1.53%							

2.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합계			신정3동1320-9일대	37,513.8	6,914.62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1동	187	319	144		신정3동1320-9일대	37,513.8	7,120.08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1동	354.96	700.89	144	
기 본 시 설	소계		신정3동1320-9일대	3,986.89	3,986.89							신정3동1320-9일대	3,986.89	3,986.89						
	도로		신정3동1320-9일대	2,575.65	2,575.65							신정3동1320-9일대	2,575.65	2,575.65						
	광장	가-1	신정3동1320-9일대	256.07	256.07						가-1	신정3동1320-9일대	256.07	256.07						
		가-2	신정3동1320-9일대	234.07	234.07						가-2	신정3동1320-9일대	234.07	234.07						
		가-3	신정3동1320-9일대	147.14	147.14						가-3	신정3동1320-9일대	147.14	147.14						
		가-4	신정3동1320-9일대	155.51	155.51						가-4	신정3동1320-9일대	155.51	155.51						
		가-5	신정3동1320-9일대	338	338						가-5	신정3동1320-9일대	338	338						
		가-6	신정3동1320-9일대	32	32						가-6	신정3동1320-9일대	32	32						
		가-7	신정3동1320-9일대	97.5	97.5						가-7	신정3동1320-9일대	97.5	97.5						
		가-8	신정3동1320-9일대	150.95	150.95						가-8	신정3동1320-9일대	150.95	150.95						
조경 시설	소계		신정3동1320-9일대	1,806.96	1,806.96				36		신정3동1320-9일대	1,806.96	1,806.96					3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목재 데크	나-1	신정3동1320 -9일대	25	25						나-1	신정3동1320 -9일대	25	25						
	생태 습지	나-2	신정3동1320 -9일대	1,685	1,685						나-2	신정3동1320 -9일대	1,685	1,685						
	보행자 램프	나-3	신정3동1320 -9일대	96.96	96.96						나-3	신정3동1320 -9일대	96.96	96.96						
	산석가 벽	1	신정3동1320 -9일대							2	1	신정3동1320 -9일대							2	
	꽃담	2	신정3동1320 -9일대							(54.1m)	2	신정3동1320 -9일대							(54.1m)	
	화계	3	신정3동1320 -9일대							(22.5㎡)	3	신정3동1320 -9일대							(22.5㎡)	
	화강석 통석농 기	4	신정3동1320 -9일대							1	4	신정3동1320 -9일대							1	
	징검돌	5	신정3동1320 -9일대							1	5	신정3동1320 -9일대							1	
	생태 수제	6	신정3동1320 -9일대							12	6	신정3동1320 -9일대							12	
	자연 형보	7	신정3동1320 -9일대							16	7	신정3동1320 -9일대							16	
	저류 탱크	8	신정3동1320 -9일대							1	8	신정3동1320 -9일대							1	
	조형 마운딩	9	신정3동1320 -9일대							2	9	신정3동1320 -9일대							2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오곡문	10	신정3동1320-9일대							1	10	신정3동1320-9일대							1	
휴양 시설	소계		신정3동1320-9일대	698.38	698.38					61		신정3동1320-9일대	698.38	698.38					61	
	휴게소-1	다-1	신정3동1320-9일대	86.5	86.5						다-1	신정3동1320-9일대	86.5	86.5						
	휴게소-2	다-2	신정3동1320-9일대	19.32	19.32						다-2	신정3동1320-9일대	19.32	19.32						
	휴게소-3	다-3	신정3동1320-9일대	226.34	226.34						다-3	신정3동1320-9일대	226.34	226.34						
	휴게소-4	다-4	신정3동1320-9일대	30.24	30.24						다-4	신정3동1320-9일대	30.24	30.24						
	휴게소-5	다-5	신정3동1320-9일대	62.07	62.07						다-5	신정3동1320-9일대	62.07	62.07						
	휴게소-6	다-6	신정3동1320-9일대	273.91	273.91						다-6	신정3동1320-9일대	273.91	273.91						
	등의자	4	신정3동1320-9일대							16	4	신정3동1320-9일대							16	
	평의자	5	신정3동1320-9일대							36	5	신정3동1320-9일대							36	
	앉음벽	6	신정3동1320-9일대							(23.76)	6	신정3동1320-9일대							(23.76)	
	파고라A	7	신정3동1320-9일대							2	7	신정3동1320-9일대							2	
	파고라B	8	신정3동1320-9일대							3	8	신정3동1320-9일대							3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운동 시설	파고라 C	9	신정3동1320 -9일대						1	9	신정3동1320 -9일대							1	
	한식팔 각정자	10	신정3동1320 -9일대						1	10	신정3동1320 -9일대							1	
	화강석 통석의 자	37	신정3동1320 -9일대						2	37	신정3동1320 -9일대							2	
	소계		신정3동1320 -9일대	234.42	234.42				8		신정3동1320 -9일대	234.42	234.42					8	
	체력단 련장-1	라-1	신정3동1320 -9일대	234.42	234.42					라-1	신정3동1320 -9일대	234.42	234.42						
	TM스트 레칭로 라	19	신정3동1320 -9일대						2	19	신정3동1320 -9일대							2	
	TM크로 스컨트 리	20	신정3동1320 -9일대						1	20	신정3동1320 -9일대							1	
	TM폴웨 이트	21	신정3동1320 -9일대						2	21	신정3동1320 -9일대							2	
	TM롤링 웨이스 트	22	신정3동1320 -9일대						1	22	신정3동1320 -9일대							1	
	TM체어 폴	23	신정3동1320 -9일대						2	23	신정3동1320 -9일대							2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관리 시설	소계		신정3동1320-9일대	187.97	187.97				39		신정3동1320-9일대							39	
	관리사무소	마-1	신정3동1320-9일대	187.97	187.97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1동	187	319		마-1	신정3동1320-9일대							감 187.97
	자바라대문	24	신정3동1320-9일대						1	24	신정3동1320-9일대							1	
	종합안내판	25	신정3동1320-9일대						3	25	신정3동1320-9일대							3	
	방향안내판	26	신정3동1320-9일대						3	26	신정3동1320-9일대							3	
	생태해설판	27	신정3동1320-9일대						3	27	신정3동1320-9일대							3	
	수목보호호	28	신정3동1320-9일대						11	28	신정3동1320-9일대							11	
	안전철크스A	29	신정3동1320-9일대						(1040m)	29	신정3동1320-9일대							(1040m)	
	공원명표지판	30	신정3동1320-9일대						4	30	신정3동1320-9일대							4	
	로프게이트	31	신정3동1320-9일대						3	31	신정3동1320-9일대							3	
	공원이용안내판	32	신정3동1320-9일대						5	32	신정3동1320-9일대							5	
	목재철크스	33	신정3동1320-9일대						(97)	33	신정3동1320-9일대							(97)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출입문	34	신정3동1320-9일대						3	34	신정3동1320-9일대								3	
	법랑수위표	35	신정3동1320-9일대						2	35	신정3동1320-9일대								2	
	수질정화장치	36	신정3동1320-9일대						1	36	신정3동1320-9일대								1	
교양 시설	소계											393.43	393.43				354.96	700.89		
	생태학습관		신정3동1320-9일대								신정3동1320-9일대	393.43	393.43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1동	354.96	700.89		증 393.43	
녹지 및 기타	소계		신정3동1320-9일대	30,599.18	30,599.18						신정3동1320-9일대	30,393.72	30,393.72							감 205.46
	유수지1	바-1	신정3동1320-9일대	8,946	8,946					바-1	신정3동1320-9일대	8,946	8,946							
	유수지2	바-2	신정3동1320-9일대	2,750	2,750					바-2	신정3동1320-9일대	2,750	2,750							
	녹지		신정3동1320-9일대	18,903.18	18,903.18						신정3동1320-9일대	18,697.72	18,697.72							감 20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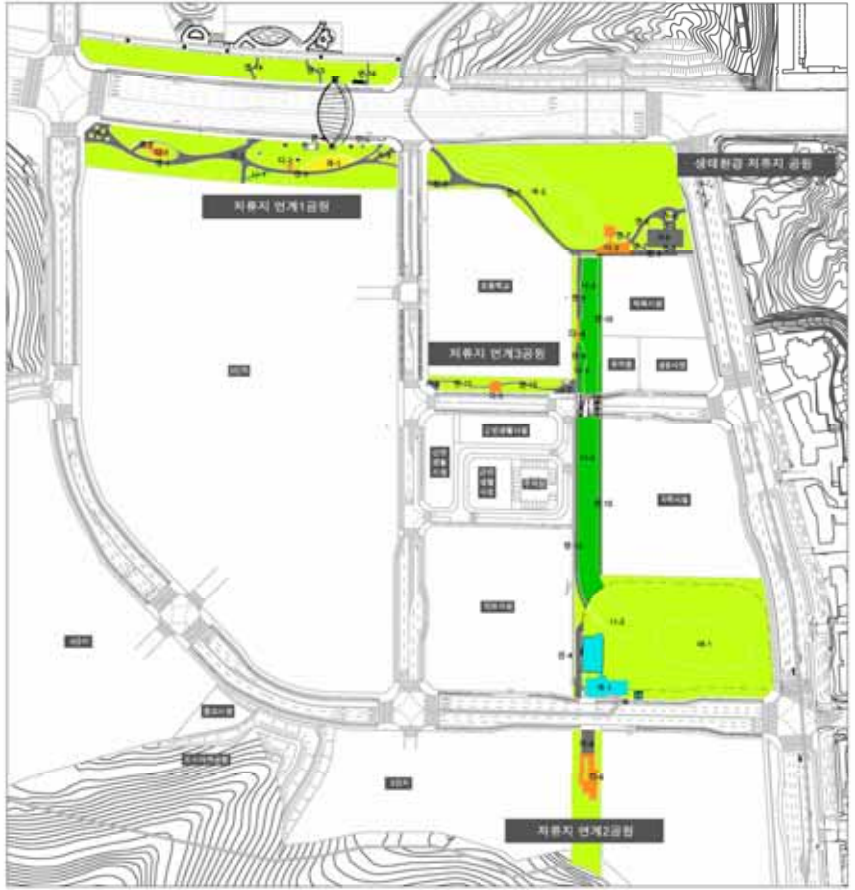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131.4	2,575.65				
변경					1,131.4	2,575.65				
당초	소로	소 계			1,131.4	2,575.65	연결로,진입로			
변경					1,131.4	2,575.65	연결로,진입로			
당초	소로	3	1	4.5	76.9	298.06	연결로	가-1	가-2	
당초	소로	3	2	2	93.2	87.43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1	
당초	소로	3	3	3.4	75.3	227.20	연결로	가-2	가-3	
당초	소로	3	4	2	5.8	11.70	연결로	육교	외곽도로	
당초	소로	3	5	2	3.3	6.60	연결로	육교	외곽도로	
당초	소로	3	6	3	26.4	85.02	연결로	가-4	다-3	
당초	소로	3	7	1.5	21.2	31.94	연결로	팔각정자	연결로-6	
당초	소로	3	8	3	4.2	12.60	연결로	진입로-3	가-5	
당초	소로	3	9	2.5	100.5	214.02	연결로	다-3	나-3	
당초	소로	3	10	1.2	228.9	262.37	연결로	다-3	바-1	
당초	소로	3	11	1.5	37.2	58.34	연결로	가-6	다-5	
당초	소로	3	12	1.5	36.4	55.11	연결로	다-5	가-7	
당초	소로	3	13	1.7	182.0	310.47	연결로	나-3	마-1	
당초	소로	3	14	2	17.5	35.74	연결로	외곽도로	제2호여린이공원	
당초	소로	3	15	2	20.1	40.36	연결로	외곽도로	제2호여린이공원	
당초	소로	3	16	2.5	15.0	33.90	연결로	외곽도로	제2호여린이공원	
당초	소로	3	1	3	76.9	439.87	진입로	외곽도로	연결로-9	
당초	소로	3	2	3.5	16.5	59.01	진입로	외곽도로	진입로-1	
당초	소로	3	3	2	44.1	88.76	진입로	외곽도로	다-3	
당초	소로	3	4	5	50.0	217.15	진입로	마-1	나-2	

■ 사업표지

구분	구분	사업명	구분	비고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7	17	17	17	17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4	24	24	24	24
25	25	25	25	25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1	31	31	31	31
32	32	32	32	32
33	33	33	33	33
34	34	34	34	34
35	35	35	35	35
36	36	36	36	36
37	37	37	37	37
38	38	38	38	38
39	39	39	39	39
40	40	40	40	40
41	41	41	41	41
42	42	42	42	42
43	43	43	43	43
44	44	44	44	44
45	45	45	45	45
46	46	46	46	46
47	47	47	47	47
48	48	48	48	48
49	49	49	49	49
50	50	50	50	50
51	51	51	51	51
52	52	52	52	52
53	53	53	53	53
54	54	54	54	54
55	55	55	55	55
56	56	56	56	56
57	57	57	57	57
58	58	58	58	58
59	59	59	59	59
60	60	60	60	60
61	61	61	61	61
62	62	62	62	62
63	63	63	63	63
64	64	64	64	64
65	65	65	65	65
66	66	66	66	66
67	67	67	67	67
68	68	68	68	68
69	69	69	69	69
70	70	70	70	70
71	71	71	71	71
72	72	72	72	72
73	73	73	73	73
74	74	74	74	74
75	75	75	75	75
76	76	76	76	76
77	77	77	77	77
78	78	78	78	78
79	79	79	79	79
80	80	80	80	80
81	81	81	81	81
82	82	82	82	82
83	83	83	83	83
84	84	84	84	84
85	85	85	85	85
86	86	86	86	86
87	87	87	87	87
88	88	88	88	88
89	89	89	89	89
90	90	90	90	90
91	91	91	91	91
92	92	92	92	92
93	93	93	93	93
94	94	94	94	94
95	95	95	95	95
96	96	96	96	96
97	97	97	97	97
98	98	98	98	98
99	99	99	99	99
100	100	100	100	1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0호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1호(1999.1.20.)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73호(2019.11.28.)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온수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취지

- 2020. 6. 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온수근린공원에 대해 현장조사로 확인된 공원조성계획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고, 사업집행이 어려운 기존 계획수정, 조성계획이 없는 부분은 신규 계획하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31-5 일대

다. 공원면적 : 427,993.0㎡

라.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4) 및 구로구청 녹색도시과(☎02-860-2321),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7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온수 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구 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101,036	103,147	8	480.32	480.32	173	계	427,993.00	55,741.82	6	472.50	514.50	226	감 47,405.18㎡		
시설 지구	소계	311,840	76,056	7	342.32	342.32	171		427,993.00	55,741.82	6	474.75	516.75		감 20,314.18㎡		
	온수지구	48,633	15,736	1	48	48	33	-	-	-	-	-	-	-	감 15,736.00㎡		
	신월지구	57,524	17,606	2	109	109	22	1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	감 2,758.27㎡		
	-	-	-	-	-	-	-	2지구	28,155.50	-	-	-	-	-			
	-	-	-	-	-	-	-	3지구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증 1,161.26㎡		
	-	-	-	-	-	-	-	4지구	15,463.20	1,710.26	-	-	-	9	증 1,710.26㎡		
	신정지구	72,246	16,270	1	48	48	6	6지구	88,731.00	4,413.54	-	-	-	48	감 11,856.46㎡		
	잣절지구	87,903	16,282	1	32.32	32.32	51	7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	증 1,226.19㎡		
	-	-	-	-	-	-	-	8지구	1,529.20	451.31	-	-	-	14	증 451.31㎡		
	-	-	-	-	-	-	-	9지구	26,766.70	-	-	-	-	-			
	-	-	-	-	-	-	-	10지구	6,026.00	-	-	-	-	-			
	-	-	-	-	-	-	-	11지구	868.00	-	-	-	-	-			
	벽산지구	37,454	6,974	1	51	51	17	12지구	26,074.70	3,056.90	-	-	-	25	감 3,917.1㎡		
	-							13지구	7,985.30	1,875.54	-	-	-	10	증 1,875.54㎡		
	능안지구	8,080	3,188	1	54	54	42	14지구	17,413.20	3,699.37	1	54.00	54.00	50	증 511.37㎡		
시설 지구 외	소 계	1,789,196	27,091	1	207	249	43	-	-	-	-	-	-	-	감 27,091.00㎡		
	가	325,431	4,661	-	-	-	-	-	-	-	-	-	-	-	감 4,661.00㎡		
	나	605,211	12,451	1	207	249	43	5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감 5,433.28㎡		
	다	467,674	4,636	-	-	-	-	-	-	-	-	-	-	-	감 4,636.00㎡		
	라	390,880	5,343	-	-	-	-	-	-	-	-	-	-	-	감 5,343.00㎡		
시설율 (법정40%)		100,901㎡ / 2,101,036㎡ x 100 = 4.80%								55,741.82 / 427,993.00 x 100 = 13.02%							
건폐율 (법정10%)		506㎡ / 2,101,036㎡ × 100 = 0.024%								472.50 / 427,993.00 x 100 = 0.11%							

1-1 온수 근린공원 1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신월지구)						변 경(1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7,524	17,606	2	109	109	22	80,208.90	14,847.73	1	37.51	37.51	-	감 2,758.27㎡ (신월지구)
기 반 시 설	소계	6,882	6,882	-	-	-	-	5,496.91	5,496.91	-	-	-	-	감 1,385.09㎡
	도로	1,861	1,861	-	-	-	-	5,345.17	5,345.17	-	-	-	-	증 3,484.17㎡
	광장	5,021	5,021	-	-	-	-	151.74	151.74	-	-	-	-	감 4,869.26㎡
조경시설		2,925	2,925	-	-	-	6	-	-	-	-	-	-	감 2,925.00㎡
휴양시설		2,420	2,420	-	61	61	8	1,014.00	1,014.00	-	-	-	-	감 1,406.00㎡
유희시설		1,478	1,478	-	-	-	4	207.64	207.64	-	-	-	-	감 1,270.36㎡
운동시설		2,733	2,733	-	-	-	-	1,435.37	1,435.37	-	-	-	-	감 1,297.63㎡
교양시설		798	798	-	-	-	-	6,656.30	6,656.30	-	-	-	-	증 5,858.30㎡
편익시설		135	135	-	-	-	4	-	-	-	-	-	-	감 135.00㎡
관리시설		235	235	-	48	48	-	37.51	37.51	1	37.51	37.51	-	감 197.49㎡
녹지 및 기타		39,918	-	-	-	-	-	65,361.17	-	-	-	-	-	

1-2 온수 근린공원 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57,524	17,606	-	2	109	109	22			80,208.90	14,847.73	-	1	37.51	37.51	-	
기 반 시 설	소 계			6,882	6,882	-	-	-	-	-			5,496.91	5,496.91	-	-	-	-	-	
	도 로			1,861	1,861	-	-	-	-	-			5,345.17	5,345.17	-	-	-	-	-	
	광 장	가		5,021	5,021	-	-	-	-	-			-	-	-	-	-	-	-	폐 지
		가-1	신월동 산85-31임	(1,511)	(1,511)	-	-	-	-	-			-	-	-	-	-	-	-	
		가-2	신월동 산85-3임	(551)	(551)	-	-	-	-	-			-	-	-	-	-	-	-	
		가-3	신월동 산85-31임	(685)	(685)	-	-	-	-	-			-	-	-	-	-	-	-	
		가-4	신월동 대331-5일대	(2,274)	(2,274)	-	-	-	-	-			-	-	-	-	-	-	-	
				-	-	-	-	-	-	-	가	신월동 331-5	151.74	151.74	-	-	-	-	-	신 설
조 경 시 설	소 계			2,925	2,925	-	-	-	-	6			-	-	-	-	-	-		
	파고라	①		-	-	-	-	-	-	6			-	-	-	-	-	-	-	폐 지
		①-1	신월동 산85-31임	-	-	-	-	-	-	-	(2)			-	-	-	-	-	-	
		①-2	신월동 산85-4임	-	-	-	-	-	-	-	(1)			-	-	-	-	-	-	
		①-3	신월동 산85-31임	-	-	-	-	-	-	-	(1)			-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①-4	신월동 산85-31임	-	-	-	-	-	-	(1)			-	-	-	-	-	-	-		
		①-5	신월동 산80-4임	-	-	-	-	-	-	-	(1)			-	-	-	-	-	-		
	잔디밭	나	신월동 대331-5	318	318	-	-	-	-	-			-	-	-	-	-	-	-	폐 지	
	화계	다		810	810	-	-	-	-	-			-	-	-	-	-	-	-	폐 지	
		다-1	신월동 산85-31임	(227)	(227)	-	-	-	-	-	-			-	-	-	-	-	-	-	
		다-2	신월동 산85-3임	(101)	(101)	-	-	-	-	-	-			-	-	-	-	-	-	-	
		다-3	신월동 산80-4	(482)	(482)	-	-	-	-	-	-			-	-	-	-	-	-	-	
	참여 농장	라		1,797	1,797	-	-	-	-	-			-	-	-	-	-	-	-	폐 지	
		라-1	신월동 산80-4	(1,182)	(1,182)	-	-	-	-	-	-			-	-	-	-	-	-	-	
		라-2	신월동 산84-3임	(615)	(615)	-	-	-	-	-	-			-	-	-	-	-	-	-	
휴 양 시 설	소 계			2,420	2,420	-	1	61	61	8			1,014.00	1,014.00	-	-	-	-	-		
	아유 회장	마	신월동 산85-4임	1,901	1,901	-	-	-	-	8			-	-	-	-	-	-	-	폐 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휴게소	바	신월동 산85-4임	260	260	-	-	-	-	-			-	-	-	-	-	-	-	폐 지
				-	-	-	-	-	-	-	나		955.10	955.10	-	-	-	-	-	신 설
				-	-	-	-	-	-	-	나-1	신월동 331-102	11.54	11.54	-	-	-	-	-	
				-	-	-	-	-	-	-	나-2	신월동 331-5	232.31	232.31	-	-	-	-	-	
				-	-	-	-	-	-	-	나-3	신월동 331-5	547.25	547.25	-	-	-	-	-	
				-	-	-	-	-	-	-	나-4	신월동 350-55	16.00	16.00	-	-	-	-	-	
				-	-	-	-	-	-	-	나-5	신월동 331-5	148.00	148.00	-	-	-	-	-	
	데크 썬터			-	-	-	-	-	-	-	다		58.90	58.90	-	-	-	-	-	신 설
				-	-	-	-	-	-	-	다-1	신월동 350-55	9.50	9.50	-	-	-	-	-	
				-	-	-	-	-	-	-	다-2	신월동 350-55	9.50	9.50	-	-	-	-	-	
				-	-	-	-	-	-	-	다-3	신월동 350-55	7.70	7.70	-	-	-	-	-	
				-	-	-	-	-	-	-	다-4	신월동 350-55	15.00	15.00	-	-	-	-	-	
				-	-	-	-	-	-	-	다-5	신월동 350-55	9.50	9.50	-	-	-	-	-	
				-	-	-	-	-	-	-	다-6	신월동 350-55	7.70	7.70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노인정	1	신월동 산85-4임	259	259	-	1	61	61	-			-	-	-	-	-	-	-	폐 지	
유 회 시설	소 계			1,478	1,478	-	-	-	-	4			207.64	207.64	-	-	-	-	-		
	어린이 놀이터	사	신월동 산85-4임	918	918	-	-	-	-	4			-	-	-	-	-	-	-	폐 지	
				-	-	-	-	-	-	-	라	신월동 331-5	207.64	207.64	-	-	-	-	-	신 설	
	유아 놀이터	아	신월동 산85-31임	229	229	-	-	-	-	-			-	-	-	-	-	-	-	폐 지	
	모험 놀이터	자	신월동 산85-31임	331	331	-	-	-	-	-			-	-	-	-	-	-	-	폐 지	
유 니버 시설	소 계			2,733	2,733	-	-	-	-	-			1,435.37	1,435.37	-	-	-	-	-		
	다목적 구장			-	-	-	-	-	-	-	마	신월동 331-5	208.00	208.00	-	-	-	-	-	신 설	
	농구장			-	-	-	-	-	-	-	바	신월동 331-5	211.54	211.54	-	-	-	-	-	신 설	
	배드 민턴장	차	신월동 352-1전	1,047	1,047	-	-	-	-	-			-	-	-	-	-	-	-	폐 지	
				-	-	-	-	-	-	-	-	사		887.00	887.00	-	-	-	-	-	신 설
				-	-	-	-	-	-	-	-	사-1	신월동 331-5	551.72	551.72	-	-	-	-	-	
				-	-	-	-	-	-	-	-	사-2	신월동 331-5	335.28	335.28	-	-	-	-	-	
	체력 단련장			-	-	-	-	-	-	-	아	신월동 331-5	128.83	128.83	-	-	-	-	-	신 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체력 단련 시설	카		1,686	1,686	-	-	-	-	-			-	-	-	-	-	-	-	폐 지
		카-1	신월동 산85-31입	(1,421)	(1,421)	-	-	-	-	-			-	-	-	-	-	-	-	
		카-2	신월동 산85-12입	(203)	(203)	-	-	-	-	-			-	-	-	-	-	-	-	
		카-3	신월동 산85-12입	(20)	(20)	-	-	-	-	-			-	-	-	-	-	-	-	
		카-4	신월동 산85-12입	(13)	(13)	-	-	-	-	-			-	-	-	-	-	-	-	
		카-5	신월동 산85-12입	(16)	(16)	-	-	-	-	-			-	-	-	-	-	-	-	
		카-6	신월동 산85-12입	(22)	(22)	-	-	-	-	-			-	-	-	-	-	-	-	
교 양 시 설	소 계			798	798	-	-	-	-	-			6,656.30	6,656.30	-	-	-	-	-	
	야외 무대	타	신월동 산85-31입	545	545	-	-	-	-	-			-	-	-	-	-	-	-	폐 지
	임간 학습장	파	신월동 산85-12입	253	253	-	-	-	-	-			-	-	-	-	-	-	-	폐 지
	유아숲체 함원			-	-	-	-	-	-	-	자		6,656.30	6,656.30	-	-	-	-	-	신 설
				-	-	-	-	-	-	-	자-1	신월동 331-5	6,244.00	6,244.00	-	-	-	-	-	
				-	-	-	-	-	-	-	자-2	신월동 331-5	412.30	412.30	-	-	-	-	-	
편 의 시 설	소 계			135	135	-	-	-	-	4			-	-	-	-	-	-		
	약수터	하	신월동 산85-12입	135	135	-	-	-	-	-			-	-	-	-	-	-	폐 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간이 화장실	③	신월동 산85-31임	-	-	-	-	-	-	4			-	-	-	-	-	-	-	폐 지
관 리 시 설	소 계			235	235	-	1	48	48	-			37.51	37.51	-	1	37.51	37.51	-	
	관리 사무소	2	신월동 산85-31임	235	235	-	1	48	48	-			-	-	-	-	-	-	-	폐 지
				-	-	-	-	-	-	-	1	신월동 331-5	37.51	37.51	-	1	37.51	37.51	-	신 설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9,918	-	-	-	-	-	-			65,361.17	-	-	-	-	-	-	
	녹 지			39,918	-	-	-	-	-	-			65,361.17	-	-	-	-	-	-	

1-3 온수 근린공원 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081	1,861				
변 경					2,574.53	5,345.17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76.0	228.34				
신 설		3류	3-1	1.0	76.0	228.3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1,081	1,861				
변 경					2,498.53	5,116.83				
폐 지			1	3	92	276	산책로	광장2	휴게소	
폐 지			2	2.5	12	30	산책로	광장2	배드민턴장	
폐 지			3	2.5	26	65	산책로	휴게소	모험놀이터	
폐 지			4	2	59	118	산책로	산책로14	광장4	
폐 지			5	2	68	136	산책로	광장1	광장3	
폐 지			6	1.5	110	165	산책로	산책로1	체력단련시설2	
폐 지			7	1.5	98	147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6	
폐 지			8	1.5	28	42	등산로	산책로7	광장2	
폐 지			9	1.5	92	138	산책로	산책로6	체력단련시설2	
폐 지			10	1.5	64	96	등산로	체력단련시설2	진입로	
폐 지			11	1.5	68	102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0	
폐 지			12	1.5	60	9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6	
폐 지			13	1.5	24	36	산책로	광장3	산책로12	
폐 지			14	1.5	40	60	산책로	산책로12	참여농장1	

구 분	구분 명칭	구분 명칭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15	1.5	82	123	등산로	광장4	진입로	
폐 지			16	1.5	158	237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15	
신 설			1	2.0	21.0	47.92	연결로	휴게소 나-2	휴게소 나-3	
신 설			2	2.0	36.6	73.72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 나-2	
신 설			3	3.0	4.3	13.01	연결로	휴게소 나-3	농구장 바	
신 설			4	2.0	87.2	175.66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5	
신 설			5	2.0	106.9	229.38	연결로	산책로 6	휴게소 나-3	
신 설			6	2.0	233.7	453.4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7	2.0	39.0	81.36	연결로	산책로 6	휴게소 나-3	
신 설			8	2.0	69.3	139.53	연결로	광장 가	산책로 6	
신 설			9	2.0~30	47.33	603.72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20	
신 설			10	1.2	16.0	19.16	연결로	산책로 22	배드민턴장 사-1	
신 설			11	1.2	63.1	96.60	산책로	산책로 22	녹지대	
신 설			12	1.2	4.0	5.19	연결로	산책로 11	배드민턴장 사-2	
신 설			13	2.0	19.7	44.66	진입로	산책로 14	공원경계	
신 설			14	2.0	158.3	316.56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15	2.0~5.0	87.50	201.406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15	
신 설			16	2.0~7.0	460.00	1,088.00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22	
신 설			17	2.0	200.00	402.00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6	
신 설			18	2.0	65.20	131.10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자-1	산책로 17	
신 설			19	2.0	39.40	68.40	연결로	산책로 16	유아숲체험원 자-1	
신 설			20	2.0	10.50	20.90	연결로	산책로 22	유아숲체험원 자-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21	2.0	28.10	34.10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22	
신 설			22	2.0-5.0	144.50	350.0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대	
신 설			23	1.2-1.5	64.60	106.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6	
신 설			24	1.5	15.60	21.87	연결로	산책로 22	유아숲체험원 자-2	
신 설			25	2.0	9.00	18.50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자-2	산책로 16	
신 설			26	2.0	89.00	134.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6	
신 설			27	2.0-7.0	104.00	308.70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9	
신 설			28	1.5	13.50	20.20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31	
신 설			29	1.5	173.10	259.6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1	
신 설			30	1.5-7.5	26.20	60.40	산책로	산책로 29	산책로 29	
신 설			31	1.5-4.5	61.90	99.80	연결로	산책로 29	휴게소 나-5	

2-1 온수 근린공원 2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28,155.5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28,155.50	-	-	-	-	-	

2-2 온수 근린공원 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28,155.50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28,155.50	-	-	-	-	-	-	
	녹 지			-	-	-	-	-	-	-			28,155.50	-	-	-	-	-	-	

2-3 온수 근린공원 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3-1 온수 근린공원 3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기 반 시 설	소계	-	-	-	-	-	-	449.70	449.70	-	-	-	-	
	도로	-	-	-	-	-	-	115.07	115.07	-	-	-	-	
	광장	-	-	-	-	-	-	334.63	334.63	-	-	-	-	
휴양시설		-	-	-	-	-	-	148.84	148.84	-	-	-	12	
유흥시설		-	-	-	-	-	-	283.53	283.53	-	-	-	5	
운동시설		-	-	-	-	-	-	153.94	153.94	-	-	-	10	
편익시설		-	-	-	-	-	-	125.25	125.25	1	125.25	125.25	-	
녹지 및 기타		-	-	-	-	-	-	1,594.34	-	-	-	-	-	

3-2 온수 근린공원 3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2,755.60	1,161.26	-	1	125.25	125.25	27	
기 반 시 설	소 계			-	-	-	-	-	-	-			449.70	449.70	-	-	-	-	-	
	도 로			-	-	-	-	-	-	-			115.07	115.07	-	-	-	-	-	
	광 장			-	-	-	-	-	-	-	가	신월동 1004	334.63	334.63	-	-	-	-	-	
후 양 시 설	소 계			-	-	-	-	-	-	-			148.84	148.84	-	-	-	-	12	
	쉼터			-	-	-	-	-	-	-	나		148.84	148.84	-	-	-	-	-	
				-	-	-	-	-	-	-	나-1	신월동 1004	68.84	68.84	-	-	-	-	-	
				-	-	-	-	-	-	-	나-2	신월동 1004	80.00	80.00	-	-	-	-	-	
	파고라			-	-	-	-	-	-	-	①	전지역	-	-	-	-	-	-	3	
	평의자			-	-	-	-	-	-	-	②	전지역	-	-	-	-	-	-	7	
	등의자			-	-	-	-	-	-	-	③	전지역	-	-	-	-	-	-	2	
유 회 시 설	소 계			-	-	-	-	-	-	-			283.53	283.53					5	
	어린이 놀이터			-	-	-	-	-	-	-	다	신월동 1004	283.53	283.53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조합 놀이대			-	-	-	-	-	-	-	④	어린이 놀이터	-	-	-	-	-	-	1	
	그네			-	-	-	-	-	-	-	⑤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시소			-	-	-	-	-	-	-	⑥	어린이 놀이터	-	-	-	-	-	-	1	
	흔들 놀이			-	-	-	-	-	-	-	⑦	어린이 놀이터	-	-	-	-	-	-	2	
유년용 시설	소 계			-	-	-	-	-	-	-			153.94	153.94	-	-	-	-	10	
	운동 마당			-	-	-	-	-	-	-	라	신월동 1004	153.94	153.94	-	-	-	-	-	
	철봉			-	-	-	-	-	-	-	⑧	운동마당	-	-	-	-	-	-	1	
	윗몸 일으 키기			-	-	-	-	-	-	-	⑨	운동마당	-	-	-	-	-	-	1	
	체력단련 시설			-	-	-	-	-	-	-	⑩	전지역	-	-	-	-	-	-	8	
편의 시설	소 계			-	-	-	-	-	-	-			125.25	125.25	-	1	125.25	125.25	-	
	화장실			-	-	-	-	-	-	-	1	신월동 1004	125.25	125.25	-	1	125.25	125.25	-	
녹지 및 기타	소 계			-	-	-	-	-	-	-			1,594.34	-	-	-	-	-	-	
	녹 지			-	-	-	-	-	-	-			1,594.34	-	-	-	-	-	-	

3-3 온수 근린공원 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54.50	115.07				
신 설	소 로	계			54.50	115.07				
신 설		3류	1	2.5	9.0	22.5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신 설		3류	2	2.0	6.3	12.71	연결로	쉼터 나-2	운동마당 라	
신 설		3류	3	2.0	7.4	14.96	연결로	운동마당 라	어린이 놀이터 다	
신 설		3류	4	2.0	7.8	16.05	연결로	어린이 놀이터 다	소로 3-1	
신 설		3류	5	2.0	7.4	14.95	진입로	공원경계	운동마당 라	
신 설		3류	6	2.0	16.6	33.90	연결로	운동마당 라	어린이 놀이터 다	

4-1 온수 근린공원 4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5,463.20	1,710.26	-	-	-	9	
기 반 시 설	소계	-	-	-	-	-	-	1,256.02	1,256.02	-	-	-	-	
	도로	-	-	-	-	-	-	1,256.02	1,256.02	-	-	-	-	
조경시설		-	-	-	-	-	-	353.35	353.35	-	-	-	-	
휴양시설		-	-	-	-	-	-	54.20	54.20	-	-	-	1	
운동시설		-	-	-	-	-	-	46.69	46.69	-	-	-	8	
녹지 및 기타		-	-	-	-	-	-	13,752.94	-	-	-	-	-	

4-2 온수 근린공원 4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5,463.20	1,710.26	-	-	-	-	9	
기 반 시 설	소 계			-	-	-	-	-	-	-			1,256.02	1,256.02	-	-	-	-	-	
	도 로			-	-	-	-	-	-	-			1,256.02	1,256.02	-	-	-	-	-	
조 경 시 설	소 계			-	-	-	-	-	-	-			353.35	353.35	-	-	-	-	-	
	초화원			-	-	-	-	-	-	-	가	신월동 산145-1	353.35	353.35	-	-	-	-	-	
휴 양 시 설	소 계			-	-	-	-	-	-	-			54.20	54.20	-	-	-	-	1	
	쉼터			-	-	-	-	-	-	-	나	신정동 1280-2	54.20	54.20	-	-	-	-	-	
	정자			-	-	-	-	-	-	-	①	쉼터	-	-	-	-	-	-	1	
온 동 시 설	소 계			-	-	-	-	-	-	-			46.69	46.69	-	-	-	-	8	
	체력 단련장			-	-	-	-	-	-	-	다	신월동 1004-4	46.69	46.69	-	-	-	-	-	
	체력단련 시설			-	-	-	-	-	-	-	②	전지역	-	-	-	-	-	-	8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13,752.94	-	-	-	-	-	-	
	녹 지			-	-	-	-	-	-	-			13,752.94	-	-	-	-	-	-	

4-3 온수 근린공원 4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합 계				498.50	1,256.02				
신 설	소 로	계			190.1	577.03				
신 설		3류	3-1	1.8	76.4	118.8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3-2	1.8~5.5	52.5	173.70	연결로	소로 3-1	초화원 가	
신 설		3류	3-3	5.0	35.7	173.11	연결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3-4	6.6	25.5	111.33	연결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계			340.70	678.99				
신 설	산책로		1	2.0	13.0	29.04	진입로	공원경계	초화원 가	
신 설			2	1.8	40.0	74.56	산책로	산책로 1	초화원 가	
신 설			3	2.0	127.7	250.07	산책로	쉼터 나	초화원 가	
신 설			4	1.6	8.6	14.4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신 설			5	2.0	19.3	44.2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신 설			6	2.0~3.0	84.6	213.06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7	2.5	3.4	8.3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신 설			8	2.0	5.8	11.7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신 설			9	2.0~2.4	6.0	14.3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신 설			10	0.6	32.3	19.06	산책로	체력단련장 다	공원경계	

5-1 온수 근린공원 5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05,211	12,451	1	207	249	43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감 556,515.90㎡ (시설지구외-나)
기 반 시 설	소계	9,984	9,984	-	-	-	-	4,550.72	4,550.72	-	-	-	-	감 5,433.28㎡
	도로	8,719	8,719	-	-	-	-	3,285.72	3,285.72	-	-	-	-	감 5,433.28㎡
	광장	1,265	1,265	-	-	-	-	1,265.00	1,265.00	-	-	-	-	
조경시설		1,734	1,734	-	-	-	-	1,734.00	1,734.00	-	-	-	-	
휴양시설		526	526	-	-	-	43	526.00	526.00	-	-	-	43	
편익시설		207	207	1	207	249	-	207.00	207.00	1	207.00	249.00	-	
녹지 및 기타		592,760	-	-	-	-	-	41,677.38	-	-	-	-	-	

5-2 온수 근린공원 5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605,211	12,451	-	1동	207	249	43			48,695.10	7,017.72	-	1	207.00	249.00	43	
기 반 시 설	소 계			9,984	9,984	-	-	-	-	-			4,550.72	4,550.72	-	-	-	-	-	
	도 로			8,719	8,719	-	-	-	-	-			3,285.72	3,285.72	-	-	-	-	-	
	광 장	가		1,265	1,265	-	-	-	-	-	가		1,265.00	1,265.00	-	-	-	-	-	
		가-1	신월동 728-16전 외	(528.00)	(528.00)	-	-	-	-	-	가-1	신월동 728-16전 외	528.00	528.00	-	-	-	-	-	
		가-2	신월동 728-1답 외	(597.00)	(597.00)	-	-	-	-	-	가-2	신월동 728-1답 외	597.00	597.00	-	-	-	-	-	
		가-3	신월동 728-1답 외	(90.00)	(90.00)	-	-	-	-	-	가-3	신월동 728-1답 외	90.00	90.00	-	-	-	-	-	
		가-4	신월동 728-16전 외	(50.00)	(50.00)	-	-	-	-	-	가-4	신월동 728-16전 외	50.00	50.00	-	-	-	-	-	
조 경 시 설	소 계			1,734	1,734	-	-	-	-	-			1,734.00	1,734.00	-	-	-	-	-	
	생태 연못	나	신월동 728-16전 외	207.00	207.00	-	-	-	-	-	나	신월동 728-16전 외	207.00	207.00	-	-	-	-	-	
	데크	다		94.00	94.00	-	-	-	-	-	다		94.00	94.00	-	-	-	-	-	
		다-1	신월동 728-16전 외	(77.00)	(77.00)	-	-	-	-	-	다-1	신월동 728-16전 외	77.00	77.00	-	-	-	-	-	
		다-2	신월동 728-1답 외	(17.00)	(17.00)	-	-	-	-	-	다-2	신월동 728-1답 외	17.00	17.00	-	-	-	-	-	
	목교	라	신월동 산728-1답 외	60.00	60.00	-	-	-	-	-	라	신월동 산728-1답 외	60.00	60.00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식수대	마		1,373.00	1,373.00	-	-	-	-	-	마		1,373.00	1,373.00	-	-	-	-	-	
		마-1	신월동 728-16전 외	(1,237.00)	(1,237.00)	-	-	-	-	-	마-1	신월동 728-16전 외	1,237.00	1,237.00	-	-	-	-	-	
		마-2	신월동 728-1답 외	(136.00)	(136.00)	-	-	-	-	-	마-2	신월동 728-1답 외	136.00	136.00	-	-	-	-	-	
휴양 시설	소 계			526.00	526.00	-	-	-	-	43			526.00	526.00	-	-	-	-	43	
	휴게 마당	바		502.00	502.00	-	-	-	-	-	바		502.00	502.00	-	-	-	-	-	
		바-1	신월동 728-1답 외	(108.00)	(108.00)	-	-	-	-	-	바-1	신월동 728-1답 외	108.00	108.00	-	-	-	-	-	
		바-2	신월동 728-1답 외	(52.00)	(52.00)	-	-	-	-	-	바-2	신월동 728-1답 외	52.00	52.00	-	-	-	-	-	
		바-3	신월동 728-16전 외	(31.00)	(31.00)	-	-	-	-	-	바-3	신월동 728-16전 외	31.00	31.00	-	-	-	-	-	
		바-4	신월동 728-16전 외	(76.00)	(76.00)	-	-	-	-	-	바-4	신월동 728-16전 외	76.00	76.00	-	-	-	-	-	
		바-5	신월동 728-16전 외	(107.00)	(107.00)	-	-	-	-	-	바-5	신월동 728-16전 외	107.00	107.00	-	-	-	-	-	
		바-6	신월동 728-16전 외	(59.00)	(59.00)	-	-	-	-	-	바-6	신월동 728-16전 외	59.00	59.00	-	-	-	-	-	
		바-7	신월동 728-16전 외	(35.00)	(35.00)	-	-	-	-	-	바-7	신월동 728-16전 외	35.00	35.00	-	-	-	-	-	
		바-8	신월동 728-16전 외	(17.00)	(17.00)	-	-	-	-	-	바-8	신월동 728-16전 외	17.00	17.00	-	-	-	-	-	
		바-9	신월동 728-16전 외	(17.00)	(17.00)	-	-	-	-	-	바-9	신월동 728-16전 외	17.00	17.00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파고라	①	신월동 728-1답 외	-	-	-	-	-	-	4	①	전지역	-	-	-	-	-	-	-	4	
		①-1	신월동 728-1답 외	-	-	-	-	-	-	-	(1)			-	-	-	-	-	-	-	
		①-2	신월동 728-1답 외	-	-	-	-	-	-	-	(1)			-	-	-	-	-	-	-	
		①-3	신월동 728-16전 외	-	-	-	-	-	-	-	(1)			-	-	-	-	-	-	-	
		①-4	신월동 728-16전 외	-	-	-	-	-	-	-	(1)			-	-	-	-	-	-	-	
	정자			-	-	-	-	-	-	-	②	휴게마당	-	-	-	-	-	-	-	3	신 설
	창고형원 두막	②		-	-	-	-	-	-	-	3			-	-	-	-	-	-	-	폐 지
		②-1	신월동728-16 전 외	-	-	-	-	-	-	-	(1)			-	-	-	-	-	-	-	
		②-2	신월동728-16 전 외	-	-	-	-	-	-	-	(1)			-	-	-	-	-	-	-	
		②-3	신월동728-16 전 외	-	-	-	-	-	-	-	(1)			-	-	-	-	-	-	-	
	평상	사	신월동 728-1답외	24.00	24.00	-	-	-	-	-	사	신월동 728-1답외	24.00	24.00	-	-	-	-	-	-	
	평의자	③	신월동 728-1답 외	-	-	-	-	-	-	15	③	전지역	-	-	-	-	-	-	-	15	
	등의자	④	신월동 728-1답 외	-	-	-	-	-	-	13	④	전지역	-	-	-	-	-	-	-	13	
피크닉 테이블	⑤	신월동 728-16전 외	-	-	-	-	-	-	4	⑤	휴게마당	-	-	-	-	-	-	-	4		
급수대	⑥		-	-	-	-	-	-	4	⑥	휴게마당	-	-	-	-	-	-	-	4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⑥-1	신월동 728-16전 외	-	-	-	-	-	-	(1)			-	-	-	-	-	-	-	
		⑥-2	신월동 728-16전 외	-	-	-	-	-	-	-	(1)			-	-	-	-	-	-	
		⑥-3	신월동 728-16전 외	-	-	-	-	-	-	-	(1)			-	-	-	-	-	-	
		⑥-4	신월동 728-16전 외	-	-	-	-	-	-	-	(1)			-	-	-	-	-	-	
관 리 시 설	소 계			207.00	207.00	-	1	207.00	249.00	-			207.00	207.00	-	1	207.00	249.00	-	
	관리 사무소	바		207.00	207.00	-	1	207.00	249.00	-	아	신정동 1321-11	207.00	207.00	-	1	207.00	249.00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592,760	-	-	-	-	-	-			41,677.38	-	-	-	-	-	-	
	녹 지			592,760	-	-	-	-	-	-			41,677.38	-	-	-	-	-	-	

5-3 온수 근린공원 5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974	8,719				
변 경					1,554.66	3,285.72				
당 초	소 로	계			322	1,205				
변 경					322	1,205				
기 정		3류	3-1	6.5	63	41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기 정		3류	3-2	4.0	18	72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기 정		3류	3-3	3.0	241	723	연결로	소로 3-1	광장 가-2	
당 초	산책로	계			3,652	7,514				
변 경					1,230.98	2,080.72				
폐 지			1	2.5	629	1,572	등산로	등산로	진입로	
폐 지			2	2.0	279	558	등산로	산책로-1	산책로-1	
폐 지			3	2.0	260	520	등산로	산책로-1	진입로	
폐 지			4	2.2	59	147	등산로	진입로	산책로-5	
폐 지			5	3.0	226	678	등산로	진입로	진입로	
폐 지			6	1.5	144	216	등산로	산책로-6	진입로	
폐 지			7	3.5	213	745	등산로	진입로	진입로	
폐 지			8	2.5	254	635	등산로	진입로	진입로	
폐 지			9	1.5	186	279	등산로	산책로-8	등산로	

구 분	대표 번호	구분 번호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10	1.5	397	595	등산로	산책로-8	등산로	
폐 지			11	2.0	73	146	산책로	소로-3	소로-3	
폐 지			12	1.5	34	51	산책로	소로-3	산책로-11	
폐 지			13	1.5	27	41	산책로	소로-3	산책로-12	
폐 지			14	1.5	26	39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폐 지			15	1.5	29	44	산책로	소로-3	산책로-12	
폐 지			16	1.5	41	62	산책로	소로-3	목교	
폐 지			17	1.5	33	50	산책로	목교	소로-3	
폐 지			18	1.5	52	78	산책로	소로-3	소로-3	
폐 지			19	1.7	14	24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18	
폐 지			20	1.5	37	56	산책로	소로-3	가-2 광장	
폐 지			21	1.5	22	33	산책로	가-2 광장	소로-3	
폐 지			22	1.0	28	28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1	
폐 지			23	1.0	33	33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1	
폐 지			24	1.5	30	46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0	
폐 지			25	3.0	27	83	산책로	가-2 광장	산책로-26	
폐 지			26	1.5	9	14	산책로	가-1 광장	소로-1	
폐 지			27	3.0	82	246	산책로	가-1 광장	가-4 광장	
폐 지			28	1.0	61	61	산책로	가-1 광장	가-4 광장	

구 분	구분 명칭	구분 번호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29	1.5	44	66	산책로	가-4 광장	공원경계	
폐 지			30	1.2	97	117	산책로	가-1 광장	공원경계	
폐 지			31	1.5	25	38	산책로	가-1 광장	바-7 휴게마당	
폐 지			32	1.5	18	27	산책로	산책로-27	바-7 휴게마당	
폐 지			33	1.5	21	32	산책로	산책로-27	바-7 휴게마당	
폐 지			34	1.5	12	18	산책로	산책로-28	바-7 휴게마당	
폐 지			35	1.5	12	18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32	
폐 지			36	1.0	20	20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31	
폐 지			37	1.0	14	14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31	
폐 지			38	1.0	21	21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32	
폐 지			39	1.0	10	10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32	
폐 지			40	1.0	38	38	산책로	산책로-27	가-4 광장	
폐 지			41	1.0	15	15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27	
신 설			1	3.0	11.84	38.95	진입로	소로 3-3	공원경계	
신 설			2	2.0	72.50	147.48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신 설			3	1.5	27.39	44.58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8	
신 설			4	1.5	23.71	38.75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8	
신 설			5	1.5	24.76	40.54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8	
신 설			6	1.7	31.92	49.23	연결로	목교 라	소로 3-3	

구 분	구분 명	구분 명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7	1.5	39.64	62.05	연결로	소로 3-3	목교 라	
신 설			8	1.5	31.88	50.32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2	
신 설			9	1.5	54.70	78.75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신 설			10	1.5-1.8	11.91	24.75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9	
신 설			11	1.2	38.05	55.67	연결로	소로 3-3	광장 가-2	
신 설			12	1.2~3.5	22.14	45.61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1	
신 설			13	1.0	26.74	33.00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5	
신 설			14	1.0	26.05	27.69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5	
신 설			15	1.5	20.37	33.16	연결로	광장 가-2	소로 3-3	
신 설			16	1.5	8.72	13.08	연결로	광장 가-1	소로 3-1	
신 설			17	3.0	81.17	245.99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4	
신 설			18	1.0	20.00	64.49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31	
신 설			19	1.5	20.00	30.83	연결로	산책로 17	휴게쉼터 바-7	
신 설			20	1.0	21.95	20.69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27	
신 설			21	1.0	14.01	15.11	산책로	산책로 22	산책로 17	
신 설			22	1.0	36.59	21.14	연결로	산책로 17	광장 가-4	
신 설			23	2.8	51.96	136.6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4	1.5	43.27	65.22	진입로	광장 가-4	공원경계	
신 설			25	1.5	11.76	17.68	산책로	산책로 30	산책로 27	

구 분	구분 명칭	구분 번호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26	1.0	10.37	9.80	산책로	산책로 30	산책로 27	
신 설			27	1.5	19.79	28.20	연결로	산책로 17	광장 가-4	
신 설			28	1.5	12.55	19.07	연결로	산책로 30	광장 가-4	
신 설			29	1.0	14.03	13.97	산책로	산책로 30	산책로 31	
신 설			30	1.0	61.23	61.24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4	
신 설			31	1.5	25.50	38.12	연결로	광장 가-1	휴게쉼터 바-7	
신 설			32	1.2	98.10	116.59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33	
신 설			33	1.8	216.38	392.3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6-1 온수 근린공원 6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2,246	16,270	1	48	48	20	88,731.00	4,413.54	-	-	-	48	감 11,873.71㎡ (신정지구)
기 반 시 설	소계	8,198	8,198	-	-	-	-	2,812.61	2,812.61	-	-	-	-	감 5,402.64㎡
	도로	2,390	2,390	-	-	-	-	2,486.11	2,486.11	-	-	-	-	증 78.86㎡
	광장	5,808	5,808	-	-	-	-	326.50	326.50	-	-	-	-	감 5,481.50㎡
조경시설		560	560	-	-	-	6	-	-	-	-	-	-	감 560.00㎡
휴양시설		4,198	4,198	-	-	-	14	411.52	411.52	-	-	-	37	감 3,786.48㎡
교양시설		427	427	-	-	-	-	-	-	-	-	-	-	감 427.00㎡
운동시설		2,351	2,351	-	-	-	-	1,189.41	1,189.41	-	-	-	11	감 1,161.59㎡
편익시설		43	43	-	-	-	-	-	-	-	-	-	-	감 43.00㎡
관리시설		493	493	-	48	48	-	-	-	-	-	-	-	감 493.00㎡
녹지 및 기타		55,976	-	-	-	-	-	84,317.46	-	-	-	-	-	

6-2 온수 근린공원 6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72,246	16,270	-	1	48	48	6			88,731.00	4,413.54	-	-	-	-	48	
기 반 시 설	소 계			8,198	8,198	-	-	-	-	-			2,812.61	2,812.61	-	-	-	-	-	
	도 로			2,390	2,390	-	-	-	-	-			2,486.11	2,486.11	-	-	-	-	-	
	광 장	가		5,808	5,808	-	-	-	-	-	가		326.50	326.50	-	-	-	-	-	
		가-1		(4,695)	(4,695)	-	-	-	-	-	가-1	신정동 814-3	224.97	224.97	-	-	-	-	-	변경 감4,470.03㎡
		가-2		(1,113)	(1,113)	-	-	-	-	-	가-2	신정동 739-10	101.53	101.53	-	-	-	-	-	변경 감1,011.47㎡
조 경 시 설	소 계			560	560	-	-	-	-	6			-	-	-	-	-	-		
	파고라	①		-	-	-	-	-	-	6			-	-	-	-	-	-	폐 지	
		①-1	신정동 산139-1임	-	-	-	-	-	-	(2)			-	-	-	-	-	-		
		①-2	신정동 산139-1임	-	-	-	-	-	-	(4)			-	-	-	-	-	-		
	화계	나		560	560	-	-	-	-	-			-	-	-	-	-	-	폐 지	
		나-1	신정동 산137-3임	(307)	(307)	-	-	-	-	-	-			-	-	-	-	-	-	
		나-2	신정동 137-3임	(253)	(253)	-	-	-	-	-	-			-	-	-	-	-	-	
휴 양 시 설	소 계			4,198	4,198	-	-	-	-	14			411.52	411.52	-	-	-	-	37	
	야유회장	다	신정동 140-3임	4,198	4,198	-	-	-	-	14			-	-	-	-	-	-	-	폐 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휴게소			-	-	-	-	-	-	-	나		411.52	411.52	-	-	-	-	-	신 설
				-	-	-	-	-	-	-	나-1	신정동 814-3	36.92	36.92	-	-	-	-	-	
				-	-	-	-	-	-	-	나-2	신정동 814-3	63.79	63.79	-	-	-	-	-	
				-	-	-	-	-	-	-	나-3	신정동 814-3	150.00	150.00	-	-	-	-	-	
				-	-	-	-	-	-	-	나-4	신정동 814	160.81	160.81	-	-	-	-	-	
	파고라										①	전지역	-	-	-	-	-	-	4	신 설
	원형 파고라										②	휴게소	-	-	-	-	-	-	1	신 설
	평의자										③	전지역	-	-	-	-	-	-	32	신 설
야외 시설	소 계			2,351	2,351	-	-	-	-	-			1,189.41	1,189.41	-	-	-	-	11	
	배드 민턴장	마		1,116	1,116	-	-	-	-	-	다	신정동 814-3	709.11	709.11	-	-	-	-	-	변경 감 406.89㎡
		마-1	신정동 산139-1임	(615)	(615)	-	-	-	-	-	-			-	-	-	-	-	-	
		마-2	신정동 산139-1임	(501)	(501)	-	-	-	-	-	-			-	-	-	-	-	-	
	체력 단련 장	라		1,235	1,235	-	-	-	-	-	라	신정동 814-3	480.30	480.30	-	-	-	-	-	변경 감754.7㎡
		라-1	신정동 산139-1임	(235)	(235)	-	-	-	-	-	-	라-1	신정동 814-3	342.00	342.00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라-2	신정동 산139-1임	(98)	(98)	-	-	-	-	-	라-2	신정동 814-3	138.30	138.30	-	-	-	-	-	변경 증 40.3㎡
		라-3	신정동 산139-1임	(538)	(538)	-	-	-	-	-			-	-	-	-	-	-	폐지	
		라-4	신정동 산138-2임	(364)	(364)	-	-	-	-	-			-	-	-	-	-	-	폐지	
				-	-	-	-	-	-	-	④	전지역	-	-	-	-	-	-	11	신 설
교 양 시 설	소 계			427	427	-	-	-	-	-			-	-	-	-	-	-		
	임간 학습장	바	신정동 739-10전	427	427	-	-	-	-	-			-	-	-	-	-	-	폐 지	
편 의 시 설	소 계			43	43	-	-	-	-	-			-	-	-	-	-	-		
	약수터	사	신정동 산140-3임	43	43	-	-	-	-	-			-	-	-	-	-	-	폐 지	
관 리 시 설	소 계			493	493	-	1	48	48	-			-	-	-	-	-	-		
	관리 사무소	1	신정동 산137-3임	493	493	-	1	48	48	-			-	-	-	-	-	-	폐 지	
녹 지 및 기 타	소 계			55,976	-	-	-	-	-	-			84,317.46	-	-	-	-	-		
	녹 지			55,976	-	-	-	-	-	-			84,317.46	-	-	-	-	-		

6-3 온수 근린공원 6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123	2,390				
변 경					1,910.70	2,486.11				
당 초	소 로	계			88	394				
변 경					-	-				
폐 지		3	1	4	46	184	진입로	광장1	임간교육장	
폐 지		3	2	5	42	210	진입로	진입부	광장3	
당 초	산책로	계			1,035	1,996				
변 경					1,910.70	2,486.11				
폐 지			1	1.5	68	102	산책로	임간교육장	산책로4	
폐 지			2	1.5	80	120	등산로	산책로5	산책로4	
폐 지			3	2	345	690	등산로	진입부	체력단련장3	
폐 지			4	2	186	372	등산로	임간교육장	산책로4	
폐 지			5	2	60	120	산책로	체력단련장3	배드민턴장3	
폐 지			6	2	88	176	산책로	산책로9	체력단련장2	
폐 지			7	2	29	58	산책로	배드민턴장2	진입부	
폐 지			8	2	62	124	등산로	체력단련장3	광장2	
폐 지			9	2	45	90	산책로	진입부	광장2	
폐 지			10	2	72	144	등산로	진입부	체력단련장4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1	2.0	118.7	237.43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	1.0	55.1	55.08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8	
신 설			3	1.0	25.1	25.56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2	
신 설			4	1.2	62.0	74.3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신 설			5	1.0	16.6	17.0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	
신 설			6	1.0	29.5	30.1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신 설			7	2.0	7.0	15.21	진입로	산책로 8	휴게소 나-3	
신 설			8	2.0	163.6	329.11	진입로	산책로 1	체력단련장 마	
신 설			9	1.5-2.4	17.4	35.08	진입로	산책로 8	휴게소 나-2	
신 설			10	2.0-2.8	34.0	83.88	진입로	산책로 8	휴게소 나-2	
신 설			11	1.0	16.9	17.8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신 설			12	1.0	67.6	68.61	산책로	배드민턴장 다	산책로 13	
신 설			13	1.0	66.9	67.82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7	
신 설			14	1.0	344.4	345.1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3	
신 설			15	1.0	318.5	318.47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16	1.0	37.0	40.01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7	
신 설			17	1.0	130.9	133.55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5	
신 설			18	1.0	244.3	244.72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7	
신 설			19	3.0-4.0	56.3	221.35	산책로	-	광장 가-1	
신 설			20	2.0	9.0	34.2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신 설			21	1.0	80.7	80.7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2	2.0-3.0	9.2	22.9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7-1 온수 근린공원 7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7,903	16,282	1	32.32	32.32	51	77,320.60	17,508.19	2	48.74	48.74	-	감 1,226.19㎡ (жат절지구)
기 반 시 설	소계	5,470	5,470	-	-	-	-	4,629.16	4,629.16	-	-	-	-	감 840.84㎡
	도로	3,462	3,462	-	-	-	-	3,590.58	3,590.58	-	-	-	-	증 128.58㎡
	광장	2,008	2,008	-	-	-	-	1,038.58	1,038.58	-	-	-	-	감 969.42㎡
조경시설		325	325	-	-	-	11	995.25	995.25	-	-	-	-	증 670.25㎡
휴양시설		86	86	-	-	-	3	300.17	300.17	-	-	-	-	증 214.17㎡
유흥시설		281	281	-	-	-	1	281.00	281.00	-	-	-	-	
교양시설		5,945	5,945	-	-	-	-	7,891.00	7,891.00	-	-	-	-	증 1,946.00㎡
운동시설		3,756	3,756	-	-	-	6	3,339.87	3,339.87	-	-	-	-	감 416.13㎡
편익시설		419	419	-	-	-	-	71.74	71.74	2	48.74	48.74	-	감 347.26㎡
녹지 및 기타		71,621	71,621	-	-	-	-	59,812.41	-	-	-	-	-	

7-2 온수 근린공원 7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7,903	16,282	-	1	32.32	32.32	51			77,320.60	17,508.19	-	2	48.74	48.74	-	
기 반 시 설	소 계			5,470	5,470	-	-	-	-	-			4,629.16	4,629.16	-	-	-	-	-	
	도 로			3,462	3,462	-	-	-	-	-			3,590.58	3,590.58	-	-	-	-	-	
	광 장	가		2,008	2,008	-	-	-	-	-	가		1,038.58	1,038.58	-	-	-	-	-	
		가-1	45-1전	(318)	(318)	-	-	-	-	-	가-1	개봉동 45-2	282.58	282.58	-	-	-	-	-	감 35.42㎡
		가-2	산2-61 임	(901)	(901)	-	-	-	-	-	가-2	개봉동 45-2	719.17	719.17	-	-	-	-	-	감 181.83㎡
		가-3	산2-61 임	(144)	(144)	-	-	-	-	-	가-3	개봉동 45-2	36.83	36.83	-	-	-	-	-	감 107.17㎡
		가-4	산10-49 임	(181)	(181)	-	-	-	-	-			-	-	-	-	-	-	-	폐 지
		가-5	산10-50 임	(464)	(464)	-	-	-	-	-			-	-	-	-	-	-	-	폐 지
		소 계			325	325	-	-	-	-	11			995.25	995.25	-	-	-	-	-
조 경 시 설	소규모 생물 서식 공간	차		325	325	-	-	-	-	-	나		995.25	995.25	-	-	-	-	-	
		차-1	산2-61임	135	135	-	-	-	-	-	나-1	개봉동 45-2	721.81	721.81	-	-	-	-	-	증 586.81㎡
		차-2	산10-49 임	190	190	-	-	-	-	-	나-2	궁동 산10-49	273.44	273.44	-	-	-	-	-	증 83.44㎡
	파고라	①		-	-	-	-	-	-	8			-	-	-	-	-	-	-	폐 지
①-1		45-1 전	-	-	-	-	-	-	(1)			-	-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①-2	46-4 답	-	-	-	-	-	-	(1)			-	-	-	-	-	-	-	
		①-3	산2-61 임	-	-	-	-	-	-	(1)			-	-	-	-	-	-	-	
		①-4	산2-61 임	-	-	-	-	-	-	(1)			-	-	-	-	-	-	-	
		①-5	산2-61 임	-	-	-	-	-	-	(1)			-	-	-	-	-	-	-	
		①-6	산2-61 임	-	-	-	-	-	-	(1)			-	-	-	-	-	-	-	
		①-7	산10-49 임	-	-	-	-	-	-	(1)			-	-	-	-	-	-	-	
		①-8	산10-49 임	-	-	-	-	-	-	(1)			-	-	-	-	-	-	-	
	쉼터	②		-	-	-	-	-	-	1			-	-	-	-	-	-	-	폐지
		②-1	산2-61 임	-	-	-	-	-	-	(1)			-	-	-	-	-	-	-	
	정자	③		-	-	-	-	-	-	2			-	-	-	-	-	-	-	폐지
		③-1	산2-15 임	-	-	-	-	-	-	(1)			-	-	-	-	-	-	-	
		③-2	산10-49 임	-	-	-	-	-	-	(1)			-	-	-	-	-	-	-	
휴양 시설	소 계			86	86	-	-	-	-	3			300.17	300.17	-	-	-	-	-	
	야유회장	나	산10-49 임	(86)	(86)	-	-	-	-	(3)			-	-	-	-	-	-	-	폐 지
	휴게소			-	-	-	-	-	-	-	다		300.17	300.17	-	-	-	-	-	신 설
				-	-	-	-	-	-	-	다-1	개봉동 45-2	128.87	128.87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다-2	개봉동 45-2	48.00	48.00	-	-	-	-	-	
				-	-	-	-	-	-	-	다-3	공동 산10-49	86.31	86.31	-	-	-	-	-	
				-	-	-	-	-	-	-	다-4	공동 산10-49	36.99	36.99	-	-	-	-	-	
유 의 시 설	소 계			281	281	-	-	-	-	1			281.00	281.00	-	-	-	-	-	
	어린이놀 이터	다	산2-47 임	281	281	-	-	-	-	(1)	라	개봉동 47-15	281.00	281.00	-	-	-	-	-	
야 외 시 설	소 계			3,756	3,756	-	-	-	-	36			3,339.87	3,339.87	-	-	-	-	-	
	체력 단련장	마		1,193	1,193	-	-	-	-	20	마		776.87	776.87	-	-	-	-	-	
		마-1	산2-15 임	(164)	(164)	-	-	-	-	(4)	마-1	개봉동 45-2	217.18	217.18	-	-	-	-	-	증 53.18㎡
		마-2	산2-61 임	(599)	(599)	-	-	-	-	(6)	마-2	개봉동 45-2	398.69	398.69	-	-	-	-	-	감 200.31㎡
		마-3	산2-1임	(269)	(269)	-	-	-	-	(5)			-	-	-	-	-	-	폐 지	
		마-4	산10-49 임	(161)	(161)	-	-	-	-	(5)	마-3	공동 산10-49	161.00	161.00	-	-	-	-	-	
	배드 민턴장	바		2,563	2,563	-	-	-	-	16	바		2,563.00	2,563.00	-	-	-	-	-	
		바-1	산2-61 임	(1,042)	(1,042)	-	-	-	-	(6)	바-1	개봉동 45-2	1,042.00	1,042.00	-	-	-	-	-	
		바-2	산2-61 임	(545)	(545)	-	-	-	-	(4)	바-2	개봉동 45-2	545.00	545.00	-	-	-	-	-	
		바-3	산10-49 임	(711)	(711)	-	-	-	-	(4)	바-3	공동 산10-49	711.00	711.00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바-4	산10-49 임	(265)	(265)	-	-	-	-	(2)	바-4	공동 산10-49	265.00	265.00	-	-	-	-	-	
교 양 시 설	소 계			5,945	5,945	-	-	-	-	-			7,891.00	7,891.00	-	-	-	-	-	
	생태 습지원	사	46-3답	(2,734)	(2,734)	-	-	-	-	-	사	개봉동 45-2	5,945.00	5,945.00	-	-	-	-	-	증 3,211.00 ㎡
	자연 학습장	아	46-2답	(3,211)	(3,211)	-	-	-	-	-			-	-	-	-	-	-	-	폐 지
	유아숲 체험원										아	개봉동 45-2	1,946.00	1,946.00	-	-	-	-	-	신 설
편 의 시 설	소 계			419	419	-	1	32.32	32.32	-			71.74	71.74	-	2	48.74	48.74	-	
	약수터	자		127	127	-	-	-	-	-			-	-	-	-	-	-	-	
		자-1	산2-61 임	(104)	(104)	-	-	-	-	-			-	-	-	-	-	-	-	폐 지
		자-2	산2-61 임	(23)	(23)	-	-	-	-	-	자	개봉동 45-2	23.00	23.00	-	-	-	-	-	
	화장실	1	산2-1 임	292	292	-	1	32.32	32.32	-	1	개봉동 45-2	41.24	41.24	-	1	41.24	41.24	-	변 경 감 250.76㎡
	관리 사무소			-	-	-	-	-	-	-	2	개봉동 45-2	7.50	7.50	-	1	7.50	7.50	-	신 설
녹 지 및 기 타	소 계			71,621	71,621	-	-	-	-	-			59,812.41	-	-	-	-	-		
	녹 지			71,621	71,621	-	-	-	-	-			59,812.41	-	-	-	-	-		

7-3 온수 근린공원 7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337	3,462				
변 경					1,564.10	3,590.58				
당 초	소 로	계			508	1,906				
변 경					454.70	1,618.67				
폐 지		3	1	5	74	370	진입로	진입부	광장 가-5	
폐 지			2	4	189	756	관리도로	진입부	광장 가-2	
폐 지			3	4	30	120	진입로	진입부	어린이놀이터	
폐 지			4	3	70	210	진입로	광장 가-2	광장 가-3	
폐 지			5	3	130	390	진입로	주진입로	광장 가-2	
폐 지			6	4	15	60	시설연결로	광장 가-5	광장 가-4	
신 설		3	3-1	1.6-4.0	92.8	247.06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2	
신 설		3	3-2	1.8-4.0	187.7	737.9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신 설		3	3-3	3.0-4.0	31.4	141.0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신 설		3	3-4	3.0	40.7	122.5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	3-5	4.5-3.0	102.1	370.17	진입로	공원경계	베드민턴장 바-3	
당 초	산책로	계			829	1,556				
변 경					1,109.40	1,971.91				
폐 지			1	2	87	174	산책로	체력단련장 마-2	체력단련장 마-3	
폐 지			2	2	227	454	산책로	광장 가-5	광장 가-3	
폐 지			3	2	76	152	산책로	집입로	산책로2	
폐 지			4	2	22	44	산책로	산책로2	집입부	

구 분	구분 명칭	구분 번호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5	2	214	428	산책로	소로3-6	집입부	
폐 지			7	1.5	50	75	산책로	아유회장	체력단련장 마-4	
폐 지			8	1.5	30	45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폐 지			9	1.5	15	22	산책로	광장 가-4	아유회장	
폐 지			10	1.5	30	45	산책로	광장 가-4	배드민턴장 바-3	
폐 지			11	1.5	8	12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2	
폐 지			12	1.5	30	45	산책로	약수터 자-1	체력단련장 마-2	
폐 지			13	1.5	10	15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12	
폐 지			14	1.5	30	45	산책로	진입부	체력단련장 마-3	
신 설			1	1.2	7.1	8.53	연결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마-1	
신 설			2	3.5	5.8	31.18	연결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마-1	
신 설			3	1.5~4.5	62.0	98.51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신 설			4	1.5~2.5	60.6	99.2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신 설			5	1.2	4.2	5.2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	
신 설			6	1.5	10.6	18.37	연결로	산책로 7	녹지대	
신 설			7	1.2~2.5	19.5	29.85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3	
신 설			8	1.8	85.2	178.1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신 설			9	1.5	13.3	30.27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아	산책로 8	
신 설			10	1.2	10.8	12.38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8	
신 설			11	2.0~5.5	30.5	70.43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12	0.8	15.2	11.62	산책로	유아숲체험원 아	녹지대	
신 설			13	2.0	59.9	122.27	연결로	배드민턴장 바-1	산책로 16	
신 설			14	0.8~2.0	74.3	140.7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구 분	구분 명칭	구분 번호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15	2.0	17.3	34.72	연결로	체력단련장 마-2	녹지대	
신 설			16	2.0	74.3	149.82	연결로	광장 가-2	체력단련장 마-2	
신 설			17	2.0	7.9	17.37	연결로	산책로 16	휴게소 나-2	
신 설			18	2.0	17.8	35.79	연결로	산책로 19	체력단련장 마-2	
신 설			19	1.0-2.5	136.6	199.89	연결로	휴게소 나-4	휴게소 나-2	
신 설			20	1.5	30.2	45.3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신 설			21	1.5	94.0	140.5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신 설			22	1.5	115.6	170.30	연결로	산책로 23	휴게소 나-4	
신 설			23	2.0	6.0	16.16	연결로	소로 3-5	휴게소 나-3	
신 설			24	3.0	3.4	11.06	연결로	산책로 25	배드민턴장 바-3	
신 설			25	2.0-3.0	67.3	174.34	산책로	산책로 26	소로3-5	
신 설			26	1.5	80.0	119.6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5	

8-1 온수 근린공원 8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529.20	451.31	-	-	-	14	
기 반 시 설	소계	-	-	-	-	-	-	134.22	134.22	-	-	-	-	
	도로	-	-	-	-	-	-	134.22	134.22	-	-	-	-	
휴양시설		-	-	-	-	-	-	211.32	211.32	-	-	-	5	
운동시설		-	-	-	-	-	-	105.77	105.77	-	-	-	9	
녹지 및 기타		-	-	-	-	-	-	1,077.89	-	-	-	-	-	

8-2 온수 근린공원 8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529.20	451.31	-	-	-	-	14	
기 반 시 설	소 계			-	-	-	-	-	-	-			134.22	134.22	-	-	-	-	-	
	도 로			-	-	-	-	-	-	-			134.22	134.22	-	-	-	-	-	
휴 양 시 설	소 계			-	-	-	-	-	-	-			211.32	211.32	-	-	-	-	5	
	휴게 쉼터			-	-	-	-	-	-	-	가		211.32	211.32	-	-	-	-	-	
				-	-	-	-	-	-	-	가-1	오류동 18-82	112.32	112.32	-	-	-	-	-	
				-	-	-	-	-	-	-	가-2	개봉동 60-83	99.00	99.00	-	-	-	-	-	
	등의자			-	-	-	-	-	-	-	①	휴게 쉼터	-	-	-	-	-	-	3	
	원형 의자			-	-	-	-	-	-	-	②	체력 단련장	-	-	-	-	-	-	2	
온 동 시 설	소 계			-	-	-	-	-	-	-			105.77	105.77	-	-	-	-	9	
	체력 단련장			-	-	-	-	-	-	-	나	오류동 18-98	105.77	105.77	-	-	-	-	-	
	체력 단련 시설			-	-	-	-	-	-	-	③	전지역	-	-	-	-	-	-	9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1,077.89	-	-	-	-	-	-	
	녹 지			-	-	-	-	-	-	-			1,077.89	-	-	-	-	-	-	

8-3 온수 근린공원 8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34.99	134.22				
신 설	중 로	계			4.48	56.16				
신 설		3류	3-1	13.5	4.48	56.16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소 로	계			21.23	63.97				
신 설		3류	3-1	3.0	21.23	63.9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산책로	계			9.28	14.09				
신 설			1	1.7	6.17	10.70	진입로	소로3-1	휴게소,가	
신 설			2	1.0	3.11	3.39	진입로	휴게소,가	공원경계	

9-1 온수 근린공원 9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26,766.7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26,766.70	-	-	-	-	-	

9-2 온수 근린공원 9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26,766.70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26,766.70	-	-	-	-	-	-	
	녹 지			-	-	-	-	-	-	-			26,766.70	-	-	-	-	-	-	

9-3 온수 근린공원 9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10-1 온수 근린공원 10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6,026.0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6,026.00	-	-	-	-	-	

10-2 온수 근린공원 10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6,026.00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6,026.00	-	-	-	-	-	-	
	녹 지			-	-	-	-	-	-	-			6,026.00	-	-	-	-	-	-	

10-3 온수 근린공원 10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11-1 온수 근린공원 11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868.00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868.00	-	-	-	-	-	

11-2 온수 근린공원 1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868.00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868.00	-	-	-	-	-	-	
	녹 지			-	-	-	-	-	-	-			868.00	-	-	-	-	-	-	

11-3 온수 근린공원 1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12-1 온수 근린공원 12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7,454	6,974	1	51	51	17	26,074.70	3,056.90	-	-	-	25	감 11,379.3㎡
기 반 시 설	소계	1,366	1,366	-	-	-	-	2,144.49	2,144.49	-	-	-	-	증 778.49㎡
	도로	1,366	1,366	-	-	-	-	2,025.53	2,025.53	-	-	-	-	증 659.53㎡
	광장	-	-	-	-	-	-	118.96	118.96	-	-	-	-	증 118.96㎡
조경시설		1,525	1,525	-	-	-	11	157.45	157.45	-	-	-	-	감 1,367.55㎡
휴양시설		1,578	1,578	-	-	-	2	225.54	225.54	-	-	-	14	감 1,352.46㎡
유흥시설		806	806	-	-	-	4	299.66	299.66	-	-	-	1	감 506.34㎡
운동시설		1,336	1,336	-	-	-	-	229.76	229.76	-	-	-	10	감 1,106.24㎡
교양시설		282	282	-	-	-	-	-	-	-	-	-	-	감 282.00㎡
관리시설		81	81	1	51	51	-	-	-	-	-	-	-	감 81.00㎡
녹지 및 기타		30,480	30,480	-	-	-	-	23,017.80	-	-	-	-	-	

12-2 온수 근린공원 1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7,454	6,974	-	1	51	51	17			26,074.70	3,056.90	-	-	-	-	25	
기 반 시 설	소 계			1,366	1,366	-	-	-	-	-			2,144.49	2,144.49	-	-	-	-	-	
	도 로			1,366	1,366	-	-	-	-	-			2,025.53	2,025.53	-	-	-	-	-	
	광 장			-	-	-	-	-	-	-	가	수궁동 9-44	118.96	118.96	-	-	-	-	-	신 설
조 경 시 설	소 계			1,525	1,525	-	-	-	-	11			157.45	157.45	-	-	-	-	-	
	장미원			-	-	-	-	-	-	-	나	수궁동 9-44	157.45	157.45	-	-	-	-	-	신 설
	파고라	①		-	-	-	-	-	-	11			-	-	-	-	-	-	-	폐 지 (도지 구역)
		①-1		-	-	-	-	-	-	(2)			-	-	-	-	-	-	-	
		①-2		-	-	-	-	-	-	(1)			-	-	-	-	-	-	-	
		①-3		-	-	-	-	-	-	(1)			-	-	-	-	-	-	-	
		①-4		-	-	-	-	-	-	(1)			-	-	-	-	-	-	-	
		①-5		-	-	-	-	-	-	(2)			-	-	-	-	-	-	-	
		①-6		-	-	-	-	-	-	(2)			-	-	-	-	-	-	-	
		①-7		-	-	-	-	-	-	(1)			-	-	-	-	-	-	-	
	①-8		-	-	-	-	-	-	(1)			-	-	-	-	-	-	-		
	식재대	나		1,525	1,525	-	-	-	-	-			-	-	-	-	-	-	-	폐 지 (도지 구역)
		나-1		(556)	-	-	-	-	-	-			-	-	-	-	-	-	-	-
나-2			(23)	-	-	-	-	-	-			-	-	-	-	-	-	-	-	
나-3			(463)	-	-	-	-	-	-			-	-	-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나-4		(342)	-	-	-	-	-	-			-	-	-	-	-	-	-	
		나-5		(141)	-	-	-	-	-	-			-	-	-	-	-	-	-	
휴 양 시 설	소 계			1,578	1,578	-	-	-	-	2			225.54	225.54	-	-	-	-	14	
	휴게소	다		1,578	1,578	-	-	-	-	-			-	-	-	-	-	-	-	폐지 (도자 구역)
		다-1		(634)	(634)	-	-	-	-	-			-	-	-	-	-	-	-	
		다-2		(103)	(103)	-	-	-	-	-			-	-	-	-	-	-	-	
		다-3		(695)	(695)	-	-	-	-	-			-	-	-	-	-	-	-	
		다-4		(146)	(146)	-	-	-	-	-			-	-	-	-	-	-	-	
	팔각정	④		-	-	목재	-	-	1			-	-	-	-	-	-	-	폐 지 (도자 구역)	
	앉음벽	⑤		-	-	-	-	-	1			-	-	-	-	-	-	-	폐 지 (도자 구역)	
	소나무쉼터			-	-	-	-	-	-	다	수궁동 9-44	225.54	225.54	-	-	-	-	-	신 설	
	파고라			-	-	-	-	-	-	①	운동마당	-	-	-	-	-	-	-	1	신 설
	평의자			-	-	-	-	-	-	②	운동마당	-	-	-	-	-	-	-	3	신 설
	등의자			-	-	-	-	-	-	③	전지역	-	-	-	-	-	-	-	10	신 설
유 회 시 설	소 계			806	806	-	-	-	-	4			299.66	299.66	-	-	-	-	1	
	어린이놀이터	라		806	806	-	-	-	-	4	라	수궁동 9-44	299.66	299.66	-	-	-	-	-	감 506.3 4㎡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라-1		(806)	(806)	-	-	-	-	(4)			-	-	-	-	-	-	-	
	조합 놀이대			-	-	-	-	-	-	-	④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유아 보육 시설	소 계			1,336	1,336	-	-	-	-	-			229.76	229.76	-	-	-	-	10	
	배드민턴 장	마		372	372	-	-	-	-	-			-	-	-	-	-	-	폐 지 (도자 구역)	
	체력 단련장	바		528	528	-	-	-	-	-			-	-	-	-	-	-	폐지 (도자 구역)	
		바-1		(181)	(181)	-	-	-	-	-			-	-	-	-	-	-	-	
		바-2		(114)	(114)	-	-	-	-	-			-	-	-	-	-	-	-	
		바-3		(233)	(233)	-	-	-	-	-			-	-	-	-	-	-	-	
	다목적운동장	아		436	436	-	-	-	-	-	마	수궁동 9-44	229.76	229.76	-	-	-	-	-	변경 감136.24㎡
	체력 단련 시설			-	-	-	-	-	-	-	⑤	전지역	-	-	-	-	-	-	10	신 설
교 양 시설	소계			282	282	-	-	-	-	-			-	-	-	-	-	-		
	자연 학습원	사		282	282	-	-	-	-	-			-	-	-	-	-	-	폐 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관 리 시 설	소 계			81	81	-	-	51	51	-			-	-	-	-	-	-	-	
	관리 창고 및 화장실	2		81	81	-	-	51	51	-			-	-	-	-	-	-	-	폐지 (도자 구역)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0,480	-	-	-	-	-	-			23,017.80	-	-	-	-	-	-	
	녹 지			30,480	-	-	-	-	-	-			23,017.80	-	-	-	-	-	-	

12-3 온수 근린공원 1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911	1,366				
변 경					625.76	2,025.53				
신 설	소 로	계			206.83	874.96				
신 설		3류	1	2.0~5.5	77.76	326.9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신 설		3류	2	3.0~5.5	129.07	548.0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911	1,366				
변 경					418.93	1,150.57				
폐 지			4-1	2	19	38	산책로	휴게소 다-4	체력단련장 바-3	
폐 지			4-2	3	53	159	산책로	광장 가-4	진입부	
폐 지			4-3	3	7	21	산책로	진입부	휴게소 다-4	
폐 지			4-4	1.5	77	115	산책로	휴게소 다-3	산책로 4-6	
폐 지			4-5	2.5	8	20	산책로	휴게소 다-4	산책로 4-2	
폐 지			4-6	1.5	50	75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7	
폐 지			4-7	1.5	85	127	산책로	산책로 4-6	진입부	
폐 지			4-8	1.5	127	190	산책로	체력단련장 바-2	산책로 4-6	
폐 지			4-9	1.5	76	114	산책로	휴게소 다-1	산책로 4-11	
폐 지			4-10	1.5	196	294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4-6	
폐 지			4-11	1.5	123	184	산책로	자연학습원 사	산책로 4-9	
폐 지			4-12	1.5	133	199	산책로	휴게소 다-4	휴게소 다-2	
폐 지			4-13	1.2	25	30	산책로	자연학습원 사	자연학습원 사	
신 설			1	1.5	59.95	95.5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2	2.5	13.03	29.71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신 설			3	4.0~10.0	110.46	525.68	산책로	산책로 1	운동마당 마	
신 설			4	6.0	6.00	36.8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3	
신 설			5	1.5	7.44	12.14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7	
신 설			6	2.0	133.49	268.5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7	
신 설			7	2.0	62.83	128.68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7	
신 설			8	2.0	10.70	22.42	산책로	산책로 7	운동마당 마	
신 설			9	1.5	11.72	17.90	산책로	운동마당 마	광장 가	
신 설			10	4.0	3.31	13.11	산책로	소로 3-2	광장 가	

13-1 온수 근린공원 13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7,985.30	1,875.54	-	-	-	10	
기 반 시 설	소계	-	-	-	-	-	-	491.18	491.18	-	-	-	-	
	도로	-	-	-	-	-	-	491.18	491.18	-	-	-	-	
조경시설		-	-	-	-	-	-	1,384.36	1,384.36	-	-	-	10	
녹지 및 기타		-	-	-	-	-	-	6,109.76	-	-	-	-	-	

13-2 온수 근린공원 13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7,985.30	1,875.54	-	-	-	-	10	
기 반 시 설	소 계			-	-	-	-	-	-	-			491.18	491.18	-	-	-	-	-	
	도 로			-	-	-	-	-	-	-			491.18	491.18	-	-	-	-	-	
조 경 시 설	소 계			-	-	-	-	-	-	-			1,384.36	1,384.36	-	-	-	-	10	
	그라 스원			-	-	-	-	-	-	-	가	수궁동 산4-25	964.40	964.40	-	-	-	-	-	
	생태 연못			-	-	-	-	-	-	-	나	수궁동 산4-25	353.12	353.12	-	-	-	-	-	
	관찰 데크			-	-	-	-	-	-	-	다	수궁동 산4-25	66.84	66.84	-	-	-	-	-	
	오두막			-	-	-	-	-	-	-	①	녹지대	-	-	-	-	-	-	1	
	양서류동 면지			-	-	-	-	-	-	-	②	녹지대	-	-	-	-	-	-	3	
	곤충 아파트			-	-	-	-	-	-	-	③	전지역	-	-	-	-	-	-	4	
	새집 먹이대			-	-	-	-	-	-	-	④	녹지대	-	-	-	-	-	-	2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6,109.76	-	-	-	-	-	-	
	녹 지			-	-	-	-	-	-	-			6,109.76	-	-	-	-	-	-	

13-3 온수 근린공원 1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251.98	491.18				
신 설		계			251.98	491.18				
신 설	산책로		1	1.2	103.98	210.4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	1.2-2.5	11.40	19.51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1	
신 설			3	1.2	42.49	66.7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	
신 설			4	1.2	11.79	17.67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3	
신 설			5	1.2	11.41	17.12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3	
신 설			6	1.2	16.69	25.14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3	
신 설			7	1.2	20.81	56.8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8	1.2	6.50	13.5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 설			9	1.2	26.91	64.14	연결로	관찰데크 다	산책로 1	

14-1 온수 근린공원 14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080.00	3,188.00	1	54	54	42	17,413.20	3,699.37	1	54.00	54.00	50	증 1,265.77㎡ (능안지구)
기 반 시 설	소계	1,602.00	1,602.00	-	-	-	-	1,652.37	1,652.37	-	-	-	-	증 50.37㎡
	도로	908.00	908.00	-	-	-	-	1,189.37	1,189.37	-	-	-	-	증 281.37㎡
	광장	694.00	694.00	-	-	-	-	463.00	463.00	-	-	-	-	감 231.00㎡
조경시설		-	-	-	-	-	3	-	-	-	-	-	-	
휴양시설		247.00	247.00	-	-	-	21	450.00	450.00	-	-	-	31	증 203.00㎡
유희시설		161.00	161.00	-	-	-	1	420.00	420.00	-	-	-	5	증 259.00㎡
운동시설		1,124.00	1,124.00	-	-	-	17	1,123.00	1,123.00	-	-	-	13	증 1.00㎡
편익시설		54.00	54.00	1동	54	54	-	54.00	54.00	1	54.00	54.00	1	
녹지 및 기타		4,892.00		-	-	-	-	13,713.83	-	-	-	-	-	

14-2 온수 근린공원 14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080	3,188	-	1	54	54	42			17,413.20	3,699.37	-	1	54.00	54.00	50	
기 반 시 설	소 계			1,602	1,602	-	-	-	-	-			1,652.37	1,652.37	-	-	-	-	-	
	도 로			908	908	-	-	-	-	-			1,189.37	1,189.37	-	-	-	-	-	
	광 장	가		694	694	-	-	-	-	-			463.00	463.00	-	-	-	-	-	
		가-1	산20-14 임	(438)	(438)	-	-	-	-	-	가-1	온수동 산20-14	148.00	148.00	-	-	-	-	-	감 290㎡
		가-2	산10-5 임	(106)	(106)	-	-	-	-	-			-	-	-	-	-	-	-	폐 지
		가-3	산10-4 임	(131)	(131)	-	-	-	-	-	가-2	온수동 산10-4	115.00	115.00	-	-	-	-	-	감 16㎡
		가-4	산10-4 임	(19)	(19)	-	-	-	-	-	가-3	온수동 산10-4	200.00	200.00	-	-	-	-	-	증 181㎡
조 경 시 설	소 계			-	-	-	-	-	-	3			-	-	-	-	-	-	-	
	파고라	①		-	-	-	-	-	-				-	-	-	-	-	-	-	폐 지
		①-1	산20-14 임	-	-	-	-	-	-	1			-	-	-	-	-	-	-	
		①-2	산10-4 임	-	-	-	-	-	-	1			-	-	-	-	-	-	-	
		①-3	산10-5 임	-	-	-	-	-	-	1			-	-	-	-	-	-	-	
휴 양	소 계			247	247	-	-	-	-	21			450.00	450.00	-	-	-	-	31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시 설	휴 게 소	나		247	247	-	-	-	-	-	나		450.00	450.00	-	-	-	-	-	
		나-1	산10-5 임	(159)	(159)	-	-	-	-	-	나-1	온수동 산10-5	171.00	171.00	-	-	-	-	-	증 12㎡
		나-2	산10-4 임	(77)	(77)	-	-	-	-	-	나-2	온수동 산10-4	134.00	134.00	-	-	-	-	-	증 57㎡
		나-3	산10-4 임	(11)	(11)	-	-	-	-	-	나-3	온수동 산10-4	145.00	145.00	-	-	-	-	-	증 134㎡
	장 의 자	②	산10-5 임 일대	-	-	-	-	-	-	21			-	-	-	-	-	-	-	폐 지
	파고라A			-	-	-	-	-	-	-	①	쉼터	-	-	-	-	-	-	1	신 설
	파고라B			-	-	-	-	-	-	-	②	전지역	-	-	-	-	-	-	3	신 설
	평의자			-	-	-	-	-	-	-	③	전지역	-	-	-	-	-	-	17	신 설
	등의자			-	-	-	-	-	-	-	④	전지역	-	-	-	-	-	-	10	신 설
유 의 시 설	소 계			161	161	-	-	-	-	1			420.00	420.00	-	-	-	-	5	
	어린이 놀이터			-	-	-	-	-	-	-	다		420.00	420.00						
		다	산10-5 임	161	161	-	-	-	-	-	다-1	온수동 산10-5	161.00	161.00	-	-	-	-	-	
				-	-	-	-	-	-	-	다-2	온수동 산20-16	259.00	259.00	-	-	-	-	-	신 설
	조합 놀이대	③	산10-5 임	-	-	-	-	-	-	1	⑤	어린이 놀이터	-	-	-	-	-	-	1	변 경
	시소			-	-	-	-	-	-	⑥	어린이 놀이터	-	-	-	-	-	-	-	1	신 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그네			-	-	-	-	-	-	-	㉗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흔들놀이 시설			-	-	-	-	-	-	-	㉘	어린이 놀이터	-	-	-	-	-	-	2	신 설
유아 시설	소 계			1,124	1,124	-	-	-	-	17			1,123.00	1,123.00	-	-	-	-	13	
	배드 민턴장	라	산10-5 임	384	384	-	-	-	-	-	라	온수동 산10-5	384.00	384.00	-	-	-	-	-	
	체력 단련장	마		100	100	-	-	-	-	-	마		119.00	119.00	-	-	-	-	-	
		마-1	산20-14 임	(57)	(57)	-	-	-	-	-	마-1	온수동 산10-5	70.00	70.00	-	-	-	-	-	증 13㎡
		마-2	산10-5 임	(43)	(43)	-	-	-	-	-	마-2	온수동 산20-14	49.00	49.00	-	-	-	-	-	증 6㎡
	다목적 운동장	바	산10-5 임	640	640	-	-	-	-	-	바	온수동 산10-4	620.00	620.00	-	-	-	-	-	감 20㎡
	체력단련 시설	㉔	산20-14 임 일대	-	-	-	-	-	-	17	㉙	전지역	-	-	-	-	-	-	13	변 경
편 의 시설	소 계			54	54		1동	54	54	-			54.00	54.00	-	1	54.00	54.00	1	
	화장실	사	산10-4 임	54	54		1동	54	54	-	1		54.00	54.00	-	1	54.00	54.00	1	
	음수전			-	-	-	-	-	-	-	㉚	운동마당	-	-	-	-	-	-	1	신 설
녹 지 및 기 타	소 계			4,892	-	-	-	-	-	-			13,713.83	-	-	-	-	-	-	
	녹 지			4,892	-	-	-	-	-	-			13,713.83	-	-	-	-	-	-	

14-3 온수 근린공원 14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64.2	908				
변 경					541.57	1,189.37				
당 초	산책로	계			364.2	908				
변 경					547.57	1,189.37				
폐 지			1	3.6	36	130	진입로	가-1 광장	가-2 광장	
폐 지			2	3	17	51	진입로	진입부	가-4 광장	
폐 지			3	3	3	9	산책로	가-4 광장	나-2 휴게소	
폐 지			4	2.8	150	420	산책로	가-2 광장	산책로8	
폐 지			5	2.4	32	77	산책로	가-2 광장	산책로4	
폐 지			6	2.4	1.2	3	산책로	산책로2	잔디마당	
폐 지			7	2	4	8	산책로	가-1 광장	가-2 광장	
폐 지			8	2	47	94	산책로	산책로4	가-1 광장	
폐 지			9	1.8	24	43	산책로	가-4 광장	나-2 휴게소	
폐 지			10	1.6	5	8	산책로	나-3 휴게소	나-2 휴게소	
폐 지			11	1.5	30	45	산책로	진입부	산책로4	
폐 지			12	1.5	13	18	산책로	진입부	가-2 광장	
폐 지			13	1	1	1	산책로	산책로1	가-1 광장	
폐 지			14	1	1	1	산책로	산책로1	가-1 광장	

구 분	구분 명칭	구분 번호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1	4.0	3.17	12.37	산책로	광장 가-3	휴게소 나-2	
신 설			2	2.0	21.5	42.99	산책로	공원경계	휴게소 나-2	
신 설			3	2.0~2.5	136.2	310.11	산책로	휴게소 나-2	광장 가-1	
신 설			4	2.0	11.7	23.42	산책로	산책로 3	광장 가-2	
신 설			5	2.0	3.5	7.24	산책로	산책로 4	다목적운동장 바	
신 설			6	1.5	25.1	37.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신 설			7	1.0	10.9	10.89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0	
신 설			8	1.8	9.1	15.72	산책로	공원경계	녹지대	
신 설			9	3.0~4.0	48.2	150.17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13	
신 설			10	2.5	31.9	82.18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3	
신 설			11	1.2~3.0	13.8	25.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9	
신 설			12	1.9	1.9	3.58	산책로	산책로 13	배드민턴장 라	
신 설			13	1.8~5.0	83.7	211.58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다-2	휴게소 나-2	
신 설			14	1.5~2.0	54.8	78.84	연결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15	2.0	86.1	176.32	산책로	산책로 14	공원경계	

15-1 온수지구(폐지)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8,633	15,736	-	48	48	33	-	-	-	-	-	-	폐 지(도자구역)
기 반 시 설	소계	4,205	4,205	-	-	-	-	-	-	-	-	-	-	
	도로	1,922	1,922	-	-	-	-	-	-	-	-	-	-	
	광장	2,283	2,283	-	-	-	-	-	-	-	-	-	-	
조경시설		5,743	5,743	-	-	-	6	-	-	-	-	-	-	
휴양시설		2,536	2,536	-	-	-	27	-	-	-	-	-	-	
운동시설		1,387	1,387	-	-	-	-	-	-	-	-	-	-	
교양시설		1,592	1,592	-	-	-	-	-	-	-	-	-	-	
편익시설		24	24	-	-	-	-	-	-	-	-	-	-	
관리시설		249	249	-	48	48	-	-	-	-	-	-	-	
녹지 및 기타		32,897	-	-	-	-	-	-	-	-	-	-	-	

15-2 온수지구(폐지)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48,633	15,736	-	1	48	48	33			-	-	-	-	-	-	-	폐 지 (도차 구역)	
기 반 시 설	소 계			4,205	4,205	-	-	-	-	-			-	-	-	-	-	-	-		
	도 로			1,922	1,922	-	-	-	-	-			-	-	-	-	-	-	-		
	광 장	가		2,283	2,283	-	-	-	-	-			-	-	-	-	-	-	-		
		가-1	온수동 산14-1임	(645)	(645)	-	-	-	-	-			-	-	-	-	-	-	-	-	
		가-2	온수동 96답	(1,078)	(1,078)	-	-	-	-	-			-	-	-	-	-	-	-	-	
		가-3	온수동 산15-3임	(110)	(110)	-	-	-	-	-			-	-	-	-	-	-	-	-	
		가-4	온수동 산15-3임	(450)	(450)	-	-	-	-	-			-	-	-	-	-	-	-	-	
조 경 시 설	소 계			5,743	5,743	-	-	-	-	6			-	-	-	-	-	-	-		
	파고라	①		-	-	-	-	-	-	6			-	-	-	-	-	-	-	-	
		①-1	온수동 96답	-	-	-	-	-	-	-	(4)			-	-	-	-	-	-	-	
		①-2	온수동 산15-2임	-	-	-	-	-	-	-	(2)			-	-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화계	나	온수동 96답	243	243	-	-	-	-	-			-	-	-	-	-	-	-	
	주말농장	다	온수동 산16-4	5,114	5,114	-	-	-	-	-			-	-	-	-	-	-	-	
	잔디밭	라	온수동 96답	386	386	-	-	-	-	-			-	-	-	-	-	-	-	
휴양 시설	소 계			2,536	2,536	-	-	-	-	27			-	-	-	-	-	-	-	
	야유회장	마		2,448	2,448	-	-	-	-	27			-	-	-	-	-	-	-	
		마-1	온수동 산15-2임	(1,404)	(1,404)	-	-	-	-	(15)			-	-	-	-	-	-	-	
		마-2	온수동 95전	(1,044)	(1,044)	-	-	-	-	(12)			-	-	-	-	-	-	-	
	휴게소	바	온수동 산15-3임	88	88	-	-	-	-	-			-	-	-	-	-	-	-	
야생 동물 관리 시설	소 계			1,387	1,387	-	-	-	-	-			-	-	-	-	-	-	-	
	배드민턴 장	사	온수동 96답	413	413	-	-	-	-	-			-	-	-	-	-	-	-	
	다목적 운동장	아	온수동 96답	600	600	-	-	-	-	-			-	-	-	-	-	-	-	
	게이트 불장	자	온수동 96답	374	374	-	-	-	-	-			-	-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교 양 시 설	소 계			1,592	1,592	-	-	-	-	-			-	-	-	-	-	-	-	
	습지원	차	온수동 96답	1,432	1,432	-	-	-	-	-			-	-	-	-	-	-	-	
	야외무대	카	온수동 95전	160	160	-	-	-	-	-			-	-	-	-	-	-	-	
편 의 시 설	소 계			24	24	-	-	-	-	-			-	-	-	-	-	-	-	
	약수터	타	온수동 산15-3임	24	24	-	-	-	-	-			-	-	-	-	-	-	-	
관 리 시 설	소 계			249	249	-	1	48	48	-			-	-	-	-	-	-	-	
	관리 사무소	1	온수동 산15-3임	249	249	-	1	48	48	-			-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2,897	-	-	-	-	-	-			-	-	-	-	-	-	-	
	녹 지			32,897	-	-	-	-	-	-			-	-	-	-	-	-	-	

15-3 온수지구(폐지)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698	1,922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157	785				
변 경					-	-				
폐 지		3	1	5	119	595	주진입로	광장1	광장4	
폐 지		3	2	5	38	190	관리도로	광장4	산책로4	
당 초	산책로	계			541	1,137				
변 경					-	-				
폐 지			1	3	130	390	등산로	광장1	진입로	
폐 지			2	2	13	26	산책로	광장3	휴게소	
폐 지			3	2	260	520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폐 지			4	1.5	24	36	산책로	광장4	야외무대	
폐 지			5	1.5	62	93	산책로	휴게소	약수터	
폐 지			6	1.5	40	6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5	
폐 지			7	1	12	12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4	

16-1 시설지구외 - 가 구역(폐지)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25,431	4,661	-	-	-	-	-	-	-	-	-	-	폐 지(도자구역)
기 반 시 설	소계	4,378	4,378	-	-	-	-	-	-	-	-	-	-	
	도로	4,378	4,378	-	-	-	-	-	-	-	-	-	-	
편익시설		283	283	-	-	-	-	-	-	-	-	-	-	
녹지 및 기타		320,770	-	-	-	-	-	-	-	-	-	-	-	

16-2 시설지구외 - 가 구역(폐지)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25,431	4,661	-	-	-	-	-			-	-	-	-	-	-	-	폐 지 (도차 구역)
기 반 시 설	소 계			4,378	4,378	-	-	-	-	-			-	-	-	-	-	-	-	
	도 로			4,378	4,378	-	-	-	-	-			-	-	-	-	-	-	-	
편 익 시 설	소 계			283	283	-	-	-	-	-			-	-	-	-	-	-	-	
	약수터	①		101	101	-	-	-	-	-			-	-	-	-	-	-	-	
		①-1	산159-2 임	59	59	-	-	-	-	-			-	-	-	-	-	-	-	
		①-2	산159-2 임	42	42	-	-	-	-	-			-	-	-	-	-	-	-	
	헬기장	나	산85-30 임	182	182	-	-	-	-	-			-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20,770	-	-	-	-	-	-			-	-	-	-	-	-	-	
	녹 지			320,770	-	-	-	-	-	-			-	-	-	-	-	-	-	

16-3 시설지구외 - 가 구역(폐지)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2,921	2,921				
변 경					-	-				
당 초	산책로	계			2,921	2,921				
변 경					-	-				
폐 지			1	1.5	205	307	등산로	신월지구	헬기장	
폐 지			2	1.5	94	141	등산로	신월지구	산-3	
폐 지			3	1.5	216	324	등산로	신월지구	산-6	
폐 지			4	1.5	75	112	등산로	헬기장	산-11	
폐 지			5	1.5	140	210	등산로	헬기장	산-12	
폐 지			6	1.5	460	690	등산로	산-4	산-19	
폐 지			7	1.5	208	312	등산로	산-6	신월지구	
폐 지			8	1.5	299	448	등산로	산-7	진입로	
폐 지			9	1.5	342	513	등산로	산-8	진입로	
폐 지			10	1.5	48	72	등산로	산-11	산-5	
폐 지			11	1.5	182	273	등산로	산-12	산-4	
폐 지			12	1.5	131	196	등산로	약수터-2	산-5	
폐 지			13	1.5	29	43	등산로	산-14	약수터-2	
폐 지			14	1.5	24	36	등산로	산-6	산-13	
폐 지			15	1.5	28	42	등산로	약수터-2	약수터-1	
폐 지			16	1.5	15	22	등산로	약수터-1	산-6	
폐 지			17	1.5	40	60	등산로	산-18	산-6	
폐 지			18	1.5	56	84	등산로	산-9	산-6	
폐 지			19	1.5	129	193	등산로	진입로	산-20	
폐 지			20	1.5	200	300	등산로	산-15	등산로	

17-1 시설지구외 - 다 구역(폐지)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67,674	4,636	-	-	-	-	-	-	-	-	-	-	폐 지(도자구역)
기 반 시 설	소계	4,236	4,236	-	-	-	-	-	-	-	-	-	-	
	도로	4,236	4,236	-	-	-	-	-	-	-	-	-	-	
휴양시설		400	400	-	-	-	-	-	-	-	-	-	-	
녹지 및 기타		463,038	463,038	-	-	-	-	-	-	-	-	-	-	

17-2 시설지구외 - 다 구역(폐지)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467,674	4,636	-	-	-	-	-			-	-	-	-	-	-	-	폐 지 (도자 구역)
기 반 시 설	소 계			4,236	4,236	-	-	-	-	-			-	-	-	-	-	-	-	
	도 로			4,236	4,236	-	-	-	-	-			-	-	-	-	-	-	-	
편 익 시 설	소 계			400	400	-	-	-	-	-			-	-	-	-	-	-	-	
	휴게소			400	400	-	-	-	-	-			-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463,038	-	-	-	-	-	-			-	-	-	-	-	-	-	
	녹 지			463,038	-	-	-	-	-	-			-	-	-	-	-	-	-	

17-3 시설지구외 - 다 구역(폐지)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2,625	4,236				
변 경					-	-				
당 초	산책로	계			2,625	4,236				
변 경					-	-				
폐 지			1	1.5	224	336	등산로	산-2	신정지구	
폐 지			2	2	256	512	등산로	조망소	신정지구	
폐 지			3	2	49	122	등산로	등산로	진입로	
폐 지			4	1.5	845	1,267	등산로	잣절지구	진입로	
폐 지			5	2	35	70	등산로	잣절지구	산-4	
폐 지			6	2	215	430	등산로	산-4	진입로	
폐 지			7	1.5	41	61	등산로	산-6	산-4	
폐 지			8	1.5	60	90	등산로	산-4	잣절지구	
폐 지			9	1.5	107	160	등산로	산-10	잣절지구	
폐 지			10	1.5	154	231	등산로	산-4	잣절지구	
폐 지			11	1.5	207	310	등산로	산-4	진입로	
폐 지			12	1.5	151	226	등산로	산-4	진입로	
폐 지			13	1.5	56	84	등산로	산-4	진입로	
폐 지			14	1.5	225	337	등산로	산-4	진입로	

18-1 시설지구외 - 라 구역(폐지)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90,880	5,343	-	-	-	-	-	-	-	-	-	-	폐 지(도자구역)
기 반 시 설	소계	5,343	5,343	-	-	-	-	-	-	-	-	-	-	
	도로	5,343	5,343	-	-	-	-	-	-	-	-	-	-	
녹지 및 기타		385,537	-	-	-	-	-	-	-	-	-	-	-	

18-2 시설지구외 - 라 구역(폐지)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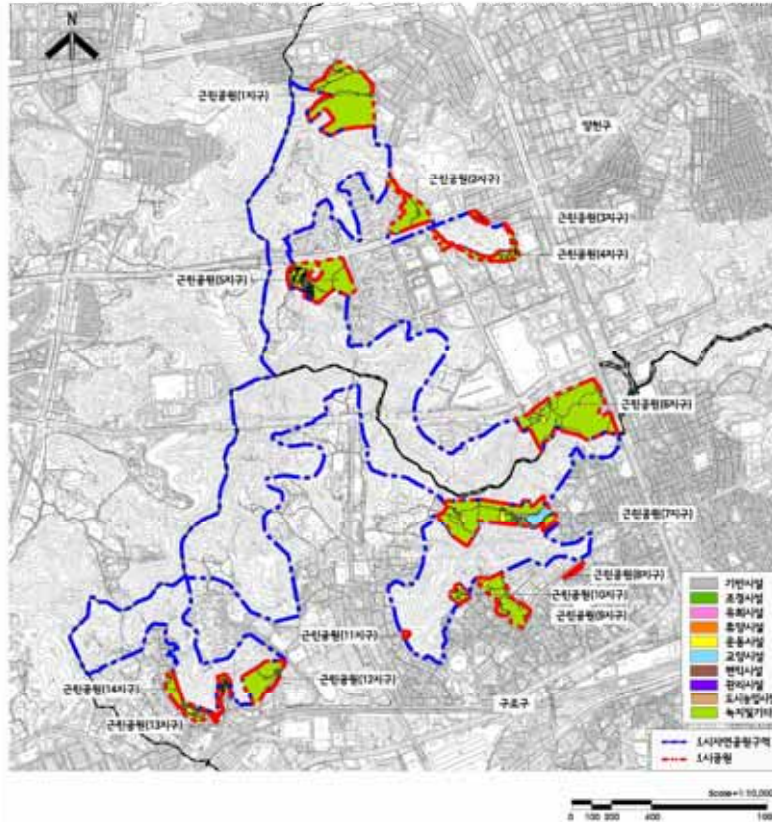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90,880	5,343	-	-	-	-	-			-	-	-	-	-	-	-	폐 지 (도자 구역)
기 반 시 설	소 계			5,343	5,343	-	-	-	-	-			-	-	-	-	-	-	-	
	도 로			5,343	5,343	-	-	-	-	-			-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85,537	-	-	-	-	-	-			-	-	-	-	-	-	-	
	녹 지			385,537	-	-	-	-	-	-			-	-	-	-	-	-	-	

18-3 시설지구외 - 라 구역(폐지)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362	5,343				
변 경					-	-				
당 초	산책로	계			3,362	5,343				
변 경					-	-				
폐 지			1	1.5	166	249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 지			2	2	298	596	등산로	산-1	진입로	
폐 지			3	1.5	692	1,038	등산로	산-1	진입로	
폐 지			4	1.5	95	142	등산로	산-3	진입로	
폐 지			5	1.5	96	144	등산로	산-3	진입로	
폐 지			6	1.5	156	234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 지			7	1.5	755	1,132	등산로	등산로	진입로	
폐 지			8	1.5	174	562	등산로	등산로	진입로	
폐 지			9	1.5	128	192	등산로	산-7	진입로	
폐 지			10	1.5	66	99	등산로	산-7	벽산지구	
폐 지			11	1.5	120	180	등산로	벽산지구	진입로	
폐 지			12	1.5	174	261	등산로	벽산지구	진입로	
폐 지			13	1.5	141	211	등산로	진입로	등산로	
폐 지			14	1.5	31	46	등산로	진입로	산-15	
폐 지			15	3.5	77	269	등산로	진입로	진입로	
폐 지			16	1.5	193	289	등산로	산-15	등산로	

조성계획도 [변경후]

운수근린공원



■ 총괄표

구분	총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부지 총 면적	427,993.00	80,208.90	28,156.50	2,755.00	15,463.20	48,695.10	88,731.00	77,320.90
시설 총 면적	55,724.57	14,847.73	-	1,161.26	1,710.26	7,017.72	4,386.28	17,308.19
기법	23,600.13	5,496.91	-	449.70	1,256.02	4,550.72	2,795.36	4,629.16
도로	19,901.72	5,345.17	-	115.07	1,256.02	3,285.72	2,468.86	3,590.58
시설	3,698.41	151.74	-	334.83	-	1,265.00	326.56	1,038.58
조경시설	4,624.41	-	-	-	353.35	1,734.00	-	995.25
휴식시설	3,341.58	1,014.00	-	148.84	54.20	526.00	411.52	300.17
유치시설	1,491.83	207.64	-	283.53	-	-	-	281.00
운동시설	7,623.81	1,426.37	-	153.94	46.69	-	1,189.41	3,329.87
교양시설	14,547.30	6,656.30	-	-	-	-	-	7,891.00
편의시설	250.99	-	-	125.25	-	-	-	71.74
관치시설	344.51	37.51	-	-	-	207.00	-	-
녹지 및 기타	372,268.43	65,361.17	28,156.50	1,594.34	13,752.94	41,677.38	84,334.71	68,812.41
운수(동)	6	5	-	1	-	1	-	2
건축물 비인면적	472.50	37.51	-	125.25	-	207.00	-	48.74
면적	514.50	37.51	-	125.25	-	249.00	-	48.74
공작물(기)	226	-	-	27	9	43	46	-
비고								

구분	8지구	9지구	10지구	11지구	12지구	13지구	14지구
부지 총 면적	1,529.20	26,766.70	6,036.00	868.00	26,074.70	7,985.30	17,413.20
시설 총 면적	451.31	-	-	-	3,056.90	1,675.54	3,689.37
기법	134.22	-	-	-	2,144.49	491.18	1,652.37
도로	134.22	-	-	-	2,025.53	491.18	1,189.37
시설	-	-	-	-	118.96	-	463.00
조경시설	-	-	-	-	157.45	1,384.36	-
휴식시설	211.32	-	-	-	225.54	-	450.00
유치시설	-	-	-	-	299.60	-	420.00
운동시설	105.77	-	-	-	229.76	-	1,123.00
교양시설	-	-	-	-	-	-	-
편의시설	-	-	-	-	-	-	54.00
관치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1,077.89	26,766.70	6,036.00	868.00	23,017.80	6,109.76	13,713.83
운수(동)	-	-	-	-	-	-	1
건축물 비인면적	-	-	-	-	-	-	54.00
면적	-	-	-	-	-	-	54.00
공작물(기)	14	-	-	-	25	10	50
비고							

* 공법시설율 : 55,724.57 / 427,993.00 = 13.02%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율

: 7,623.81 / 55,724.57 = 13.68%

* 건축률 : 472.50 / 427,993.00 = 0.11%

조성계획도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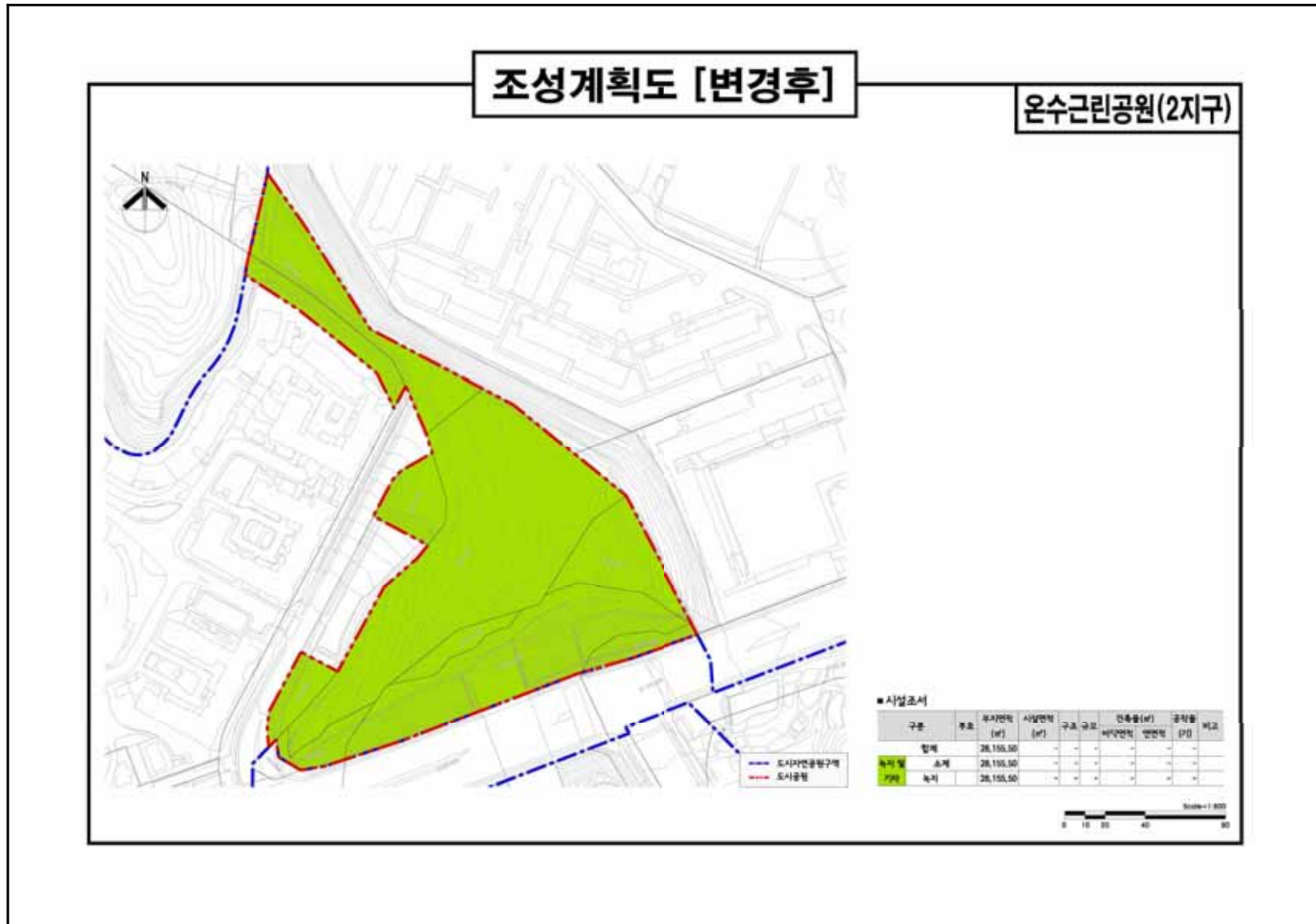
온수근린공원(1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조	건축물(㎡)	공작물 (단위)	비고
기타	합계	80,208.90	14,847.73	-	1	37.51	37.51	-
	소계	5,496.91	5,496.91	-	-	-	-	-
	도로	5,346.17	5,346.17	-	-	-	-	-
공원	합계	151.74	151.74	-	-	-	-	-
	소계	1,014.00	1,014.00	-	-	-	-	-
	휴게소	나	955.10	955.10	-	-	-	-
체육	나-1	(11.54)	(11.54)	-	-	-	-	-
	나-2	(232.31)	(232.31)	-	-	-	-	-
	나-3	(547.25)	(547.25)	-	-	-	-	-
	나-4	(16.00)	(16.00)	-	-	-	-	-
	나-5	(148.00)	(148.00)	-	-	-	-	-
	다	58.90	58.90	-	-	-	-	-
	다-1	(9.50)	(9.50)	-	-	-	-	-
	다-2	(9.50)	(9.50)	-	-	-	-	-
	다-3	(7.70)	(7.70)	-	-	-	-	-
	다-4	(15.00)	(15.00)	-	-	-	-	-
문화	다-5	(9.50)	(9.50)	-	-	-	-	-
	다-6	(7.70)	(7.70)	-	-	-	-	-
	소계	207.64	207.64	-	-	-	-	-
	어린이놀이터	라	207.64	207.64	-	-	-	-
공용	소계	1,436.37	1,436.37	-	-	-	-	-
	다목적구장	마	208.00	208.00	-	-	-	-
	농구장	바	211.54	211.54	-	-	-	-
	배드민턴장	사	867.00	867.00	-	-	-	-
	사-1	(551.72)	(551.72)	-	-	-	-	-
	사-2	(335.28)	(335.28)	-	-	-	-	-
	체육단련장	마	128.83	128.83	-	-	-	-
	소계	6,656.30	6,656.30	-	-	-	-	-
	문화체육합합	자	6,656.30	6,656.30	-	-	-	-
	자-1	(6,244.00)	(6,244.00)	-	-	-	-	-
문화	자-2	(412.30)	(412.30)	-	-	-	-	-
	소계	37.51	37.51	-	1	37.51	37.51	-
	관객시루스	1	37.51	37.51	-	1	37.51	37.51
	소계	65,361.17	-	-	-	-	-	-
	녹지	65,361.17	-	-	-	-	-	-

Scale=1:1,000
0 10 20 30 40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3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755.60	1,161.26	-	1	125.25	115.07	27	
기타 시설	소계		449.70	449.70	-	-	-	-	-	
	도로			115.07	115.07	-	-	-	-	
	광장	가	334.63	334.63	-	-	-	-	-	
휴양 시설	소계		148.84	148.84	-	-	-	-	12	
	일터	나	148.84	148.84	-	-	-	-	-	
	나-1	(88.84)		(88.84)	-	-	-	-	-	
	나-2	(60.00)		(60.00)	-	-	-	-	-	
	과교지	㉠	-	-	-	-	-	-	3	
	명목사	㉡	-	-	-	-	-	-	7	
	유목지	㉢	-	-	-	-	-	-	2	
유치 시설	소계		283.53	283.53	-	-	-	-	5	
	어린이놀이터	다	283.53	283.53	-	-	-	-	-	
	초합설비운동	㉣	-	-	-	-	-	-	1	
	그네	㉤	-	-	-	-	-	-	1	
	시소	㉥	-	-	-	-	-	-	1	
운동 시설	운동놀이	㉦	-	-	-	-	-	-	2	
	소계		153.94	153.94	-	-	-	-	10	
	운동마당	차	153.94	153.94	-	-	-	-	-	
	합동	㉧	-	-	-	-	-	-	1	
	원동일조기	㉨	-	-	-	-	-	-	1	
편의 시설	세탁기대신시설	㉩	-	-	-	-	-	-	8	
	소계		125.25	125.25	-	1	125.25	125.25	-	
	화장실	1	125.25	125.25	-	1	125.25	125.25	-	
특기 기타	소계		1,594.34	-	-	-	-	-	-	
	녹지		1,594.34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5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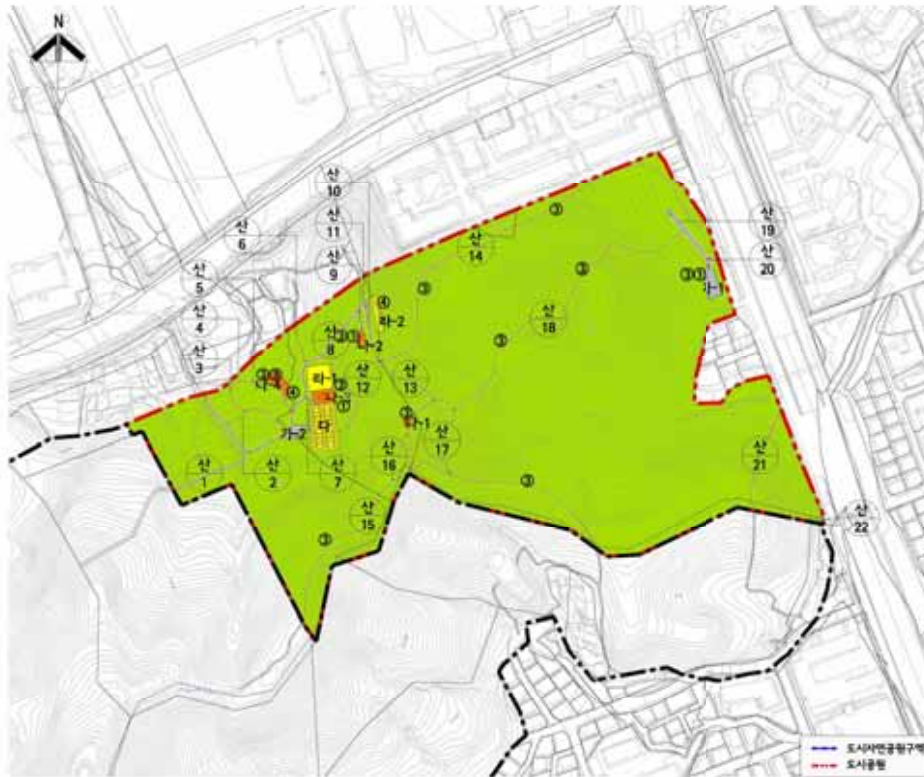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호	규모	인용률 (㎡)	면적비율 (%)	공작물 (단)	비고
기타 시설	합계	48,696.10	7,917.72	-	1	207.00	248.00	43	
	소계	4,500.72	4,500.72	-	-	-	-	-	
	도로	3,285.72	3,285.72	-	-	-	-	-	
	가	1,265.00	1,265.00	-	-	-	-	-	
	가-1	(528.00)	(528.00)	-	-	-	-	-	
	가-2	(597.00)	(597.00)	-	-	-	-	-	
조경 시설	소계	1,734.00	1,734.00	-	-	-	-	-	
	생태연못	나	207.00	207.00	-	-	-	-	
	테코	다	94.00	94.00	-	-	-	-	
	다-1	(77.00)	(77.00)	-	-	-	-	-	
	다-2	(17.00)	(17.00)	-	-	-	-	-	
	목조	라	80.00	80.00	-	-	-	-	
휴양 시설	소계	526.00	526.00	-	-	-	-	-	
	휴게마당	바	502.00	502.00	-	-	-	-	
	바-1	(108.00)	(108.00)	-	-	-	-	-	
	바-2	(52.00)	(52.00)	-	-	-	-	-	
	바-3	(31.00)	(31.00)	-	-	-	-	-	
	바-4	(76.00)	(76.00)	-	-	-	-	-	
파괴 시설	소계	1,734.00	1,734.00	-	-	-	-	-	
	파괴	가	1,734.00	1,734.00	-	-	-	-	
	가-1	(528.00)	(528.00)	-	-	-	-	-	
	가-2	(597.00)	(597.00)	-	-	-	-	-	
	가-3	(90.00)	(90.00)	-	-	-	-	-	
	가-4	(50.00)	(50.00)	-	-	-	-	-	
파괴 시설	소계	207.00	207.00	-	1	207.00	248.00	-	
	원형나무	바	207.00	207.00	-	1	207.00	248.00	
	소계	41,677.38	-	-	-	-	-	-	
	녹지	41,677.38	-	-	-	-	-	-	
	기타	-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6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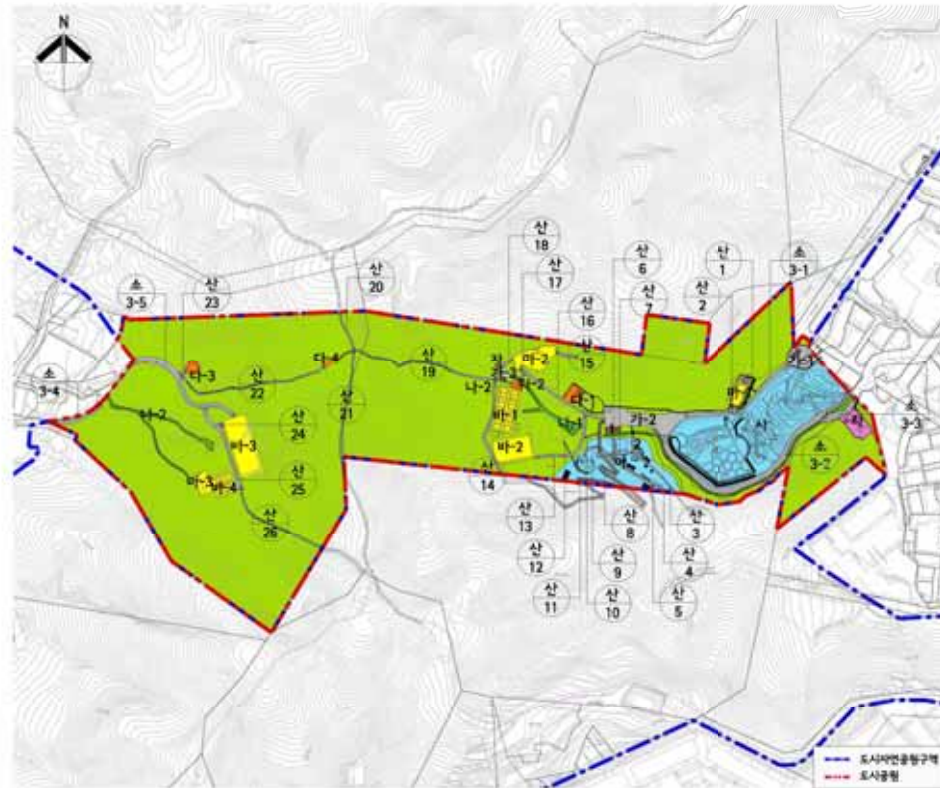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유지면적 (㎡)	신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면적	공작물 (개)	비고
기타 시설	합계	88,731.00	4,396.29	-	-	-	-	-
	소계	2,795.36	2,795.36	-	-	-	-	-
	도로	2,486.11	2,486.11	-	-	-	-	-
	광장	309.25	309.25	-	-	-	-	-
운동 시설	가-1	(224.97)	(224.97)	-	-	-	-	-
	가-2	(101.53)	(101.53)	-	-	-	-	-
	소계	411.52	411.52	-	-	-	-	-
	휴게소	나-1	411.52	411.52	-	-	-	-
문화 시설	나-1	(36.92)	(36.92)	-	-	-	-	-
	나-2	(63.79)	(63.79)	-	-	-	-	-
	나-3	(150.00)	(150.00)	-	-	-	-	-
	나-4	(160.81)	(160.81)	-	-	-	-	-
운동 시설	파고라	①	-	-	-	-	-	-
	완형파고라	②	-	-	-	-	-	-
	정자	③	-	-	-	-	-	-
	소계	1,189.41	1,189.41	-	-	-	-	-
체육 시설	체조장	나	709.11	709.11	-	-	-	-
	체육단장	리	480.30	480.30	-	-	-	-
	다-1	(342.00)	(342.00)	-	-	-	-	-
	다-2	(138.30)	(138.30)	-	-	-	-	-
특수 시설	체육단장	①	-	-	-	-	-	-
	소계	84,334.71	-	-	-	-	-	-
합계	총계	84,334.71	-	-	-	-	-	-

Scale 1:1,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조성계획도 [변경후]

운수근린공원(7지구)



■ 사실조서

구분	부도	투시면적 (㎡)	사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면적 (㎡)	공작물 (㎡)	비고
합계		77,320.00	17,508.19	2	48.74	48.74	-	
기타 시설	소계	4,629.16	4,629.16	-	-	-	-	-
	도로	3,990.56	3,990.56	-	-	-	-	-
	광장	1,038.58	1,038.58	-	-	-	-	-
	가-1	(282.56)	(282.56)	-	-	-	-	-
조경 시설	가-2	(719.17)	(719.17)	-	-	-	-	-
	가-3	(36.83)	(36.83)	-	-	-	-	-
	소계	995.25	995.25	-	-	-	-	-
수리 시설	나	995.25	995.25	-	-	-	-	-
	나-1	(721.87)	(721.87)	-	-	-	-	-
	나-2	(273.44)	(273.44)	-	-	-	-	-
휴양 시설	소계	300.17	300.17	-	-	-	-	-
	다	300.17	300.17	-	-	-	-	-
	다-1	(128.87)	(128.87)	-	-	-	-	-
	다-2	(48.00)	(48.00)	-	-	-	-	-
문화 시설	다-3	(86.31)	(86.31)	-	-	-	-	-
	다-4	(36.99)	(36.99)	-	-	-	-	-
	소계	261.00	261.00	-	-	-	-	-
여가 시설	라	261.00	261.00	-	-	-	-	-
	소계	3,338.87	3,338.87	-	-	-	-	-
체육 시설	마	776.87	776.87	-	-	-	-	-
	마-1	(217.18)	(217.18)	-	-	-	-	-
	마-2	(398.88)	(398.88)	-	-	-	-	-
	마-3	(161.00)	(161.00)	-	-	-	-	-
배도 시설	바	2,563.00	2,563.00	-	-	-	-	-
	바-1	(1,042.00)	(1,042.00)	-	-	-	-	-
	바-2	(545.00)	(545.00)	-	-	-	-	-
	바-3	(711.00)	(711.00)	-	-	-	-	-
교량 시설	바-4	(265.00)	(265.00)	-	-	-	-	-
	소계	7,891.00	7,891.00	-	-	-	-	-
	생태습지	사	5,945.00	5,945.00	-	-	-	-
자연 환경 보전 시설	생태습지	마	1,946.00	1,946.00	-	-	-	-
	소계	71.74	71.74	3	48.74	48.74	-	-
관리 시설	화장실	제	23.00	23.00	-	-	-	-
	화장실	1	41.24	41.24	1	41.24	41.24	-
	관리사무소	2	7.50	7.50	1	7.50	7.50	-
녹지 지표	소계	58,812.41	-	-	-	-	-	-
	녹지	58,812.41	-	-	-	-	-	-

Scale 1:1,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8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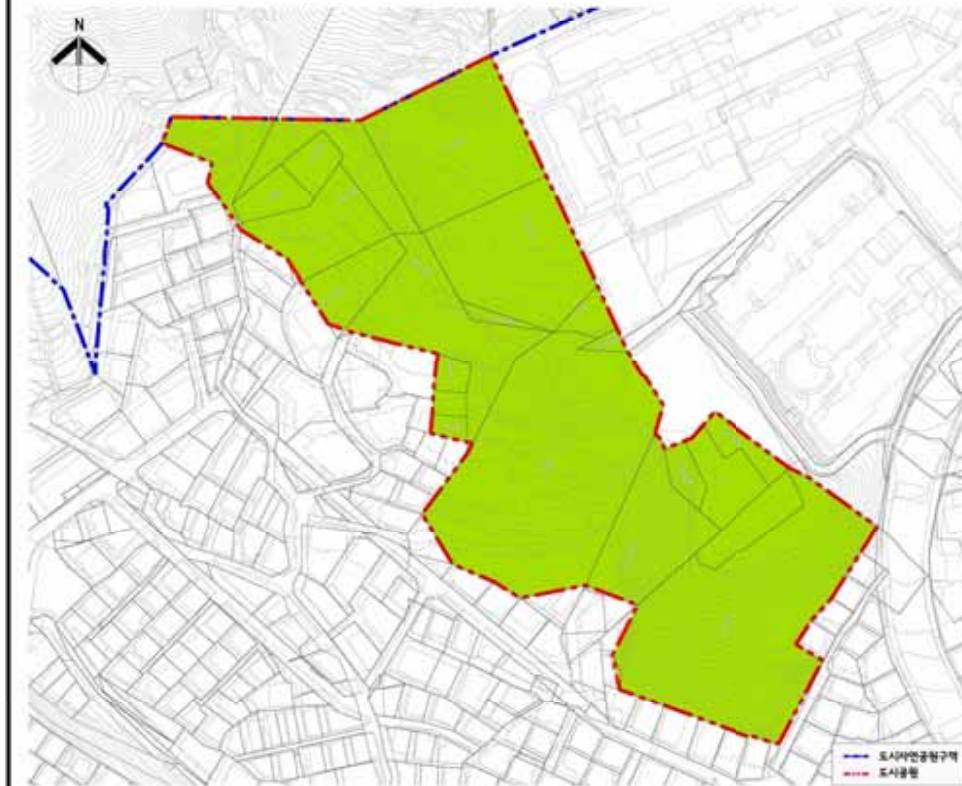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주차장 면적[㎡]	주차장 개수	비고
기타	합계	1,529.20	451.31	-	-	-	-	14	-
	소계	134.22	134.22	-	-	-	-	-	-
시설	도로	134.22	134.22	-	-	-	-	-	-
	소계	211.32	211.32	-	-	-	-	5	-
공원	유계형터	가	211.32	211.32	-	-	-	-	-
	가-1	112.32	112.32	-	-	-	-	-	-
	가-2	99.00	99.00	-	-	-	-	-	-
	통행자	①	-	-	-	-	-	3	-
운동	발행자	②	-	-	-	-	-	2	-
	소계	105.77	105.77	-	-	-	-	5	-
시설	체육(난장)	나	105.77	105.77	-	-	-	-	-
	체육(난장)	③	-	-	-	-	-	5	-
녹지	소계	1,077.89	-	-	-	-	-	-	-
	녹지	1,077.89	-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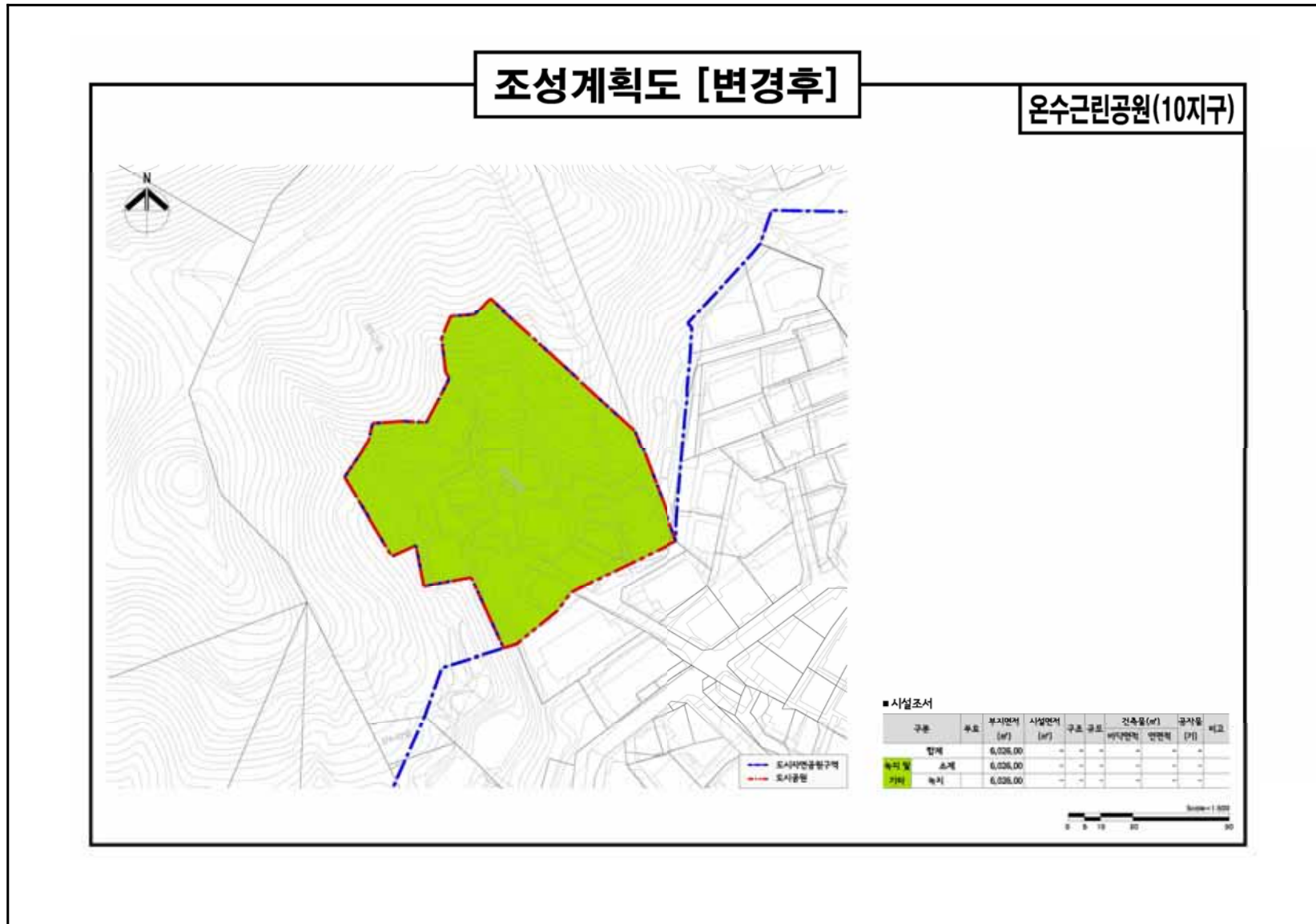
온수근린공원(9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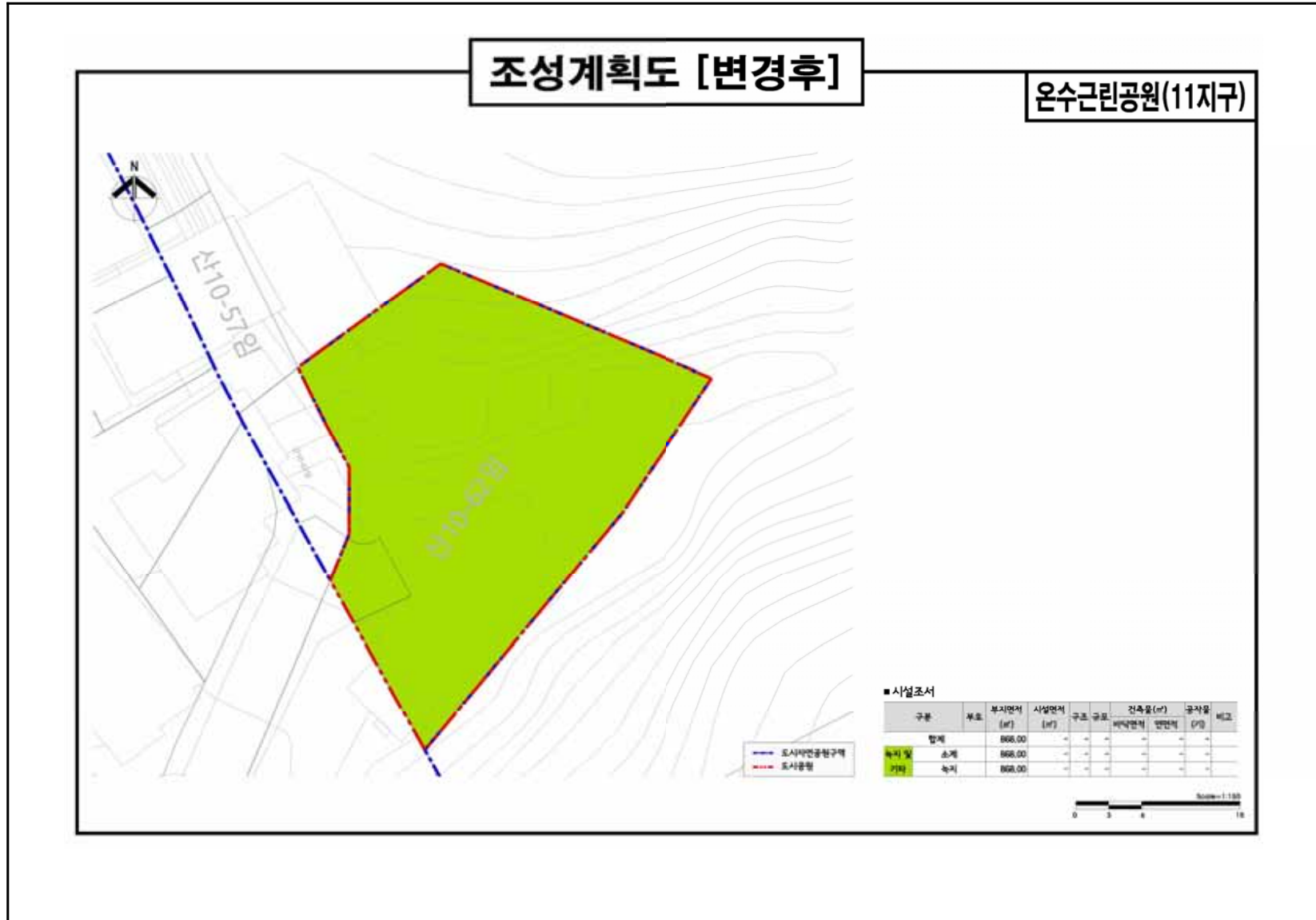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면적 (㎡)	사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용적률 (%)	비고
합계		26,766.70	-	-	-	-	-	-
녹지	지	26,766.70	-	-	-	-	-	-
기타	기	26,766.70	-	-	-	-	-	-

Scale=1:500
0 10 20 40 60





조성계획도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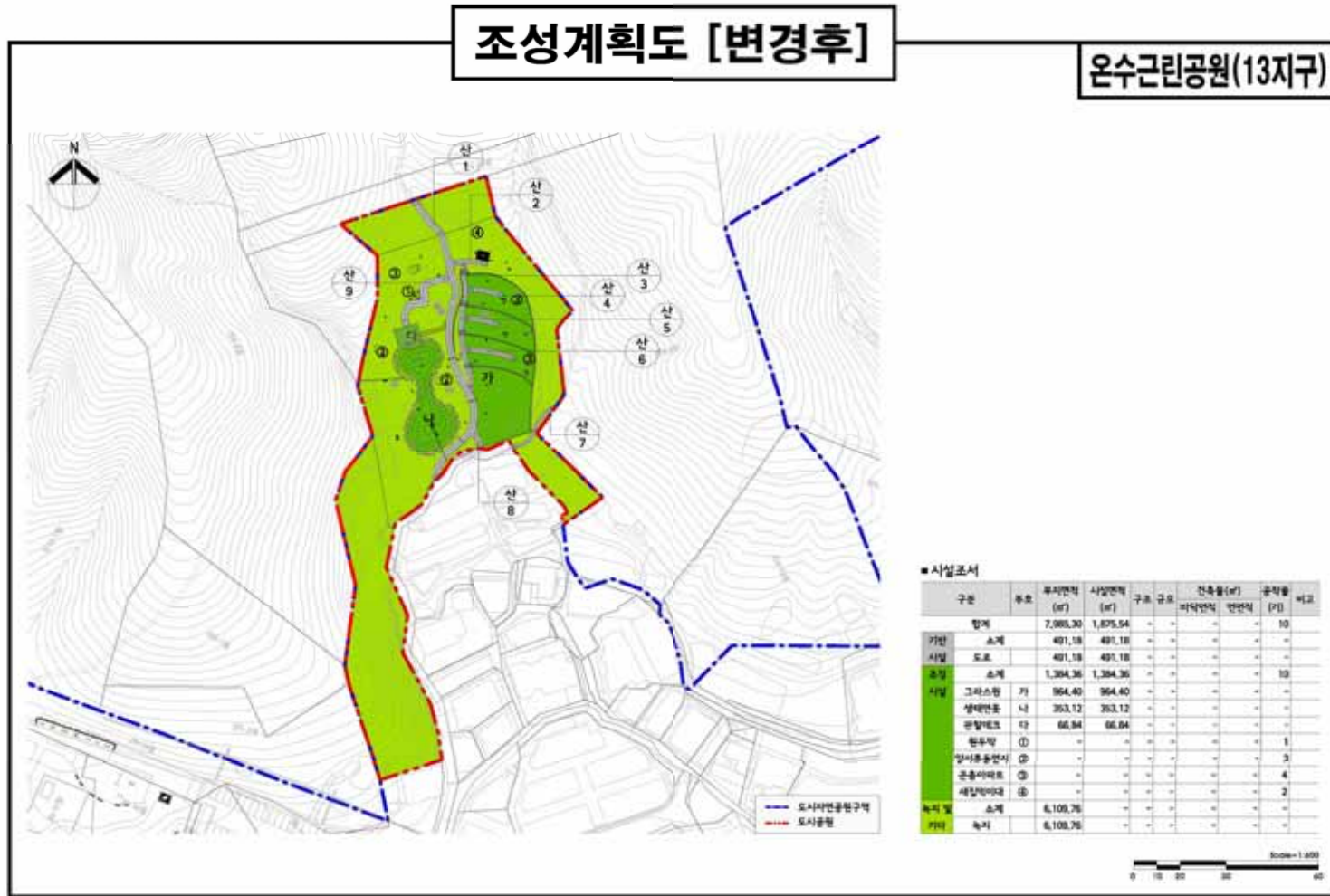
온수근린공원(12지구)



■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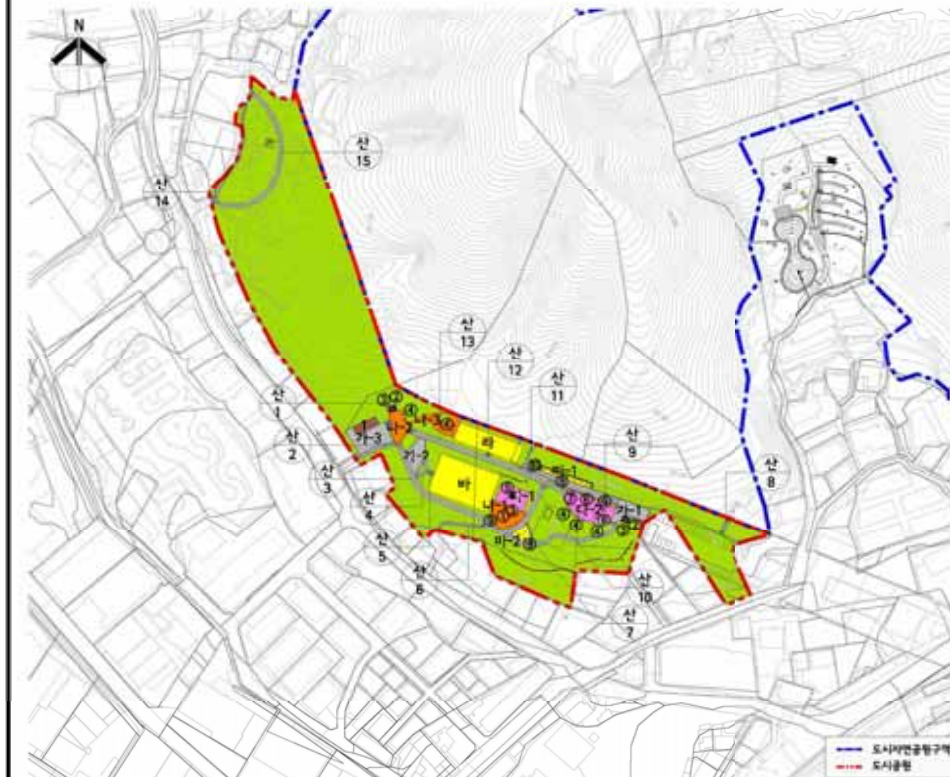
구분	구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호	규모	건축물(㎡)	면적	면적	면적	비고
합계		26,074.70	3,056.90			-	-	-	-	25
기타										
시설	소계	2,144.48	2,144.48			-	-	-	-	
	도로	2,025.53	2,025.53			-	-	-	-	
	광장	가	118.96	118.96		-	-	-	-	
공정	소계	157.45	157.45			-	-	-	-	
시설	정지점	나	157.45	157.45		-	-	-	-	
포장	소계	225.54	225.54			-	-	-	-	14
시설	소나무정지대	다	225.54	225.54		-	-	-	-	
	피코라	①	-	-		-	-	-	-	1
	정지점	②	-	-		-	-	-	-	3
	정지점	③	-	-		-	-	-	-	10
정지	소계	299.66	299.66			-	-	-	-	1
시설	어린이놀이기구	라	299.66	299.66		-	-	-	-	
	조형물놀이대	④	-	-		-	-	-	-	1
공원	소계	229.76	229.76			-	-	-	-	10
시설	다목적운동장	학	229.76	229.76		-	-	-	-	
	체육관안사일	⑤	-	-		-	-	-	-	10
녹지	소계	23,017.80	-			-	-	-	-	
기타	녹지	23,017.80	-			-	-	-	-	

Scale = 1:800
0 10 20 40 60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14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구분	건축물(㎡)	면적	공적용	비고
기타 시설	합계	17,413.20	3,609.37	-	-	-	54.00	54.00
	소계	1,652.37	1,652.37	-	-	-	-	-
	도로	1,189.37	1,189.37	-	-	-	-	-
	광장	가	403.00	403.00	-	-	-	-
		가-1	(148.00)	(148.00)	-	-	-	-
휴양 시설	소계	450.00	450.00	-	-	-	-	31
	휴게소	나	450.00	450.00	-	-	-	-
		나-1	(171.00)	(171.00)	-	-	-	-
		나-2	(134.00)	(134.00)	-	-	-	-
		나-3	(145.00)	(145.00)	-	-	-	-
체육 시설	소계	420.00	420.00	-	-	-	-	5
	어린이놀이터	다	420.00	420.00	-	-	-	-
		다-1	(161.00)	(161.00)	-	-	-	-
		다-2	(259.00)	(259.00)	-	-	-	-
	조형놀이대	㉔	-	-	-	-	-	1
운동 시설	소계	1,123.00	1,123.00	-	-	-	-	13
	배드민턴장	바	384.00	384.00	-	-	-	-
	배드민턴장	바	119.00	119.00	-	-	-	-
		바-1	(70.00)	(70.00)	-	-	-	-
		바-2	(49.00)	(49.00)	-	-	-	-
편의 시설	소계	54.00	54.00	-	-	-	-	1
	화장실	1	54.00	54.00	-	-	-	-
	물수변	㉔	-	-	-	-	-	1
	녹지	소계	13,713.83	-	-	-	-	-
	녹지	소계	13,713.83	-	-	-	-	-

Scale 1:1000
0 10 20 40 1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1호

계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327호(1998.9.11.)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47호(2015.11.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계남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취지

- 2020. 6. 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계남근린공원에 대해 현장조사로 확인된 공원조성계획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고, 사업집행이 어려운 기존 계획수정, 조성계획이 없는 부분은 신규 계획하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일대

다. 공원면적 : 648,381.7㎡

라.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4) 및 구로구청 녹색도시과(☎02-860-2321),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7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남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일대) - 양천구 + 구로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03,715.2	55,166.3	7동	3,276.75	9,060.09	155	648,381.7	78,429	7동	3,239.43	9,022.77	20	증) 23,262.7㎡
기 반 시 설	소계	22,818.3	22,818.3					36,938	36,938					증) 14,119.7㎡
	도로	19,513.3	19,513.3					33,633	33,633					증) 14,119.7㎡
	광장	3,305	3,305					3,305	3,305					
	조경시설	3,655	3,655				18	672	672				7	감) 2,983㎡
휴양시설		2,996	2,996	1동	167.64	167.64	99	5,035	5,035	1동	167.64	167.64	8	증) 2,039㎡
유희시설		1,674	1,674				16	893	893					감) 781㎡
운동시설		16,409	16,409				18	15,047	15,047				5	감) 1,362㎡
교양시설		6,700	6,700	2동	2,813.11	8,596.45		17,847	17,847	2동	2,813.11	8,596.45		증) 11,147㎡
편익시설		286	286	1동	33.00	33.00	4	454	454	2동	151.68	151.68		증) 168㎡
관리시설		628	628	3동	263	263		1,543	1,543	2동	107	107		증) 915㎡
녹지 및 기타		548,548.9						569,952.7						증) 21,403.8㎡
시 설 율 (법정 40%)		(55,166.3 / 603,715.2) × 100 = 9.14%					(78,429 / 648,381.7) × 100 = 12.10%							
건 폐 율 (법정 10%)		(3,276.75 / 603,715.2) × 100 = 0.54%					(3,239.43 / 648,381.7) × 100 = 0.50%							

※ 총괄표(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계	603,715.2	55,166.3	7동	3,276.75	9,060.09	155	648,381.7	78,429	7동	3,239.43	9,022.77	20	
양천구							478,015.4	52,907	6동	3,186.43	8,969.77	2	
구로구							170,366.3	25,522	1동	53	53	18	

나. 시설조서 - 양천구+구로구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 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 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03,715.2	55,166.3		7동	3,276.75	9,060.09	155			648,381.7	78,429		7동	3,239.43	9,022.77	20	증) 23,262.7㎡
기 반 시 설	소 계				22,818.3	22,818.3							36,938	36,938						증) 14,119.7㎡
	도로			전지역	19,513.3	19,513.3						전지역	33,633	33,633						증) 14,119.7㎡
	광장	가	4개소	3,305	3,305						가	4개소	3,305	3,305						
		가-1	양천구 신정동	703	703						가-1	양천구 신정동	703	703						
		가-2	양천구 신정동	2,013	2,013						가-2	양천구 신정동	2,013	2,013						
		가-3	양천구 신정동	495	495						가-3	양천구 신정동	495	495						
		가-4	양천구 신정동	94	94						가-4	양천구 신정동	94	94						
조 경 시 설	소계				3,655	3,655				18			672	672					7	감) 2,983㎡
	정자	①	전지역							16	①	휴게소 내 (마-13) 광장 내 (가-2)							2	
	스탠드	나	양천구 신정동	485	485						나	양천구 신정동	485	485						
	자연학습장	다	3개소	2,696	2,696															시설변경 (조경→교양)
		다-1	양천구 신정동	297	297															
		다-2	양천구 신정동	1,263	1,263															시설변경 (조경→교양)
		다-3	구로구 고척동	1,136	1,136															폐지
	조류관찰장	라	양천구 신정동	89	89														폐지	
	생태연못	하	구로구 고척동	385	385						하	양천구 신정동	187	187						감) 198㎡
	그늘시렁	②	전지역							2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 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 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앞음벽	㉔	전지역								㉔	휴게소 내 (마-22)								3			
	파고라	㉕	전지역								㉕	휴게소 내 (마-21,22)								2			
휴 양 시 설	소 계			2,996	2,996		1동	167.64	167.64	99			5,035	5,035		1동	167.64	167.64	8	증) 2,039㎡			
	휴게소	마	10개소	2,396	2,396							15개소	4,435	4,435							증) 2,039㎡		
		마-1	양천구 신정동	123	123						마-1	양천구 신정동	123	123									
		마-2	양천구 신정동	450	450						마-2	양천구 신정동	450	450									
		마-3	양천구 신정동	765	765						마-3	양천구 신정동	765	765									
		마-4	양천구 신정동	96	96																폐지		
		마-5	양천구 신정동	290	290						마-5	양천구 신정동	290	290									
		마-6	양천구 신정동	349	349						마-6	양천구 신정동	349	349									
		마-7	구로구 고척동	236	236																폐지		
		마-8	구로구 고척동	29	29																폐지		
		마-9	구로구 고척동	29	29																폐지		
		마-10	구로구 고척동	29	29																폐지		
												마-11	구로구 고척동	194	194							신설(현황)	
												마-12	구로구 고척동	470	470							신설(현황)	
												마-13	구로구 고척동	356	356							신설(현황)	
												마-14	양천구 신정동	190	190							증) 190㎡ 시설변경 (놀이터→ 휴게소) (마-4→마-14)	
												마-15	양천구 신정동	437	437							신설(현황)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 양 시 설	휴게소										마-1 6	양천구 신정동	172	172						신설(현황)
											마-1 7	양천구 신정동	88	88						신설(현황)
											마-1 8	양천구 신정동	263	263						신설(현황)
											마-1 9	구로구 고척동	88	88						신설(현황)
											마-2 0	양천구 신정동	200	200						신설(현황)
	경로당	1	양천구 신정동	600	600	연외조 슬라브	1동	167.64	167.64		1	양천구 신정동	600	600	연외조 슬라브	1동	167.64	167.64		
	야외탁자	③	전지역							8	③	휴게소 내 (마-22)							6	
	장의자	④	전지역							91	④	휴게소 내 (마-22)							2	
유 희 시 설	소 계			1,674	1,674					16			893	893						감) 781㎡
	어린이 놀이터	바	5개소	1,674	1,674						바	3개소	893	893						감) 781㎡
		바-1	양천구 신정동	280	280															폐지
		바-2	양천구 신정동	368	368						바-2	양천구 신정동	368	368						
		바-3	양천구 신정동	292	292						바-3	양천구 신정동	292	292						
		바-4	양천구 신정동	437	437														감) 437㎡ 시설변경 (놀이터→ 휴게소) (바-4→마-14)	
		바-5	양천구 신정동	297	297						바-5	양천구 신정동	233	233						감) 64㎡
	조합놀이대	⑤	전지역							5									폐지	
	놀이기구	⑥	전지역							11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타 시설	소 계			16,409	16,409					18			15,047	15,047					5	감) 1,362㎡
	다목적 운동장	사	구로구 고척동	7,095	7,095						사	구로구 고척동	5,101	5,101						감) 1,994㎡
	체력 단련장	아	7개소	5,262	5,262						아	7개소	5,437	5,437						증) 175㎡
		아-1	양천구 신정동	116	116															폐지
		아-2	양천구 신정동	279	279						아-2	양천구 신정동	279	279						
		아-3	양천구 신정동	398	398						아-3	양천구 신정동	398	398						
		아-4	양천구 신정동	214	214															감) 214㎡ 시설변경 (체력단련장→ 유아동네숲터) (아-4→더-2)
		아-5	양천구 신정동	490	490						아-5	양천구 신정동	490	490						
		아-6	양천구 신정동	3,548	3,548						아-6	양천구 신정동	3,548	3,548						
		아-7	구로구 고척동	217	217															폐지
											아-8	양천구 신정동	169	169						신설(현황)
											아-9	양천구 신정동	115	115						신설(현황)
										아-10	양천구 신정동	438	438						신설(현황)	
	배드민턴장										너	2개소	1,029	1,029						
											너-1	양천구 신정동	464	464						증) 464㎡ 시설변경 (농구장→ 배드민턴장) (자→너-1)
											너-2	양천구 신정동	565	565						신설(현황)
	농구장	자	양천구 신정동	464	464															감) 464㎡ 시설변경 (농구장→ 배드민턴장) (자→너-1)
											저	양천구 신정동	218	218						증) 218㎡ 시설변경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건축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건축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건강지압로→ 농구장) (카-2→자)
	테니스장	차	구로구 고척동	2,347	2,347						차	구로구 고척동	586	586					감) 1,761㎡ 시설변경 (테니스장→ 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차→6,차)
	실내테니스 장									6	구로구 고척동	1,545	1,545					증) 1,545㎡ 시설변경 (테니스장→ 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차→6,차)	
	체력단련시 설	㉑	전지역						18	㉑	휴게소 내 (마-22)							5	
	건강지압로	카	2개소	203	203						카	양천구 신정동	93	93					감) 110㎡
		카-1	양천구 신정동	68	68														부호변경 (카-1→카)
		카-2	양천구 신정동	135	135													감) 135㎡ 시설변경 (건강지압로→ 농구장) (카-2→자)	
	게이트볼장	타	양천구 신정동	1,038	1,038						타	양천구 신정동	1,038	1,038					
교 양 시 설	소 계			6,700	6,700		2동	2,813.11	8,596.45				17,847	17,847		2동	2,813.11	8,596.45	증) 11,147㎡
	다목적회관	2	양천구 신정동	6,400	6,400		지하1 지상3 층 1동	2,630	8,290		2	양천구 신정동	6,400	6,400		지하1 지상3 층 1동	2,630	8,290	
	아외무대	3	양천구 신정동	300	300	철근 철골	지하1 지상1 층	183.11	306.45		3	양천구 신정동	300	300	철근 철골	지하1 지상1 층	183.11	306.45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유아동네숲터										더	2개소	577	577							
											더-1	양천구 신정동	292	292						신설(현황)	
											더-2	양천구 신정동	285	285						증) 285㎡ 시설변경 (체력단련장→ 유아동네숲터) (아-4→더-2)	
	자연학습장										다	3개소	1,992	1,992							
											다-1	양천구 신정동	297	297						시설변경 (조경→교양)	
											다-2	양천구 신정동	1,263	1,263						시설변경 (조경→교양)	
	고인돌유적지										다-3	양천구 신정동	432	432						신설(현황)	
											러	구로구 고척동	31	31						신설(현황)	
	유아숲체험원										머	3개소	8,547	8,547							
											머-1	구로구 고척동	3,413	3,413						신설(현황)	
											머-2	양천구 신정동	2,633	2,633						신설(현황)	
											머-3	양천구 신정동	2,501	2,501						신설(현황)	
편 의 시 설	소 계			286	286		1동	33	33	4			454	454		2동	151.68	151.68		증) 168㎡	
	화장실	4	양천구 신정동	100	100	조적조	1동	33	33		4	3개소	172	172						증) 72㎡	
											4-1	양천구 신정동	100	100	조적조	1동	97.68	97.68		부호변경 (4→4-1)	
											4-2	양천구 신정동	54	54	연와조	1동	54	54		신설(현황)	
											4-3	양천구 신정동	18	18						신설(현황)	
	음수대		전지역							3										폐지	
	시계탑		전지역							1										폐지	
	약수터	파	2개소	186	186						파	3개소	282	282							증) 96㎡
		파-1	양천구 신정동	46	46						파-1	양천구 신정동	46	46							
		파-2	양천구 신정동	140	140						파-2	양천구 신정동	140	140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파-3	양천구 신정동	96	96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현황)
관 리 시 설	소 계			628	628		3동	263	263				1,543	1,543		2동	107	107		증) 915㎡
	관리사무소	5	3개소	628	628		3동	263	263		5	4개소	874	874		2동	107	107		증) 246㎡
		5-1	양천구 신정동	421	421	조적 조	1동	156	156		5-1	양천구 신정동	354	354						감) 67㎡
		5-2	양천구 신정동	154	154	조적 조	1동	54	54		5-2	양천구 신정동	154	154	조적 조	1동	54	54		
		5-3	구로구 고척동	53	53	조적 조	1동	53	53		5-3	구로구 고척동	53	53	조적 조	1동	53	53		
											5-4	양천구 신정동	313	313						신설(현황)
	낙엽집하장									버	구로구 고척동	669	669						신설(현황)	
녹지 및 기타	소 계		548,548.9									569,952.7							증) 21,403.8㎡	
	녹지 · 기타		548,548.9										569,952.7							증) 21,403.8㎡

다. 도로조서 - 양천구+구로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7,976	19,513.3				
변경					13,703	33,633				
당초 폐지	소로	1	1	10	13	130	진입로	대로 3-88	관리사무소 5-1	폐지
당초 변경	소로	3	1	7	297 334	2,079 2,35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1	
당초 변경	소로	3	2	7	120 115	840 802	진입로	소로 3-1	산책로-12	
당초 변경	소로	3	3	7	130 174	780 1,220	연결로	휴게소 마-5 공원경계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변경	소로	3	4	4~6	176 192	771 962	진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변경	소로	3	5	4 2	120 115	480 22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소로 3-6 녹지	
당초 변경	소로	3	6	4 3	197 117	788 352	진입로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2	광장 가-2 산책로 1	
당초 변경	소로	3	7	4 4	28 28	112 11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산책로-4 산책로 47	
당초 변경	소로	3	8	3 4	180 198	540 79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6	
당초 변경	소로	3	9	5 8	296 399	1,578 2,912	진입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폐지	소로	3	10	3.5	9	30	진입도로	공원경계	소로 3-9	폐지
당초 변경	산책로		1	2	207 197	414 393	산책로	소로 3-6 산책로 43	휴게소 마-3 휴게소 마-3	
당초 변경	산책로		2	2	436 441	872 881	산책로	휴게소 마-3	휴게소 마-6	
당초 변경	산책로		3	2	235 269	470 538	산책로	소로 3-8	녹지	
당초 변경	산책로		4	2	113 95	226 189	산책로	소로 3-7 산책로 49	산책로-2 산책로-2	
당초 변경	산책로		5	2	138 106	276 212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 2	공원경계 산책로 50	
당초 변경	산책로		6	2	91 94	182 187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2	
당초 변경	산책로		7	2	390 452	780 96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3	공원경계 소로 3-9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8	2	98	196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9	
변경								산책로-7	휴게소 마-12	
당초	산책로		9	2	934	1,868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4	
변경					742	1,483		휴게소 마-12	광장 가-5	
당초	산책로		10	2	168	336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9	
변경				1.5	171	256		소로 3-1	체력단련장 아-9	
당초	산책로		11	2	211	422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	
변경				3	221	664				
당초	산책로		12	2	271	542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변경				3	266	797				
당초	산책로		13	2	230	440	산책로	소로 1-1	산책로-9	
변경				1.5	207	311		녹지	산책로 9	
당초	산책로		14	1.5	188	282	산책로	소로 3-4	공원경계	
변경				3	128	385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15	1.5	362	543	산책로	산책로-14	휴게소 마-2	
변경				2	460	921		산책로 54	휴게소 마-1	
당초	산책로		16	1.5	160	240	산책로	광장 가-3	휴게소 마-3	
변경				2	103	206				
당초	산책로		17	1.5	350	525	산책로	광장 가-3	산책로-3	
변경					335	503				
당초	산책로		18	1.5	36	54	산책로	산책로-17	공원경계	
변경					156	234		산책로 16	산책로 17	
당초	산책로		19	2	258	387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2	
변경					225	450		소로 3-8	산책로 2	
당초	산책로		20	1.5	78	117	산책로	산책로-9	공원경계	
변경					65	98				
당초	산책로		21	1.5	134	201	산책로	산책로-9	공원경계	구역편입
변경					124	186				
당초	산책로		22	1.5	36	54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변경					33	50				
당초	산책로		23	1.5	26	39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당초	산책로		24	1	170	170	산책로	산책로-2	다목적회관 2	
변경					154	154		산책로-2	산책로 52	
당초	산책로		25	1	212	212	산책로	놀이터 바-5	산책로-9	
변경					86	86		공원경계	산책로-9	
당초	산책로		26	1	54	54	산책로	약수터 파-2	산책로-9	
변경					51	51				
당초	산책로		27	1.8	145	256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9	
변경					86	154		소로 3-9	산책로-45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28	1.8	143	257.4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33	
변경				2	116	232		휴게소 마-12	소로 3-9	
당초	산책로		29	1.8	88.7	159.7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7	
변경				2	142	283				
당초	산책로		30	1.8	128	230.4	산책로	산책로-33	산책로-29	폐지
폐지					-	-				
당초	산책로		31	1.8	34.3	61.8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30	폐지
폐지					-	-				
당초	산책로		32	1.5	12	23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9	폐지
폐지					-	-				
당초	산책로		33	1.5	108	162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27	폐지
폐지					-	-				
당초	산책로		34	2	8	19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9	폐지
폐지					-	-				
당초	산책로		35	2	36	72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7	
당초	산책로		36	2	121	242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3	
변경					45	99		산책로 3	녹지	
신설	산책로		37	2	104	205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40	
신설	산책로		38	2	37	74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53	
신설	산책로		39	2	132	263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54	
신설	산책로		40	2	290	580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54	
신설	산책로		41	1.5	113	169	산책로	산책로-40	공원경계	
신설	산책로		42	2	94	187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43	
신설	산책로		43	2	136	272	산책로	소로 3-6	공원경계	
신설	산책로		44	2	68	137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1	
신설	산책로		45	4	77	307	산책로	소로 3-9	휴게소 마-12	
신설	산책로		46	1.2	92	116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7	
신설	산책로		47	2	19	38	산책로	소로 3-7	산책로 4	
신설	산책로		48	2	114	228	산책로	산책로 47	산책로 49	
신설	산책로		49	2	1,182	2,363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산책로		50	2	303	605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67	
신설	산책로		51	2	23	47	산책로	산책로 50	공원경계	
신설	산책로		52	2	203	406	산책로	산책로 50	공원경계	
신설	산책로		53	2	79	158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40	
신설	산책로		54	2	329	65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5	
신설	산책로		55	2	11	23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5	
신설	산책로		56	2	7	14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 15	
신설	산책로		57	2	6	12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43	
신설	산책로		58	2	174	347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59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59	2	900	1,801	산책로	산책로 12	도자구역 경계	
신설	산책로		60	2	29	57	산책로	휴게소 마-13	산책로 61	
신설	산책로		61	2	802	1,604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 62	
신설	산책로		62	2	359	718	산책로	산책로 61	산책로 44	
신설	산책로		63	2	268	536	산책로	산책로 61	공원경계	
신설	산책로		64	2	46	92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9	
신설	산책로		65	2	40	80	산책로	녹지	산책로 13	
신설	산책로		66	2	148	296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9	
신설	산책로		67	2	98	196	산책로	산책로 50	산책로 66	
신설	산책로		68	1.5	18	35	산책로	산책로 67	다목적회관 2	

가. 총괄표(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일대) - 양천구

구 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478,015.4	52,907	6동	3,186.43	8,969.77	2	
기 반 시 설	소계	23,922	23,922					
	도로	20,617	20,617					
	광장	3,305	3,305					
조경시설		672	672				2	
휴양시설		3,927	3,927	1동	167.64	167.64		
유흥시설		893	893					
운동시설		7,815	7,815					
교양시설		14,403	14,403	2동	2,813.11	8,596.45		
편익시설		454	454	2동	151.68	151.68		
관리시설		821	821	1동	54	54		
녹지 및 기타		425,108.4						
시 설 을 (법정 40%)		(52,907 / 478,015.4) × 100 = 11.07%						
건 폐 을 (법정 10%)		(3,186.43 / 478,015.4) × 100 = 0.67%						

나. 시설조서 - 양천구

구 분	시설명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478,015.4	52,907		8동	3,330.75	9,114.09	2	
기 반 시 설	소 계			23,922	23,922						
	도로		전지역	20,617	20,617						
	광장	가	4개소	3,305	3,305						
		가-1	양천구 신정동	703	703						
		가-2	양천구 신정동	2,013	2,013						
		가-3	양천구 신정동	495	495						
		가-4	양천구 신정동	94	94						
조 경 시 설	소계			672	672					2	
	정자	①	휴게소 내 (마-13) 광장 내 (가-2)							2	
	스탠드	나	양천구 신정동	485	485						
	생태연못	하	양천구 신정동	187	187						
휴 양 시 설	소계			3,927	3,927		1동	167.64	167.64		
	휴게소	마	11개소	3,327	3,327						
		마-1	양천구 신정동	123	123						
		마-2	양천구 신정동	450	450						
		마-3	양천구 신정동	765	765						
		마-5	양천구 신정동	290	290						
		마-6	양천구 신정동	349	349						
		마-14	양천구 신정동	190	190						

구 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휴게소	마-15	양천구 신정동	437	437						신설(현황)
		마-16	양천구 신정동	172	172						신설(현황)
		마-17	양천구 신정동	88	88						신설(현황)
		마-18	양천구 신정동	263	263						신설(현황)
		마-20	양천구 신정동	200	200						신설(현황)
	경로당	1	양천구 신정동	600	600	연와조슬라브	1동	167.64	167.64		
유치시설	소계			893	893						
	어린이놀이터	바	3개소	893	893						
		바-2	양천구 신정동	368	368						
		바-3	양천구 신정동	292	292						
		바-5	양천구 신정동	233	233						
야외시설	소 계			7,815	7,815						
	체력단련장	아	7개소	5,437	5,437						
		아-2	양천구 신정동	279	279						
		아-3	양천구 신정동	398	398						
		아-5	양천구 신정동	490	490						
		아-6	양천구 신정동	3,548	3,548						
		아-8	양천구 신정동	169	169						신설(현황)
		아-9	양천구 신정동	115	115						신설(현황)
		아-10	양천구 신정동	438	438						신설(현황)
	배드민턴장	너	2개소	1,029	1,029						
		너-1	양천구 신정동	464	464						
		너-2	양천구 신정동	565	565						
	농구장	자	양천구 신정동	218	218						
	건강지압로	카	양천구 신정동	93	93						
	게이트볼장	타	양천구 신정동	1,038	1,038						

구 분	시설명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소 계			14,403	14,403		2동	2,813.11	8,596.45	
	다목적회관	2	양천구 신정동	6,400	6,400		지하1 지상3층 1동	2,630	8,290	
	야외무대	3	양천구 신정동	300	300	철근 철골	지하1 지상1층	183.11	306.45	
	유아동네숲터	더	2개소	577	577					
		더-1	양천구 신정동	292	292					신설(현황)
		더-2	양천구 신정동	285	285					신설(현황)
	자연학습장	다	3개소	1,992	1,992					
		다-1	양천구 신정동	297	297					
		다-2	양천구 신정동	1,263	1,263					
		다-3	양천구 신정동	432	432					신설(현황)
	유아숲체험원	머	2개소	5,134	5,134					
		머-2	양천구 신정동	2,633	2,633					신설(현황)
		머-3	양천구 신정동	2,501	2,501					신설(현황)
편 의 시 설	소 계			454	454		2동	151.68	151.68	
	화장실	4	3개소	172	172					
		4-1	양천구 신정동	100	100	조적조	1동	97.68	97.68	
		4-2	양천구 신정동	54	54	연외조	1동	54	54	신설(현황)
		4-3	양천구 신정동	18	18					신설(현황)
	약수터	파	3개소	282	282					
		파-1	양천구 신정동	46	46					
		파-2	양천구 신정동	140	140					
		파-3	양천구 신정동	96	96					신설(현황)
관 리 시 설	소계			821	821		1동	54	54	
	관리사무소	5	3개소	821	821		1동	54	54	
		5-1	양천구 신정동	354	354					
		5-2	양천구 신정동	154	154	조적조	1동	54	54	
		5-4	양천구 신정동	313	313					
녹지 및 기타	소 계			425,108.4						
	녹지 · 기타			425,108.4						

다. 도로조서 - 양천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9,067	20,617				
	소로	3	1	7	124	86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1	
	소로	3	2	7	74	517	진입로	소로 3-1	산책로-12	
	소로	3	3	7	174	1,220	연결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소로	3	4	4~6	192	962	진입로	광장 가-1	광장 가-2	
	소로	3	5	2	115	229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소로	3	6	3	117	352	연결로	광장 가-2	산책로 1	
	소로	3	7	4	28	11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7	
	소로	3	8	4	198	79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7	
	산책로		1	2	197	393	산책로	산책로 43	휴게소 마-3	
	산책로		2	2	441	881	산책로	휴게소 마-3	휴게소 마-6	
	산책로		3	2	269	538	산책로	소로 3-8	녹지	
	산책로		4	2	95	189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2	
	산책로		5	2	106	212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 50	
	산책로		6	2	94	187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2	
	산책로		7	2	342	683	산책로	산책로-13	소로 3-9	
	산책로		8	2	92	184	산책로	산책로-7	휴게소 마-12	
	산책로		9	2	540	1,081	산책로	휴게소 마-12	광장 가-5	
	산책로		10	1.5	115	171	산책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아-9	
	산책로		11	3	146	439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	
	산책로		12	3	12	41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산책로		13	1.5	207	311	산책로	녹지	산책로-9	
	산책로		14	3	128	385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산책로		15	2	460	921	산책로	산책로 54	휴게소 마-1	
	산책로		16	2	103	206	산책로	광장 가-3	휴게소 마-3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산책로		17	1.5	335	503	산책로	광장 가-3	산책로-3	
	산책로		18	1.5	156	234	산책로	산책로-16	산책로-17	
	산책로		19	1.5	225	450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2	
	산책로		20	1.5	65	98	산책로	산책로-9	공원경계	
	산책로		22	1.5	33	50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산책로		23	1.5	26	39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산책로		24	1	154	154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 52	
	산책로		25	1	86	8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9	
	산책로		26	1	51	51	산책로	약수터 파-2	산책로-9	
	산책로		35	2	36	72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7	
	산책로		36	2	45	99	산책로	산책로-3	녹지	
	산책로		37	2	104	205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 40	
	산책로		38	2	37	74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53	
	산책로		39	2	132	263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54	
	산책로		40	2	290	580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54	
	산책로		41	1.5	113	169	산책로	산책로-40	공원경계	
	산책로		42	2	94	187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43	
	산책로		43	2	136	272	산책로	소로 3-6	공원경계	
	산책로		47	2	19	38	산책로	소로 3-7	산책로 4	
	산책로		48	2	114	228	산책로	산책로 47	산책로 49	
	산책로		49	2	1,182	2,363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산책로		50	2	303	605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67	
	산책로		51	2	23	47	산책로	산책로 50	공원경계	
	산책로		52	2	203	406	산책로	산책로 50	공원경계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산책로		53	2	79	158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40	
	산책로		54	2	329	65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5	
	산책로		55	2	11	23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5	
	산책로		56	2	7	14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 15	
	산책로		57	2	6	12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43	
	산책로		65	2	40	80	산책로	녹지	산책로 13	
	산책로		66	2	148	296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9	
	산책로		67	2	98	196	산책로	산책로 50	산책로 66	
	산책로		68	1.5	18	35	산책로	산책로 67	다목적회관 2	

가. 총괄표(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일대) - 구로구

구 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170,366.3	25,522	1동	53	53	18	
기 반 시 설	소계	13,016	13,016					
	도로	13,016	13,016					
조경시설							5	
휴양시설		1,108	1,108				8	
유흥시설								
운동시설		7,232	7,232				5	
교양시설		3,444	3,444					
편익시설								
관리시설		722	722	1동	53	53		
녹지 및 기타		144,844.3						
시 설 을 (법정 40%)		(25,522 / 170,366.3) × 100 = 14.98%						
건 폐 을 (법정 10%)		(53 / 170,366.3) × 100 = 0.03%						

나. 시설조서 - 구로구

구 분	시설명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170,366.3	25,522		1동	53.0	53.0	19	
기 반 시 설	소 계			13,016	13,016						
	도로		전지역	13,016	13,016						
조 경 시 설	소계									5	
	앞음벽	⑧	휴게소 내 (마-22)							3	
	파고라	⑨	휴게소 내 (마-21,22)							2	
휴 양 시 설	소 계			1,108	1,108					8	
	휴게소	마	4개소	1,108	1,108						
		마-11	구로구 고척동	194	194						신설(현황)
		마-12	구로구 고척동	470	470						신설(현황)
		마-13	구로구 고척동	356	356						신설(현황)
		마-19	구로구 고척동	88	88						신설(현황)
	야외탁자	③	휴게소 내 (마-20)							6	
	장의자	④	휴게소 내 (마-20)							2	
오 락 시 설	소 계			7,232	7,232					5	
	다목적운동장	사	구로구 고척동	5,101	5,101						
	테니스장	차	구로구 고척동	586	586						
	실내테니스장	6	구로구 고척동	1,545	1,545						
	체력단련시설	⑦	휴게소 내 (마-22)							5	
교 양 시 설	소 계			3,444	3,444						
	고인돌유적지	러	구로구 고척동	31	31						신설(현황)
	유아숲체험원	머	1개소	3,413	3,413						
		머-1	구로구 고척동	3,413	3,413						신설(현황)

구 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722	722		1동	53	53		
	관리사무소	5	1개소	53	53		1동	53	53		
		5-3	구로구 교척동	53	53	조적조	1동	53	53		
	낙엽집하장	버	구로구 교척동	669	669						신설(현황)
녹지 및 기타	소 계			144,844.3							
	녹지 · 기타			144,844.3							

다. 도로조서 - 구로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4,636	13,016				
	소로	3	1	7	210	1,49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1	
	소로	3	2	7	41	285	진입로	소로 3-1	산책로-12	
	소로	3	9	8	399	2,912	진입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산책로		7	2	110	277	산책로	산책로-13	소로 3-9	
	산책로		8	2	6	12	산책로	산책로-7	휴게소 마-12	
	산책로		9	2	202	402	산책로	휴게소 마-12	광장 가-5	
	산책로		10	1.5	56	85	산책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아-9	
	산책로		11	3	75	22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	
	산책로		12	3	254	756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산책로		21	1.5	124	186	산책로	산책로-9	공원경계	
	산책로		27	1.8	86	154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45	
	산책로		28	2	116	232	산책로	휴게소 마-12	소로 3-9	
	산책로		29	2	142	283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7	
	산책로		44	2	68	137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1	
	산책로		45	4	77	307	산책로	소로 3-9	휴게소 마-12	
	산책로		46	1.2	92	116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7	
	산책로		58	2	174	347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59	
	산책로		59	2	900	1,801	산책로	산책로 12	도자구역 경계	
	산책로		60	2	29	57	산책로	휴게소 마-13	산책로 61	
	산책로		61	2	802	1,604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 62	
	산책로		62	2	359	718	산책로	산책로 61	산책로 44	
	산책로		63	2	268	536	산책로	산책로 61	공원경계	
	산책로		64	2	46	92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9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3,000

계남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계남근린공원

■ 명세

구분	이칭	부호	면적(㎡)	시정면적(㎡)	공적용(%)	비고
기타시설	기타시설	000	715.2	29,583.3	185	
	기타시설	001	2,013.3	22,318.3		
	기타시설	002	1,653.3	19,813.3		
	기타시설	003	700	700		
	기타시설	004	2,013.3	2,013.3		
기타시설	기타시설	005	485	485		
	기타시설	006	84	84		
	기타시설	007	3,655	3,655	18	
	기타시설	008	485	485	16	
	기타시설	009	297	297		
기타시설	기타시설	010	1,260	1,260		
	기타시설	011	1,136	1,136		
	기타시설	012	89	89		
	기타시설	013	385	385		
	기타시설	014	2,996	2,996	99	
기타시설	기타시설	015	120	120		
	기타시설	016	450	450		
	기타시설	017	765	765		
	기타시설	018	90	90		
	기타시설	019	290	290		
기타시설	기타시설	020	349	349		
	기타시설	021	256	256		
	기타시설	022	29	29		
	기타시설	023	29	29		
	기타시설	024	600	600		
기타시설	기타시설	025	—	—	8	
	기타시설	026	—	—	91	
	기타시설	027	1,674	1,674	16	
	기타시설	028	280	280		
	기타시설	029	368	368		
기타시설	기타시설	030	280	280		
	기타시설	031	437	437		
	기타시설	032	297	297		
	기타시설	033	—	—	5	
	기타시설	034	—	—	11	
기타시설	기타시설	035	16,409	16,409	18	
	기타시설	036	7,085	7,085		
	기타시설	037	116	116		
	기타시설	038	279	279		
	기타시설	039	398	398		
기타시설	기타시설	040	214	214		
	기타시설	041	480	480		
	기타시설	042	3,549	3,549		
	기타시설	043	277	277		
	기타시설	044	464	464		
기타시설	기타시설	045	2,347	2,347		
	기타시설	046	68	68		
	기타시설	047	136	136		
	기타시설	048	1,028	1,028	18	
	기타시설	049	6,700	6,700		
기타시설	기타시설	050	6,400	6,400		
	기타시설	051	300	300		
	기타시설	052	286	286	4	
	기타시설	053	100	100		
	기타시설	054	—	—	3	
기타시설	기타시설	055	—	—	1	
	기타시설	056	46	46		
	기타시설	057	140	140		
	기타시설	058	628	628		
	기타시설	059	421	421		
기타시설	기타시설	060	164	164		
	기타시설	061	50	50		
	기타시설	062	800,548.9	800,548.9		
	기타시설	063	800,548.9	800,548.9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3,000



계남근린공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42호

개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호(1997.2.6.)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0호(2013.4.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호-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공원 경계, 면적 등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함

2.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산53-3번지 일대

3. 면 적 : 265,577.4㎡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구로구 공원녹지과(☎ 02-860-2396)

개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산53-3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411,694.0	24,957.0	3	961.25	961.25	202	265,577.4	22,549.4	3	961.25	961.25	1	감) 2,407.6㎡
기 반 시 설	소 계	18,686.9					12,522	12,522					감) 6,164.9㎡
	도 로	18,341.4					12,106	12,106					감) 6,235.4㎡
	광 장	345.5					416	416					증) 70.5㎡
조 경 시 설	737.4	737.4	1	42.0	42.0	7	214	214	1	42.0	42.0	1	감) 523.4㎡
휴 양 시 설	1,485.1	1,485.1				109	2,922.9	2,922.9					증) 1,437.8㎡
유 희 시 설	-	-					-	-					
운 동 시 설	3,855.8	3,855.8	1	844.0	844.0	86	3,873.7	3,873.7	1	844.0	844.0		증) 17.9㎡
교 양 시 설	-	-					2,514	2,514					증) 2,514㎡
편 익 시 설	191.8	191.8	1	75.25	75.25		456.8	456.8	1	75.25	75.25		증) 265㎡
관 리 시 설	-	-					46	46					증) 46㎡
녹지 및 기타	386,737.0						243,028						감) 143,709㎡
시 설 율 (법정 40%)	$(24,957.0\text{㎡} / 411,694\text{㎡}) \times 100\% = 6.06\%$						$(22,549.4\text{㎡} / 265,577.4\text{㎡}) \times 100\% = 8.49\%$						
건 폐 율 (법정 10%)	$(961.25\text{㎡} / 411,694\text{㎡}) \times 100\% = 0.23\%$						$(961.25\text{㎡} / 265,577.4\text{㎡}) \times 100\% = 0.36\%$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411,694.0	24,957.0		3	961.25		202			265,577.4	22,549.4		3	961.25	961.25	1	감) 2,407.6㎡
기 반 시 설	소 계			18,686.9	18,686.9								12,522	12,522						감) 6,164.9㎡
	도 로			18,341.4	18,341.4								12,106	12,106						감) 6,235.4㎡
	진입광장	자	개봉동 산60-10임	345.5	345.5															증) 70.5㎡
		자-1	개봉동 산60-10임	(279.4)	(279.4)															폐지
		자-2	개봉동 산60-10임	(66.1)	(66.1)						자	개봉동 산60-10임	416	416						증) 349.9㎡ 부호변경 (자-2→자)
조 경 시 설	소 계	-	-	737.4	737.4		1	42	42	7	-	-	214	214		1	42	42	1	감) 523.4㎡
	파고라	①	4개소	(114.0)	(114.0)					6										폐지
		①-1	개봉동 산60-2임	(16.0)	(16.0)	목재	4x4			(1)										폐지(오류보정)
		①-2	개봉동 산60-11임	(16.0)	(16.0)	목재	4x4			(1)										폐지(오류보정)
		①-3	개봉동 산53-34임	(16.0)	(16.0)	목재	4x4			(1)										폐지(오류보정)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①-4	개봉동 산60-2임	(16.0)	(16.0)	목재	4x4			(1)										폐지(오류보정)
		①-5	개봉동 298-3전	(25.0)	(25.0)	목재	5x5			(1)										폐지(오류보정)
		①-6	개봉동 298-3전	(25.0)	(25.0)	목재	5x5			(1)										폐지(오류보정)
	팔각정자	1		(42.0)	(42.0)	목재 +석재	1	42	42	(1)	1	개봉동 산53-3공	42	42	목재 +석재	1	42	42	1	
	생태연못	사	개봉동 산61-6	172.0	172.0						사	개봉동 산61-6	172	172						
	피크닉마당	차	개봉동 298-3전	565.4	565.4	잔디														폐지
	비상주차장	아-2	개봉동 298-3전	(39.6)	(39.6)	잔디 블럭														폐지(오류보정)
휴양시설	소 계			1,485.1	1,485.1					109			2,922.9	2,922.9						증) 1,437.8㎡
	데크침터	가	2개소	195.3	195.3						가	4개소	478.7	478.7						증) 283.4㎡
		가-1	개봉동 산59-1임	(151)	(151)	데크					가-1	개봉동 산59-1임	151	151	데크					
		가-2	오류동 산23-10임	(44.3)	(44.3)	데크					가-2	오류동 산23-10임	44.3	44.3	데크					
											가-3	개봉동 산59-9임	117.6	117.6						증) 117.6㎡ 시설구분변경 (운동→휴양) 시설명변경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명	쉼터																			(체력단련장→데크 쉼터) 부호변경 (마-2→가-3)	
										가-4	천왕동 산8-5	165.8	165.8							신설	
		나	8개소	1,166.4	1,166.4						나	10개소	2,444.2	2,444.2							증) 1,154.4㎡ (변경전 면적 합계 오류 1,289.8㎡)
		나-1	개봉동 산53-3임	(283.2)	(283.2)						나-1	개봉동 산53-3임	283.2	283.2							
		나-2	개봉동 산54-3임	(13.1)	(13.1)						나-2	개봉동 산54-3임	13.1	13.1							
		나-3	오류동 산23-10임	(136.2)	(136.2)						나-3	오류동 산23-10임	136.2	136.2							
		나-4	개봉동 산60-2임	(359.3)	(359.3)						나-4	개봉동 산60-2임	359.3	359.3							
		나-5	개봉동 산8-6임	(56.7)	(56.7)																폐지(오류보정)
		나-6	개봉동 산60-9임	(238.7)	(238.7)						나-6	개봉동 산60-9임	238.7	238.7							
		나-7	개봉동 산60-9임	(20.6)	(20.6)						나-7	개봉동 산60-9임	20.6	20.6							
		나-8	개봉동 산60-11임	(58.6)	(58.6)						나-8	개봉동 산60-11임	58.6	58.6							
		나-9	개봉동 298.3전	(123.4)	(123.4)																폐지(오류보정)
											나-10	개봉동 산55-17임	158.5	158.5							증) 158.5㎡ 시설구분 변경 (운동→휴양) 시설명 변경 (체력단련장→쉼터) 부호 변경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마-3→나-10)
											나-1 1	개봉동 산53-34임	444.0	444.0						증) 444.0㎡ 시설구분 변경 (운동→휴양) 시설명 변경 (체력단련장→쉼터) 부호 변경 (마-6→나-11)
											나-1 2	개봉동 298-75임	732	732						신설
휴양 시설	등의자	㉔	전지역			목재			60											폐지(오류보정)
	평의자	㉕	전지역			목재			37											폐지(오류보정)
	평상	㉖	전지역			목재			10											폐지(오류보정)
	쉼터	㉗	전지역			목재			2											폐지(오류보정)
야생 시설	소 계			3,855.8	3,855.8	RC조	1층	844.0	844.0	86			3,873.7	3,873.7	RC조	1층	844.0	844.0		증) 17.9㎡
	배드민턴 장										라		1,152	1,152						증) 612㎡
		라	오류동 산54-3임	540	540		3면				라-1	오류동 산54-3임	540	540		3면				부호변경 (라→라-1)
											라-2	개봉동 298-75임	612	612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 단련장	마	전지역	1,675.3	1,675.3						마	전지역	1,081.2	1,081.2							감) 594.1㎡
	마-1	개봉동 산60-1임	(34.4)	(34.4)						마-1	개봉동 산60-1임	34.4	34.4							
	마-2	개봉동 산59-9임	(117.6)	(117.6)																감) 117.6㎡ 시설구분 변경 (운동→휴양) 시설명 변경 (체력단련장→데크 썬터) 부호 변경 (마-2→가-3)
	마-3	개봉동 산55-17임	(158.5)	(158.5)																감) 158.5㎡ 시설구분 변경 (운동→휴양) 시설명 변경 (체력단련장→썬터) 부호 변경 (마-3→나-10)
	마-4	개봉동 산59-9임	(219.7)	(219.7)						마-4	개봉동 산59-9임	219.7	219.7							
	마-5	개봉동 273-7전	(142.7)	(142.7)						마-5	개봉동 273-7전	142.7	142.7							
	마-6	개봉동 산53-34임	(444.0)	(444.0)																감) 444.0㎡ 시설구분 변경 (운동→휴양) 시설명 변경 (체력단련장→썬터) 부호 변경 (마-6→나-1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대바시 시설	체력 단련장	마-7	개봉동 산53-3임	(56.0)	(56.0)						마-7	개봉동 산53-3임	56.0	56.0						
		마-8	개봉동 산60-2임	(280.0)	(280.0)						마-8	개봉동 산60-2임	280.0	280.0						
		마-9	오류동 산60-11임	(93.8)	(93.8)						마-9	오류동 산60-11임	93.8	93.8						
		마-10	오류동 산60-11임	(18.2)	(18.2)														폐지	
		마-11	개봉동 산61-2임	(38.9)	(38.9)						마-11	개봉동 산61-2임	38.9	38.9						
		마-12	개봉동 산60-10임	(71.5)	(71.5)						마-12	개봉동 산60-10임	71.5	71.5						
											마-13	개봉동 298-75	144.2	144.2						신설
	체력단련 기구	㉔	시설부지내						철재										폐지	
	실내 체육관	2	개봉동 298-3	1,640.5	1,640.5	RC조	1층	844.0	844.0		2	개봉동 298-3	1,640.5	1,640.5	RC조	1층	844.0	844.0		
	부설 주차장	아-1	개봉동 298-3	(224.8)	(224.8)															감) 224.8㎡ 시설구분 변경 (운동→편익) 시설명 변경 (부설주차장→주차 장)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개												2,514	2,514						증) 2,514㎡
	유아숲 체험원									타	개봉동 산53-3공	2,482	2,482						신설	
	야외 무대									파	개봉동 298-75임	32	32						신설	
편의시설	소 계			191.8	191.8	철근콘크리트	1층	75.25	75.25				456.8	456.8	철근콘크리트	1층	75.25	75.25		증) 265㎡
	약수터	바	3개소	66.1	66.1						바	2개소	66.1	66.1						
		바-1	개봉동 산55-17임	(41.8)	(41.8)						바-1	개봉동 산53-3공	41.8	41.8						
		바-2	오류동 산23-10임	(24.3)	(24.3)						바-2	오류동 산23-1공	24.3	24.3						
	화장실										3	2개소	137.7	137.7	철근콘크리트	1층	75.25	75.25		증) 12㎡
		3	개봉동 산60-10임	125.7	125.7	철근콘크리트	1층	75.25	75.25		3-1	개봉동 298-75임	125.7	125.7	철근콘크리트	1층	75.25	75.25		부호변경 (3→3-1)
											3-2	개봉동 산53-3공	12	12						신설
	주차장										아	2개소	253	253						증) 25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1	개봉동 298-3	94	94						증) 94㎡ 시설구분 변경 (운동→편익) 시설명 변경 (부설주차장→주차장)
											아-2	개봉동 298-3	159	159						신설
관 리 시 설	소계												46	46						증) 46㎡
	관리사무소										5	개봉동 298-75임	40	40						신설
	유아숲관리사무소										4	개봉동 산53-3공	6	6						신설
녹지 및 기타				386,737.0									243,028							감) 143,709㎡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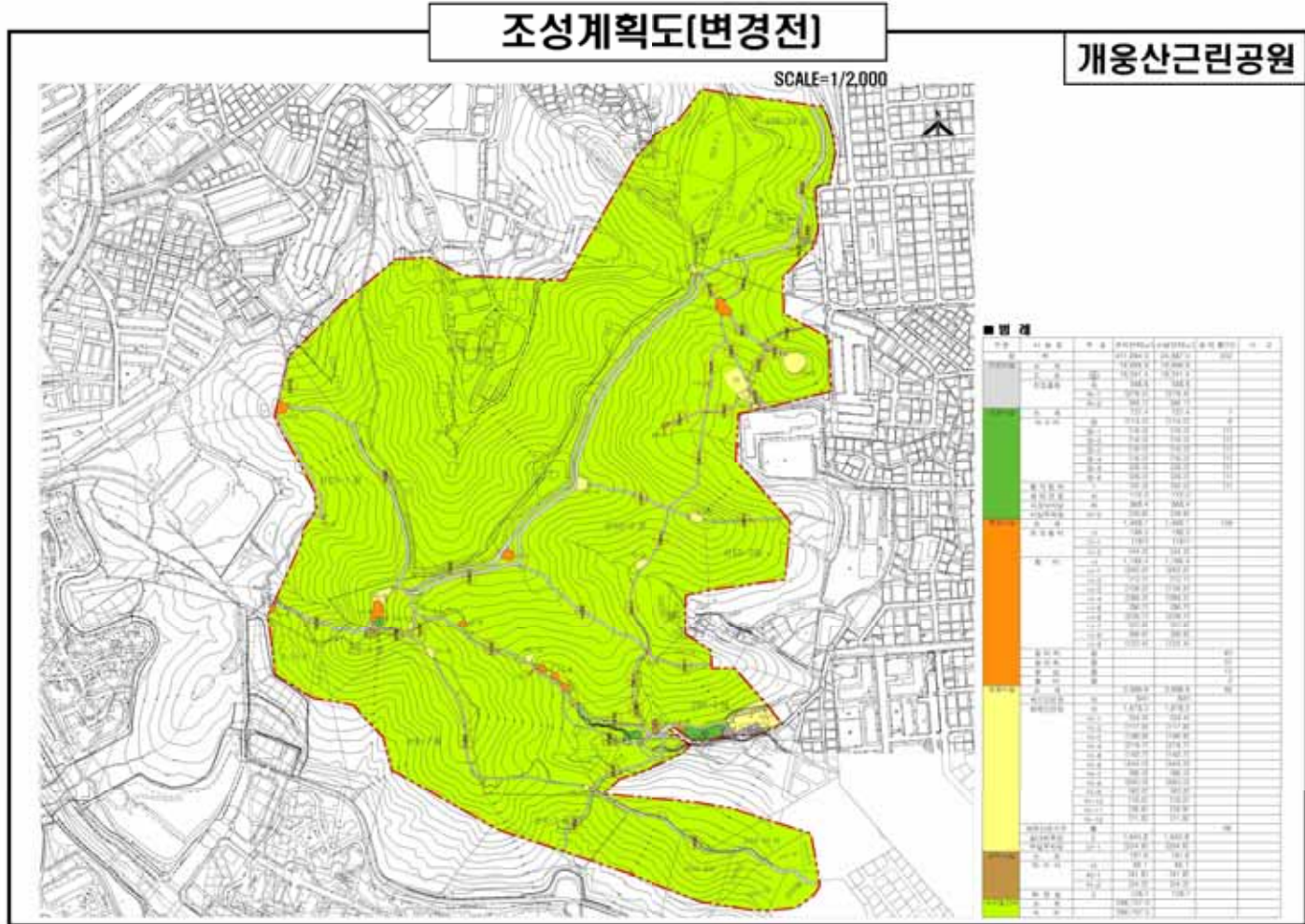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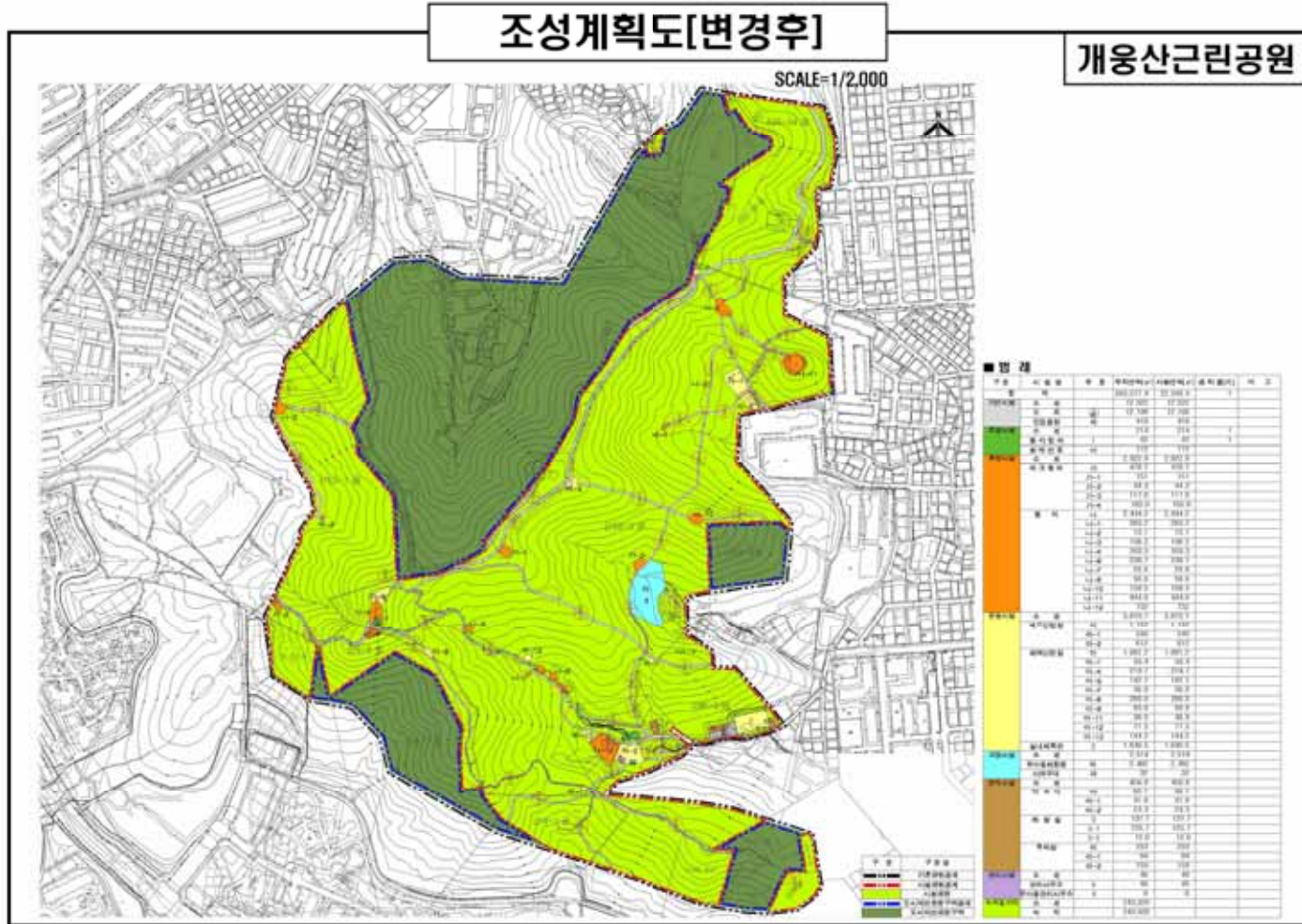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기정				6,675	18,341.4		-	-	-
	변경				5,153	12,251		-	-	-
당초	산책로	1	1.8	65	117.0	진입로	산60-5임	산책로 36	오류보정	
변경				65	117		산책로2	산책로 36		
당초	산책로	2	2.5	125	312.5	부진입로	산책로 23	산58-3임	오류보정	
변경				125	313					
당초	산책로	3	1.8	120	216.0	연결로	산책로 23	산책로 4	오류보정	
변경				106	190					
당초	산책로	4	1.8	90	162.0	연결로	산책로 3	산책로 5	오류보정	
변경				86	154					
당초	산책로	5	2.5	198	495.0	연결로	체력단련장 (마-4)	체력단련장 (마-3)	변경	
변경				134	335		휴게소 (나-10)	휴게소 (마-4)		
당초	산책로	6	1.8	110	198.0	부진입로	체력단련장 (마-3)	산55-15임	도자 구역 편입	
변경				78	140		휴게소 (나-10)	도자구역		
당초	산책로	7	2.0	270	540.0	연결로	산책로 5	산책로 28	오류보정	
변경				133	266		산책로 5	산책로 8		
당초	산책로	8	1.8	101	181.8	연결로	산책로 7	산책로 10		
변경				101	182					
당초	산책로	9	1.8	58	104.4	연결로	산책로 8	약수터 (바-1)	오류보정	
변경				46	83					
당초	산책로	10	2.0	180	360	연결로	쉼터 (나-1)	산책로 11	오류보정	
변경				102	204					
당초	산책로	11	3.5	52	112	부진입로	산책로 10	273-1전		
변경				52	112					
당초	산책로	12	1.8	52	93.6	연결로	산책로 8	체력단련장 (마-5)	변경	
변경				52	94		산책로 8	체력단련장 (마-5)		
당초	산책로	13	2.0	52	104	연결로	산책로 10	산책로 14	오류보정	
변경				47	9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14	2.5	42	105	연결로	산책로 15	체력단련장 (마-6)	변경
변경					33	83		산책로 15	휴게소(나-11)	
당초	산책로		15	2.5	58	145	연결로	쉼터(나-1)	산책로 14	
변경					58	145				
당초	산책로		16	2.0	67	134	부진입로	산책로 14	산53-26임	오류보정
변경					150	300				
당초	산책로		17	1.8	80	144	연결로	쉼터(나-1)	산책로 18	오류보정
변경					63	114				
당초	산책로		18	3.5	320	1,120	부진입로	335-11임	산책로 22	오류보정
변경					309	1,080				
당초	산책로		19	1.0	32	32	연결로	산책로 18	산책로 20	오류보정
변경					29	29				
당초	산책로		20	2.5	42	105	연결로	산책로 18	375-22도	오류보정
변경					31	78				
당초	산책로		21	1.8	49	88.2	연결로	산책로 22	쉼터(다-1)	오류보정
변경					39	70		산책로 22	쉼터(나-1)	
당초	산책로		22	3.5	580	2,030	연결로	체력단련장 (마-7)	산책로 26	변경
변경				3.0	497	1,492		체력단련장 (마-8)	체력단련장 (마-7)	
당초	산책로		23	2.5	295	737.5	연결로	산책로 25	산책로 2	오류보정
변경					328	821				
당초	산책로		24	3.5	570	1,995	연결로	체력단련장 (마-7)	산책로 26	도자 구역 편입
변경				3.0	214	642		체력단련장 (마-7)	도자구역	
당초	산책로		25	3.5	370	1,295	연결로	산책로26	산책로37	오류보정
변경				2.0	301	602				
당초	산책로		26	3.0	325	975	연결로	산책로 25	쉼터(나-3)	도자 구역 편입
변경					112	336		체력단련장 (마-8)	쉼터(나-3)	
당초	산책로		27	1.8	82	147.6	부진입로	쉼터(나-3)	산237-임	오류보정
변경					34	60		쉼터(나-3)	산23-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28	2.5	190	475	부진입로	쉼터(다-3)	산23-10임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당초	산책로		29	3.5	250	875	부진입로	외곽도로	쉼터(나-4)	오류보정
변경					160	561				
당초	산책로		30	1.8	95	171	연결로	산책로 29	체력단련장 (마-9)	오류보정
변경					74	133		체력단련장(마-9)	산책로 29	
당초	산책로		31	2.0	50	200	연결로	산책로 30	산책로 25	오류보정
변경					66	132				
당초	산책로		32	1.8	340	612	연결로	체력단련장 (마-9)	체력단련장 (마-11)	변경
변경					326	586		체력단련장 (마-9)	체력단련장 (마-11)	
당초	산책로		33	3.0	390	1,170	부진입로	체력단련장 (마-11)	산64-1임	도자 구역 편입
변경					198	594		체력단련장 (마-11)	도자구역	
당초	산책로		34	1.8	150	270	부진입로	산책로 33	외곽도로	오류보정
변경					114	206				
당초	산책로		35	2.5	210	525	연결로	산책로 33	쉼터(다-6)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당초	산책로		36	1.8	52	93.6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37	오류보정
변경					38	69				
당초	산책로		37	3.5	220	770	연결로	산책로 38	산책로 25	오류보정
변경				2.0	120	246				
당초	산책로		38	3.5	50	175	부진입로	298-57임	산책로 37	오류보정
변경				2.5	162	404		산책로 25	산책로 49	
당초	산책로		39	3.5	30	105	연결로	산책로 38	배드민턴장 (라-2)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당초	산책로		40	1.8	44	79.2	연결로	배드민턴장 (라-2)	산책로 33	오류보정
변경					55	101				
당초	산책로		41	4	19	76	연결로	산책로 39	산61-6임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당초	산책로		42	4.5	50	225	연결로	배드민턴장 (라-2)	체력단련장 (마-13)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43	2.5	30	75	연결로	체력단련장 (마-13)	산책로 37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당초	산책로		44	3.5	90	315	연결로	실내체육관 (자)	산책로 38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당초	산책로		45	2.0	5	10	부진입로	외곽도로	다목적운동장 (바-2)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신설	산책로		46	2.5	159	388	부진입로	외곽도로	썬터 (나-3)	
신설	산책로		47	2.5	128	231	연결로	산책로 33	도자구역	
신설	산책로		48	1.5	27	40	연결로	배드민턴장 (라-2)	산책로 50	
신설	산책로		49	2.0	46	92	연결로	산책로 50	외곽도로	
신설	산책로		50	2.3	45	110	연결로	배드민턴장 (라-2)	산책로 38	
신설	산책로		51	1.5	35	52	부진입로	산59-7	유아숲체험원 (타)	
신설	산책로		52	1.5	17	25	연결로	산책로 4	유아숲체험원 (타)	
당초	소로		1	4	25	100	진입로	외곽도로	주차장(아)	폐지 (오류보정)
폐지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43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10. 1.(금) ~ '21. 10. 17.(일), (17일간)
3.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 ※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 단, '21. 9. 18.(토) ~ 9. 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건설공사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44호

도시관리계획(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3호(2008.5.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7호(201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호(2018.2.19)로 결정(변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8.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I. 결정취지

- 열악한 독산동우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촉진 및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합리적 조성 유도를 위해 독산2-2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4) 건축물의 허용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5)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변경)
 - 가)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 분	종전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	일반상업	일반상업	600%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B	준공업	근린상업	400%	530% 이하	
C	일반주거	근린상업	300%	500% 이하	
D	준공업	준공업	300%	400% 이하	

구 분	종전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E	3종일반주거	준주거	250%	350% 이하	

- 주 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5.08.28.)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다.
 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5) 준공업지역 내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등 준공업지역 관리계획의 재생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은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다.

■ 변경

구 분	종전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	일반상업	일반상업	600%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B	준공업	근린상업	400%	530% 이하	
B-1 (독산동1008번지)	준공업	근린상업	400%	520% 이하	
C	일반주거	근린상업	300%	500% 이하	
D	준공업	준공업	300%	400% 이하	
E	3종일반주거	준주거	250%	350% 이하	

- 주 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5.08.28.)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다.
 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5) 준공업지역 내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등 준공업지역 관리계획의 재생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은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다.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 독산2-2특별계획가능구역에서 정한 순부담률(15% 이상)과 독산동 1008번지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을 520% 이하로 적용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독산동 1008번지)

- 1) 독산동 1008번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건축물 착공 전 우선 개설(권고)
- 2) 건축계획 시 가급적 자주식 주차대수 확보(권고)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지침 :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 : 변경없음

5. 독산2-2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독산2-2 특별 계획가능구역	금천구 독산동 1008-3번지 일대	5,463.1	감)929.1	4,534.0	서고시 제2018-42호 (2018.2.19.)

주) 본 특별계획가능구역 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독산2-2 특별 계획가능구역	금천구 독산동 1008-3번지 일대	4,534.0	●공공시설 정비(범안로,종로1-111, 폭원 확폭 20m→25m)의 필요에 따라 독산동 1008번지(929.1㎡)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서 제척함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침 : 변경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도심 부적격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를 정비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간선변 기능 강화 및 주변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합개발 유도
면적(㎡)	기정	●5,463.1㎡	
	변경	●4,534.0㎡ (독산동 1008번지 929.1㎡제외)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기반시설 (공공시설)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북측 20m도로 확폭 → 25m도로 조성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용도	관장 용도	전층 관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관장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복합 용도	전층 복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투표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400% / 530%이하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α)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120m 이하

구 분		계획지침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범안로변, 서측 10m도로변, 남측대지 경계부	3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범안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2 적용	
운용기준	기정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구역 내 독산동 1008-1번지(면적 384.3㎡) 범안로 확폭 구간(5m)에 대한 설치 조성은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 기부채납 - 도로조성 부분을 제외한 독산동 1008-1번지 잔여 토지는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범안로(중로 1-111호선) 개설 이전에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할 경우,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범안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함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시흥대로 및 범안로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라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구역 내 독산동 1008-1번지(면적 384.3㎡) 범안로 확폭 구간(5m)에 대한 설치 조성은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 기부채납 - 도로조성 부분을 제외한 독산동 1008-1번지 잔여 토지는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시흥대로 및 범안로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라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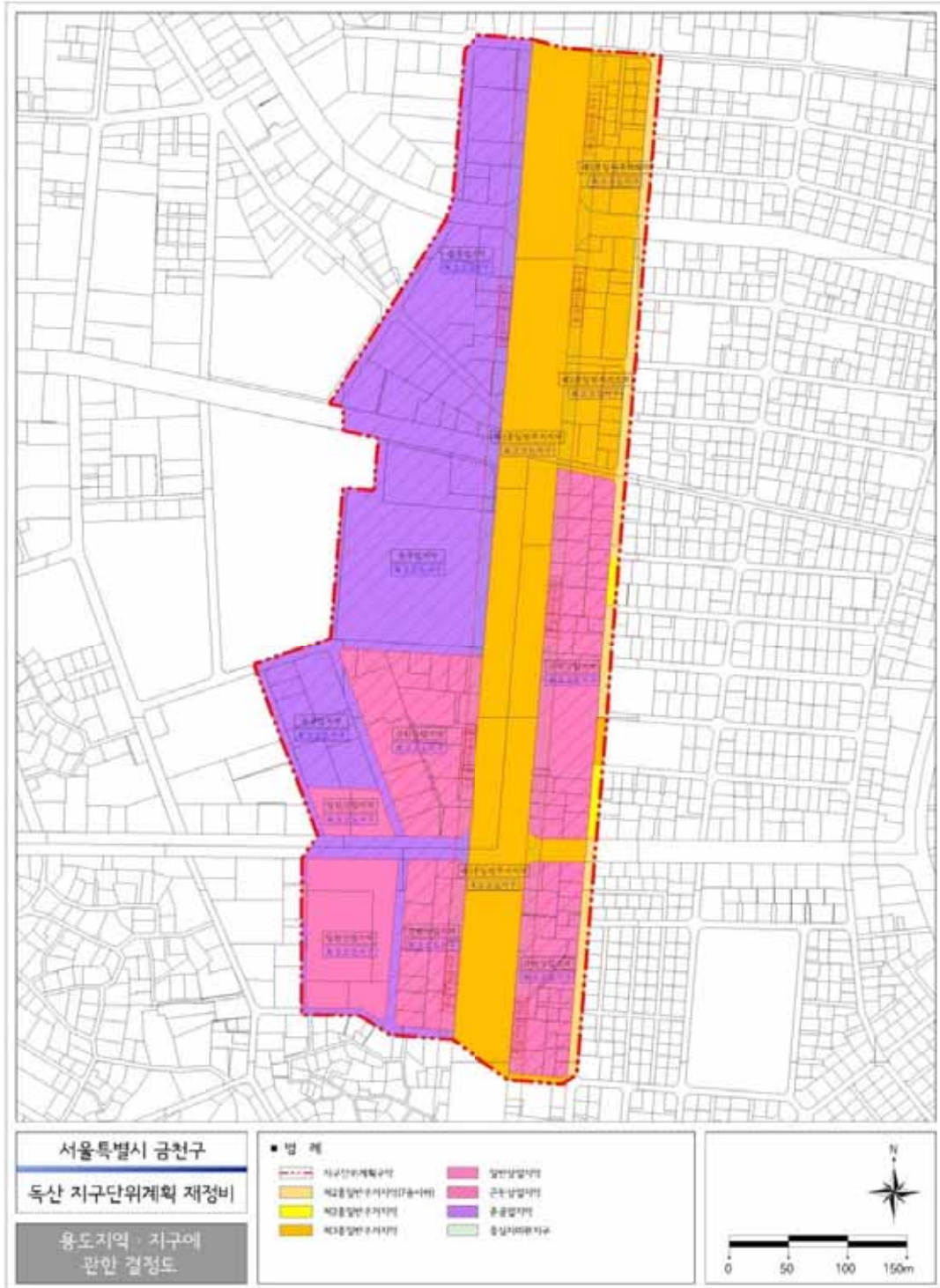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관리과(☎02-2133-8385) 및 금천구 도시계획과(☎02-2627-2063)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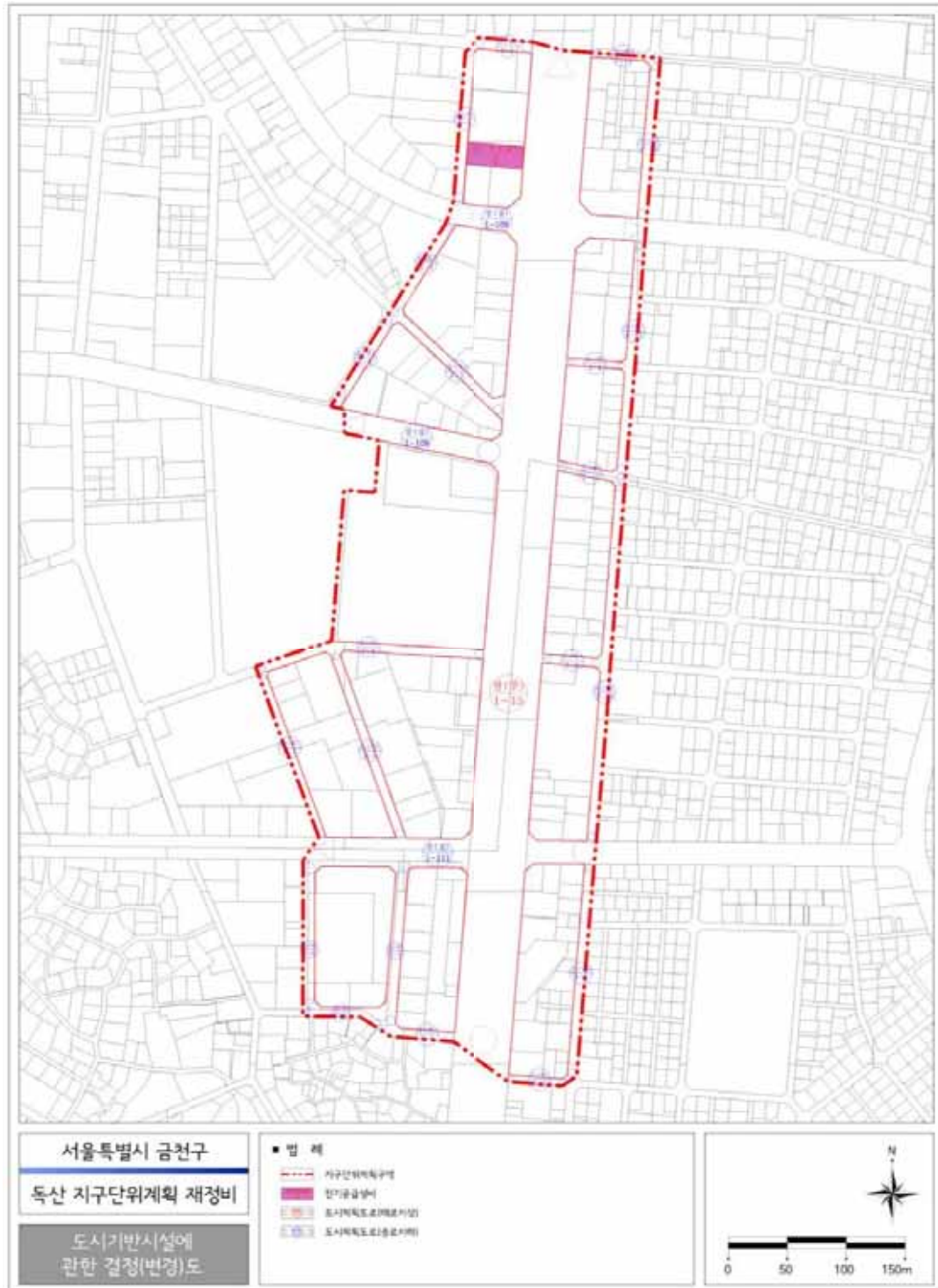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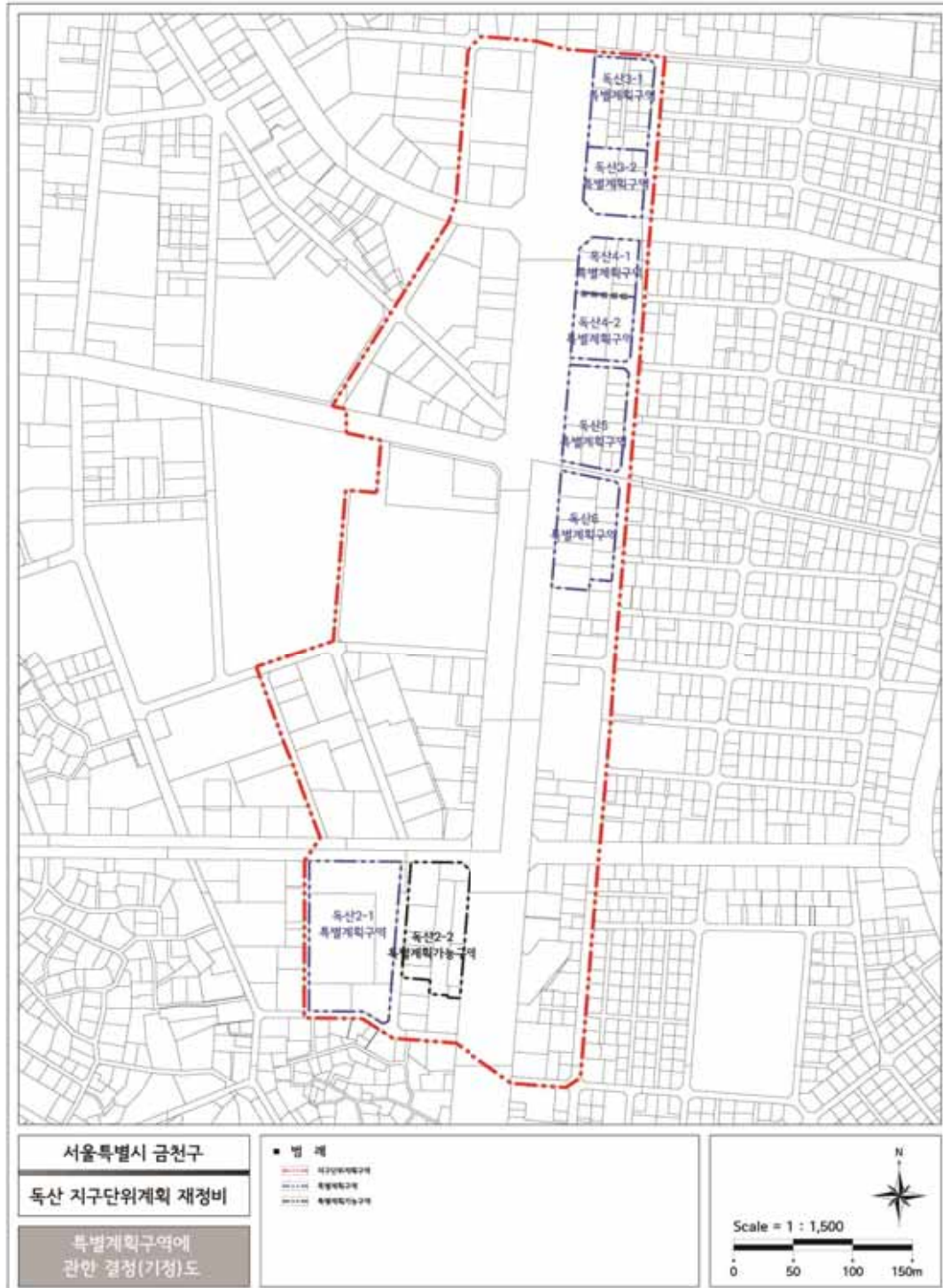
■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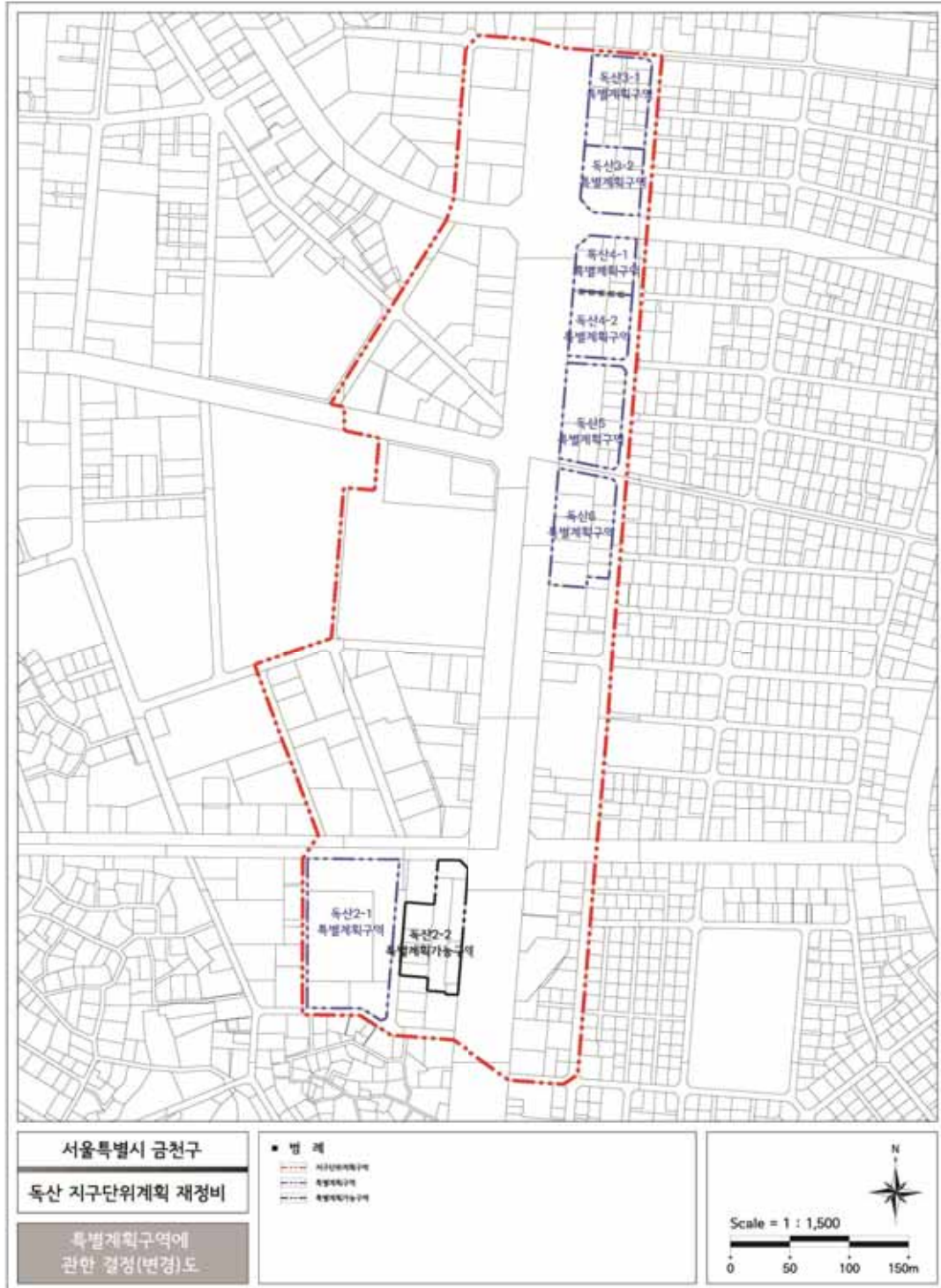
■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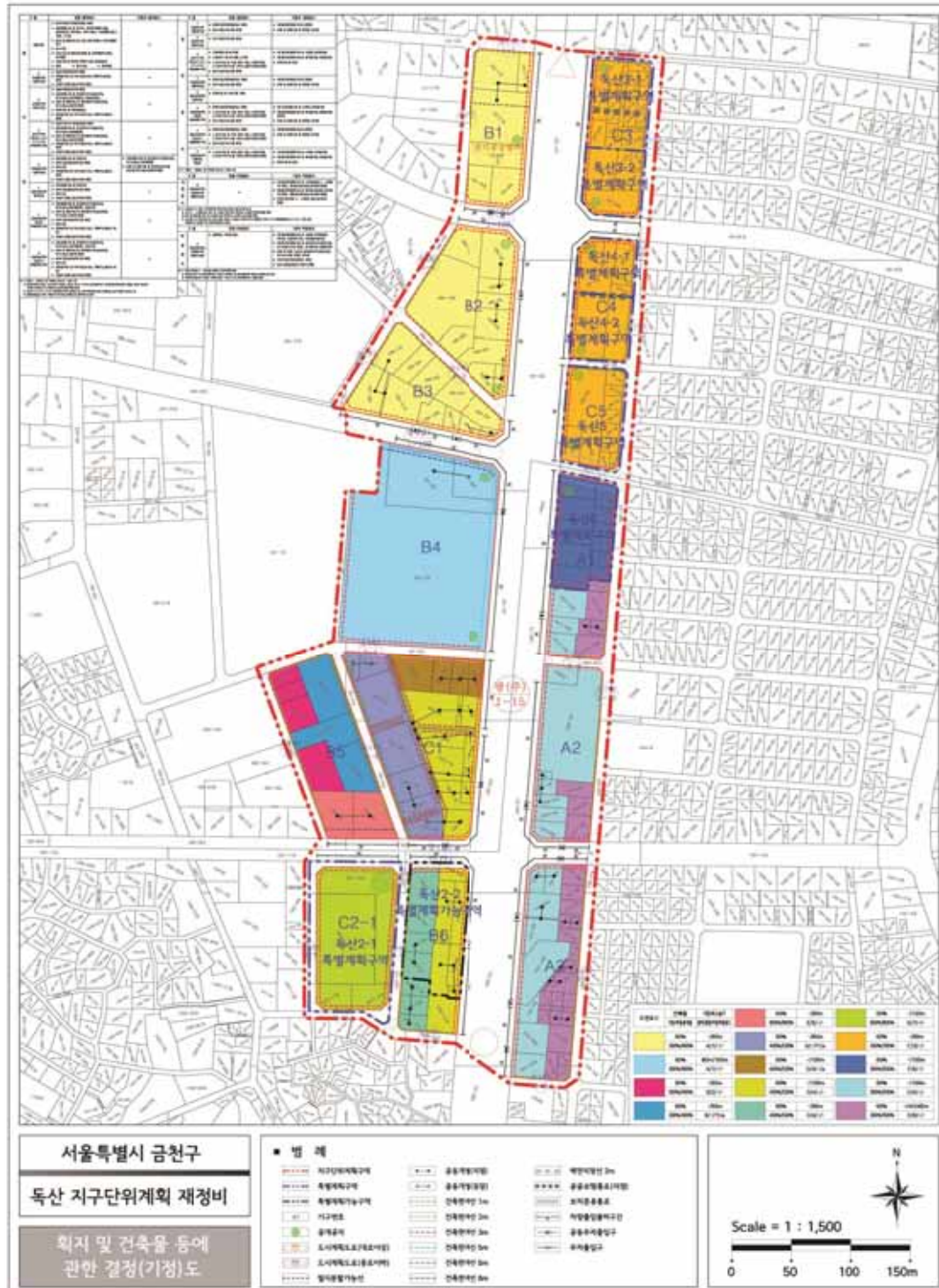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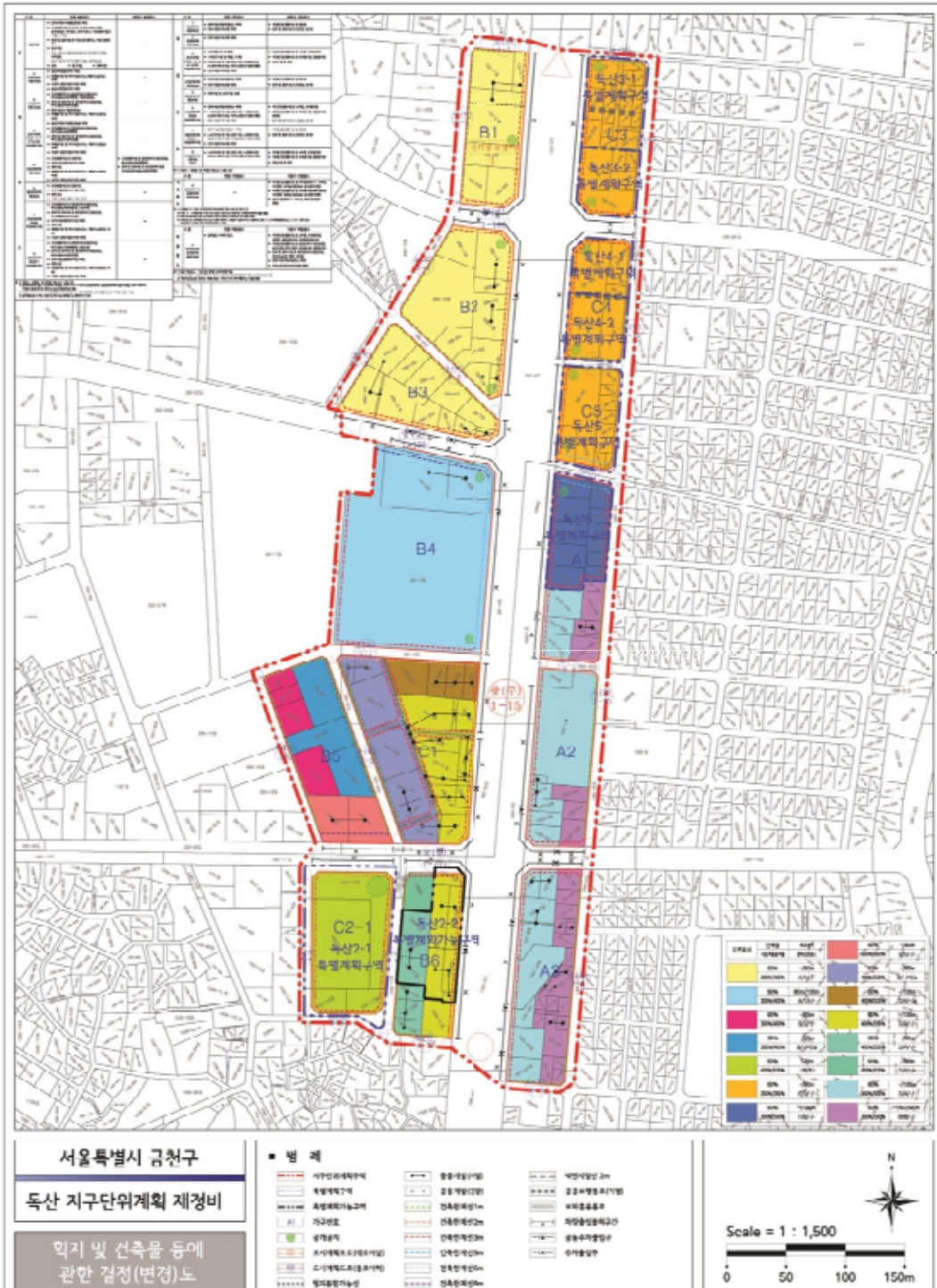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독산2-2특별계획가능구역 구역계 표시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45호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명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근거 및 대상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86개소

2.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명단

소관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23길 12(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섭발로 313(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교분로32길 37(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소관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8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립강등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겸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행복플러스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하월곡동)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소관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시립흥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흥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하월곡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472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비공개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성북)	비공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뇌성마비복지관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북부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동남로 27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양평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및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자립기반 조성 지원
	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및 단기간 가정, 사회 복귀 어려운 노숙인에게 상담, 치료, 요양 서비스 제공
	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돈화문로 9가길 20-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 50라길 31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남대문쪽방상담소	중구 세종대로 30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 57길 9-1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등읍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립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 답십리로 69길 106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소관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학대피해아동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강서)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건강가정교육·상담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31다길 10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內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등읍 이원로 483	정신요양시설 운영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정신요양시설 운영

3.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박영진 주무관
(02-2133-7326 / Lucidpark@seoul.go.kr)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중랑구 목동 16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칭	대표자	주소
목동아이알디 피에프브이(주)	민경예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신내동, 부영빌딩)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16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537.50㎡

다. 건폐율 : 59.94% (건축면적 : 2,720.00㎡)

라. 용적률 : 999.8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45,368.2484㎡)

마. 용도 : 공동주택 (공공임대 103세대/ 민간임대 824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바. 규모 : 2개동, 지하 7층/지상 29층, 연면적 68,566.9631㎡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47호

**중랑구 목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랑구 목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목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I.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중랑구 목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165번지
- 면 적 : 4,537.5㎡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9월 30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목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민경예 대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신내동, 부영빌딩)
- 법인등록번호 : 110111-7696490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목동 1동동 (목동)	165	대	4,537.5	4,537.5	목동아이알다피에프 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100%	-	-	-
합계				4,537.5	4,537.5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	규모			소유자	비고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1	중랑구 목동	165	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 리트구조	1981-02-18	10,396.59	1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목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목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4,537.5)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96.8.1.)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3)와 중랑구청 2층 주택과(02-2094-21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중랑구 목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165번지
- 면 적 : 4,537.5㎡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상지의 위치적 특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며 서울특별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목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민경예 대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신내동, 부영빌딩)
- 법인등록번호 : 110111-7696490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37.5	100.0	
주택건설용지	4,537.5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1,257인

2) 주택건설계획 : 927세대 (공공임대주택 103세대, SH선매입 96세대, 민간임대 728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18A Type	80	8.63%	80	6.36%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36 Type	21	2.27%	56	4.46%	
	59 Type	2	0.22%	5	0.40%	
	소계	103	11.11%	141	11.22%	
공공임대주택 (SH공사선매입)	18A Type	66	7.12%	66	5.25%	
	36 Type	24	2.59%	64	5.06%	
	38 Type	6	0.65%	16	1.26%	
	소계	96	10.36%	146	11.5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8A Type	533	57.50%	533	42.40%	
	18B Type	48	5.18%	48	3.82%	
	36 Type	97	10.46%	257	20.45%	
	38 Type	33	3.56%	87	6.96%	
	59 Type	17	1.83%	45	3.58%	
	소계	728	78.53%	1,116	77.21%	
합 계		927	100.00%	1,257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획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시행시 대상지 내 생태면적율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을 통한 피복형유형과 식재유형 적용한 결과 생태면적율은 30.02%로 산정

나) 일조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 본 대상지 북측으로 저층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으나, 본 건축물은 일조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의거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을 수립함

다) 오염물질 최소화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고, 수집 분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활용 할 계획

- 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제5차(2016~2017)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7.

12, 환경부』에 제시된 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1.78톤/일로 예측되었으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계획구역 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한 후 서울특별시 및 중랑구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할 계획

라) 소음 및 진동 저감방안

－ 공사시 소음저감대책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소음진동을 저감토록 함

－ 공사시 진동저감대책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강도를 조정토록 하되, 가능한한 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토록 계획

－ 운영시 소음저감대책

：본 계획구역 사업시행시 계획건축물의 주요 용도에 따라 미국냉동공조기술자협회(ASHRAE)의 용도별 소음기준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차음설계(창호 및 외벽계획)를 통해 이용객에 대한 교통소음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2)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조경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 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임

3)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녹지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목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목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4,537.5)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96.8.1.)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2,500	-	82,500	100.0	
준주거지역	39,200	-	39,200	47.5	
일반상업지역	43,300 (4,537.5)	-	43,300 (4,537.5)	52.5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시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4,537.5	-	4,537.5	1974.3.8 서고제26호	

② 도시계획시설(시장) 건축물의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범위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괄	①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지하2층 일부 지하1층 일부 지상1층 일부 지상2층 일부 지상3층 일부 지상4층 일부	-	증) 6,296.15	6,296.15	-	-
신설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지하2층 일부	-	증) 1,907.89	1,907.89	-	주차장
신설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지하1층 일부	-	증) 220.00	220.00	-	-
신설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지상1층 일부	-	증) 1,225.18	1,225.18	-	-
신설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지상2층 일부	-	증) 1,478.00	1,478.00	-	-
신설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지상3층 일부	-	증) 1,226.34	1,226.34	-	-
신설		시장	중랑구 목동 165번지	지상4층 일부	-	증) 238.74	238.74	-	기계 전기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 범위 결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비도시계획시설(임대주택)의 공간적 범위 결정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구도 결정조서(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A	A5	4,537.5	중랑구 목동 165	4,378.5	도로 159㎡
변경	A	A5	4,537.5	중랑구 목동 165	4,537.5	획지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5	• 목동 165번지 획지계획 변경 4,378.5 → 4,537.5 (도로면적 획지로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개공지 위치 변경 및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에 따른 획지 165번지의 전체 면적 획지계획으로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

①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 시	불허용도		비고
기정	1	전층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일반목욕탕, 안마시술소 •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기존 주유소 중·개축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학교시설 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교정시설	간선가로변
		1층	• 단독 및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철물점	
변경	(1)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 관련법에 따른 불허용도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변경 가구A5에 한함

※ ()은 임시 번호임

■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불허용도 변경 - 목동 165번지 불허용도 변경 1 → (1)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불허용도 변경

※ ()은 임시 번호임

② 권장용도(변경없음)

③ 지정용도

구분	도면표시	지정용도	비고
기정	(가)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가구B6에 한함
변경	(가)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가구B6에 한함
	(나)	-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따른 주거 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가구A5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은 임시 번호임

■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나)	지정용도 변경 (나)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지정용도 변경 및 지정용도 신설

※ ()은 임시 번호임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변경	A5	중랑구 목동 165	용 도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 지정용도 (나)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00%	기준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 이	최고높이 70m	최고높이 110m
			배 치	시행지침 제17조, 18조참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형 태	시행지침 제19조~30조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제23조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3m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존 300%, 허용600% → 기본 1,000% • 최고높이 변경 - 최고높이 70m 이하 → 110m 이하 • 건축선 변경 - 건축한계선 2m → 3m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 • 주변 높이계획과 정합성을 위한 높이 변경 • 「서울시 건축조례」상 공동주택 건립시 건축한계선 3m지정으로 인한 건축한계선 변경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공지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제어요소		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A5	중랑구 묵동 165	공개공지	좌동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7조 참조	20m도로, 이면부	

■ 대지내공지에 관한 사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개공지 위치 변경 - 기정: 20m도로변 1개소, 구묵동길(15m)도로변 1개소 - 변경: 20m도로변 1개소, 이면부 1개소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구묵동길(15m)도로변 공개공지 를 주요 활동축인 남측 이면부로 공개공지 위치 변경

(2) 차량동선 및 주차동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마)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부지면적의 19%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공공임대주택 부속 토지 포함)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9.53%(432.41㎡) - 공공시설 대지지분 - 9.52%(432.15㎡) - 총 공공기여 - 19.05%(864.56㎡)	기본 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량구 목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5,847.15㎡(12.89%)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80% 이상 90% 이하	39,521.08㎡(87.11%)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사용면적 54㎡(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사용면적 72㎡(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103세대) : SH선매입(96세대) : 민간임대(728세대) = 11.11% : 10.36% : 78.53%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A㎡, 36㎡, 59㎡ - 민간임대주택 - 전용 18A㎡, 18B㎡, 36㎡, 38㎡, 59㎡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99)×2.5㎡×1.25 = 1,962.5㎡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1,963.76㎡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적률 완화항목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신설

5)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용역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비율	면적				
				개별	합계	면적	
일반상업지 역	1,000%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량 : 14%	635.25㎡	862.13㎡ (19.00%)	864.56㎡	19.05%	가구 A5에 한함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범위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 5%	226.88㎡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2 적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1) 내수재해

- 우수계획시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을 고려하여 관경결정, 기존 배수체계 유지하여 배수처리 계획 수립

2) 토사재해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3) 지반재해

- 지반재해 발생이력은 없으나 지반조사 성과분석 결과 연약지반 일부 위치하나 굴착시 제거될 예정으로 실시설계시 지반안정성 검토하여 저감방안 이행

4) 지진재해

-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의 단층을 조사한 결과 계획지구 주변은 단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 시설 및 시스템 등 구축

5) 바람재해

- 대상지에 대하여 내풍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바람재해 위험성을 최소화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목동 1동 (목동)	165	대	4,537.5	4,537.5	목동아이알디피에프 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100%			
합계				4,537.5	4,537.5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	규모			소유자	비고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1	중랑구 목동	165	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981-02-18	10,396.59	1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3) 토지취득방법 : 사업대상지 시행자 및 수탁자 소유로 100%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존치건축물, 공작물 등은 철거 예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 도서관	-
위치	• 중랑구 목동 165번지	-
규모	• 연면적 : 1,561.90㎡	-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시설 부지가액 및 표준건축비(건축공사비)는 사업계획승인(통합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여량은 변경 가능	-
관리처분계획	•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 추후 측량성 및 감정평가 등에 의해 변경 가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중랑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37.5	100.0	-
주택건설용지	4,537.5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관계도면 : [붙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기반시설에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기반시설에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 범위 결정 단면도



- 이 하 여 백 -

■ 획지 및 최대개발규모 결정(기정)도



■ 획지 및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1호(2010.02.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5호(2010.08.19.)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73호(2010.10.28.)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0호(2013.08.0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6호(2013.09.12.)로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2015-355호(2015.11.12.)로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호(2016.1.14.)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종로구고시 제2017-156호(2017.1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4호(2018.10.25.)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5호(2019.2.28.)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2호(2019.12.26.)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규정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의 변경)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	30	보조 간선 도로	8,100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	1973.03.06. (건고 78)	
변경	대로	2	6	30	보조 간선 도로	8,100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	1973.03.06. (건고 78)	승강기 설치반영

2) 변경사유 : 터널 종점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을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 2) 사업시행구간
 -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8(창덕궁교차로) ~ 종로구 원남동 166(원남동사거리)
- 3) 사업규모
 - 폭 27 ~ 30m, 연장 810m (지하차도 320m)
-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 5) 사업의 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변경)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토지조서(별첨)
- 7) 위치도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8) 지형도면(변경) : 별첨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함.
- 10)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07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 중구 청계천로 8, ☎02-3708-2557)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토지조서, 지형도면 고시도 각 1부. 끝.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의 명 칭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추가	종로구 와룡동	2-3	대	110.5	79.3	학교법인 용문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 96-1	-	-	-	
2	추가	종로구 와룡동	2-59	사적지	88.2	55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3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593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02나4803	이*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01 18:48	분당내곡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04수9498	조*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01 06:46	당고개 (덕릉로) 1차로	"	"
3	10노1892	이*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01 07:43	양재IC 2차로	"	"
4	43조2930	박*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01 14:44	당고개 (덕릉로) 2차로	"	"
5	70도5219	주-현*에프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01 14:3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차로	"	"
6	80수1440	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01 09:05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7	02소8560	주*다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02 20:28	서울대입구역(관악로) 3차로	"	"
8	36가8257	이*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02 16:0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67 안성방면 2차로	"	"
9	40도8541	쥬길*트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02 16:10	화랑대역 (화랑로) 3차로	"	"
10	80루8650	이*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02 11:33	경기도 안산시 팔곡지하차도(안산방향) 1차로	"	"
11	84로9611	강*푸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02 23:00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12	05조8587	이*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03 17:15	우이제3교(덕릉로) 1차로	"	"
13	18두1192	권*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03 11:49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C 인근 2차로	"	"
14	37소9194	이*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03 18:33	망우리교개 3차로	"	"
15	70가2612	안*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03 14:46	경기도 안산시 안산C(안산방향) 1차로	"	"
16	91고1530	서*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03 13:30	강변북로(일산방향) 4차로	"	"
17	97거1197	주식회사 *피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03 15:47	오쇠삼거리 2차로	"	"
18	02가5622	권*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04 09:34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수원방면) 2차선	"	"
19	36거8547	이*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04 16:37	양화대교 북단(양화로) 1차로	"	"
20	52무8138	이*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04 20:45	녹천초(마들로) 1차로	"	"
21	61거4215	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05 07:40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462-1 동두천방면 2차로	"	"
22	67모3895	정*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05 19:18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	"
23	71로1065	정*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05 00:05	금천교(법안로) 1차로	"	"
24	80라6872	정*섭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05 17:20	군자교 (천호대로) 2차로	"	"
25	80보5710	전*주철공업(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05 09:17	여의교 (여의대방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6	03로7017	백*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06 06:4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741 파주방면 1차로	"	"
27	59러3576	송*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06 20:26	삼성역 1차로	"	"
28	75모8055	윤*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06 02:15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1차로	"	"
29	85우8116	주식회사 삼*에이치엔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06 18:08	입곡삼거리 (북한산로) 2차로	"	"
30	01거9260	최*봉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07 18:40	신내IC(용마산로) 2차로	"	"
31	02다5236	윤*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07 18:5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교교 2차로	"	"
32	03더6598	박*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07 11:57	금천교(범안로) 2차로	"	"
33	03로1622	박*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07 12:1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중학교 포천방면 2차로	"	"
34	43구3296	주식회사 지드*이디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07 00:54	양재IC 2차로	"	"
35	45다1304	임*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07 09:53	신사역 (강남대로) 2차로	"	"
36	01가5479	이*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08 18:41	강일IC 3차로	"	"
37	01나7669	임*광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08 23:02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차로	"	"
38	01너8511	우*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08 16:13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39	01누7074	강*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08 11:17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	"
40	02우1995	김*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08 11:37	신내IC(용마산로) 4차로	"	"
41	03저2452	이*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08 12:14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차로	"	"
42	03조9984	김*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08 14:45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차로	"	"
43	46가8575	곽*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08 11:03	상월곡역 (화랑로) 3차로	"	"
44	64가4377	이*곤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08 15:12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5	80너7879	이*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08 18:01	양재IC 3차로	"	"
46	88다2729	김*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08 07:15	천왕역(오리로) 2차로	"	"
47	89모0410	이*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08 09:4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	"
48	서울49머1188	마*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08 19:09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	"	"
49	01소1266	이*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09 11:54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1차로	"	"
50	17두9818	신*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09 14:29	수서IC 3차로	"	"
51	19조5355	주식회사 복*건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09 12:32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52	38다5060	박*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09 14:10	산골고개 (통일로) 2차로	"	"
53	76조6181	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09 08:3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10-12 포천방면 3차로	"	"
54	88마4058	김*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09 00:19	신내IC(용마산로) 2차로	"	"
55	서울42더6476	전*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09 13:16	산골고개 (통일로) 1차로	"	"
56	서울86비3546	주식회사 다*로지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09 02:30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57	02러5572	이*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0 15:42	화랑대역 (화랑로) 3차로	"	"
58	05구3730	구*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10 13:22	강일IC 2차로	"	"
59	05소6840	이*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10 10:58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1차로	"	"
60	70구6504	박*선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10 12:59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	"
61	75수2124	이*묵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10 16:0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	"
62	01두0780	㈜*하수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1 15:23	연희IC (모래내로) 2차로	"	"
63	01두6252	신*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1 11:21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파크(양평방향) 양평방면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64	02누1794	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1 10:34	강일IC 2차로	"	"
65	09너4232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1 20:36	개화역 1차로	"	"
66	27버4726	김*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11 14:03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차로	"	"
67	80더1846	김*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11 12:42	도봉로시계 2차로	"	"
68	86무3188	권*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1 14:23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양평방면 2차로	"	"
69	93여9415	주식회사 동*아이엔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1 11:58	우이제3교(덕릉로) 3차로	"	"
70	01마1388	배*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12 11:54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71	02로0710	송*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12 12:34	당고개 (덕릉로) 1차로	"	"
72	38저9485	최*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12 12:25	여의교 (여의대방로) 1차로	"	"
73	52고9622	씨*(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12 16:52	DMC역 (증산로) 1차로	"	"
74	61두1266	심*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2 16:58	군자교 (천호대로) 3차로	"	"
75	서울46머7227	한*운수(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12 13:42	호암로 1차로	"	"
76	01가9584	전*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3 14:54	고덕역(고덕로) 2차로	"	"
77	01보8862	황*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13 06:38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78	02도4166	강*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3 13:08	당고개 (덕릉로) 2차로	"	"
79	09고2143	윤*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13 21:15	석수역 4차로	"	"
80	11마6480	고*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13 13:38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동의정부IC) 1차로	"	"
81	50저4865	심*진,심*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3 08:55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IC) 3차로	"	"
82	60나9798	홍*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13 07:49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83	90우4766	우리*이엠지종합건설 (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3 17:20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	"
84	서울47머9305	이*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13 10:07	시흥사거리(금하로) 3차로	"	"
85	02버8284	㈜와*제이플래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4 12:13	상월곡역 (화랑로) 1차로	"	"
86	02저6145	박*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14 17:13	여의2교(제물포길) 1차로	"	"
87	06조1848	노*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4 23:06	사가정역(사가정로) 3차로	"	"
88	07루3230	황*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14 18:44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2차로	"	"
89	35너5142	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4 16:23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90	48가1845	유*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4 13:28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화도방면 2차로	"	"
91	52소7158	㈜*진토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14 18:13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	"
92	73보5450	심*복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4 14:05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	"
93	01여6825	이*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5 17:34	강일IC 1차로	"	"
94	07부8196	정*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15 10:10	강일IC 3차로	"	"
95	08구3090	송*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15 20:45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2차로	"	"
96	08로5286	조*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5 17:21	사가정역(사가정로) 3차로	"	"
97	10노3408	김*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15 16:57	강변북로(일산방향) 4차로	"	"
98	27구2246	윤*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5 19:24	올림픽대로(공향방향) 1차로	"	"
99	38가3873	유*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15 00:54	경기도 군포시 군포IC(군포방향) 2차로	"	"
100	43수6019	박*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5 14:35	솔샘역(솔샘로) 1차로	"	"
101	49루4490	배*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15 20:10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02	50주9680	김*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5 13:30	DMC역 (증산로) 2차로	"	"
103	52보7211	강*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15 10:49	강변북로(서울방향) 2차로	"	"
104	70너3651	이*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5 11:20	동호대교 남단(논현로) 2차로	"	"
105	75모7234	쥬*이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15 18:12	경기도 수원시 지지대고개(수원방면) 3차선	"	"
106	77조9753	김*룡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15 11:39	호암로 2차로	"	"
107	80두8203	이*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5 04:42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	"
108	서울40노3568	이*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15 12:07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	"
109	서울50도1153	이*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5 20:54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차로	"	"
110	서울82바9318	쥬아*디일일구닷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15 07:38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61-1 평택방면 2차로	"	"
111	01여4391	경*엔지니아어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16 17:38	상일IC주도로 2차로	"	"
112	02더1691	허*덕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6 15:14	솔샘역(솔샘로) 2차로	"	"
113	04노6767	민*웅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6 18:26	지방도309 1차로	"	"
114	10수3882	석*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6 15:44	동일로 2차로	"	"
115	37무4110	김*송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16 13:36	유한공고 2차로	"	"
116	40서3245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16 22:04	강일IC 1차로	"	"
117	41라1911	배*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16 06:23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	"
118	48노6410	최*억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16 18:03	분당수서고속화도로 1차로	"	"
119	70라5051	주식회사 *르맛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16 20:18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차로	"	"
120	70조3555	쥬*이즈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16 18:25	양화대교 북단(양화로) 5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21	80보6069	주-*산조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16 12:56	길음역(동소문로) 3차로	"	"
122	01너9243	김*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17 14:33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차로	"	"
123	01오1104	이*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17 23:15	양재IC 4차로	"	"
124	02우7068	쥬조*애프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17 13:43	통일로 1차로	"	"
125	08다2520	주식회사 에*치알트레이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7 16:32	개화역 5차로	"	"
126	10부1336	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17 14:37	분당내곡로 3차로	"	"
127	10저8883	여*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7 13:06	강변북로(서울방향) 1차로	"	"
128	12로2729	김*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7 16:49	망우리고개 2차로	"	"
129	49서4986	김*라외1인(강*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7 16:12	사가정역(사가정로) 3차로	"	"
130	80거7029	이*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7 07:41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	"
131	80거9069	쥬썸*케이앤다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17 09:22	길음역(동소문로) 3차로	"	"
132	80버5984	황*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7 23:41	상월곡역 (화랑로) 2차로	"	"
133	서울44루4365	김*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7 17:35	양재IC 4차로	"	"
134	02라5459	이*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8 13:04	사가정역(사가정로) 3차로	"	"
135	02로4717	이*홍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18 00:18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차로	"	"
136	04조1052	최*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18 23:08	수서IC 4차로	"	"
137	16버7970	이*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8 09:29	강일IC 3차로	"	"
138	40저9422	주*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18 18:05	강일IC 2차로	"	"
139	46저9173	유*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8 12:24	망우리고개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40	60서6885	김*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18 15:27	수서IC 2차로	"	"
141	80도9342	강*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18 12:50	군자교 (천호대로) 2차로	"	"
142	80로9288	주식회사 카*디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18 19:08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	"
143	80수7528	권*억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18 11:05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사거리(과천방면) 3차선	"	"
144	89수8673	㈜*디엠코팅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18 19:04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리입구교차로(별내방향) 2차로	"	"
145	94라6168	㈜*비테크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18 20:46	화랑대역 (화랑로) 4차로	"	"
146	서울80배9208	이*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18 15:47	분당수서고속화도로 3차로	"	"
147	01소6256	이*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19 14:07	화랑대역 (화랑로) 5차로	"	"
148	01우1497	김*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19 13:10	시흥IC (시흥대로) 4차로	"	"
149	02누3815	박*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9 10:59	경기도 성남시 탄천IC 1차로	"	"
150	06라4798	㈜*에스브이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19 14:41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151	60고1182	권*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19 18:39	청계산로 1차로	"	"
152	67소6626	김*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19 14:22	연희IC (성산로) 3차로	"	"
153	80다3727	이*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19 13:04	수서IC 3차로	"	"
154	80라4269	주-이*하이테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9 09:42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78-8 화성방면 3차로	"	"
155	92우1809	㈜*길전력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9 13:15	개화역 4차로	"	"
156	02러1965	이*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0 12:08	오목교 (영등포로) 2차로	"	"
157	03너1018	김*일, 김*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0 14:34	사가정역(사가정로) 2차로	"	"
158	04노7307	㈜*아타치먼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0 13:33	작동터널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59	05주4134	이 *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0 15:34	수서IC 3차로	"	"
160	09머8782	반*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0 15:00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462-1 동두천방면 1차로	"	"
161	15서1155	서*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0 09:57	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	"
162	19모5549	CH*N HONGYAN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0 06:06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3차로	"	"
163	29주5258	나*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0 17:2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67 안성방면 3차로	"	"
164	52루5844	최*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0 06:58	상일IC진출로 2차로	"	"
165	54가9277	이*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0 13:18	경기도 수원시 수인산업도로(수원방면) 3차선	"	"
166	60서2987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0 18:52	개화역 4차로	"	"
167	70라3807	김*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0 08:03	용비교 (뚝섬로) 1차로	"	"
168	70머2531	코*파트너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0 19:50	여의교 (여의대방로) 3차로	"	"
169	80거8904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0 12:37	녹천초(마들로) 2차로	"	"
170	80나2760	정*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0 14:47	사가정역(사가정로) 3차로	"	"
171	80저3948	주식회사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0 06:03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	"
172	80저7170	채*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0 20:25	사당IC진출로 1차로	"	"
173	90무8026	진*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0 07:02	석수역 5차로	"	"
174	93수3658	주식회사 용*에스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0 11:03	안양천로 2차로	"	"
175	서울46도7710	이*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0 13:17	대곡교후방 3차로	"	"
176	01로1346	㈜*양에이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21 16:58	경인고속도로 4차로	"	"
177	03다8634	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1 23:50	서하남IC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78	03소4116	(사)에이*투오청소년 사랑품앗이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21 21:37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1차로	"	"
179	03주4675	박*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1 08:06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차로	"	"
180	04오7573	주-*먼터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1 16:12	송파대로 2차로	"	"
181	04우2837	황*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1 07:56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차로	"	"
182	05오3642	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1 23:26	워커힐(아차산로) 1차로	"	"
183	06저7409	현*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21 10:28	서울교 (경인로) 3차로	"	"
184	10노1850	이*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1 17:46	밤고개로 1차로	"	"
185	24무8339	강*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1 02:04	녹천초(마들로) 1차로	"	"
186	28버6558	이*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1 15:01	별말로 2차로	"	"
187	34오7952	쥬*건하우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1 10:30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차로	"	"
188	36마6734	류*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1 13:26	삼성역 2차로	"	"
189	46너3185	오*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1 10:14	강남역 (테헤란로) 2차로	"	"
190	47구8342	씨*라스해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1 16:02	오목교 (영등포로) 1차로	"	"
191	50구5936	이*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1 19:10	사가정역(사가정로) 3차로	"	"
192	75우2684	이*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21 14:18	개화역 2차로	"	"
193	80머4699	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1 03:5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	"
194	97노8529	장*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1 20:05	신내IC(용마산로) 3차로	"	"
195	서울43고9577	황*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1 17:06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	"
196	01고7255	정*웅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2 15:55	경기도 안양시 삼호수정아파트(군포방면) 2차선	"	"
197	01라4680	김*선외1(김*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2 13:36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차로	"	"
198	01서3926	조*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2 13:3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10-12 포천방면 2차로	"	"
199	01서6563	강*수외1인(강*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2 19:31	화랑대역 (화랑로)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00	01소3021	김*신의1인(이*임)채 권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2 10:18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차로	"	"
201	02거4065	신*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2 08:37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	"
202	02너7855	유*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2 15:53	암사IC(양재대로) 2차로	"	"
203	02버5035	이*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2 20:37	수서IC 1차로	"	"
204	02부6810	진*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2 20:02	화랑대역 (화랑로) 3차로	"	"
205	02수4469	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2 19:02	화랑대역 (화랑로) 1차로	"	"
206	08조9660	최*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2 19:12	군자교 (천호대로) 1차로	"	"
207	18고1749	신*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2 14:12	상일IC진출로 3차로	"	"
208	26조7138	박*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2 19:44	화곡로입구 1차로	"	"
209	28로3765	장*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22 12:03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6차로	"	"
210	37구7838	하*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2 15:33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	"
211	45조1870	강*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2 16:34	녹천초(마들로) 2차로	"	"
212	52너3687	신*식	서울특별시 종량구	2021-08-22 16:11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213	52수4895	나*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2 11:57	올림픽대로(공향방향) 3차로	"	"
214	66무3271	MU*IRE BRUNO HERM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22 10:12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3차로	"	"
215	69누6310	안*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2 20:37	철산대교 1차로	"	"
216	75노2027	이*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2 18:0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	"
217	78조5034	JI Y*NHAI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08-22 17:56	대곡교후방 1차로	"	"
218	79너5711	이*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2 17:24	올림픽대로(공향방향) 1차로	"	"
219	80버8510	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2 20:23	향동지구(서해안로) 2차로	"	"
220	89오4987	정*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2 16:2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	"
221	서울36고7575	정*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2 09:47	신내IC(용마산로) 3차로	"	"
222	서울38더5457	주-*성신용카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2 13:37	화랑대역 (화랑로) 3차로	"	"
223	서울39너6386	박*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2 20:56	화랑대역 (화랑로) 5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24	02도3239	박*예외1(문*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3 00:11	안양천로 3차로	"	"
225	04가7081	배*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3 15:20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1차로	"	"
226	04여3159	㈜*인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3 08:32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호평동방면 1차로	"	"
227	05소4166	민*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3 15:57	군자교 (천호대로) 1차로	"	"
228	08보8102	박*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3 08:46	송파대로 1차로	"	"
229	08우8860	㈜*인력시스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3 14:26	송파대로 2차로	"	"
230	11가8252	JIN ZH*NGZHI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3 07:27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231	46다4767	김*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3 10:26	서하남IC 3차로	"	"
232	52서5658	이*응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3 21:08	암사IC(양재대로) 1차로	"	"
233	69버5323	㈜*엘스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3 16:13	오쇠삼거리 2차로	"	"
234	80무3965	차*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3 17:21	올림픽대로(공항방향) 4차로	"	"
235	93로8002	주식회사 삼*환경서비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3 03:37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	"
236	93여3553	권*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3 10:17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	"
237	서울38러9626	이*운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23 16:57	양재IC 2차로	"	"
238	서울83라3403	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3 17:38	구기터널(진흥로) 1차로	"	"
239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4 17:51	고덕역(고덕로) 1차로	"	"
240	07루7050	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24 06:35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차로	"	"
241	15루8880	김*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4 16:39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차로	"	"
242	43마8548	김*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4 09:51	동일로 2차로	"	"
243	77소8143	정*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4 13:29	당고개 (덕릉로) 2차로	"	"
244	80무2059	장*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4 15:43	강변북로(서울방향) 3차로	"	"
245	80무9579	조은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4 09:51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리입구교차로(별내방향) 별내방면 4차로	"	"
246	81무6785	㈜*지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4 09:07	상일IC주도로 1차로	"	"
247	서울46노7432	김*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4 21:48	사당IC진출로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48	서울50머4370	㈜*원발파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4 05:36	상도터널(양녕로) 2차로	"	"
249	02러4371	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5 21:08	강남역 (테헤란로) 1차로	"	"
250	04도2197	엄*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5 23:04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251	11더5920	CUI GU*NGHUI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5 09:36	별말로 2차로	"	"
252	22주7457	오*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5 09:26	양재IC 4차로	"	"
253	27두4041	김*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5 09:57	연희IC (모래내로) 2차로	"	"
254	29보3027	김*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5 04:50	분당내곡로 2차로	"	"
255	38저6985	한*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5 09:30	연희IC (성산로) 1차로	"	"
256	52모1395	김*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5 16:17	경기도 안산시 팔곡지하차도(안산방향) 1차로	"	"
257	54소2789	양*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5 12:47	수주삼거리 1차로	"	"
258	60소7905	박*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5 17:06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2차로	"	"
259	75마1347	임*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08-25 09:53	신내IC(용마산로) 4차로	"	"
260	82구3934	브릴*엔트프로젝트- 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5 19:46	올림픽대로(잠실방향) 5차로	"	"
261	서울43머7031	이*봉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5 22:50	사가정역(사가정로) 1차로	"	"
262	01나7508	박*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6 19:45	덕은교 2차로	"	"
263	01부7838	㈜*윙정보플러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6 10:43	오목교 (영등포로) 1차로	"	"
264	01저9790	(주*엔티즌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6 18:20	서오릉로 1차로	"	"
265	02러3512	주-*성씨엠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6 05:52	강변북로(일산방향) 4차로	"	"
266	05나5611	김*복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6 19:19	송파대로 2차로	"	"
267	10주5096	김*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6 14:47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268	21마3323	심*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6 16:13	강남역 (테헤란로) 1차로	"	"
269	35라7856	주식회사 *닉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6 21:58	항동지구(서해안로) 1차로	"	"
270	38다2211	*토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6 15:33	상월곡역 (화랑로) 2차로	"	"
271	39로2851	최*옥외1인(권*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6 18:43	임곡삼거리 (북한산로)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72	52도9300	김*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6 11:38	덕은교 2차로	"	"
273	75루5713	전*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6 08:48	망우리교개 2차로	"	"
274	76로6946	보*상조개발(주)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26 14:43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C) 3차로	"	"
275	80라5401	㈜*림건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6 06:05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C) 3차로	"	"
276	80보5574	정*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26 04:25	서울교 (경인로) 2차로	"	"
277	80수7357	㈜*이엠에이엔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6 17:08	천호역(천호대로) 2차로	"	"
278	80저7915	강*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6 09:45	수주삼거리 1차로	"	"
279	92거4856	이*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6 14:47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	"
280	92여4278	권*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6 14:15	온수역(부일로) 1차로	"	"
281	95도4014	㈜*영일레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6 16:39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282	97보5631	김*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6 14:04	신내IC(용마산로) 4차로	"	"
283	서울51누1171	광*건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6 15:13	인천광역시 전제울사거리 3차로	"	"
284	서울90바4090	아*상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6 16:37	경기도 수원시 LG전자베스트샵(수원방면) 3차선	"	"
285	02보3664	김*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7 17:42	한남IC 부근(압구정로) 1차로	"	"
286	03누6098	신*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7 20:43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차로	"	"
287	06여6750	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7 10:51	북악터널(평창문화로) 1차로	"	"
288	10구6089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7 11:14	향동지구(서해안로) 2차로	"	"
289	19루2279	㈜*기아이엔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7 18:10	인천광역시 향동저수지 앞 2차로	"	"
290	19마1364	이*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7 21:36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2차로	"	"
291	36나9023	전*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7 07:0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	"
292	41조3443	장*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7 05:52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	"	"
293	49버4555	주식회사 엔*에스커버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7 22:07	신사역 (강남대로) 2차로	"	"
294	50구4242	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7 17:12	호암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95	57주7753	김*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7 00:57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	"
296	80모8418	㈜*안건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7 08:3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차로	"	"
297	90저6287	장*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7 14:16	수주삼거리 1차로	"	"
298	서울48모1991	김*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7 20:18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차로	"	"
299	서울48모9062	하*전기(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7 10:53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	"
300	01누5299	김*순외1(서*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03:35	군자교 (천호대로) 1차로	"	"
301	01두0486	장*학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13:56	서하남IC 2차로	"	"
302	01루6959	배*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8 11:42	연희IC(연희로) 1차로	"	"
303	01서1339	구*숙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8 18:16	선릉역 (테헤란로) 5차로	"	"
304	02두4926	강*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14:00	서하남IC 1차로	"	"
305	03구4449	안*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8 05:17	우이제3교(덕릉로) 2차로	"	"
306	03구9369	김*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8 21:57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	"
307	03저2939	갈*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8 15:49	통일로 1차로	"	"
308	04나3273	노*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8 18:35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	"
309	05보4188	㈜*자리물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28 19:03	당고개 (덕릉로) 1차로	"	"
310	06러4705	㈜*에스브이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8 18:57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99-36 2차로	"	"
311	06소9400	이*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8 11:4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1차로	"	"
312	07여4986	강*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8 00:28	양화대교 복단(양화로) 3차로	"	"
313	07조9283	안*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8 18:41	수서IC 1차로	"	"
314	09머9524	정*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16:15	천호역(천호대로) 3차로	"	"
315	10주5416	정*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8 16:02	작동터널 2차로	"	"
316	14러6986	㈜*스탑투어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28 12:14	지방도309 1차로	"	"
317	15수7912	장*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8 13:49	개화역 3차로	"	"
318	22로4697	노*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17:37	상일IC주도로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19	24서9424	이*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8 14:43	석수역 4차로	"	"
320	34서8934	정*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8 16:18	올림픽대로(공항방향) 4차로	"	"
321	36가7651	조*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8 21:16	잠실대교 북단(자양로) 3차로	"	"
322	38라8955	최*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8 10:31	신사동고개(가좌로) 2차로	"	"
323	41너1656	김*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11:02	상일IC주도로 4차로	"	"
324	45거1033	강*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8 03:49	분당수서고속화도로 1차로	"	"
325	47여5789	윤*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8 16:47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1차로	"	"
326	49두1229	㈜*디스잉글리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8 07:38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2차로	"	"
327	54라6782	유*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11:12	시흥IC (시흥대로) 4차로	"	"
328	55다5079	윤*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8 20:05	대곡교후방 4차로	"	"
329	60고2482	임*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8 21:37	화랑대역 (화랑로) 1차로	"	"
330	60나9270	이*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8 14:50	서울대입구역(관악로) 3차로	"	"
331	62거4033	김*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8 10:09	호암로 2차로	"	"
332	63두1614	이*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8 19:08	연희IC (성산로) 1차로	"	"
333	63로6541	한*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8 09:25	밤고개로 4차로	"	"
334	65조5407	김*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8 15:51	송파대로 3차로	"	"
335	70로3579	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8 16:57	경기도 안산시 매송지하차도(안산방향) 1차로	"	"
336	70소2893	안*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28 11:56	서울교 (경인로) 3차로	"	"
337	73오8166	W*NG LE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8 05:38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	"
338	75서3163	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8 09:34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3차로	"	"
339	80무5173	이*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8 15:23	경기도 안양시 호계육교(의왕방면) 5차선	"	"
340	80부1601	㈜*시스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28 13:53	동일로 2차로	"	"
341	80부9173	박*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8 10:44	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	"
342	80소6130	김*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8 14:48	작동터널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43	87라3396	박*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8 21:15	양화대교 북단(양화로) 5차로	"	"
344	92부2181	최*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8 13:10	동일로 4차로	"	"
345	서울40노3736	레인*우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8 02:30	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	"
346	서울41머5192	전*석외1인(전*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8 02:56	산골고개 (통일로) 1차로	"	"
347	서울42거8426	남*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8 13:29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2차로	"	"
348	서울52루7083	전*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8 15:37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차로	"	"
349	서울56가2147	윤*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8 20:03	경기도 고양시 장항IC 인근 2차로	"	"
350	서울56나3761	한*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8 09:14	수서IC 2차로	"	"
351	서울82바6196	주식회사 로드*이물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8 03:55	북부간선도로 1차로	"	"
352	01구1430	동*이공-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9 11:49	강변북로(서울방향) 1차로	"	"
353	01누6699	최*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9 16:20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2차로	"	"
354	01모9930	심*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9 15:42	DMC역 (증산로) 1차로	"	"
355	01보1677	박*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9 21:42	유한공고 2차로	"	"
356	01부3866	윤*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9 11:2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5차로	"	"
357	02가3516	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9 09:06	신사동고개(가좌로) 1차로	"	"
358	02나5238	㈜*일뱅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9 13:40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	"
359	02모7017	서*웅외1인(서*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29 07:38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2차로	"	"
360	02오7659	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9 13:34	시흥사거리(금하로) 4차로	"	"
361	03노3024	공*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9 11:35	상일IC진출로 3차로	"	"
362	03도2362	LIM J*N YOU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9 10:56	경기도 수원시 LG전자베스트샵(수원방면) 2차선	"	"
363	03라3079	주-대*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9 17:21	신내IC(용마산로) 4차로	"	"
364	03수1808	박*학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9 17:56	서하남IC 4차로	"	"
365	04마7784	주-마*에프앤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9 16:38	당고개 (덕릉로) 1차로	"	"
366	04오4027	손*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9 15:18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67	05거5510	쥬*트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29 19:14	오목교 (영등포로) 2차로	"	"
368	05여7819	안*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9 16:06	강일IC 2차로	"	"
369	06머1009	박*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9 19:07	도봉로시계 2차로	"	"
370	06오9786	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9 19:01	밤고개로 1차로	"	"
371	07나9599	전*현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29 23:37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372	07마9949	정*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9 11:56	덕은교 2차로	"	"
373	07우8292	송*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9 12:16	양재IC 1차로	"	"
374	08머8411	김*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9 08:43	안양천로 3차로	"	"
375	09가4408	이*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9 21:3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376	09더5675	선*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9 22:34	향동지구(서해안로) 1차로	"	"
377	09마5442	국*방송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9 20:12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3차로	"	"
378	09소8659	조*수외1인(조*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9 18:42	안양천로 1차로	"	"
379	10누9142	김*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08-29 18:15	망우리고개 3차로	"	"
380	11너6029	유*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29 15:04	강변북로(서울방향) 1차로	"	"
381	19수7333	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9 22:33	암사IC(양재대로) 1차로	"	"
382	22오3423	김*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29 12:46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1차로	"	"
383	24너1448	류*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9 08:3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25-312 용인방면 4차로	"	"
384	24오4307	김*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08-29 21:50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	"
385	30고3476	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29 20:38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	"
386	31더1781	김*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29 18:41	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	"
387	31보4257	황*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29 20:50	강변북로(서울방향) 2차로	"	"
388	35거7833	홍*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9 13:52	덕은교 1차로	"	"
389	35조7550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9 05:43	연희IC (성산로) 2차로	"	"
390	36나1067	신*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9 21:48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91	37마4443	이*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9 17:41	당고개 (덕릉로) 2차로	"	"
392	38가3633	주*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29 14:05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차로	"	"
393	40노8236	윤*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9 15:25	신사동고개(가좌로) 1차로	"	"
394	43라2283	유*석외1인(이*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08-29 20:28	구기터널(진흥로) 3차로	"	"
395	45너2632	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29 15:26	사가정역(사가정로) 2차로	"	"
396	45보1551	이*묵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9 21:20	녹천초(마들로) 4차로	"	"
397	45부4781	(사단법인)한국*린피 아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9 15:00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398	49구5468	안*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9 15:50	도봉로시계 1차로	"	"
399	54너6350	성*중앙교회(손*익)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9 15:01	강일IC 4차로	"	"
400	59부7623	웹*투어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9 21:15	여의2교(제물포길) 2차로	"	"
401	64나4640	김*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9 00:01	안양천로 3차로	"	"
402	66가8521	이*출(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9 10:59	선릉역 (테헤란로) 4차로	"	"
403	68보6956	김*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9 14:19	안양천로 2차로	"	"
404	68수3411	이*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9 16:09	서울교 (경인로) 2차로	"	"
405	70너3207	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9 12:47	천호역(천호대로) 3차로	"	"
406	75구3487	사단법인 한*합합문화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9 15:53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407	76머2121	JIN SH*MI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9 16:50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	"	"
408	80누7939	췌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9 05:46	고덕역(고덕로) 1차로	"	"
409	80저9049	김*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9 13:42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410	서울40도6318	김*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29 09:12	향동지구(서해안로) 1차로	"	"
411	서울45노9646	임*덕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9 13:14	강남역 (테헤란로) 1차로	"	"
412	서울53무5385	오*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9 22:54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차로	"	"
413	서울54구2742	최*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9 09:22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414	01라1489	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0 10:01	강일IC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15	01러8462	박*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0 16:17	연희IC (모래내로) 2차로	"	"
416	01루5816	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0 20:26	산골고개 (통일로) 1차로	"	"
417	01여6801	(주)*대문에프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30 00:31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418	01주2736	공*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30 12:23	연희IC (성산로) 2차로	"	"
419	02너8545	이*용외1(박*심)	서울특별시 종랑구	2021-08-30 12:39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	"
420	03고1693	세*프가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0 16:34	경기도 성남시 태재고개 1차로	"	"
421	03고3509	김*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0 09:28	안양천로 2차로	"	"
422	03누9418	한*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0 09:28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423	03라8453	서*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30 17:19	오쇠삼거리 1차로	"	"
424	03모8155	이*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30 19:15	북부간선도로 1차로	"	"
425	03보3110	장*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0 16:31	양재IC 4차로	"	"
426	06가1077	(주)*이원에너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0 18:33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427	07라5844	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30 05:42	강변북로(일산방향) 4차로	"	"
428	07조3044	이*종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0 13:08	DMC역 (증산로) 1차로	"	"
429	07주7359	김*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0 20:37	연희IC (모래내로) 1차로	"	"
430	08두6723	정*석 외1인(조*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0 22:29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2차로	"	"
431	09서4595	김*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30 21:54	잠실대교 북단(자양로) 2차로	"	"
432	09주4387	정*송*공채면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30 19:44	워커힐(아차산로) 2차로	"	"
433	10보8420	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0 18:51	강일IC 2차로	"	"
434	10조5331	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0 05:06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	"	"
435	15누5513	(주)*니투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0 12:31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수원방면) 1차선	"	"
436	21로3808	손*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30 16:57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차로	"	"
437	22로4002	김*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0 13:44	군자교 (천호대로) 2차로	"	"
438	24오5410	한*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0 11:30	개화역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39	31거8080	김*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0 15:40	수서IC 4차로	"	"
440	34버4538	유*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30 16:31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1차로	"	"
441	36마9882	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30 16:39	북부간선도로 1차로	"	"
442	36마2523	허*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30 10:52	솔샘역(솔샘로) 4차로	"	"
443	37저7680	이*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30 17:23	천왕역(오리로) 2차로	"	"
444	40루4476	최*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30 20:33	신내IC(용마산로) 3차로	"	"
445	42더2320	허*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0 10:05	사당IC주도로 1차로	"	"
446	46다5428	주식회사 새*프레스티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0 21:21	산골고개 (통일로) 2차로	"	"
447	48고5922	김*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30 15:51	DMC역 (증산로) 1차로	"	"
448	50가9515	조*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0 14:59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449	50노5089	양*엽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0 12:46	북악터널(평창문화로) 1차로	"	"
450	52두1029	㈜*코미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30 17:54	개봉교후방 1차로	"	"
451	52마4664	박*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0 14:35	수서IC 2차로	"	"
452	53도0579	JIN D*NGGUANG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30 17:03	용비교 (뚝섬로) 1차로	"	"
453	54루8554	임*균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0 10:57	서하남IC 1차로	"	"
454	55무8530	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0 01:16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	"
455	57라6722	김*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0 12:05	연희IC (모래내로) 2차로	"	"
456	59너3451	정*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0 18:0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차로	"	"
457	61더7153	김*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0 02:38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3차로	"	"
458	62보5438	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0 21:20	철산대교 3차로	"	"
459	67로4594	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0 22:12	암사IC(양재대로) 1차로	"	"
460	70가2615	㈜*하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0 09:39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2차로	"	"
461	70고8186	주식회사 자*스마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0 18:00	개화역 4차로	"	"
462	70너4642	박*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30 15:50	용비교 (뚝섬로)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63	70ㄴ2942	김*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0 15:49	암사IC(양재대로) 2차로	"	"
464	75가7719	X* YUANDAO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0 18:39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	"
465	75조8755	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0 21:55	한남IC 부근(압구정로) 2차로	"	"
466	80무8062	㈜*상사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0 10:15	천왕역(오리로) 1차로	"	"
467	80바8806	김*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30 09:58	상일IC주도로 3차로	"	"
468	82구5728	주-우*테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0 15:17	수서IC 1차로	"	"
469	86보5800	(주)한*에코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0 16:27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	"
470	90루7612	김*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0 17:22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471	90오6831	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0 18:01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3차로	"	"
472	91다5172	임*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30 10:14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차로	"	"
473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30 13:59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474	92두4560	윤*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0 07:41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IC) 3차로	"	"
475	92부1818	김*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0 09:0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10-12 포천방면 2차로	"	"
476	92부2330	이*형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0 10:26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	"
477	92수2423	유*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0 07:24	상일IC주도로 6차로	"	"
478	서울30노4795	최*석외1(노*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0 07:24	연희IC (성산로) 2차로	"	"
479	서울39거3582	박*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30 18:46	밤고개로 1차로	"	"
480	서울47고3670	최*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0 17:11	시흥IC (시흥대로) 2차로	"	"
481	서울48모3621	한*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0 17:21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	"
482	서울83사7705	윤*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0 20:23	경기도 수원시 물이랑교사거리(수원방면) 2차선	"	"
483	서울85자4257	㈜*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30 08:35	신사동고개(가좌로) 1차로	"	"
484	서울88아1033	남*성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30 09:45	경기도 안산시 서안산IC(안산방향) 3차로	"	"
485	01가8081	박*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4:02	암사IC(양재대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86	01나3396	권*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31 19:15	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	"
487	01나4131	마*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1 17:26	사당IC주도로 2차로	"	"
488	01누4675	최*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6:22	암사IC(양재대로) 2차로	"	"
489	01머7683	주*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1 17:35	당고개 (덕릉로) 2차로	"	"
490	01여2297	이*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9:35	암사IC(양재대로) 2차로	"	"
491	01저5397	김*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11:31	군자교 (천호대로) 1차로	"	"
492	02가8795	임*화외1인(박*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31 21:03	녹천초(마들로) 1차로	"	"
493	02부2593	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1 06:48	경기도 안양시 삼호수정아파트(군포방면) 1차선	"	"
494	03거1074	박*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1 17:10	서울대입구역(관악로) 3차로	"	"
495	03도7625	문*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09:17	고덕역(고덕로) 2차로	"	"
496	03모9451	남*자 외1인(배*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7:36	북부간선도로 1차로	"	"
497	03부9941	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21:5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5차로	"	"
498	04노8911	최*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1 10:40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1차로	"	"
499	04더9476	양*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09:46	수서IC 2차로	"	"
500	04두6334	구*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1 14:00	양화대교 북단(양화로) 3차로	"	"
501	04소9431	소*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1 17:18	대곡교후방 4차로	"	"
502	05나8406	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31 19:28	산골고개 (통일로) 2차로	"	"
503	05누4232	주*함재널씨비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8:18	통일로 2차로	"	"
504	05서9895	김*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14:37	상월곡역 (화랑로) 2차로	"	"
505	05수5197	배*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31 13:17	여의교 (여의대방로) 2차로	"	"
506	07저5643	주식회사*이원코퍼레 이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18:56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99-36 2차로	"	"
507	08도4869	N*N ZHESH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1 14:01	유한공고 1차로	"	"
508	09고3368	고*풍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09:22	천호역(천호대로) 2차로	"	"
509	09누6631	김*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1 08:46	여의2교(제물포길)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10	09루7103	채*형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31 17:45	망우리고개 2차로	"	"
511	09머8506	정*화(권*락)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31 17:36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3차로	"	"
512	09조5517	박*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31 13:01	밤고개로 1차로	"	"
513	10노9921	유*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21:03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차로	"	"
514	10두2144	문*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31 13:52	화랑대역 (화랑로) 3차로	"	"
515	10서5131	도*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1 07:18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차로	"	"
516	10주5589	홍*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1 16:52	산골고개 (통일로) 1차로	"	"
517	13다4275	오*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3:15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3차로	"	"
518	13더6469	최*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31 16:03	상월곡역 (화랑로) 2차로	"	"
519	14두6708	이*만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31 10:09	상일IC진출로 2차로	"	"
520	15겨9041	이*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1 19:06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99-36 2차로	"	"
521	19노4964	회*컨설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1 08:31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79-29 포천방면 2차로	"	"
522	19러1375	변*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1 23:42	산골고개 (통일로) 1차로	"	"
523	19무9224	LIU G*ILI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0:58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524	20오7761	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18:58	개화역 1차로	"	"
525	24너8277	오*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1 14:3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526	25우8223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1 12:45	DMC역 (증산로) 2차로	"	"
527	27너1362	이*순외1인(박*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9:53	고덕역(고덕로) 2차로	"	"
528	28루7608	서*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1 08:27	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	"
529	32나4410	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1 06:12	군자교 (천호대로) 3차로	"	"
530	32수2827	신*현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31 23:17	길음역(동소문로) 1차로	"	"
531	34마7848	(주)*국산업단지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1 10:11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1차로	"	"
532	34소6322	손*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18:17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533	36버4971	정*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1 15:10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34	37조7007	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1 16:56	워커힐(아차산로) 2차로	"	"
535	38거9821	양*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31 17:50	당고개 (덕릉로) 1차로	"	"
536	38오9107	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8:05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537	46모1742	어*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3:38	강일57단지 (아리수로) 2차로	"	"
538	49부3250	윤*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31 19:28	수주삼거리 2차로	"	"
539	49여6832	이*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1 19:30	천호역(천호대로) 3차로	"	"
540	51가0495	LI CH*NGZE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20:24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2차로	"	"
541	51나1349	김*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1 16:10	올림픽대로(잠실방향) 5차로	"	"
542	52너5757	황*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31 18:51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2차로	"	"
543	56거6755	중*멤버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19:06	수서IC 3차로	"	"
544	58수5269	주*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1 11:19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5차로	"	"
545	61로1250	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04:13	고덕역(고덕로) 1차로	"	"
546	63루3570	박*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31 04:21	도봉로시계 3차로	"	"
547	64부5310	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4:47	철산대교 1차로	"	"
548	66로4430	강*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13:21	상월곡역 (화랑로) 2차로	"	"
549	67고8322	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31 15:25	화랑대역 (화랑로) 3차로	"	"
550	70누5083	김*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6:04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	"
551	70조3068	주-더*컴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1 10:31	경기도 수원시 지지대고개(수원방면) 2차선	"	"
552	70조3430	이*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31 20:21	군자교 (천호대로) 2차로	"	"
553	71거8066	허*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31 22:43	신내IC(용마산로) 3차로	"	"
554	72더5779	명*익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31 16:34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3차로	"	"
555	73구6556	BAI F*NGJU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05:18	인양천로 2차로	"	"
556	75가7103	이*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6:45	호암로 2차로	"	"
557	75모5443	김*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31 17:15	녹천초(마들로)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58	75보8234	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31 14:40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	"
559	76너1113	유*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31 16:59	구기터널(진흥로) 1차로	"	"
560	76노7004	전*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1 04:51	우이제3교(덕릉로) 2차로	"	"
561	76노7098	구*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31 15:37	삼성역 2차로	"	"
562	80구6941	경*제약(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31 14:57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화도방면 2차로	"	"
563	80나2554	㈜두*쓰리무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04:21	서빙고로 (한남역방향) 1차로	"	"
564	80너8701	㈜*탈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18:16	상도터널(양녕로) 1차로	"	"
565	80도7150	김*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1 13:2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99-36 1차로	"	"
566	80로7566	박*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31 18:39	기아대교 (한내로) 3차로	"	"
567	80루3824	윤*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31 08:1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568	80모5900	㈜*창수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31 14:07	경기도 안양시 호계육교(의왕방면) 4차선	"	"
569	80무9014	박*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31 06:59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2차로	"	"
570	80부1060	주식회사 드*이노텍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1 16:37	신사역 (강남대로) 3차로	"	"
571	80저7833	㈜*화축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31 05:54	망우리교개 2차로	"	"
572	80조6511	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1 10:44	경기도 수원시 수인산업도로(수원방면) 2차선	"	"
573	86수3559	김*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9:25	항동지구(서해안로) 2차로	"	"
574	86우7240	정*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1 21:24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C) 3차로	"	"
575	89오7388	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09:33	수서IC 4차로	"	"
576	90무7590	옥*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8:25	용비교 (독섬로) 2차로	"	"
577	91나5758	고*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31 09:40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1차로	"	"
578	92나8667	김*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8-31 22:22	금천교(범안로) 2차로	"	"
579	92서3089	윤*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31 20:53	신내IC(용마산로) 4차로	"	"
580	93서2626	방*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3:12	난곡터널(문성로) 1차로	"	"
581	94도7604	김*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02:06	경기도 김포시 해병2사단사거리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82	94라3784	최*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31 08:07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	"
583	94라6938	김*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31 10:14	강일IC 1차로	"	"
584	서울31머3663	황*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31 06:01	구기터널(진흥로) 1차로	"	"
585	서울36노7807	신*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3:21	작동터널 2차로	"	"
586	서울44두7587	최*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31 19:42	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	"
587	서울45모1137	최*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06:21	수주삼거리 1차로	"	"
588	서울47고5329	박*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31 14:09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사거리(과천방면) 2차선	"	"
589	서울48로5384	오*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31 13:21	오목교 (영등포로) 1차로	"	"
590	서울50더5773	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17:27	서빙고로 (한남역방향) 2차로	"	"
591	서울55너9670	김*수 외1인(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31 18:04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2차로	"	"
592	서울82바8360	경기*동경동택배(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1 05:03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	"
593	서울870아3547	㈜비오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31 11:40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3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년 10월 22일(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9615-3241)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39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등

3. 공시송달내용(총68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1년 10월 22일(금)이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36가1883	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01 15:58	분당내곡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80라4856	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02 18:1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49부1279	신*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03 12:20	잠실대교 북단(자양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03너1522	김*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05 13:17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덕소방면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	80거1847	정*덕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05 20:30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	76우1386	지*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06 16:33	호암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7	80무2715	장*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06 16:18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양평방면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	02우5927	부*철강공업(주)외1인(나 *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07 12:35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IC 인근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	05다9159	김*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07 09:21	산골고개 (통일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	19가8881	주보*이엔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08-07 15:41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양평방면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	02두3211	천*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08 20:36	북부간선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	서울53두3585	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08 11:53	송파대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	서울30고4688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09 20:23	강일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	04다7291	류*곤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10 11:16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양평방면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	53누7557	NGU*EN THI HUONG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8-10 15:46	경기도 시흥시 수자원공사앞4R(수원방면) 1차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	90루6369	권*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10 18:49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녹양PG충전소)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	서울83바2194	(주) 현*물류넷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10 16:52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96-9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	49버4591	홍*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1 15:0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등교리 410-12 포천방면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	52오9529	김*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2 13:04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741 파주방면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	04수4112	이*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8-13 11:31	경기도 고양시 장항IC 인근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	18두2681	박*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13 13:07	회기역앞(왕산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2	76여2699	조*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08-14 11:24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3	80마4918	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14 09:22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화도방면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4	02너7155	김*관	서울특별시 종랑구	2021-08-16 14:15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5	03너2894	신*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16 19:21	천호역(천호대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6	06구1415	윤*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16 21:48	수서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7	79여5288	노*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16 06:22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8	78조3516	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17 17:51	북부간선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9	80오9956	광*이엔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19 13:03	올림픽대로(공향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0	02너7943	나*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0 12:53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31	86부5139	쥬신*건설창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0 13:51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2	97거3506	김*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0 05:59	우이제3교(덕릉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3	35오6066	안*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1 22:10	분당내곡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4	서울50도3816	권*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1 09:16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5	01라9909	류*춘외1인(류*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8-22 08:58	수서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6	16다3569	김*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22 21:12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7	85가6719	(주) 정*이엔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3 16:16	경기도 성남시 탄천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8	서울55러3885	서*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3 13:45	수서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9	01어3506	김*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1-08-24 18:13	산골고개 (통일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0	서울87아6896	삼*화물운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08-24 13:3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61-1 평택방면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1	31라1727	(사)한*고령친화산업진흥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5 20:04	구기터널(진흥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2	54마3805	유*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25 14:31	경기도 성남시 농수산물센터사거리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3	77로8066	김*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5 11:55	시흥IC (시흥대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4	경기35무3562	박*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5 16:1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5	서울47고8892	이*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25 07:08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6	92여3396	쥬두*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6 11:03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78-8 화성방면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7	01어5551	김*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7 20:14	북부간선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8	13서6633	쥬한*프레스출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08-27 21:52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9	61두5402	김*민	서울특별시 중구	2021-08-27 19:44	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0	인천32마4565	이*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08-27 13:35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1	02도5220	송*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08-28 15:25	여의2교(제물포길)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2	04마1658	하*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8 16:59	호암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3	34거5775	우*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28 14:31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4	서울40로7721	이*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8-28 07:26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55	05오7994	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08-29 15:36	철산대교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6	26버1100	김*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8-29 20:46	경기도 의왕시 골사그내보도육교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7	32루8549	LOP*Z IAN BERNAR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8-29 16:20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462-1 동두천방면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8	02버2816	이*목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30 13:43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9	03오2693	박*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08-30 11:41	여의2교(제물포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0	82터8475	드림*세이프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0 18:06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79-29 포천방면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1	90나5845	윤*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0 19:10	개화역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2	서울31너4210	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1-08-30 22:12	올림픽대로(공향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3	02노2821	김*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15:34	개화역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4	05여3991	장*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1-08-31 15:32	신내IC(용마산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5	37너4415	용*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08-31 15:14	용비교 (독섬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6	39라1593	백*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08-31 18:40	유한공고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7	78저3546	강*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08-31 09:56	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8	82버5836	드*포세이프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08-31 15:24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덕소방면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년 10월 22일(금)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9615-3241)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60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나 현재 영업소재지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1. 9. 30.(목) ~ 2021. 10. 14.(목)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2차 - 등록취소)					
당사자	성 명	대표 배봉근 [풍산건설(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 소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442, 305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2차 -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개별기준 라목 2차 - 예방과-10612(2021.09.1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청문계획보고”					
청문실시	기관명	성동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준화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전화번호	02-2622-1692
	일 시	2021년 10월 14일(목) 10:00			장 소	성동소방서 4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			
		성명	김영진			

<청문시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문회 미참석 또는 의견서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인 (행정처분 2차 - 등록취소)가 청문실시일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서식 7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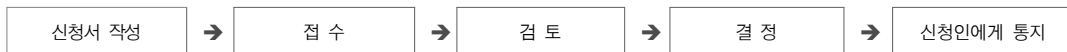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청)

처리기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리기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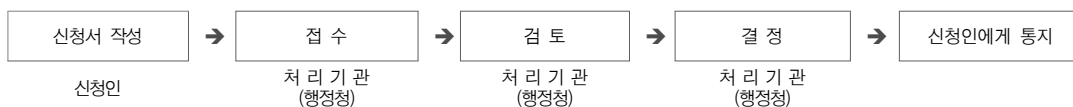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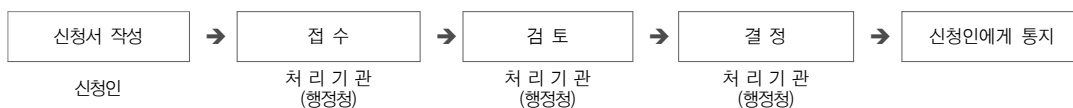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7.28>

증거조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증명할 사실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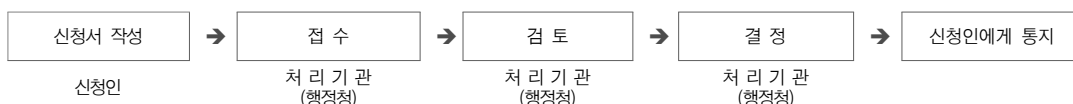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7.28>

문서 [] 열람 신청서
[] 복사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100 100 1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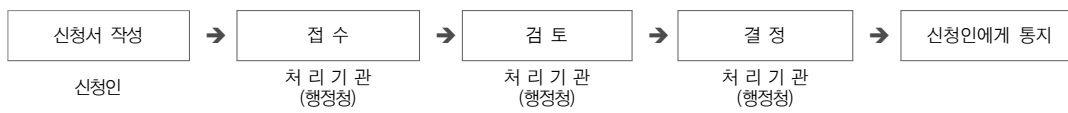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있음	수수로 없음

유 의 사 항

1.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사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6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심문섭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 **동 ***호(송현동)	일시: 2021-07-10 16:02 장소: 신월여의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24m 초과	처분일: 2021. 8. 30.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1. 10. 31.
송석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 ***호(선화동)	일시: 2021-07-19 20:58 장소: 안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1. 8. 30.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1. 10.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종현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 ***동 ***호(청라동)	일시: 2021-05-19 16:06 장소: 고강지하차도 입구 내용: 운행제한 폭 0.25m 초과	처분일: 2021. 6. 29.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1. 8. 31.
김평기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437번길 **-* , **호(삼정동)	일시: 2021-05-21 10:12 장소: 화곡동 행복주택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과적방지) 의무 위반	처분일: 2021. 6. 29.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1. 8. 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순영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99번길 *, ***동 ***호 (마전동)	일시: 2021-05-28 17:53 장소: 수송고가삼거리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1.2t 초과	처분일: 2021. 6. 29.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1. 8.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1.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7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문운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90번길 25-7 40*호(복정동)	위반일시 : 2021-07-08 10:02 위반장소 :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고정초소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9m, 초과값:0.29m, 경기90아30**)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8-27 납기일 : 2021-10-31
박찬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43번길 32 403동 100*호(정왕동 주공아파트)	위반일시 : 2021-08-01 09:09 위반장소 :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교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9m, 초과값:0.29m, 인천07마61**)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8-27 납기일 : 2021-10-31
남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42번길 40-5 10*호(대정동)	위반일시 : 2021-08-04 05:57 위반장소 : 마포구 성산동 성산교(강변북로 한강대교밀) 위반내용 :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6.45t, 초과값:4.45t, 세종86바28**)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8-27 납기일 : 2021-10-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1.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74호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호(2010.2.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6호(2016.9.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회현동 1가 100-266 일대 남산2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남산2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번지 일대

다. 면 적 : 74,411m²

라. 조성계획 변경 내용

- 공원시설(남산창작센터) 리모델링(제로에너지전환, 스튜디오 조성 등)에 따른 건축물 바닥 면적, 연면적 변경
- 현황조사 관련 일부 공원시설 면적 증·감사항 반영

마.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2)

아.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4,411.00	15,411.90	2	2,270.82	11,160.87	32	74,411.00	15,667.33	2	2,166.73	10,982.73	37	증) 255.43 ㎡ (시설면적)
기 반 시 설	소 계	6,493.22					6,493.22	6,493.22					
	도 로	6,428.00					6,428.00	6,428.00					
	광 장	65.22					65.22	65.22					
조 경 시 설	159.00	159.00					171.10	171.10				5	증) 12.10 ㎡ (부지, 시설면적)
유 희 시 설													
휴 양 시 설	517.92	517.92				8	517.92	517.92				8	
교 양 시 설	3,072.81	3,072.81	1	1,356.20	1,966.20	5	3,072.81	3,072.81	1	1,252.11	1,788.06	5	건축물 바닥면적 감 104.09㎡ 건축물 연면적 감 178.14㎡
운 동 시 설	114.17	114.17				19	357.50	357.50				19	증) 243.33 ㎡ (부지, 시설면적)
편 익 시 설	5,054.78	5,054.78	1	914.62	9,194.67		5,054.78	5,054.78	1	914.62	9,194.67		
관 리 시 설													
녹지 및 기타	58,999.10		(1)	(1,197.88)	(7,322.40)	(15)	58,743.67		(1)	(1,197.88)	(7,322.40)	(15)	감) 255.43 ㎡ (부지면적)
시 설 률 (법정 40%)	(15,411.90 / 74,411.00) × 100 = 20.71%						(15,667.33 / 74,411.00) × 100 = 21.06%						증) 0.35%
건 폐 율 (법정 10%)	(2,270.82 / 74,411.00) × 100 = 3.05%						(2,166.73 / 74,411.00) × 100 = 2.9%						감) 0.35%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4,411.00	15,411.90		2	2,270.82	11,160.87	32			74,411.00	15,667.33		2	2,270.82	11,160.87	37	증) 255.43 ㎡ 오류보정
기 반 시 설	소 계			6,493.22	6,493.22								6,493.22	6,493.22						
	도 로			6,428.00	6,428.00								6,428.00	6,428.00						
	광 장	가		65.22	65.22						가	중구 예정동 산5-89	65.22	65.22						부호변경 (가-1 → 가)
		가-1	중구 예정동 산5-89	65.22	65.22															
조 경 시 설	소 계			159.00	159.00								171.10	171.10					5	증) 12.10 ㎡ 오류보정
	실개천	마		159.00	159.00						마		171.10	171.10						증) 12.10 ㎡ 오류보정
	정 자										①								(3)	누락시설 오류보정
	그늘시령										②								(1)	누락시설 오류보정
	야외탁자										③								(1)	누락시설 오류보정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517.92	517.92					8			517.92	517.92					8	
	휴게소	다		517.92	517.92						다		517.92	517.92						
		다-1	중구 예상동 2-1	(477.92)	(477.92)					(7)	다-1	중구 예상동 2-1	(477.92)	(477.92)					(7)	
		다-2	중구 예상동 산3-13	(40.00)	(40.00)					(1)	다-2	중구 예상동 산3-13	(40.00)	(40.00)					(1)	
교양 시설	소 계			3,072.81	3,072.81					5			3,072.81	3,072.81					5	
	남산창작 센터	2	중구 예상동 산5-87	1,863.81	1,863.81	철근 콘크리트 조	1	1,356.20	1,966.20		2	중구 예상동 산5-87	1,863.81	1,863.81	철근 콘크리트조	1	1,252.11	1,788.06		건축물 바닥면적 감 104.09㎡ 건축물 연면적 감 178.14㎡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바	중구 예상동 2-1	1,209.00	1,209.00					(5)	바	중구 예상동 2-1	1,209.00	1,209.00					(5)	
운동 시설	소 계			114.17	114.17					19			357.50	357.50					19	증) 243.33 ㎡ 오류보정
	체력 단련장	라		114.17	114.17						라		357.50	357.50						증) 243.33 ㎡ 오류보정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1	중구 예정동 산4-5	(58.95)	(58.95)					(9)	라-1	중구 예정동 산4-5	(215.50)	(215.50)					(9)	증) 156.55 ㎡ 오류보정
	라-2	중구 예정동 산4-5	(55.22)	(55.22)					(10)	라-2	중구 예정동 산4-5	(142.00)	(142.00)					(10)	증) 86.78 ㎡ 오류보정	
편의시설	소 계			5,054.78	5,054.78		1	914.62	9,194.67				5,054.78	5,054.78		1	914.62	9,194.67		
	유스 호텔	1	중구 예정동 산4-5	1,787.14	1,787.14	철근콘크리트	1	914.62	9,194.67		1	중구 예정동 산4-5	1,787.14	1,787.14	철근콘크리트	1	914.62	9,194.67		
	나			3,267.64	3,267.64						나		3,267.64	3,267.64						
	주차장	나-1	중구 예정동 산4-5	(3,033.87)	(3,033.87)						나-1	중구 예정동 산4-5	(3,033.87)	(3,033.87)						
	나-2	중구 예정동 산5-84	(233.77)	(233.77)							나-2	중구 예정동 산5-84	(233.77)	(233.77)						
녹지 및 기타	소 계			58,999.10			(1)	(1,197.88)	(7,322.40)	(15)			58,743.67			(1)	(1,197.88)	(7,322.40)	(15)	감) 255.43㎡ 오류보정
	남산별관	3	중구 예정동 산5-85	3,905.94		철근콘크리트	(1)	(1,197.88)	(7,322.40)	(1)	3	중구 예정동 산5-85	3,905.94		철근콘크리트	(1)	(1,197.88)	(7,322.40)	(1)	
	녹 지		전지역	55,093.16						(14)			54,837.73						(14)	감) 255.43㎡ 오류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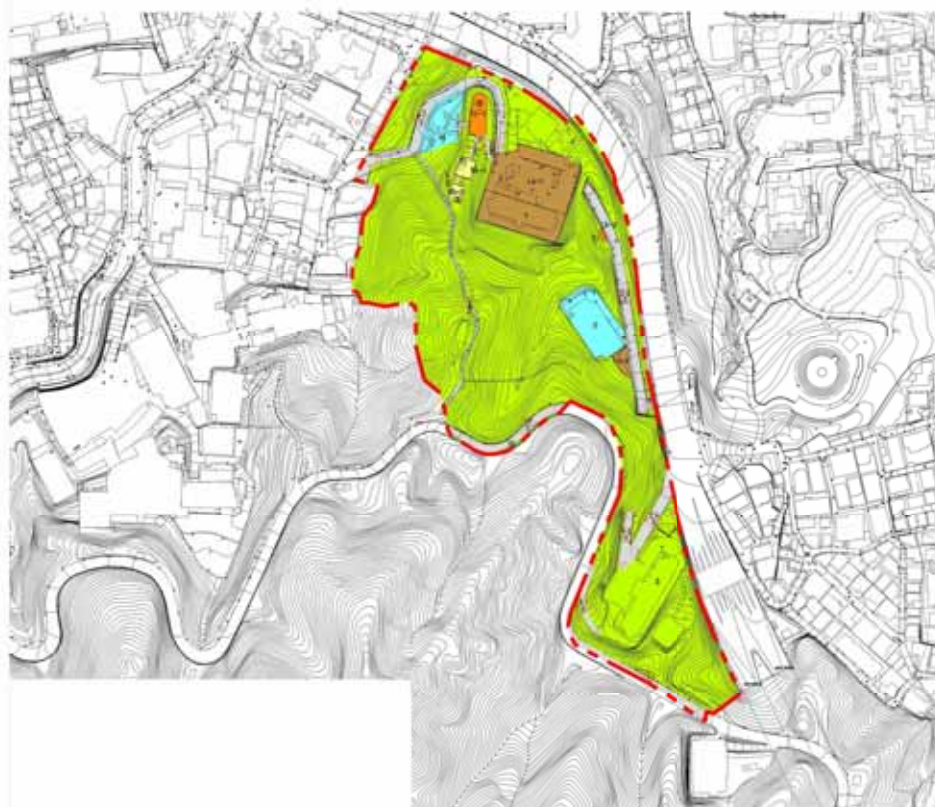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038.5	6,428.0				
변경					1,038.5	6,428.0				
당초	소로	소계			733.0	5,831.0				
당초		1	1	10	85.0	850.0	남부순환로	예장동 산5-6	예장동 산5-6	
당초		1	2	8.5	106.0	901.0	남부순환로	예장동 산5-6	예장동 산5-6	
당초		2	1	8	212.0	1,696.0	주진일로	예장동 2-1	주차장1	
당초		2	2	8	210.0	1,680.0	주진일로	예장동 산3-13	예장동 산5-84	
당초		2	3	8	48.0	384.0	주진일로	예장동 산5-85	예장동 산5-85	
당초		2	4	8	8.0	64.0	주진일로	예장동 산5-89	예장동 산5-85	
당초		3	1	4	64.0	256.0	부진일로	예장동 산5-6	예장동 산5-85	
당초	산책로	소계			305.5	597.0				
변경					305.5	597.0				
당초		-	1	2	16.5	30.0	산책로	휴게소1	광장 가-2	
변경		-	1	2	16.5	30.0	산책로	일본군 위안부 지역의 터	휴게소1	오류정정
당초		-	2	1.5	20.0	30.0	산책로	휴게소1	체력단련장1	
당초		-	3	2	25.0	50.0	산책로	주차장1	휴게소1	
당초		-	4	1.5	8.0	12.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2	
당초		-	5	2	236.0	472.0	산책로	소로2-1	예장동 산5-6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500

[illegible]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7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3부.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대상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과태료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0-10-23 14:37:23	01허3909	a*****d(간*)	10,300	인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2	남산1호터널	2020-11-09 19:02:36	17거8395	신*현	5,150	경기 구리시 검배로13번길
3	남산3호터널	2020-11-16 10:00:19	128호2935	장*롬	10,300	서울 마포구 새터산14길
4	남산1호터널	2020-11-16 12:59:58	128호2935	장*롬	10,300	서울 마포구 새터산14길
5	남산3호터널	2020-11-18 15:34:08	05호0195	배*윤	10,300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6	남산1호터널	2020-11-30 14:41:43	62허0121	정*훈	10,300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7	남산3호터널	2020-11-30 19:10:07	34호0343	채*호	10,300	서울 강남구 학동로
8	남산3호터널	2020-12-18 15:10:43	67호7146	정*영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3길
9	남산1호터널	2020-12-23 11:13:28	166하6950	씨***** (주)	10,300	서울 중구 동호로
10	남산1호터널	2021-01-04 10:32:20	33호6238	조*제	10,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1	남산1호터널	2021-01-04 18:45:35	44호3684	박*민	10,300	인천 중구 송학로
12	남산1호터널	2021-01-04 19:06:22	44호3684	박*민	10,300	인천 중구 송학로
13	남산1호터널	2021-01-05 12:25:11	37허0694	이*웅	10,300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4	남산3호터널	2021-01-05 14:05:18	128호7351	그*카	5,150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150번길
15	남산3호터널	2021-01-05 17:10:14	20하0511	그*카	10,3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	남산1호터널	2021-01-06 16:51:01	46루9684	주*** **롬	10,3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	남산3호터널	2021-01-07 11:26:46	04하9950	설*호	10,300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18	남산1호터널	2021-01-07 12:39:04	69하0237	신*애	10,300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9	남산1호터널	2021-01-07 15:03:52	57하3035	주*****엠	10,300	경기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20	남산1호터널	2021-01-07 15:19:31	69하0237	신*애	10,300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21	남산1호터널	2021-01-07 19:31:20	300부3453	주*** **이	10,300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22	남산3호터널	2021-01-07 20:39:24	06도4040	이*인	10,300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3	남산1호터널	2021-01-08 07:00:27	182호1501	(주)***설	10,300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남산3호터널	2021-01-08 15:06:14	06조3072	주*** **트	10,3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51길
25	남산3호터널	2021-01-08 16:09:40	61노2108	주*** **드	10,3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면 충절로
26	남산1호터널	2021-01-08 20:40:41	63호4346	사*** **회	10,300	서울 은평구 연서로
27	남산3호터널	2021-01-11 15:00:13	11노0429	민***원(이*국)	10,3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6길
28	남산3호터널	2021-01-12 12:13:18	122하3799	(주)***드	10,300	경기 시흥시 금오로169번길
29	남산1호터널	2021-01-12 14:57:01	10호8283	방*영	10,30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30	남산3호터널	2021-01-12 18:24:21	128허8926	그*카	5,150	서울 용산구 원효로67길
31	남산1호터널	2021-01-12 19:08:50	26하9969	정*용	10,30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32	남산1호터널	2021-01-13 12:00:06	32호9482	메***** (주)	5,150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33	남산1호터널	2021-01-13 14:39:57	24하4609	한*****트	10,300	서울 용산구 청파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과태료	주소
34	남산3호터널	2021-01-13 19:26:33	101호5730	최*만	10,30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2길
35	남산1호터널	2021-01-13 20:32:49	101호5745	이*민	10,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9길
36	남산1호터널	2021-01-14 19:37:01	140호4200	장*진	10,300	제주 제주시 구산서길
37	남산3호터널	2021-01-15 12:04:41	33하6553	더**택(장*진)	10,300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38	남산1호터널	2021-01-15 16:46:56	140호1616	수**사(김*욱)	10,300	전남 목포시 원산로52번길
39	남산1호터널	2021-01-15 18:00:29	134수6615	김*삼	10,3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3길
40	남산1호터널	2021-01-15 18:21:52	68버8971	주*** **스	10,3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41	남산1호터널	2021-01-18 09:19:33	49호0286	그*카	10,300	대전 중구 대흥로111번길
42	남산1호터널	2021-01-18 09:29:25	06다2872	회*** **대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43	남산1호터널	2021-01-18 12:14:49	56하9303	서*호	10,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44	남산3호터널	2021-01-18 12:22:09	166하8278	쿠***** **사	10,30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5	남산1호터널	2021-01-18 12:41:13	122하3048	비***스(조*호)	10,300	서울 은평구 응암동
46	남산3호터널	2021-01-18 14:25:24	01여3070	보****미(장*희)	10,300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47	남산1호터널	2021-01-18 16:18:37	230소8934	주*** *흠	10,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88번길
48	남산1호터널	2021-01-18 16:49:14	51호2190	쥬**크	10,300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9	남산3호터널	2021-01-18 20:38:20	59보2984	박*준	10,3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50	남산1호터널	2021-01-19 10:43:41	155허9737	쥬****공	10,300	서울 성동구 마장로35길
51	남산3호터널	2021-01-19 12:55:06	387로9125	테**리(손*하)	10,3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2	남산3호터널	2021-01-19 14:04:57	136가5062	경**킨(이*림)	10,300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53	남산1호터널	2021-01-19 20:47:51	57호7904	그*카	10,300	경기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54	남산3호터널	2021-01-20 07:09:21	167호1575	(주)***어	10,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105번길
55	남산1호터널	2021-01-20 13:50:37	22하0195	(주)***설	10,3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56	남산1호터널	2021-01-20 16:33:30	170하4774	아** **사	10,300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57	남산3호터널	2021-01-20 18:51:02	128호7351	그*카	5,150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0길
58	남산1호터널	2021-01-20 20:27:09	57호7899	유*** (주)	10,3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9	남산3호터널	2021-01-21 13:22:05	34로4441	서*경	10,3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60	남산3호터널	2021-01-21 14:40:07	63하4639	코* **스(C*** ***) (강*태)	10,300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61	남산3호터널	2021-01-21 14:46:32	58하0997	주*** **스	10,300	인천 연수구 송도동
62	남산3호터널	2021-01-21 17:22:29	33호9063	기*권	10,300	경기 부천시 길주로77번길
63	남산1호터널	2021-01-21 19:45:45	37허0873	그*카	10,300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3길
64	남산1호터널	2021-01-22 11:17:37	61하7967	김*영	10,3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4가길
65	남산1호터널	2021-01-22 12:03:17	157하3163	농***** **사	10,300	경기 평택시 진위면 하북2길
66	남산3호터널	2021-01-22 15:30:20	157호4935	(주)***조	10,30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63번길
67	남산1호터널	2021-01-22 18:29:56	56두7361	보*또(정*형)	10,300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과태료	주소
68	남산1호터널	2021-01-25 10:22:24	20거2782	여*래	10,3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69	남산1호터널	2021-01-25 11:53:00	140하5155	서*훈	10,3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70	남산1호터널	2021-01-25 13:40:24	59호2610	이*찬	10,300	전북 익산시 약촌로
71	남산3호터널	2021-01-25 14:39:09	140하5155	서*훈	10,3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72	남산3호터널	2021-01-25 15:40:56	69호2954	하*도	10,300	경북 경주시 토용길
73	남산1호터널	2021-01-25 16:57:36	27하7541	강*경	10,300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74	남산1호터널	2021-01-26 16:02:41	68호0962	주****B	5,150	경기 부천시 부천로
75	남산3호터널	2021-01-26 19:28:48	39고6691	윤**외(이*선)	10,300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6	남산1호터널	2021-01-27 09:24:14	08마2680	계**당(유*현)	10,3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	남산1호터널	2021-01-27 11:41:30	226두3753	주*** **트	10,3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8	남산3호터널	2021-01-27 12:33:50	61호6532	공*호	10,3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개일로20번길
79	남산1호터널	2021-01-27 14:52:00	39하5705	조*정	10,300	서울 서초구 논현로11길
80	남산3호터널	2021-01-27 18:27:27	156나2151	조*현	10,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다길
81	남산1호터널	2021-01-27 20:49:40	37호1382	강*일(국***이)	10,300	서울 서초구 효령로
82	남산1호터널	2021-01-28 14:07:15	157하5564	주*** *****즈	10,3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83	남산1호터널	2021-01-28 19:57:33	49하3176	원*****사	10,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84	남산1호터널	2021-01-29 08:02:07	49하3176	원*****사	10,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85	남산3호터널	2021-01-29 20:21:39	05하0277	롯데*(주)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86	남산3호터널	2021-01-29 20:44:56	157하2698	신*진	10,3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87	남산1호터널	2021-02-01 13:44:41	149호3684	최*섭	10,300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88	남산1호터널	2021-02-01 17:39:43	39하6638	우* * *어	10,300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501번길
89	남산3호터널	2021-02-03 13:17:21	09하0439	이*훈	10,300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
90	남산1호터널	2021-02-03 17:01:47	65호8377	비*****아	10,300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91	남산1호터널	2021-02-03 19:39:24	153하1297	(주)*****스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남산1호터널	2021-02-04 14:40:39	333로9020	이*형	10,300	강원 삼척시 동해대로
93	남산1호터널	2021-02-04 19:48:20	350머2378	주*** *본	10,300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94	남산3호터널	2021-02-05 08:02:17	166하5234	원**희	10,300	서울 은평구 응암로14길
95	남산3호터널	2021-02-05 11:49:10	66하1311	김*겸	10,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96	남산1호터널	2021-02-05 15:07:05	34호5650	김*환	10,300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97	남산3호터널	2021-02-05 19:10:50	55호9643	이*진	10,300	서울 서초구 내루터로4길
98	남산1호터널	2021-02-08 09:39:24	45호6284	지****설	10,3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99	남산3호터널	2021-02-08 11:14:42	104하9887	김*택	10,3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100	남산3호터널	2021-02-08 15:25:01	162하6966	B*****Y	5,150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32길
101	남산3호터널	2021-02-09 07:05:12	52호2054	주*** **브	10,300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과태료	주소
102	남산1호터널	2021-02-09 07:16:44	101호7408	강*원	10,3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65길
103	남산3호터널	2021-02-09 13:46:23	109하6740	이*원	5,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04	남산3호터널	2021-02-09 16:08:53	104호7489	하*구	10,300	경기도 평택시 원평2로
105	남산3호터널	2021-02-09 18:18:22	173호7811	㈜**어	10,30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6	남산1호터널	2021-02-09 18:25:16	104하3870	(주)****스	10,3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35번길
107	남산3호터널	2021-02-10 18:14:16	140하2782	두***T	10,3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811번길
108	남산1호터널	2021-02-10 20:36:23	140하2784	주*** *****니	10,300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109	남산1호터널	2021-02-10 20:37:59	40하2541	최*웅	10,30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110	남산3호터널	2021-02-15 11:09:51	166호2019	A***** ***** H	10,30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111	남산3호터널	2021-02-15 11:46:17	166호2019	A***** ***** H	10,30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1-03-16 09:52:06	52여0963	10,300	곽*영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2	남산1호터널	2021-03-16 10:43:55	20호3606	10,300	(주)지*탈	서울특별시성동구자동차시장1길
3	남산3호터널	2021-03-16 11:14:44	34마0866	10,300	Q* H*****I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로
4	남산1호터널	2021-03-16 11:21:32	324마9787	10,300	박*수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
5	남산1호터널	2021-03-16 11:27:41	30저4426	10,300	H**G Y***N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6	남산3호터널	2021-03-16 11:52:18	64루6707	10,300	서*규	경상남도김해시구지로
7	남산1호터널	2021-03-16 13:03:57	63노6370	10,300	에*****스(주)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8	남산1호터널	2021-03-16 13:28:21	64수3023	10,300	유한회사 심*****발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9	남산3호터널	2021-03-16 13:34:17	61보5888	10,300	장*석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주대로11번길
10	남산1호터널	2021-03-16 14:07:52	64루6707	10,300	서*규	경상남도김해시구지로
11	남산3호터널	2021-03-16 14:12:07	174오9412	10,300	김*현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37번길
12	남산3호터널	2021-03-16 14:53:59	36우3796	10,300	임*형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3	남산3호터널	2021-03-16 15:40:55	174오9412	10,300	김*현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37번길
14	남산3호터널	2021-03-16 15:42:00	35구2436	10,300	(주)블***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2길
15	남산1호터널	2021-03-16 15:50:26	27버0295	10,300	김*식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
16	남산1호터널	2021-03-16 16:05:30	16나5112	10,300	명*홍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로
17	남산3호터널	2021-03-16 16:15:42	144러2998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18	남산1호터널	2021-03-16 17:12:43	24도1945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4길
19	남산1호터널	2021-03-16 17:44:12	54더9749	10,300	김*록	강원도원주시늘품로
20	남산3호터널	2021-03-16 17:46:28	10서0495	10,300	최*일	경기도고양시덕양구용두로47번안길
21	남산1호터널	2021-03-16 18:15:00	06부4646	10,300	이*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2	남산3호터널	2021-03-16 18:19:53	28라4147	5,150	김*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23	남산1호터널	2021-03-16 18:22:52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75길
24	남산1호터널	2021-03-16 19:17:26	18라1219	5,150	김*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25	남산1호터널	2021-03-16 19:40:31	66고5194	5,150	정*희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18길
26	남산1호터널	2021-03-16 19:45:24	144러2998	10,300	김*희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
27	남산3호터널	2021-03-17 07:24:40	57버7065	10,300	임*훈	경기도고양시덕양구흥국사길
28	남산1호터널	2021-03-17 07:58:18	45소9113	10,300	권*재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4길
29	남산1호터널	2021-03-17 08:48:32	55마7950	10,300	이*경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길
30	남산1호터널	2021-03-17 09:27:50	159오6449	10,300	강*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5길
31	남산1호터널	2021-03-17 10:16:19	24도1945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4길
32	남산1호터널	2021-03-17 11:39:13	64부4022	10,300	변*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7가길
33	남산1호터널	2021-03-17 12:16:18	05마9012	10,300	김*태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15길
34	남산1호터널	2021-03-17 14:04:11	42서6424	10,300	박*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5	남산3호터널	2021-03-17 15:31:04	12조5361	10,300	정*훈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로
36	남산1호터널	2021-03-17 16:37:30	13가0308	10,300	장*웅	서울특별시강서구곰달래로44길
37	남산1호터널	2021-03-17 18:23:26	25노1261	10,300	강*봉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길
38	남산1호터널	2021-03-17 18:26:04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75길
39	남산3호터널	2021-03-17 19:22:22	16나8812	10,300	(주)동**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0	남산1호터널	2021-03-17 20:18:47	23부6922	10,300	주식회사 쇼*****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41	남산1호터널	2021-03-17 20:33:16	66수3546	10,300	최*득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11길
42	남산1호터널	2021-03-18 07:33:53	18라0334	10,300	정*훈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43	남산1호터널	2021-03-18 08:39:05	55마7950	10,300	이*경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길
44	남산1호터널	2021-03-18 09:26:00	69서4387	10,300	박*섭	강원도강릉시보래미하길65번길
45	남산3호터널	2021-03-18 09:47:31	24머0696	10,300	유*언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44길
46	남산1호터널	2021-03-18 11:40:40	258로1705	10,300	고*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47	남산3호터널	2021-03-18 13:03:19	57도2027	10,300	주식회사 타**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2길
48	남산3호터널	2021-03-18 13:15:59	05더8341	10,300	(주)아*****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9	남산3호터널	2021-03-18 13:53:20	35라0900	10,300	주식회사 제*****텍	대구광역시달서구중흥로
50	남산1호터널	2021-03-18 15:58:26	37라9160	10,300	김*완	부산광역시북구만덕1로104번길
51	남산1호터널	2021-03-18 16:03:06	60노7042	10,300	신*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북로2길
52	남산3호터널	2021-03-18 16:11:20	15거6461	10,300	(주)코**스	강원도삼척시교동로
53	남산1호터널	2021-03-18 16:14:21	334오6190	10,300	조*원	경기도화성시동탄치동천로3길
54	남산1호터널	2021-03-18 16:17:13	64오3758	10,300	이*희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4길
55	남산3호터널	2021-03-18 17:52:07	53도9137	10,300	(주)마*****카(M***** ** *****a)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19길
56	남산3호터널	2021-03-18 17:59:37	21저1277	10,300	송*은	경기도가평군북면백둔로467번길
57	남산1호터널	2021-03-18 18:23:09	31로2359	10,300	김*직	강원도춘천시우석로101번길
58	남산3호터널	2021-03-18 20:08:48	26마8517	10,300	안*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순환로
59	남산1호터널	2021-03-18 20:34:15	04루4141	10,300	주식회사 연***오	경기도파주시월롱면출작로
60	남산3호터널	2021-03-18 20:48:30	60가1328	10,300	법무법인(유한)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1	남산1호터널	2021-03-19 07:59:25	115나3708	10,300	조*원	광주광역시광산구도전남길
62	남산1호터널	2021-03-19 08:16:57	278저9267	10,300	성*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3	남산1호터널	2021-03-19 09:52:58	42두8356	10,300	(주)도*****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64	남산1호터널	2021-03-19 10:04:10	173버9549	10,300	박*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5	남산1호터널	2021-03-19 13:05:44	62주1771	10,300	정*리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피로
66	남산1호터널	2021-03-19 13:59:44	101호5581	10,300	(주)대***카	서울특별시강남구대해란로
67	남산1호터널	2021-03-19 14:23:26	38노8417	10,300	이*옥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
68	남산3호터널	2021-03-19 14:49:26	61머1664	10,300	김*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69	남산1호터널	2021-03-19 16:32:37	60너6323	10,300	한*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선로50번길
70	남산1호터널	2021-03-19 17:07:50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북한강로
71	남산1호터널	2021-03-19 17:50:18	09거0257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남대로
72	남산3호터널	2021-03-19 18:04:48	60두3258	10,300	정*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73	남산3호터널	2021-03-19 18:18:13	322노6720	10,300	이*경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74	남산1호터널	2021-03-19 18:36:43	45어0658	10,300	최*리	강원도춘천시신북읍배후령길
75	남산3호터널	2021-03-19 19:48:37	01구3555	10,300	김*만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도로47다길
76	남산1호터널	2021-03-19 20:30:53	19머4064	10,300	소*진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77	남산1호터널	2021-03-22 07:21:09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78	남산3호터널	2021-03-22 08:43:07	23보2419	10,300	이*혁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15길
79	남산1호터널	2021-03-22 09:59:56	57다1295	5,150	장*기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
80	남산3호터널	2021-03-22 10:21:33	37버3374	10,300	박*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남산1호터널	2021-03-22 12:04:38	20너0163	10,300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82	남산1호터널	2021-03-22 13:08:32	05주8304	10,300	우*선외1인(김*순)	충청북도괴산군공평면광덕3길
83	남산1호터널	2021-03-22 13:24:41	160오9555	10,300	김*정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84	남산1호터널	2021-03-22 13:40:26	30고2357	10,300	유*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85	남산3호터널	2021-03-22 14:24:40	경기65머6865	10,300	강*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곡로1번길
86	남산1호터널	2021-03-22 14:58:58	310두4643	10,300	한*준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58길
87	남산1호터널	2021-03-22 15:02:36	32우8492	10,300	(주)리*****티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6길
88	남산3호터널	2021-03-22 15:57:54	05오1027	10,300	강*성	서울특별시종로구답십리로77길
89	남산3호터널	2021-03-22 16:44:23	31너1795	10,300	이*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25로
90	남산1호터널	2021-03-22 17:39:22	50모0388	10,300	고*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9길
91	남산3호터널	2021-03-22 17:39:25	30두3516	10,300	박*우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69번길
92	남산1호터널	2021-03-22 17:40:19	27나0101	10,300	염*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달맞이길
93	남산1호터널	2021-03-22 17:43:43	26모6197	10,300	김*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공원길
94	남산1호터널	2021-03-22 17:47:49	312도8700	10,300	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95	남산1호터널	2021-03-22 17:51:58	45누1976	10,300	김*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기도대로7길
96	남산1호터널	2021-03-22 18:33:50	26러1413	10,300	이*정	경기도용인시기흥구죽현로
97	남산3호터널	2021-03-22 18:35:54	160구2202	10,300	박*우	경기도포천시신북면신평로16번길
98	남산1호터널	2021-03-22 19:10:21	56무9516	10,300	황*환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로26번길
99	남산1호터널	2021-03-22 19:27:28	324구3791	10,300	하*화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05길
100	남산3호터널	2021-03-22 19:54:18	57다1295	5,150	장*기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
101	남산1호터널	2021-03-22 20:30:25	310부5916	10,300	이*영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57번길
102	남산1호터널	2021-03-22 20:54:27	52호6925	10,300	에*****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03	남산3호터널	2021-03-23 09:27:24	52무4121	10,300	정*벨	경기도 의왕시 별묘길
104	남산3호터널	2021-03-23 10:04:28	33하6948	10,300	현***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5	남산1호터널	2021-03-23 12:21:16	52더7663	10,300	(주)비*이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북로10번길
106	남산3호터널	2021-03-23 13:26:34	40여5619	10,300	(주)제*****셋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
107	남산1호터널	2021-03-23 13:48:07	25서2602	10,300	엄*희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역로1길
108	남산1호터널	2021-03-23 13:50:35	36서4016	10,300	변*영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대로
109	남산1호터널	2021-03-23 14:20:05	51구6469	10,300	주식회사 코*****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운로85번길
110	남산3호터널	2021-03-23 14:54:48	서울54모4521	10,300	김 *모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
111	남산1호터널	2021-03-23 15:53:31	68여6389	10,300	우*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어정로
112	남산1호터널	2021-03-23 16:11:49	49주5547	10,300	최*한	경기도용인시기흥구지삼로98번길
113	남산1호터널	2021-03-23 16:15:19	66수2033	10,300	박*영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동로
114	남산1호터널	2021-03-23 16:18:15	45너2502	10,300	윤*룡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15	남산3호터널	2021-03-23 16:36:16	293노8305	10,300	김*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116	남산1호터널	2021-03-23 17:03:20	40오4925	10,300	박*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양산개6길
117	남산1호터널	2021-03-23 17:15:52	56오1418	10,300	신*자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읍한술로
118	남산3호터널	2021-03-23 18:00:49	51고7777	10,300	Z**O Z*****G	서울특별시 성북구 숲샘로1길
119	남산1호터널	2021-03-23 19:13:27	05러7415	10,300	(주)티*****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원길
120	남산3호터널	2021-03-23 19:39:55	59누3463	10,300	최*성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9길
121	남산1호터널	2021-03-23 20:18:56	54다2299	10,300	월*****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0길
122	남산3호터널	2021-03-23 20:20:29	61두1832	10,300	S*O K**E J**G H*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23	남산1호터널	2021-03-23 20:43:19	10서1227	10,300	김*권	경기도 광명시 가림일로
124	남산1호터널	2021-03-23 20:55:55	49도3258	10,300	권*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ㄹ)
125	남산1호터널	2021-03-24 08:20:35	60도1488	10,300	이*철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126	남산1호터널	2021-03-24 08:35:57	55마7950	10,300	이*경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길
127	남산3호터널	2021-03-24 08:51:34	20소8730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용산구신흥로14길
128	남산1호터널	2021-03-24 10:07:05	174주9187	10,300	윤*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129	남산1호터널	2021-03-24 10:34:51	171수8167	10,300	Y*N J*****G	경기도김포시통진읍담터로
130	남산1호터널	2021-03-24 10:44:23	52러5533	10,300	박*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1길
131	남산1호터널	2021-03-24 11:44:45	15여3560	10,300	주식회사 현*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연하해안로
132	남산1호터널	2021-03-24 12:21:37	06가5917	10,300	홍*영	서울금천구디지털로
133	남산1호터널	2021-03-24 12:32:26	41수8649	10,300	(주) 탄*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곡로16길
134	남산1호터널	2021-03-24 12:46:18	10가2576	10,300	정*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7길
135	남산1호터널	2021-03-24 13:08:03	174주9187	10,300	윤*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136	남산3호터널	2021-03-24 13:11:15	20서2088	10,300	최*진	경상남도김해시금관대로599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37	남산1호터널	2021-03-24 13:32:15	07라6787	10,300	김*중	경기도안성시일죽면죽화로
138	남산1호터널	2021-03-24 14:15:55	52거2847	10,300	서*경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12안길
139	남산3호터널	2021-03-24 14:28:01	66무8604	10,300	김*겸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재로6길
140	남산3호터널	2021-03-24 14:34:23	03너0655	10,300	유*진	경기도화성시수노을로
141	남산3호터널	2021-03-24 15:28:52	01나0615	5,150	이*순	경기도양평군양서면제탄1길
142	남산1호터널	2021-03-24 16:04:14	55두3579	10,300	정*현	인천광역시연수구센트럴로
143	남산3호터널	2021-03-24 17:40:04	60저8664	10,300	박*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북로
144	남산3호터널	2021-03-24 17:46:57	15우3429	10,300	반*환	서울특별시강동구공성로42길
145	남산1호터널	2021-03-24 19:39:23	25조9389	10,300	주식회사 예*슨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146	남산1호터널	2021-03-25 07:21:17	52배2154	10,300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47	남산1호터널	2021-03-25 08:24:06	52배2154	10,300	김*현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북한강로
148	남산1호터널	2021-03-25 09:42:06	20두3839	10,300	서*태	경기도수원시영통구산남로4번길
149	남산3호터널	2021-03-25 10:23:50	26저8357	10,300	홍*희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181번길
150	남산1호터널	2021-03-25 10:59:19	35조7620	10,300	이*웅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1길
151	남산1호터널	2021-03-25 11:41:17	28노0145	10,300	이*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12길
152	남산3호터널	2021-03-25 11:44:04	16가3990	10,300	김*영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153	남산3호터널	2021-03-25 13:15:31	41수8431	10,300	김*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양로50번길
154	남산3호터널	2021-03-25 13:51:17	11주5740	10,300	양*우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길
155	남산1호터널	2021-03-25 14:00:17	01누4668	10,300	김*경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56	남산1호터널	2021-03-25 14:10:39	35루1266	10,300	김*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을 한덕로
157	남산1호터널	2021-03-25 14:56:00	38라6729	10,300	(주)케*****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377번길
158	남산1호터널	2021-03-25 15:37:08	66무0508	10,300	하*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59	남산1호터널	2021-03-25 15:43:48	27다5187	10,300	조*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60	남산1호터널	2021-03-25 15:58:17	16가0374	10,300	박*규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장록당우길
161	남산1호터널	2021-03-25 16:35:07	17주9227	10,300	김*영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57길
162	남산1호터널	2021-03-25 16:58:12	11너0525	10,300	김*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63	남산1호터널	2021-03-25 17:04:07	01러6101	10,300	윤*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4길
164	남산3호터널	2021-03-25 17:11:03	40두8513	10,300	A***D S*****Z	인천광역시서구석남로
165	남산3호터널	2021-03-25 18:59:58	49부5065	10,300	(주)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166	남산1호터널	2021-03-25 19:19:21	272루2549	10,300	김*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곡남로4번길
167	남산1호터널	2021-03-25 19:43:04	01부3473	10,300	박*태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로7길
168	남산1호터널	2021-03-25 20:01:07	23저0465	10,300	금*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169	남산1호터널	2021-03-25 20:35:01	42조4613	10,300	최*록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138길
170	남산3호터널	2021-03-25 20:48:11	27머9357	10,300	박*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71	남산1호터널	2021-03-25 20:48:17	180오1508	10,300	김*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172	남산1호터널	2021-03-25 20:49:02	354보9273	10,300	박*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2길
173	남산1호터널	2021-03-25 20:56:12	15도2838	10,300	주식회사 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74	남산1호터널	2021-03-26 07:34:34	60도1488	10,300	이*철	인천광역시남동구호곡로
175	남산3호터널	2021-03-26 08:17:21	60두8916	10,300	김*강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26길
176	남산1호터널	2021-03-26 08:46:36	55마7950	10,300	이*경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길
177	남산1호터널	2021-03-26 09:03:25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북한강로
178	남산3호터널	2021-03-26 09:40:13	28구4986	10,300	선*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79	남산1호터널	2021-03-26 10:18:53	31여7811	10,300	서*정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68길
180	남산3호터널	2021-03-26 11:13:04	66호4598	10,300	(주)퍼***원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181	남산1호터널	2021-03-26 12:00:46	43가0175	10,300	김*환	전라북도정읍시연지3길
182	남산1호터널	2021-03-26 13:28:26	63너3011	10,300	정*영	대구광역시동구팔공로
183	남산1호터널	2021-03-26 14:28:48	223머3978	10,300	주식회사 명****스	경기도남양주시지전읍진별로
184	남산3호터널	2021-03-26 14:30:28	58부3983	10,300	김*현	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60다길
185	남산1호터널	2021-03-26 14:50:00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북한강로
186	남산1호터널	2021-03-26 14:50:31	03우1862	10,300	이*혜	경기도광주시오포읍오포로171번길
187	남산1호터널	2021-03-26 15:29:00	40마6137	10,300	황*석	경기도부천시소사로300번길
188	남산1호터널	2021-03-26 16:01:46	48고9571	10,300	최*훈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영로139번길
189	남산3호터널	2021-03-26 16:15:21	43도4985	10,300	김*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90	남산3호터널	2021-03-26 18:06:32	01부3473	10,300	박*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191	남산3호터널	2021-03-26 18:40:39	56거7155	10,300	이*주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로182번길
192	남산1호터널	2021-03-26 18:48:20	325부4215	10,300	허*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중앙공원로
193	남산1호터널	2021-03-26 19:08:39	59가7196	10,300	황**숙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4로
194	남산1호터널	2021-03-26 19:14:07	43서2814	10,300	김*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95	남산3호터널	2021-03-26 19:39:03	15마8714	5,150	권*진	경기도화성시향남읍상산하길로
196	남산1호터널	2021-03-26 19:40:13	62우0799	10,300	이*주	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197	남산1호터널	2021-03-26 20:34:56	30보6805	5,150	변*섭	경기도하남시수리북로18번길
198	남산1호터널	2021-03-26 20:37:22	19머4064	10,300	소*진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199	남산1호터널	2021-03-29 07:25:53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북한강로
200	남산1호터널	2021-03-29 07:43:27	39오6363	10,300	김*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
201	남산3호터널	2021-03-29 07:47:40	50소0189	10,300	이*훈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석곡길
202	남산1호터널	2021-03-29 07:52:47	18라1219	5,150	김*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203	남산1호터널	2021-03-29 08:11:26	22가3461	10,300	이*수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204	남산1호터널	2021-03-29 08:35:05	308수8000	10,300	이*형	전라남도순천시서면배들이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05	남산1호터널	2021-03-29 08:42:01	55마7950	10,300	이*경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길
206	남산1호터널	2021-03-29 09:17:57	52루5932	10,300	김*영	경상북도안동시임하면추목로
207	남산1호터널	2021-03-29 10:09:50	12저0744	10,300	K*M R****N	경기도안성시장기1길
208	남산3호터널	2021-03-29 10:59:50	43거7079	10,300	이*성	경기도과천시삼부골3로
209	남산3호터널	2021-03-29 12:44:51	11도4105	10,300	남*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10	남산3호터널	2021-03-29 13:03:35	144가8319	10,300	주식회사 영*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
211	남산3호터널	2021-03-29 13:42:50	61두1832	10,300	S*O K**E J**G H*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212	남산3호터널	2021-03-29 13:47:26	55소6822	10,300	전*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29길
213	남산3호터널	2021-03-29 13:52:14	38주2695	10,300	은*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방천로
214	남산1호터널	2021-03-29 14:41:07	331더9609	10,300	박*연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로
215	남산1호터널	2021-03-29 14:42:12	24로3253	10,300	조*식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96번길
216	남산1호터널	2021-03-29 15:22:05	61두1832	10,300	S*O K**E J**G H*A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
217	남산3호터널	2021-03-29 15:22:07	32부0308	10,300	박*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218	남산1호터널	2021-03-29 16:07:27	28거0212	10,300	주식회사 신*****스	경기도광명시하안로
219	남산3호터널	2021-03-29 16:35:40	57도2027	10,300	주식회사 타**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2길
220	남산3호터널	2021-03-29 17:06:07	51노8866	10,300	J***G Z*****U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로3안길
221	남산3호터널	2021-03-29 17:12:54	36나9707	10,300	권*형	서울특별시은평구역말로9가길
222	남산1호터널	2021-03-29 17:46:11	50노0284	10,300	김*영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223	남산1호터널	2021-03-29 20:00:24	28라5738	10,300	유*권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48길
224	남산1호터널	2021-03-29 20:09:53	42노3572	10,300	장*숙	경기도오산시오산로
225	남산1호터널	2021-03-29 20:35:14	59보6384	10,300	(주)마****씨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0길
226	남산1호터널	2021-03-29 20:43:46	68구5064	10,300	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경원대로
227	남산1호터널	2021-03-29 20:50:27	28거0231	10,300	주식회사 이*몰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228	남산3호터널	2021-03-29 20:55:34	48누3777	10,300	폴****팡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229	남산1호터널	2021-03-30 07:16:04	56수1203	10,300	장*숙	경기도하남시천현로102번길
230	남산1호터널	2021-03-30 08:18:03	18라1219	5,150	김*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231	남산1호터널	2021-03-30 08:50:17	55마7950	10,300	이*경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길
232	남산1호터널	2021-03-30 09:03:08	60고8515	10,300	임*영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33	남산1호터널	2021-03-30 09:22:44	06보5873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무서8길
234	남산1호터널	2021-03-30 09:44:06	27려4293	10,300	G***V N*****O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
235	남산1호터널	2021-03-30 10:46:16	24루5535	10,300	박*우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83길
236	남산1호터널	2021-03-30 10:56:09	27려4293	10,300	G***V N*****O	인천광역시연수구능허대로79번길
237	남산3호터널	2021-03-30 11:11:30	64매4133	10,300	전*국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반촌로
238	남산1호터널	2021-03-30 12:32:12	41려7205	10,300	이*준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5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39	남산3호터널	2021-03-30 12:42:46	36서7721	10,300	주식회사 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40	남산1호터널	2021-03-30 13:35:48	56고1476	5,150	서*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자성로
241	남산1호터널	2021-03-30 13:50:25	38노7743	10,300	최*금	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산로
242	남산3호터널	2021-03-30 14:27:00	14두7384	10,300	공*식	경기도양주시옥정로5길
243	남산3호터널	2021-03-30 16:27:21	03루6587	10,300	박*호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고등로
244	남산1호터널	2021-03-30 17:00:37	150려3763	10,300	차*희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로
245	남산1호터널	2021-03-30 17:07:51	27머7033	10,300	오*영	경기도 평택시 동부공원로
246	남산1호터널	2021-03-30 18:43:49	185무7206	10,300	안*연	경기도화성시동탄하나1길
247	남산3호터널	2021-03-30 19:03:38	185무7206	10,300	안*연	경기도화성시동탄하나1길
248	남산1호터널	2021-03-30 19:14:14	26부0851	10,300	김*옥	충청남도아산시문화로
249	남산3호터널	2021-03-30 19:15:03	27수3135	10,300	주식회사 키*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6길
250	남산1호터널	2021-03-30 20:31:59	39노5688	10,300	N* J***G Y*O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
251	남산1호터널	2021-03-31 08:13:04	02다1379	10,300	한*준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9길
252	남산1호터널	2021-03-31 09:32:44	33누8835	5,150	정*훈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514번길
253	남산1호터널	2021-03-31 11:13:10	55마6414	10,300	이*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254	남산1호터널	2021-03-31 11:24:49	28다6010	10,300	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8가길
255	남산1호터널	2021-03-31 11:54:11	18저3995	10,300	박*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256	남산1호터널	2021-03-31 12:19:18	63너4686	10,300	이*희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동로
257	남산1호터널	2021-03-31 12:23:42	38무3706	10,300	최*환	경기도구리시동구릉로85번길
258	남산3호터널	2021-03-31 13:11:31	02누2416	10,300	김*천	경기도가평군설악면자잠로
259	남산3호터널	2021-03-31 13:27:50	33부7305	10,300	(주)우****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별로199번길
260	남산3호터널	2021-03-31 15:12:09	40수4802	10,300	박*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7가길
261	남산1호터널	2021-03-31 15:30:58	19노5503	10,300	이*정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62	남산3호터널	2021-03-31 16:35:12	55버3570	10,300	정*수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22길
263	남산1호터널	2021-03-31 16:42:20	20마1848	10,300	김*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64	남산3호터널	2021-03-31 17:50:11	13고5587	10,300	엄*우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78가길
265	남산3호터널	2021-03-31 18:00:52	50소0189	10,300	이*훈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길
266	남산1호터널	2021-03-31 18:36:59	25머4252	10,300	동*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팔달로225번길
267	남산1호터널	2021-03-31 18:51:53	31보2807	10,300	김*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268	남산1호터널	2021-03-31 19:21:12	101허3254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0길
269	남산3호터널	2021-03-31 19:30:33	03수7415	10,300	김*영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로
270	남산1호터널	2021-03-31 20:08:19	06수4916	10,300	문*식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7가길
271	남산1호터널	2021-03-31 20:11:26	53도8262	10,300	박*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1-03-02 07:12:50	47마9433	10,300	허*운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	남산1호터널	2021-03-02 07:26:10	25버4014	10,3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을	경기도양주시광적면화합로81번길
3	남산1호터널	2021-03-02 07:33:32	47하2011	10,300	(주)경***카	경기도안성시공도읍서동대로
4	남산1호터널	2021-03-02 09:38:37	33하6948	10,300	현***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5	남산1호터널	2021-03-02 09:44:08	67우4004	5,150	B*****V U*****N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
6	남산1호터널	2021-03-02 10:26:39	03소4212	10,300	임*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7	남산3호터널	2021-03-02 11:07:07	361로9136	10,300	김*광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북운로
8	남산1호터널	2021-03-02 11:11:44	356조6784	10,300	정*근	경기도 양양시 만안구 외릉로
9	남산3호터널	2021-03-02 13:42:03	18하9110	10,300	에*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43길
10	남산1호터널	2021-03-02 13:59:18	58나5110	10,300	김*준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260길
11	남산1호터널	2021-03-02 14:03:28	29부6520	10,300	박*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2	남산1호터널	2021-03-02 14:08:37	27두8992	10,300	강*구	전라남도순천시석현길
13	남산1호터널	2021-03-02 14:19:33	22하1391	10,300	(주)케***카 경****점	경기도부천시삼작로
14	남산1호터널	2021-03-02 14:39:52	184려2141	10,300	이*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5	남산1호터널	2021-03-02 14:47:14	30우2520	10,300	박*연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16	남산1호터널	2021-03-02 15:40:28	20두3839	10,300	서*태	경기도수원시영통구산남로4번길
17	남산3호터널	2021-03-02 16:24:18	20두3839	10,300	서*태	경기도수원시영통구산남로4번길
18	남산3호터널	2021-03-02 17:08:07	18라1219	5,150	김*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19	남산1호터널	2021-03-02 17:10:31	60루1417	10,300	김*우	서울특별시강동구상일로
20	남산1호터널	2021-03-02 17:54:53	59누4340	10,300	(주)라***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1	남산1호터널	2021-03-02 19:06:32	04거5458	10,300	정*은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22	남산1호터널	2021-03-02 19:14:28	16모7114	10,300	김*수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산로
23	남산3호터널	2021-03-02 19:22:25	61허4311	10,300	에***카 주식회사	경기도동두천시평화로
24	남산1호터널	2021-03-02 19:31:23	224구2947	10,300	(주)재*****아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
25	남산1호터널	2021-03-02 19:46:26	47조1513	10,300	변*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39번길
26	남산3호터널	2021-03-02 19:55:10	07보1756	10,300	김*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7번길
27	남산1호터널	2021-03-03 07:04:21	66주6496	10,300	이*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8	남산3호터널	2021-03-03 07:50:04	40저0101	10,300	최*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5길
29	남산1호터널	2021-03-03 08:08:55	01부3473	10,300	박*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30	남산1호터널	2021-03-03 09:01:02	224구2947	10,300	(주)재*****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31	남산3호터널	2021-03-03 09:38:51	39조2928	10,300	김*옥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
32	남산1호터널	2021-03-03 11:33:52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33	남산1호터널	2021-03-03 11:37:48	65주8155	10,300	정*환	경기도광주시오포읍오포로
34	남산1호터널	2021-03-03 11:40:02	63더9281	10,300	김*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5	남산1호터널	2021-03-03 13:00:55	65주8155	10,300	정*환	경기도광주시오포읍오포로
36	남산1호터널	2021-03-03 13:31:52	266더5638	10,300	석*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71번길
37	남산1호터널	2021-03-03 14:15:04	35구3047	10,300	박*범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38	남산3호터널	2021-03-03 14:28:45	07가4572	10,300	김*태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동길
39	남산1호터널	2021-03-03 14:49:59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40	남산1호터널	2021-03-03 15:08:48	45두3782	10,300	주식회사 양****스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
41	남산1호터널	2021-03-03 16:15:47	46나2113	10,300	심*식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7길
42	남산3호터널	2021-03-03 17:02:33	07나8400	10,300	유*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당2길
43	남산3호터널	2021-03-03 17:04:22	20도6601	10,300	라*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44	남산3호터널	2021-03-03 17:41:20	47도2681	10,300	강*연	서울특별시양천구산정이펜1로
45	남산1호터널	2021-03-03 17:55:29	50러0308	10,300	권*형	인천광역시미추홀구독배로
46	남산1호터널	2021-03-03 18:52:31	24모9342	5,150	김*애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23길
47	남산1호터널	2021-03-03 20:07:57	27허1101	10,300	뉴****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48	남산3호터널	2021-03-03 20:18:45	07수1558	10,300	홍*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영지동3길
49	남산3호터널	2021-03-04 09:59:25	65로6993	10,300	이*완	서울특별시성북구북악산로15길
50	남산1호터널	2021-03-04 10:14:27	61허4311	10,300	에***카 주식회사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51	남산1호터널	2021-03-04 10:16:04	63로8141	10,300	최*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2	남산3호터널	2021-03-04 10:33:01	08루6668	5,150	백*선	경기도양주시새터로
53	남산3호터널	2021-03-04 11:29:36	304더5632	10,300	노*자	경기도파주시미래로
54	남산1호터널	2021-03-04 11:32:19	35보7648	5,150	채*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8길
55	남산3호터널	2021-03-04 11:43:57	50나7062	10,300	남*지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로43길
56	남산1호터널	2021-03-04 12:35:35	65구7708	10,300	김*득(열**회)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수로
57	남산1호터널	2021-03-04 12:57:47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58	남산3호터널	2021-03-04 14:30:07	285누3358	10,300	서*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92번길
59	남산3호터널	2021-03-04 14:59:30	48두5223	10,300	김*경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8길
60	남산3호터널	2021-03-04 15:21:07	50더0161	10,300	조*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61	남산3호터널	2021-03-04 16:31:31	54루7286	10,300	최*연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인계로
62	남산1호터널	2021-03-04 19:08:21	359라1209	10,300	주식회사 효*****트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
63	남산1호터널	2021-03-04 19:43:53	58마2995	10,300	신*무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지금로146번길
64	남산1호터널	2021-03-04 20:08:21	149버5534	10,300	김*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연동로217번길
65	남산1호터널	2021-03-04 20:30:07	17호5356	10,300	뉴****카(주)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로
66	남산1호터널	2021-03-04 20:35:02	14너5273	10,300	(주)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67	남산1호터널	2021-03-04 20:37:22	40구1193	10,300	정*철	경기도의정부시태평로46번길
68	남산1호터널	2021-03-05 07:14:05	63로1542	10,300	허*혜	서울특별시종로구검재로22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69	남산1호터널	2021-03-05 08:10:40	02모6288	10,300	최*화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국로
70	남산3호터널	2021-03-05 08:32:16	09여7921	10,300	이*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28번길
71	남산3호터널	2021-03-05 10:48:52	13고5587	10,300	엄*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72	남산1호터널	2021-03-05 11:11:46	21고2104	10,300	배*현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
73	남산1호터널	2021-03-05 11:41:58	65우1830	10,300	김*삼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4	남산1호터널	2021-03-05 11:55:12	257마3295	10,300	송*인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23길
75	남산1호터널	2021-03-05 12:54:18	23라0954	10,300	김*민	서울특별시구로구구일로8길
76	남산3호터널	2021-03-05 13:02:02	61허4311	10,300	에***가 주식회사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77	남산1호터널	2021-03-05 14:00:28	23누5308	10,300	나*채	서울특별시중랑구왕원역로
78	남산3호터널	2021-03-05 14:17:22	23구2347	10,300	홍*옥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60길
79	남산3호터널	2021-03-05 15:22:16	14러0660	10,300	(주)비*****트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07길
80	남산1호터널	2021-03-05 15:37:48	257마3295	10,300	송*인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23길
81	남산1호터널	2021-03-05 16:19:18	227다9778	10,300	김*연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죽전대로527번길
82	남산1호터널	2021-03-05 17:24:45	227다9778	10,300	김*연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죽전대로527번길
83	남산1호터널	2021-03-05 17:29:27	43나5976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
84	남산1호터널	2021-03-05 17:59:32	69부2881	10,300	박*준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신로
85	남산1호터널	2021-03-05 19:07:06	01구2408	10,300	박*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86	남산1호터널	2021-03-05 19:33:14	03수3076	10,300	서*린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87	남산1호터널	2021-03-05 20:21:21	14부4647	10,300	이*****딩(유)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88	남산3호터널	2021-03-05 20:28:10	101허3762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0길
89	남산3호터널	2021-03-05 20:30:10	25너0218	10,300	(주) 피****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90	남산1호터널	2021-03-08 07:37:29	06부2036	10,300	홍*희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비슬산길
91	남산1호터널	2021-03-08 08:34:04	23여6704	10,300	박*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3번길
92	남산1호터널	2021-03-08 09:13:11	396너8435	10,300	박*현	경상남도김해시우암로85번길
93	남산1호터널	2021-03-08 09:24:59	180주8314	10,300	변*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94	남산3호터널	2021-03-08 09:31:49	119러2138	10,300	유*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95	남산1호터널	2021-03-08 09:44:57	180주8314	10,300	변*현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146번길
96	남산1호터널	2021-03-08 10:37:35	383파2390	10,300	김*한	강원도원주시신림면전불길
97	남산3호터널	2021-03-08 11:18:16	23나3953	10,300	박*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98	남산1호터널	2021-03-08 11:56:01	28여6868	10,300	이*현	서울특별시강남구연주로71길
99	남산1호터널	2021-03-08 12:47:48	20너1880	10,300	성*진	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7길
100	남산1호터널	2021-03-08 13:13:30	35노2774	10,300	김*만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101	남산3호터널	2021-03-08 13:21:45	276마4038	10,300	안*한	경기도파주시쇠재로
102	남산1호터널	2021-03-08 13:38:59	40고7951	10,300	(주)마*랩	인천광역시서구파랑로116번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03	남산1호터널	2021-03-08 13:56:13	52나1709	10,300	채*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8길
104	남산3호터널	2021-03-08 14:29:17	316주3386	10,300	김*연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로
105	남산1호터널	2021-03-08 14:44:55	55오0873	10,300	임*철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24가길
106	남산3호터널	2021-03-08 15:13:23	26마5588	10,300	김*호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
107	남산3호터널	2021-03-08 15:35:21	43나5976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08	남산1호터널	2021-03-08 15:52:19	20너1880	10,300	성*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7길
109	남산1호터널	2021-03-08 16:06:52	19무7503	5,150	이*용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7길
110	남산3호터널	2021-03-08 16:09:37	332소6540	10,300	송*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중순환로433번길
111	남산1호터널	2021-03-08 16:20:16	26마5588	10,300	김*호	경기도부천시성곡로
112	남산1호터널	2021-03-08 16:35:20	54부6147	10,300	김*구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
113	남산1호터널	2021-03-08 17:18:12	43보2499	10,300	조*증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7길
114	남산3호터널	2021-03-08 17:23:26	258다1638	10,300	박*현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44길
115	남산3호터널	2021-03-08 17:32:14	01소5140	10,300	김*우	서울특별시종로구청의문로3길
116	남산3호터널	2021-03-08 18:07:15	160너3719	10,300	주식회사 대**기	경기도평택시평남로
117	남산1호터널	2021-03-08 18:21:33	160조1919	10,300	박*옥	경기도파주시외석순환로192번길
118	남산1호터널	2021-03-08 18:28:07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75길
119	남산1호터널	2021-03-08 18:53:14	06부2036	10,300	홍*희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비슬산길
120	남산1호터널	2021-03-08 19:08:22	66모0483	5,150	김*원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장천로48번길
121	남산1호터널	2021-03-08 19:09:43	19거3471	10,300	정*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122	남산1호터널	2021-03-08 19:32:19	61두4558	10,300	김*석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대로
123	남산3호터널	2021-03-08 19:58:38	329두1365	10,300	박*정	경기도남양주시송산로307번길
124	남산3호터널	2021-03-08 20:35:31	17구6292	5,150	주식회사 원*셀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
125	남산3호터널	2021-03-08 20:39:12	61다5842	10,300	마*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독길
126	남산1호터널	2021-03-09 07:01:43	390수4817	10,300	정*학	경기도이천시모가면마곡산로182번길
127	남산1호터널	2021-03-09 07:17:23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28	남산1호터널	2021-03-09 07:40:38	06부2036	10,300	홍*희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비슬산길
129	남산1호터널	2021-03-09 08:35:08	10조0280	10,300	이*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30	남산1호터널	2021-03-09 08:41:47	363루7422	10,300	(주)서****스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23길
131	남산1호터널	2021-03-09 08:48:19	19버1930	10,300	한*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림로50번길
132	남산1호터널	2021-03-09 10:28:38	29라6798	5,150	김*은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로7길
133	남산1호터널	2021-03-09 10:53:08	39거5730	10,300	문*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3나길
134	남산1호터널	2021-03-09 11:42:48	41부7229	10,300	김*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82번길
135	남산3호터널	2021-03-09 13:19:50	37오2584	10,300	주식회사 현*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92길
136	남산1호터널	2021-03-09 13:45:40	48리2486	10,300	윤*숙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5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37	남산1호터널	2021-03-09 13:51:07	64수3023	10,300	유한회사 심*****발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138	남산1호터널	2021-03-09 14:11:34	68주3741	10,300	이*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1916번길
139	남산1호터널	2021-03-09 14:21:54	50고7048	10,300	이*정	경기도포천시화현면봉화로489번길
140	남산1호터널	2021-03-09 14:44:32	61허4311	10,300	에***카 주식회사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141	남산3호터널	2021-03-09 14:44:46	37오2584	10,300	주식회사 현*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92길
142	남산3호터널	2021-03-09 15:03:47	16마1399	10,300	최*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95번길
143	남산1호터널	2021-03-09 15:11:08	61허4311	10,300	에***카 주식회사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144	남산1호터널	2021-03-09 17:08:58	57로1659	10,300	주식회사 거**설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충효로
145	남산1호터널	2021-03-09 17:09:01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75길
146	남산3호터널	2021-03-09 17:20:27	34라7451	10,300	주식회사 티****넷	경기도 하남시 초일로193번길
147	남산3호터널	2021-03-09 17:21:43	15러0649	10,300	이*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148	남산1호터널	2021-03-09 18:05:54	06부2036	10,300	홍*희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비슬산길
149	남산3호터널	2021-03-09 19:09:50	55저3497	10,300	N****N V*N P**P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백마산길
150	남산1호터널	2021-03-09 20:01:03	321더4821	10,300	정*도	전라북도임실군신덕면금정길
151	남산1호터널	2021-03-09 20:05:54	19호0745	10,300	주식회사 스****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11길
152	남산1호터널	2021-03-10 07:49:55	06부2036	10,300	홍*희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비슬산길
153	남산1호터널	2021-03-10 09:55:50	163로2016	10,300	주식회사 엔***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54	남산1호터널	2021-03-10 11:20:02	62노5249	10,300	정*희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양로54번길
155	남산1호터널	2021-03-10 11:57:55	65부5844	10,300	한*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156	남산1호터널	2021-03-10 12:03:26	28우4156	10,300	공*원	인천광역시남동구포구로
157	남산1호터널	2021-03-10 12:51:17	28우4156	10,300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58	남산3호터널	2021-03-10 13:02:02	42루6165	10,300	이*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59	남산3호터널	2021-03-10 13:23:12	61허4311	10,300	에***카 주식회사	경기도동두천시평화로
160	남산1호터널	2021-03-10 16:45:16	06조0204	10,300	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161	남산1호터널	2021-03-10 17:22:26	390수4817	10,300	정*학	경기도이천시모기면마곡산로182번길
162	남산1호터널	2021-03-10 18:22:53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75길
163	남산1호터널	2021-03-10 18:37:27	19무7503	5,150	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64	남산1호터널	2021-03-10 18:47:45	65더0875	10,300	신*주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28번길
165	남산3호터널	2021-03-10 19:05:06	54오7443	10,300	최*희	경기도파주시패랭이길
166	남산1호터널	2021-03-10 19:49:41	31다0619	10,300	이*승	대구광역시북구동변로
167	남산3호터널	2021-03-10 20:29:03	09보1625	10,300	손*찬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
168	남산1호터널	2021-03-11 07:15:57	31다0619	10,300	이*승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169	남산1호터널	2021-03-11 09:06:41	262구5428	10,300	임*원	경기도과천시공원마을2길
170	남산3호터널	2021-03-11 10:53:53	57로7321	10,300	김*용	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도로104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71	남산1호터널	2021-03-11 13:51:11	12조4045	10,300	글*****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
172	남산1호터널	2021-03-11 14:11:57	245로6791	10,300	(주)송**름	경기도광주시초월읍선장동길
173	남산3호터널	2021-03-11 14:30:37	02수0446	10,300	(주)이***니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174	남산1호터널	2021-03-11 14:36:05	36루4371	10,300	(주)씨****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5	남산3호터널	2021-03-11 14:59:11	57너8936	10,300	한*천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176	남산1호터널	2021-03-11 15:12:15	53더6797	10,300	임*화	경기도수원시권선구덕영대로1152번길
177	남산1호터널	2021-03-11 15:22:36	52라5533	10,300	박*기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21길
178	남산3호터널	2021-03-11 16:08:28	66소9965	10,300	박*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179	남산1호터널	2021-03-11 16:09:34	48모4896	10,300	(주)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180	남산3호터널	2021-03-11 16:19:15	49라0492	10,300	김*화	경기도과천시뚝골로
181	남산1호터널	2021-03-11 16:19:59	38노7743	10,300	최*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182	남산1호터널	2021-03-11 17:05:51	36서3198	10,300	김*운	경기도군포시금산로110번길
183	남산1호터널	2021-03-11 17:58:59	15러9206	5,150	최*원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3번길
184	남산1호터널	2021-03-11 18:28:21	125루1859	10,300	박*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185	남산1호터널	2021-03-11 18:36:02	40저0819	10,300	이*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186	남산1호터널	2021-03-11 18:53:15	09러0626	10,300	박*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192번길
187	남산1호터널	2021-03-11 18:56:11	45가6447	10,300	장*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188	남산1호터널	2021-03-11 19:40:44	59수5733	5,150	진*석	경기도안성시남파로
189	남산3호터널	2021-03-11 20:27:19	17구6292	5,150	주식회사 원*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	남산3호터널	2021-03-12 07:14:52	07모5435	10,300	정*식	경기도오산시세마문학로
191	남산1호터널	2021-03-12 08:18:05	33누8526	10,300	신*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192	남산3호터널	2021-03-12 08:49:01	20소8730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4길
193	남산3호터널	2021-03-12 08:52:13	30우2520	10,300	박*연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194	남산1호터널	2021-03-12 08:58:22	58가6849	10,300	고*수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
195	남산1호터널	2021-03-12 09:15:05	26수1545	10,300	박*종	경기도 광명시 가마산로
196	남산1호터널	2021-03-12 09:21:06	64나9247	10,300	김*민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
197	남산1호터널	2021-03-12 10:16:26	24도1945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거로4길
198	남산1호터널	2021-03-12 10:44:03	15서3638	10,300	정*영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량로7길
199	남산1호터널	2021-03-12 11:27:09	309고1457	10,300	(주)상****설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대로53길
200	남산3호터널	2021-03-12 11:59:55	30호0977	10,300	에*****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43길
201	남산1호터널	2021-03-12 12:40:19	112저1339	10,300	허*택	경기도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428번길
202	남산3호터널	2021-03-12 13:27:55	04러7311	10,300	주식회사 진***티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132번길
203	남산1호터널	2021-03-12 13:41:12	42서6424	10,300	박*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204	남산1호터널	2021-03-12 15:16:35	52구9491	10,300	임*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29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05	남산3호터널	2021-03-12 15:27:09	11주4076	10,300	김*준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
206	남산1호터널	2021-03-12 15:34:52	43나5976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
207	남산1호터널	2021-03-12 17:42:47	16나1212	10,300	주식회사 미***씨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은수포북길32번길
208	남산1호터널	2021-03-12 18:40:37	61라2058	10,300	문*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6길
209	남산3호터널	2021-03-12 19:04:06	64두7168	10,300	오*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11길
210	남산1호터널	2021-03-12 19:08:34	03주2645	10,300	차*희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23길
211	남산3호터널	2021-03-12 19:14:01	31라8357	10,300	강*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0길
212	남산1호터널	2021-03-12 19:27:33	46수0255	10,300	이*호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99길
213	남산1호터널	2021-03-12 19:51:10	43보3704	10,300	(주)협**계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28로
214	남산3호터널	2021-03-12 19:56:45	363루7422	10,300	(주)서****스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23길
215	남산1호터널	2021-03-12 20:08:57	55마4923	10,300	손*명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안1길
216	남산1호터널	2021-03-12 20:53:09	31 조6514	10,300	진*덕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마조길
217	남산1호터널	2021-03-12 20:55:39	61도6262	10,300	한*준	경기도고양시덕양구봉산로
218	남산1호터널	2021-03-12 20:57:27	37서7858	10,300	오*****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3길
219	남산1호터널	2021-03-15 07:42:04	68보8703	10,300	김*용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강남로1길
220	남산3호터널	2021-03-15 09:48:52	31라8357	10,300	강*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0길
221	남산1호터널	2021-03-15 10:51:55	24도1945	10,300	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4길
222	남산3호터널	2021-03-15 11:15:51	276머6113	10,300	(주)씨****별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223	남산3호터널	2021-03-15 11:55:02	168머6613	10,300	박*진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외방로
224	남산3호터널	2021-03-15 12:19:46	62모9973	10,300	P**O M****U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54길
225	남산1호터널	2021-03-15 12:22:53	03라0922	10,300	인*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883번길
226	남산1호터널	2021-03-15 12:29:42	23조3420	10,300	L* V*****V V****R- *****H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시장길
227	남산1호터널	2021-03-15 13:53:29	363서5824	10,300	주식회사 디*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46길
228	남산3호터널	2021-03-15 14:03:29	31머5993	5,150	고*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229	남산1호터널	2021-03-15 14:04:04	03고0464	10,300	송*정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파크로127번길
230	남산3호터널	2021-03-15 14:10:52	168머6613	10,300	박*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231	남산1호터널	2021-03-15 15:06:25	33구1275	10,300	한*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232	남산1호터널	2021-03-15 15:26:16	58서7225	10,300	(주)우**산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명제로486번길
233	남산1호터널	2021-03-15 15:27:25	69서4387	10,300	박*섭	강원도강릉시보래미하길65번길
234	남산1호터널	2021-03-15 15:54:12	45로0122	10,300	홍*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13길
235	남산1호터널	2021-03-15 16:39:35	69서4387	10,300	박*섭	강원도강릉시보래미하길65번길
236	남산1호터널	2021-03-15 17:38:20	67라1281	10,300	권*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75길
237	남산1호터널	2021-03-15 17:50:08	19하7200	10,300	주식회사 제*****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다호북길
238	남산1호터널	2021-03-15 18:13:16	65주8155	10,300	정*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39	남산1호터널	2021-03-15 18:41:04	68머3159	10,300	K*****V L*****K	경상북도경산시동지로
240	남산3호터널	2021-03-15 20:35:48	29거8669	10,300	김*수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로23번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9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쥬더케이티씨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취소 ※등록취소 효력 발생일 2021.9.30.	▶처분대상 쥬더케이티씨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기준을 미달하였을 때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보완기한 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1차(2018.3.10.~6.9), 2차(2021.1.1.~6.30), 3차(2021.7.1.~2022.6.30) 행정처분을 받았음. ▶쥬더케이티씨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u>건설엔지니어링업</u> 등록을 취소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건설 엔지니어링업 영업정지 1.5개월 (2021.9.30~2021.11.14)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보완기한(2019.09.18.일)내 특급 기술인력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처분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제1항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495호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결정을 위한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65호(2020.08.20.)로 열람공고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03.24.) 심의결과(수정 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다. 면 적 : 78,758.2㎡
 라.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	증) 78,758.2	78,758.2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도면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1. 10. 1(금). ~ 2021. 10. 14(목)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0)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43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로(☎ 02-3410-759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97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1.10.1.~2021.10.14.(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관련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예건종합건설주 (조성일)	건축공사업 01-415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 617호(도곡동, 현대비전21)	사업자등록(409-88-00942)폐업 폐업일자 : 2021.06.30.	법 제83조	등록말소 (2021.10.15.)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5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50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1. 9.30.~ 2021. 10. 14.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제자	
주세호종합건설 (나인석)	건축공사업 02-16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호(역삼동, 르메이에르타운)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록말소	2021.10.19.(화) 14:0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청문실	변호사 강형석	법 제83조 제5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502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현황

구분	상호	수리업종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수리일 (신고일)
신규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문화재감리업 (06-01-0013)	790816- 1*****	강성원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20, 3층 (효창동)	02- 394-4990	'21.09.27. ('21.09.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0) 또는 역사문화재과(☎ 02-2133-2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2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4조에 근거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무 운영과 공익제보위원회 및 공익제보센터의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공익제보센터가 공익제보 접수를 위한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익제보서 서식 및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구조금) 구조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서식 및 관련서류, 긴급을 요하는 구조금의 지급 사유 명시,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조대상가액을 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 보상금) 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서식과 필요서류를 규정함
- (안 제5조 포상금)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 사유의 세부적인 기준 및 대상자를 정함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시행할 수 있는 조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규정함
- (안 제6조 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서식, 세부적인 절차 및 행정 사항,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144, FAX 02-399-9732
 - 이메일 : thdwlsdl75@sen.go.kr

※ 이 조례(규칙)의 개정(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 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 고 시

종로구고시 제2021-1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85호(2018.9.6.)로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종로구고시 제 2018-114호(2018.10.1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건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로과, 주차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12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 2) 명 칭 :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건설 사업

다.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없음)

- 1) 도로개설(금회)
 - 소로 3-3 : 폭 4 ~ 6m, 연장 125m
 - 소로 3-4 : 폭 3 ~ 4.5m, 연장 20m
- 2) 주차장건설(평면식, 면적 584.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사. 고시방법 : 시보게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로과(☎02-2148-3165), 주차관리과(☎02-2148-3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고시 제2021 - 197호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32호(2021.8.21)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사업시행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1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사업
- 명 칭 : 답십리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3. 사업규모 : 1,965㎡

-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용도변경 포함) 및
녹지대 정비
- 건축개요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건축면적	779.07 ㎡	
연면적	2,929.68㎡	
층수/건물높이	지하1층, 지상3층 / 16.7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문화및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15인승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2. 2.28까지

6.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자

연 번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관리명세
1	답십리동 산 2-121	임야	1,965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7.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2.2.28까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2127-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고시 제2021 - 190호

도봉구 쌍문동 380 - 1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봉구 쌍문동 380-19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22호, 2020.02.27.)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 승인처리하고,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쌍문동 380-19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시티주택건설 대표자 조애란[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72(충무공동)]
3. 사업위치 : 도봉구 쌍문동 380-19
4.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내용

대지면적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용도	층수	동수	세대수		
5,378.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지상7층	아파트 2개동	112세대	1,824.1905㎡ (33.92%)	16,056.5678㎡ (177.79%)

5.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쌍문동 380-19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쌍문동 380-19	5,456.0	감) 77.6	5,378.4	• 확정측량 성과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도봉구쌍문동 380-19	5,456.0㎡ → 5,378.4㎡ 감) 77.6㎡	• 확정측량 성과결과에 따른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456.0	감) 77.6	5,378.4	100.0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 정 사 유
-	도봉구쌍문동 380-1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456.0㎡ → 5,378.4㎡ 감) 77.6㎡	• 확정측량 성과결과에 따른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신설	①	-	5,456.0	5,378.4	쌍문동 380-19	5,456.0	5,378.4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도봉구쌍문동 380-19	• 변경 - 구역면적: 5,456.0㎡ → 5,378.4㎡ 감) 77.6㎡ - 획지면적: 5,456.0㎡ → 5,378.4㎡ 감) 77.6㎡	• 확정측량 성과결과에 따른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	도봉구 쌍문동 380-19번지 일대	용도	• 허용용도(가) :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A)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170%	
			허용	178%	
			상한	250%	
		높이	7층이하		
		배치	도면 참조		
		형태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건축한계선	• 노해로(25m)변, 우이천로(8m)변 : 3m • 인접대지경계선 : 6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도로변 : 3m [우이천로 8m]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내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형 전면공지 (인도부속형, 3m)조성 - 기존 보도 및 차로와 단차 없이 조성 - 인접지역 포장 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공공보행통로	도로변 : 3m [노해로 25m]	• 노해로변(25m) 유턴차선 확보를 위한 보행공간 조성	
대지안 공지	인접대지 경계 : 6m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주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부대시설(보행동선, 환기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주출입구	차량주출입구 : 동측 보행자(비상차량)출입구 : 동남측	• 차량주출입구 및 보행자(비상차량)출입구는 동측 우이천로변에서 진입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도봉구청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주택과(☎ 02-2091-3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붙임자료 : 지구단위계획관련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도봉구고시 제2021-19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천역 남측 일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덕릉로66길 84-1 (녹천역 남측 일대)
- 면 적 : 11,310㎡
- 제한기간
 - 연장기간 : 2021. 9. 30. ~ 2023. 9. 5.
 - ※ 당초기간 : 2018. 9. 6. ~ 2021. 9. 5. (3년)

2.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 및 연장사유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연장사유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검토중인 부지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할 예정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3.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중
 - 1) 1호 : 건축물의 건축 중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증축은 면적 33㎡ 초과만 적용)
 - 2) 3호 : 토지의 형질변경
 - 3) 5호 : 토지분할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예외 대상

- 기 건축허가(신고)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에 대하여 구조안전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기타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어 공공주택 건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5. 관계도면 : 따로붙임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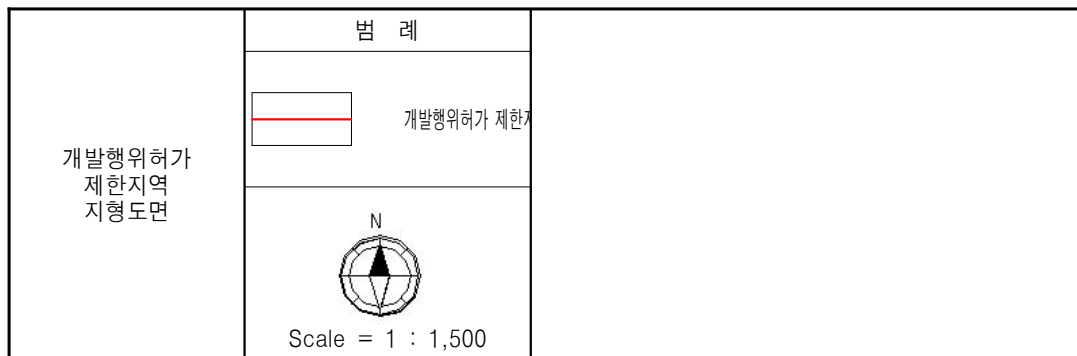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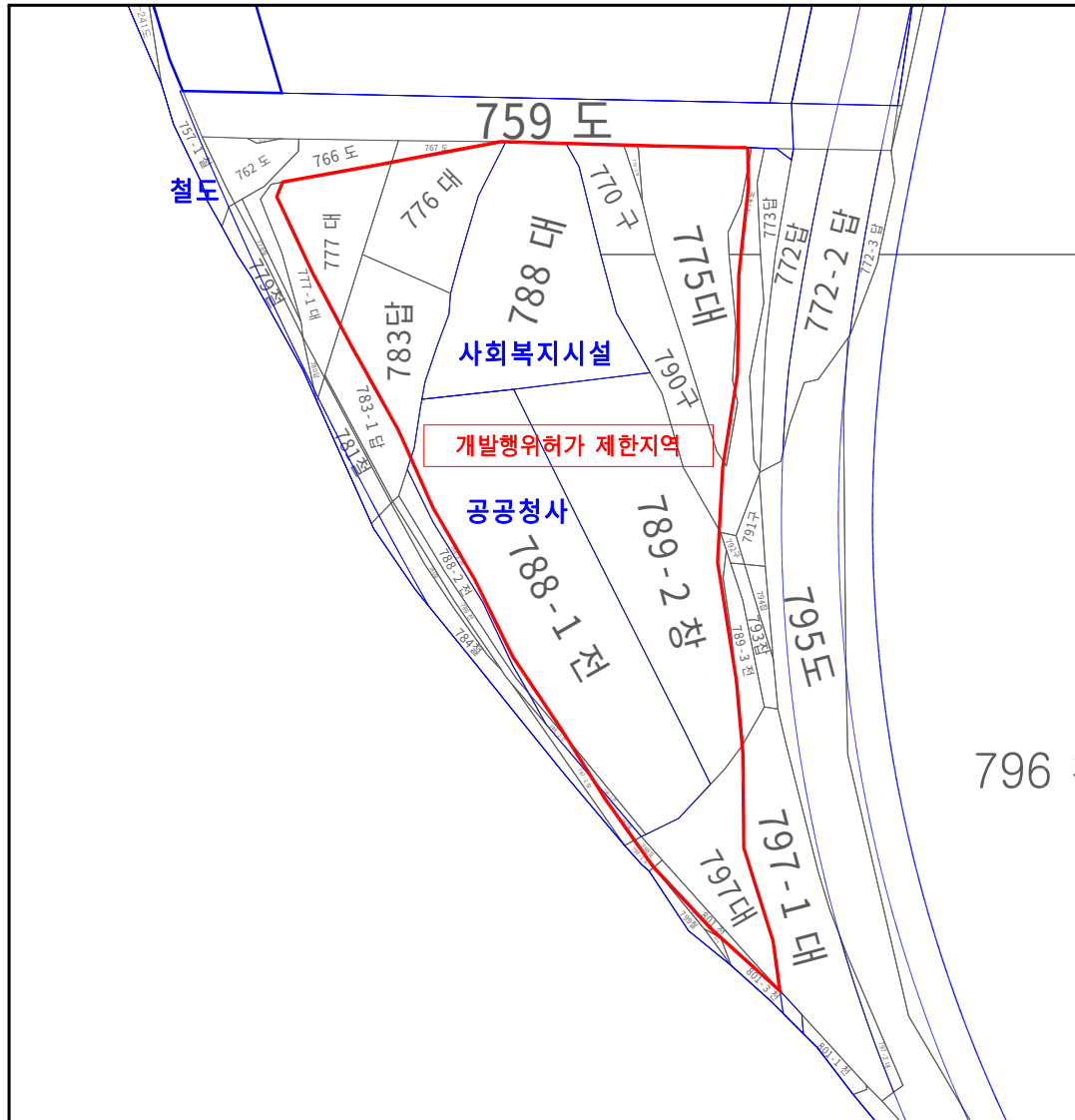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9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 고시도



노원구고시 제2021 - 14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9-159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169-159 일대	-	증)708	7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7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S=1:1,000(A4 Size)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169-159 일대	-	증) 708	70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동작구고시 제2021 - 2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 폐지(취소)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91호(2021.2.18.)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82호(2021.4.2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82호(2021.4.29.)호]를 폐지(취소)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 등 일대
- 면 적 : 2,540㎡
- 내 용 : 공원조성(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시장 (사무위임 : 동작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1. 4. 29.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실시계획 인가 폐지(취소) 사유 : 실시계획의 변경 및 관계기관(선행) 협의 이행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폐지대상)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5,932	2,540							
1	동작구 흑석동 252-21	대	126.0	126.0	최*우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2길 *-*	1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2	동작구 흑석동 252-22	대	99.0	99.0	기획재정부		1				
3	동작구 흑석동 252-23	공	75.0	75.0	서울특별시		1				
4	동작구 흑석동 252-25	대	3.0	3.0	기획재정부		1				
5	동작구 흑석동 252-31	대	70.0	70.0	기획재정부		1				
6	동작구 흑석동 252-32	대	212.0	212.0	기획재정부		1				
7	동작구 흑석동 252-36	공	75.0	75.0	서울특별시		1				
8	동작구 흑석동 252-43	대	153.0	111.0	홍*희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	1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9	동작구 흑석동 252-48	대	69.0	69.0	정*환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	1/2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차*운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	1/2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10	동작구 흑석동 252-50	대	56.0	56.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1	동작구 흑석동 252-86	대	8.0	8.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2	동작구 흑석동 252-88	대	138.0	138.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3	동작구 흑석동 256-1	공	1,956.0	230.0	서울특별시		1				
14	동작구 흑석동 256-3	임	179.0	9.0	서울특별시		1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5	동작구 흑석동 256-31	공	13.0	13.0	서울특별시		1				
16	동작구 흑석동 256-32	임	317.0	40.0	서울특별시		1				
17	동작구 흑석동 256-50	임	2,028.0	851.0	서울특별시		1				
18	동작구 흑석동 256-67	대	20.0	20.0	동작구		1				
19	동작구 흑석동 256-68	대	63.0	63.0	권*국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	1/2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이*정	경상북도 구미시 교아읍 문성로 **	1/2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20	동작구 흑석동 256-111	임	105.0	105.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21	동작구 흑석동 산61-14	임	10.0	10.0	재무부		1				
22	동작구 흑석동 산61-35	임	99.0	99.0	서울특별시		1				
23	동작구 흑석동 산61-46	임	58.0	58.0	기획재정부		1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폐지대상)

구 분	내 용
위치도	
조성계획도	

동작구고시 제2021-2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41호(2016.8.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동작구 고시 제2020-200호(2020.12.31.)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254 등 16필지(변경없음)
- 면 적 : 5,990㎡(변경없음)
- 내 용 : 토지보상 5,990㎡(변경없음), 지장물 보상(변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지장물보상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보상절차 진행 등 추가기간 소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물건조서 변경)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5,990	5,990							
1	상도동 산65-254	임야	1,547	1,547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000	1/1				
2	상도동 산64-361	임야	87	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피스빌딩 0층	상도00 00지역 주택조합	1/1			신탁	
3	상도동 산57-116	임야	215	2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0	대한00 공사	1/1				
4	상도동 산57-117	임야	1,861	1,86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0000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000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0000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5	상도동 산57-119	임야	487	4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0000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000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0000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6	상도동 산57-11 8	임야	120	1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000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000호(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000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일로 100, 303동 0000호 (식사동, 은행마을)	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000호 (심미아파트)	최○수	1/5				
7	상도동 산65-253	임야	393	393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000	1/1				
8	상도동 산80-33	임야	57	57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국가	처분청 : 제주세무서장	압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9	상도동 산80-34	임야	54	54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국가	처분청 : 제주세무서장	압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상도동 산65-183	임야	96	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7 현대주택디-0	백○치	1/8	한국○○○○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신용회복관리부)	가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60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2-○○○○	백○숙	16950 /16200 0	파산자주식회사 ○○○상호저축 은행의파산관재 인○○○○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	가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3-○○○○	백○숙	2268.7 5 /16200 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	백○정	2268.7 5 /16200 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7 등촌1단지주공아파트 109-○○○	백○호	1/8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55, ○○○호(탄방동, 위즈아파트)	백○희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39-2, ○○○호(논현동)	백○희	1/8	국가	처분청 : 서울중앙지방법 찰청검사	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7-18 비○○호	유○옥	87/96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	김○아	87/9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3길 24, ○○○호(상도동, 두양빌라)	백○우	9900/ 162000				
11	상도동 산65-151	임야	43	43	서울 동작구 상도3동 283-○○○	김○석	1/1				
12	상도동 산57-105	임야	135	135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	한○수	1/1				
13	상도동 산57-106	임야	207	207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	한○수	1/1				
14	상도동 산65-255	임야	424	42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	재단법인 ○○○	1/1				
15	상도동 산65-256	임야	253	253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	재단법인 ○○○	1/1				
16	상도동 산64-360	임야	11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피스빌딩 ○층	상도○○ ○○지역 주택조합	1/1			신탁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당초)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8)	건물	10㎡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	김○숙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노○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78㎡	1							
		담장	14.5m	1							
		담장	38.3m	1							
		벚나무	B17	1							
		수목	B4	1							
		수목	H1.2	2							
		염나무	H1.0~1.5	4							
		살구나무	B8~15	2							
		영산홍	H0.3	2							
		라일락	B13~16	2							
1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8)	건물	10㎡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	김○숙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노○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78㎡	1							
		담장	14.5m	1							
		담장	38.3m	1							
		벚나무	B17	1							
		염나무	H1.0~1.5	4							
		살구나무	B8~15	2							
		라일락	B13~16	2							
		오가피	H1.5	3							
		젓나무	H1.0	1							
		모과나무	H2.0	1							
		백일홍	H1.5	1							
		단풍나무	H4.0	1							
		무궁화	H2.5	3							
		불상(와상)	W2.5*H0.65	1							
2 (당초)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9)	창고	4㎡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	김○분	종로구 종로 232-0	이○분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82㎡	1							
		부속건물	26㎡	1							
		화장실	2㎡	1							
		벚나무	H1.5~2.0	10							
		수목	H1.0	1							
		개나리	H1.0	20							
		감나무	R17	1							
2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9)	창고	4㎡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	김○분	종로구 종로 232-0	이○분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82㎡	1							
		부속건물	26㎡	1							
		화장실	2㎡	1							
		개나리	H1.0	20							
		감나무	R17	1							
		앵두나무	H2.5	2							
		배나무	H3.0	1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살구나무	H2.0	2								
		두릅나무	H1.5	3								
		단풍나무	H4.0	1								
		라일락	H2.0	1								
3 (당초)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11)	건물	19㎡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김○찬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감나무	R6	1								
		수목	R3	1								
		아사히베리	H1.2~2.0	20								
		염나무	H1.5~2.0	6								
		사철나무	H1.0~3.0	60								
		모과나무	H5.0	1								
3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11)	건물	19㎡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노○재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감나무	R6	1								
		수목	R3	1								
		아사히베리	H1.2~2.0	20								
		염나무	H1.5~2.0	6								
		사철나무	H1.0~3.0	60								
		모과나무	H5.0	1								
4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23)	건물	128㎡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28㎡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손○혁	거주자		
		담장	44.8m	1								
		수국	H0.3	10								
		남천	H1.0	15								
		사철나무	H1.0~1.5	210								
		벗나무	B9~21	7								
		동백나무	H1.0	2								
		자두나무	H0.8	2								
		대추나무	H0.8	1								
		주목	H1.2	1								
		영산홍	H0.2~0.3	20								
		남천	H1.0	5								
		키위	H1.0	2								
		공작단풍	H1.0	1								
		회양목	H0.4~0.5	100								
		개나리	H1.0	20								
		대문	3.3m	1								
		측백나무	H0.3~0.5	20								
		장미		50								
		능소화		1								
		나무화분		9								
		화단수석		5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적벽돌		200							
		흰벽돌		50							
		태양광등불		6							
5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5)	건물	43㎡	1		서초구 서초동 1604-19 대호프레조빌 0000호	이○현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수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2㎡	1							
		창고	13㎡	1							
6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7)	건물	49㎡	1		동대문구 정릉전동로 36, 107동 0000호(용두동)	윤○열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7㎡	1							
		사철나무	H0.3~1.0	10							
		회양목	H0.3	1							
7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9)	건물	51㎡	1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이○임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3㎡	1							
		창고	13㎡	1							
		창고	9㎡	1							
8	상도동 산57-118 (상도로 60길 49-3)	건물	23㎡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임○수				무허가 건물
		창고	25㎡	1							
		창고	9㎡	1							
		창고	10㎡	1							
		탱자나무	H2.0	3							
		수목	H0.8	1							
		수목	R10	1							
		회양목	H0.4	1							
9 (당초)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0)	개나리	H1.0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윤	동작구 상도동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75㎡	1							
		화장실	2㎡	1							
		부속건물	4㎡	1							
		창고	3㎡	1							
		창고	3㎡	1							
		사철나무	H0.8~1.5	270							
		라일락	H1.5	7							
		목란	H1.0	2							
		산수국	H0.8	1							
		영산홍	H1.0	8							
		능소화	H4.0	2							
		매자나무	H0.4	5							
		팽나무	R11	4							
		아로니아	H0.5	1							
		보리수나무	R17	2							
		주목	R13	1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앵두나무	H1.0	1							
		밤나무	B22	5							
		감나무	R15	1							
		포도나무	H2.0	2							
		단풍나무	R8	4							
		두릅나무	H0.3~1.0	80							
		향나무	R15	2							
		황매화	H1.0~1.5	70							
		회양목	H0.5	23							
		앵두나무	R10	2							
		단풍나무	R10	1							
		구지뽕	H1.5~2.0	4							
		매실나무	R20	1							
		가시오가피	H1.5	5							
		골담초	H1.5	2							
		개나리	H1.5	20							
		인동초		2							
		대추나무	H2.5	1							
		황매화	H1.0	10							
		장미	H1.5	4							
		회양목	H0.5	10							
		은행나무	B30	1							
9 (변경)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0)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윤	동작구 상도동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부속건물	4㎡	1							
		창고	3㎡	1							
		창고	3㎡	1							
		사철나무	H0.8~1.5	300							
		라일락	H1.5	15							
		목란	H1.0	2							
		산수국	H0.8	2							
		영산홍	H1.0	10							
		능소화	H4.0	2							
		매자나무	H0.4	5							
		뽕나무	R11	4							
		아로니아	H0.5	1							
		보리수나무	R17	2							
		주목	R13	1							
		앵두나무	H1.0	1							
		밤나무	B22	5							
		감나무	R15	1							
		포도나무	H2.0	2							
		단풍나무	R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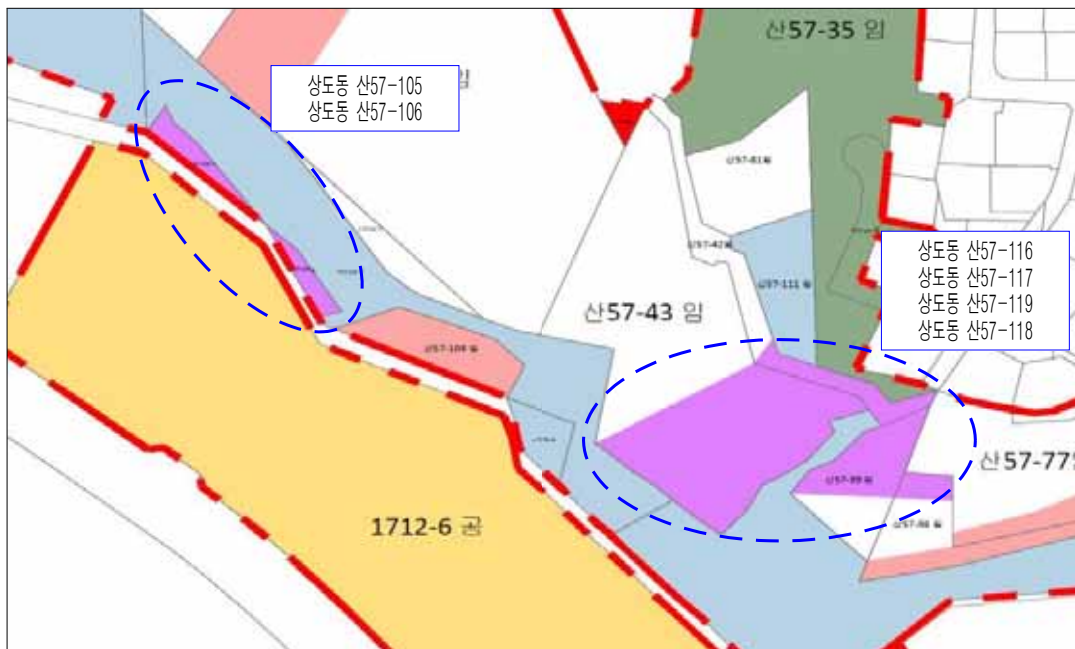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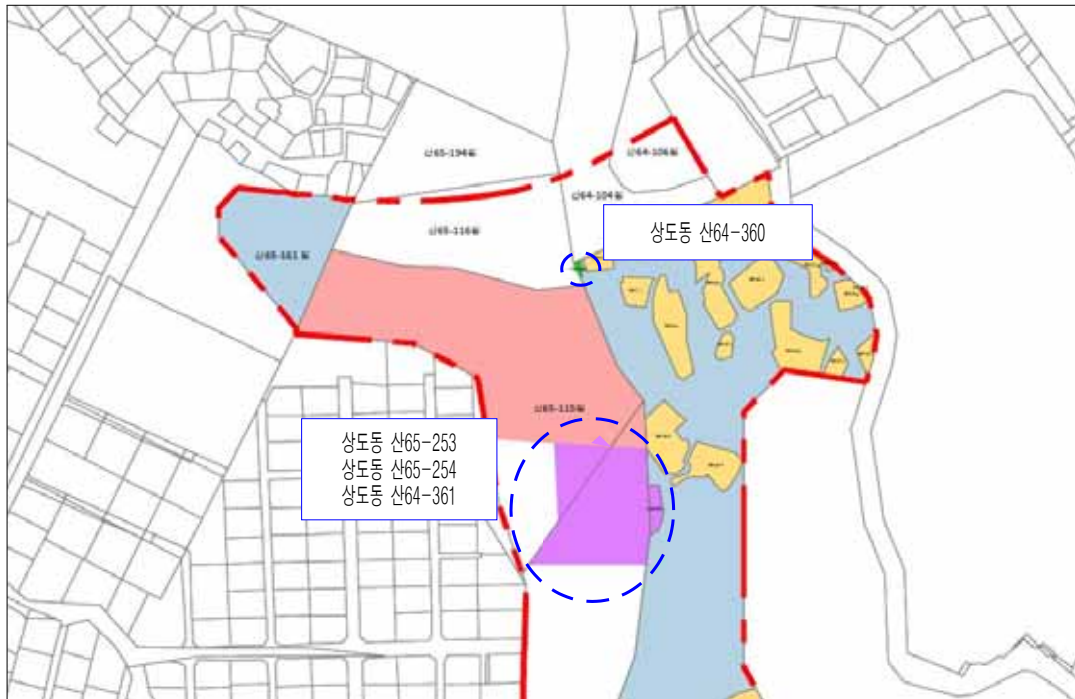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두릅나무	H0.3~1.0	80							
		향나무	R15	2							
		황매화	H1.0~1.5	70							
		앵두나무	R10	2							
		단풍나무	R10	1							
		구지뽕	H1.5~2.0	4							
		매실나무	R20	2							
		가시오가피	H1.5	5							
		골담초	H1.5	2							
		개나리	H1.5	20							
		인동초	H1.2	5							
		대추나무	H2.5	1							
		황매화	H1.0	10							
		장미	H1.5	4							
		회양목	H0.5	40							
		은행나무	B30	1							
10 (당초)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2)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명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16㎡	1							
		화장실	4㎡	1							
		모란	H0.5	1							
		주목	H0.5	3							
		홍매화	H1.0	2							
		사철나무	H1.2	100							
		향나무	H4.0	1							
		황매화	H1.5	1							
		회양목	H1.5	20							
		산수국	H0.8	2							
		소나무	H2.5	1							
		감나무	R10	1							
		매실나무	H2.5	1							
		대추나무	H3.0	1							
		살구나무	R5~15	2							
10 (변경)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2)	보리수나무	H3.0	1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명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자두나무	R30	1							
		박태기나무	H2.0	2							
		건물	75㎡	1							
		창고	16㎡	1							
		화장실	4㎡	1							
		모란	H0.5	3							
		주목	H0.5~2.0	10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명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홍매화	H1.0	2							
		사철나무	H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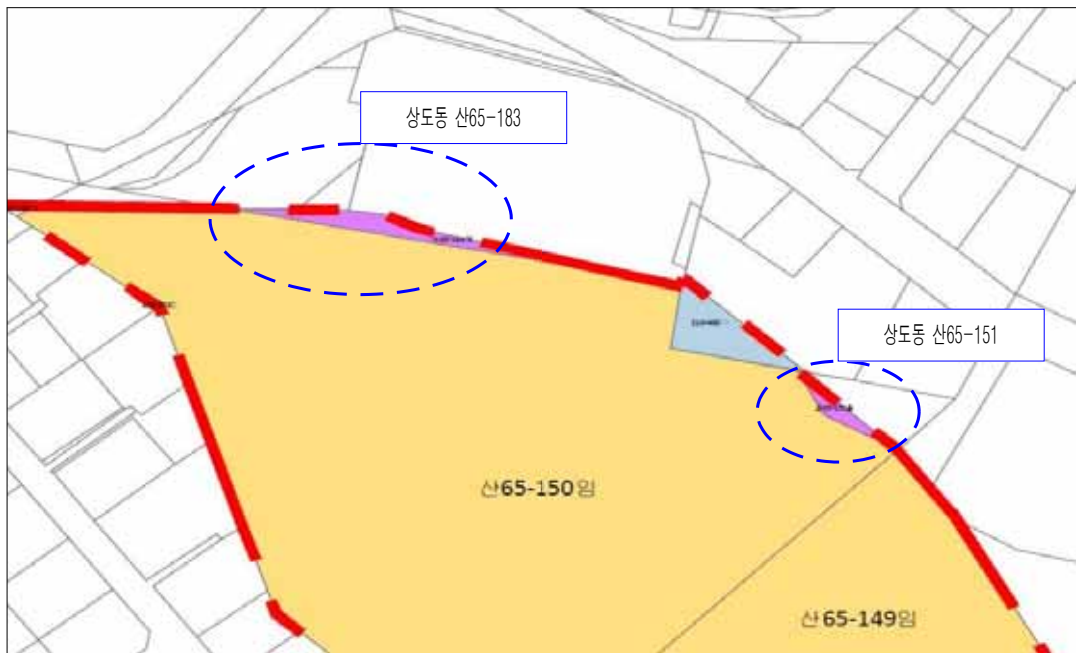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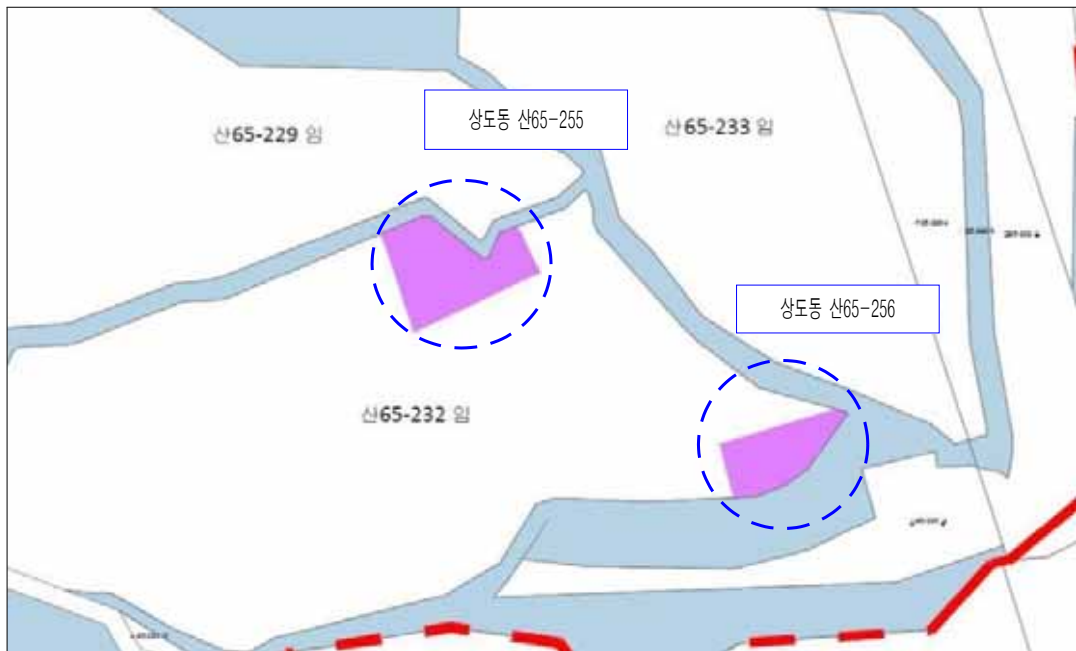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항나무	H4.0	1							
		황매화	H1.5	1							
		회양목	H1.5	20							
		산수국	H0.8	2							
		소나무	H2.5	1							
		감나무	R10~15	5							
		매실나무	H2.5	1							
		대추나무	H3.0	2							
		살구나무	R5~15	2							
		보리수나무	H3.0	1							
		자두나무	R30	1							
		박태기나무	H2.0	3							
		라일락	H0.7	2							
		등나무	H1.0	3							
		장미	H1.2	1							
		오가피	H1.0	2							
		개나리	H1.0	15							
		뽕나무	H3.0	1							
		복숭아나무	H3.0	1							
		철쭉	H1.0	10							
		구기자나무	H1.0	15							
		수목	H3.0	5							
		조경석	H0.2~0.4	30							
		석등	H0.2~0.4	3							
11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2)	건물	25㎡	1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박○철				무허가 건물
		창고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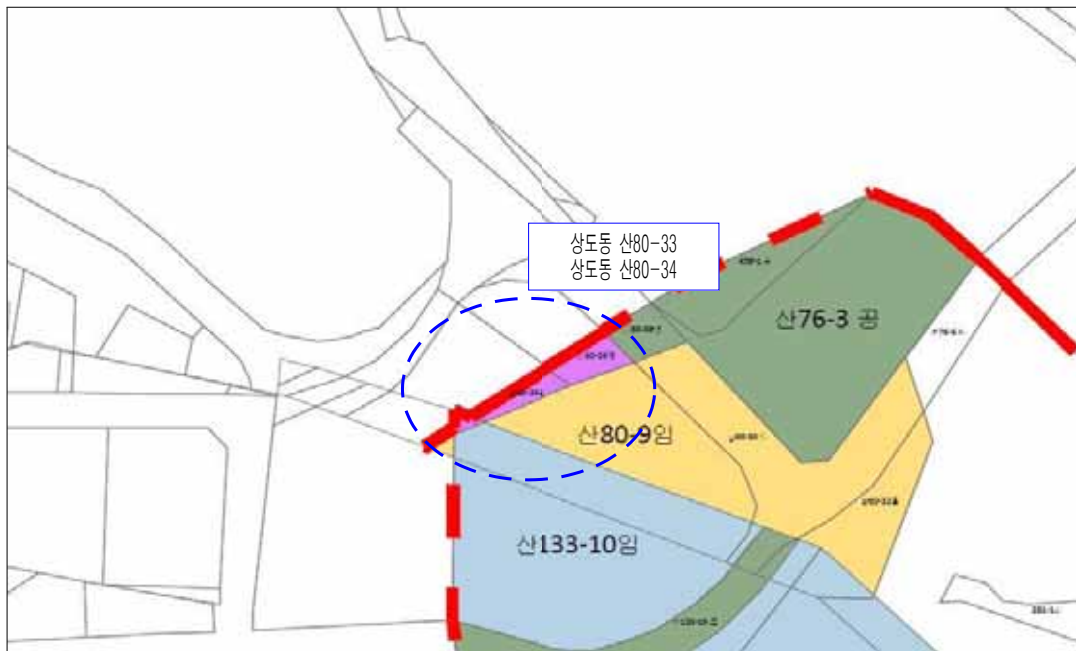
영업권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상호	수량	영업권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7)	건물	동아기업사	1	제조업 (제조, 도매)	관악구 성현로 80, 127동 0000호	김○수				물건조서 연번6번 기존 무허가 건물

사업 위치도







동작구고시 제2021-23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0호(2002.02.2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1(2017.05.18.)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변경)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내 특별계획구역 3구역에 대해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을 정정하고자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70,954	-	70,954	최초결정일 서고 2002-50호 ('02.2.28)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0,954.0	-	70,954.0	100.0
주거 지역	소계	58,384.0	-	58,384.0	82.3
	제3종일반주거지역	19,980.7	-	19,980.7	28.2
	준주거지역	38,403.3	-	38,403.3	54.1
상업 지역	소계	12,570.0	-	12,570.0	17.7
	일반상업지역	12,570.0	-	12,570.0	17.7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정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류	1	15	집산 도로	50	신대방동 686-40	신대방동 686-29	일반 도로	서고 제398호 ('02.11.11)	-
기정	중로	2류	2	15	집산 도로	339	신대방동 686-44	신대방동 695-15	일반 도로	서고 제398호 ('02.11.11)	-
기정	소로	1류	16	10~12	집산 도로	133 (104)	광로1-15	신대방동 697-3	일반 도로	서고 제3410호 ('17.05.18)	-
기정	소로	2류	77	9.25	집산 도로	69 (69)	신대방동 686-48	신대방동 686-59	일반 도로	서고 제3410호 ('17.05.18)	-
변경	소로	2류	77	9.25	집산 도로	69 (69)	신대방동 686-48	신대방동 686-59	일반 도로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기정	소로	3류	268	6	국지 도로	51 (15)	신대방동 697-3	신대방동 697-23	일반 도로	서고 제3410호 ('17.05.18)	-
기정	소로	3류	269	4	국지 도로	210 (83)	광로1-15	신대방동 697-20	보행자 우선도로	서고 제3410호 ('17.05.18)	-
기정	소로	3류	1	2	특수도 로	44	신대방동 698-5	신대방동 698-8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239호 ('12.9.6)	-

※ ()는 특별계획3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77	좌동	○면적변경(증 0.2㎡) · 면적 : 677.8㎡ → 678.0㎡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도시기반시설(도로 외) 결정조서

가.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특별계획3구역은 계획지침에 따라 별도 적용

③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가. 특별계획1·2구역, 특별계획4구역, 특별계획5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3구역 계획지침 : 변경

1) 가구 및 획지 계획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Ⅱ	9,401.5	10-1	신대방동 686-48	9,401.5	주거복합용지
-	Ⅱ	872.0	10-1	신대방동 686-48	872.0	공공청사용지

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1,118.0㎡는 별도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조성후 기부채납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Ⅱ	9,401.5	10-1	신대방동 686-48	9,401.2	주거복합용지
-	Ⅱ	872.0	10-1	신대방동 686-48	872.1	공공청사용지

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1,118.2㎡는 별도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조성후 기부채납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특별계획3구역의 획지분할 - 주거복합용지 : 9,401.5㎡ → 9,401.2㎡(감0.3㎡) - 공공청사용지 : 872.0㎡ → 872.1㎡(증0.1㎡)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1,118.2㎡는 별도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조성 후 기부채납

- 2) 건축물 용도 계획 : 변경없음
- 3) 건축물 밀도 계획 : 변경없음
- 4) 건축물 높이 계획 : 변경없음
- 5) 건축물 배치 계획 : 변경없음
-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V.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① 특별계획3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에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

■ 기 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좌동
	10-1	신대방동 686-48	9,401.5	주거복합용지	
	10-2	신대방동 686-48	872.0	공공청사용지	

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1,118.0㎡는 별도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조성 후 기부채납

■ 변 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좌동
	10-1	신대방동 686-48	9,401.2	주거복합용지	
	10-2	신대방동 686-48	872.1	공공청사용지	

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1,118.2㎡는 별도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조성 후 기부채납

2.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 밀도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 높이 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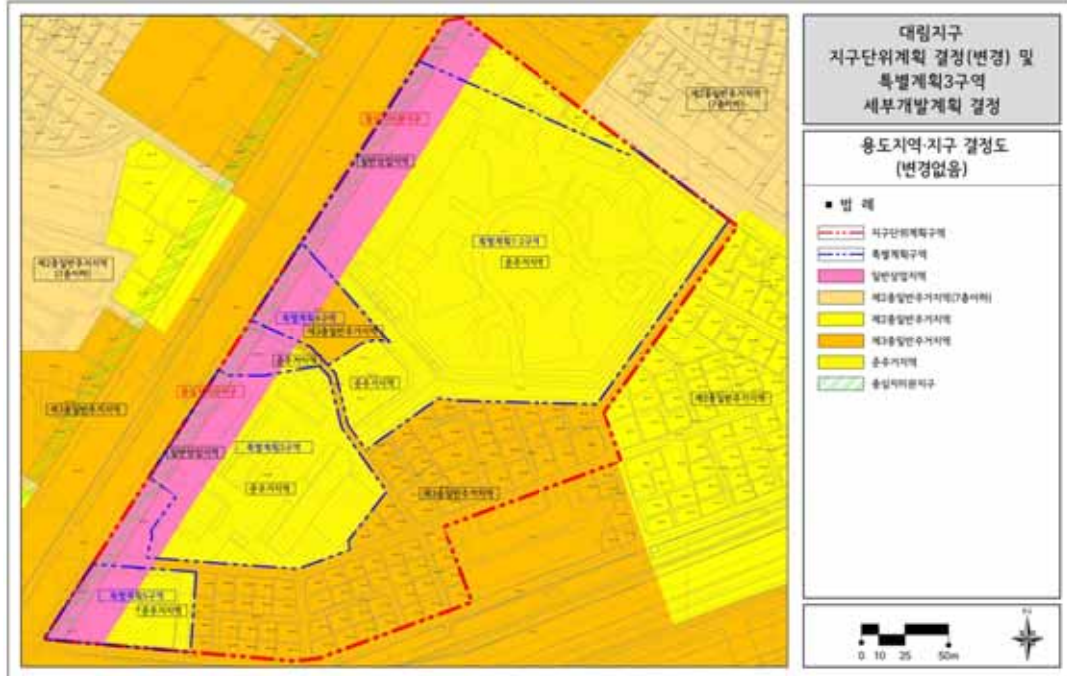
V.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595)에 관계서류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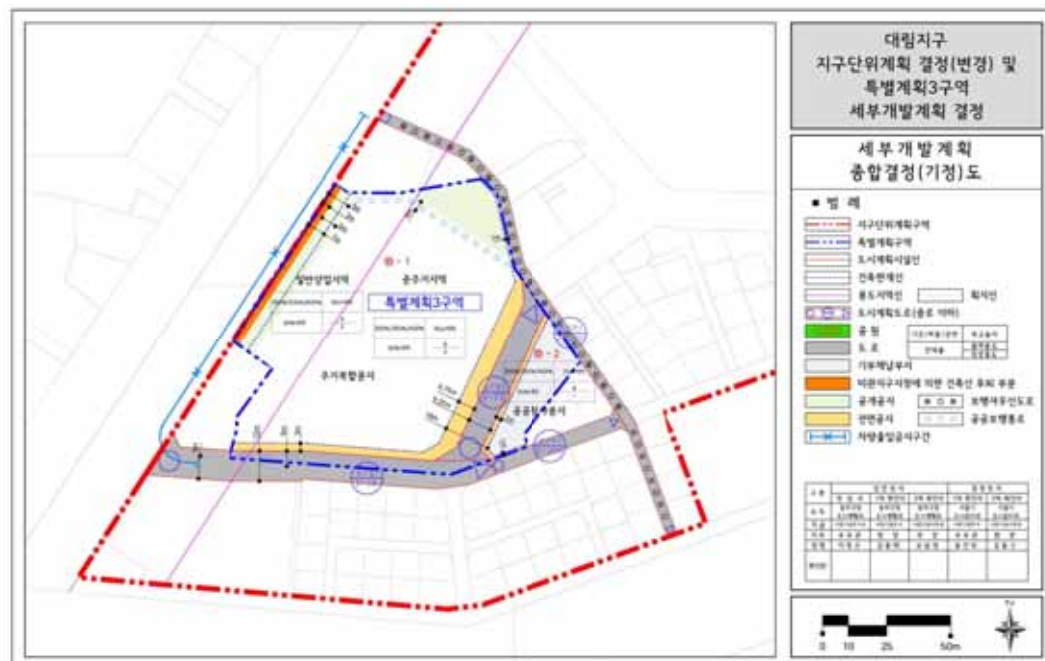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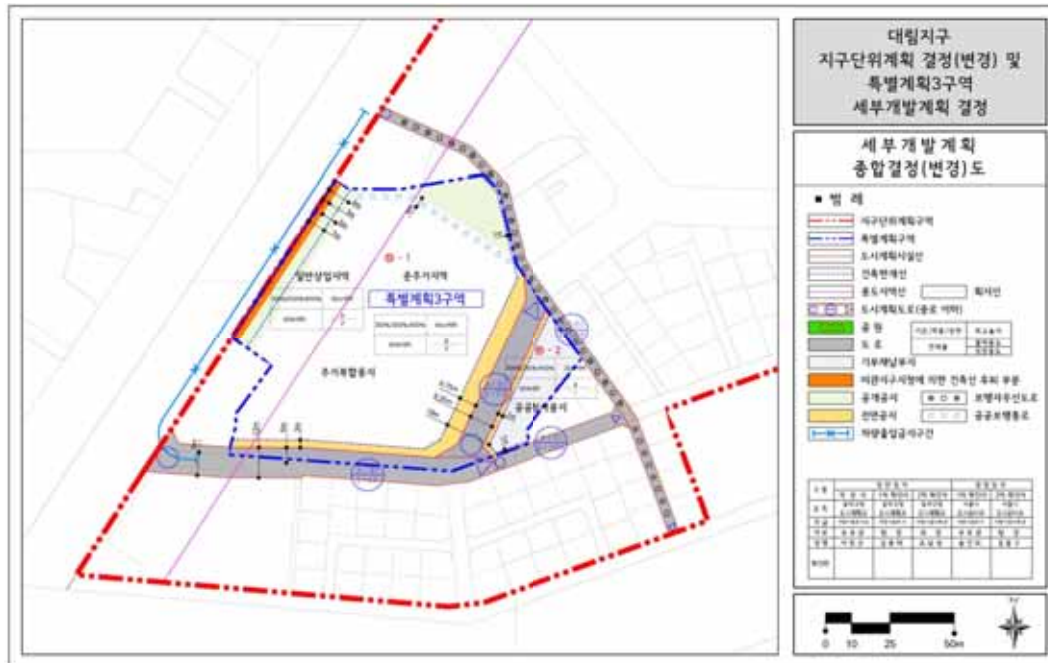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기정)도



■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변경)도



강동구고시 제2021 - 20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호(2021.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5호(2021.8.5.)로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고시된 ‘(가칭) 허브체험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75-3((가칭)허브체험공원)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칭: (가칭)허브체험공원 조성공사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부지면적 3,454㎡, 시설면적 2,142㎡

- 1) 기반시설: 도로 350㎡, 광장 167㎡
- 2) 휴양시설: 휴게쉼터 106㎡
- 3) 교양시설: 허브체험원 705㎡, 야외체험원 491㎡, 체험텃밭 92㎡
- 4) 편익시설: 주차장 143㎡, 음수대 8㎡, 화장실 35㎡
- 5)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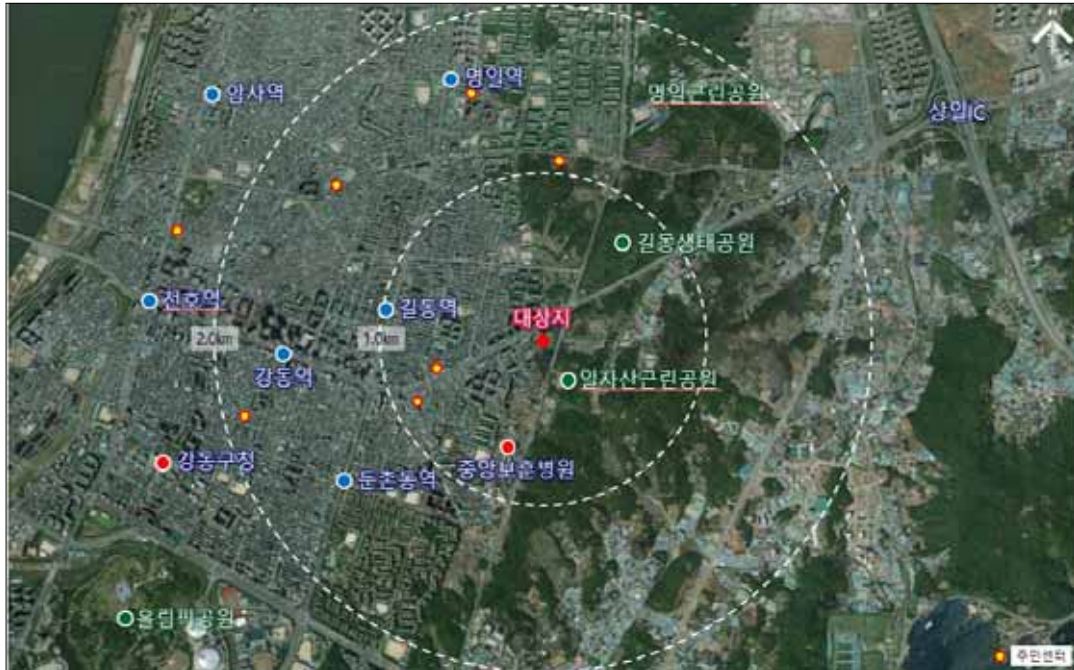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따로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아. 공사설계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사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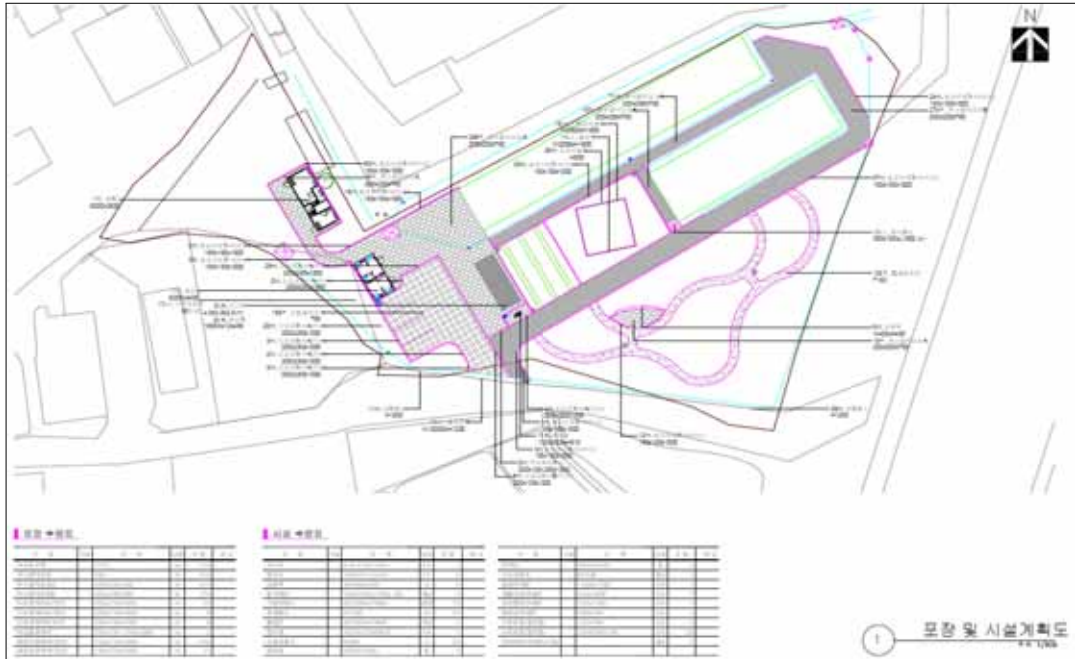
사업대상지 위치 원경



사진설명

사업대상지 위치 근경

계 획 평 면 도



사진설명

포장 및 시설계획도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1	575-3	전	3,454	3,454	국토교통부	세종시특별자치시 도읍로 11		한국** 공사	서울시 강*구 삼*동 87	지상권 설정	

구 공 고

노원구공고 제2021-1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2호(2020.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44호(2020.12.1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노원구고시 제2021-59호(2021.4.8.)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노원구 공릉동 26-61번지 일원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변경) : 당초 40,293㎡ → 변경 40,292㎡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2021. 9. 30. ~ 10. 14.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6)

자. 변경내용 및 사유 : 지적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토지조서 정정 및 추가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당초							변경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공릉동 27-39	밎	임야	572	572	기획재정부					572	572	기획재정부				
2	공릉동 29	공	대지	1709	1709	서울시					1709	1709	서울시				
3	공릉동 29-1	답	공원	790	790	서울시					790	790	서울시				
4	공릉동 29-2	전	공원	3428	3428	서울시					3428	3428	서울시				
5	공릉동 29-4	철	공원	14438	14438	서울시					14438	14438	서울시				
6	공릉동 29-17	답	공원	89	89	서울시					89	89	서울시				
7	공릉동 29-28	답	공원	1101	1101	서울시					1101	1101	서울시				
8	공릉동 29-29	답	공원	715	715	서울시					715	715	서울시				
9	공릉동 29-30	답	공원	536	536	노원구					536	536	노원구				
10	공릉동 29-32	공	공원	311	311	서울시					311	311	서울시				
11	공릉동 29-35	도	녹지	707	707	국토교통부					707	707	국토교통부				
12	공릉동 29-37	전	녹지	40	40	서울시					40	40	서울시				
13	공릉동 39-38	전	녹지	73	73	서울시					73	73	서울시				
14	공릉동 29-39	전	녹지	50	50	기획재정부					50	50	기획재정부				
15	공릉동 29-42	대	공원	238	238	노원구					238	238	노원구				
16	공릉동 29-48	도	공원	337	172	노원구					337	172	노원구				
17	공릉동 29-49	답	공원	194	194	노원구					194	194	노원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당초							변경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8	공릉동 29-53	답	대지	850	850	서울시					850	850	서울시				
19	공릉동 29-54	전	대지	62	62	서울시					62	62	서울시				
20	공릉동 29-55	도	녹지	1104	1029	국토교통부					1104	1029	국토교통부				
21	공릉동 29-59	임	건물	1917	1917	문화재청					1917	1917	문화재청				
22	공릉동 30-1	도	공원	17	17	노원구					17	17	노원구				
23	공릉동 30-4	답	공원	423	423	서울시					423	423	서울시				
24	공릉동 38-1	철	공원	382	382	서울시					382	382	서울시				
25	공릉동 38-2	답	임야	185	185	손옥영	서울시 중랑구 숙선옹주로3길12				185	185	손옥영	서울시 중랑구 숙선옹주로3길12			
26	공릉동 38-7	도	공원	258	258	서울시					258	258	서울시				
27	공릉동 39-40	도	녹지	1485	47	국토교통부					1485	45	국토교통부				
28	공릉동 39-41	도	공원	67	67	국토교통부					67	67	국토교통부				
29	공릉동 39-51	도	공원	1	1	서울시					1	1	서울시				
30	공릉동 103-2	철	공원	1142	1142	서울시					1142	1142	서울시				
31	공릉동 103-3	철	공원	99	99	서울시					99	99	서울시				
32	공릉동 103-8	철	공원	307	307	서울시					307	307	서울시				
33	공릉동 103-10	도	녹지	204	111	국토교통부					204	111	국토교통부				
34	공릉동 103-14	답	공원	122	122	윤화열	서울시 종로구 평동37				122	122	윤화열	서울시 종로구 평동37			
35	공릉동 103-15	답	공원	3	3	윤화열	서울시 종로구 평동37				3	3	윤화열	서울시 종로구 평동37			
36	공릉동 103-16	도	녹지	304	304	국토교통부					304	304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당초							변경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37	공릉동 103-42	도	공원	139	139	노원구					139	139	노원구				
38	공릉동 103-44	대	공원	46	46	서울시					46	46	서울시				
39	공릉동 103-45	도	공원	26	26	서울시					26	26	서울시				
40	공릉동 103-46	대	공원	3	3	서울시					3	3	서울시				
41	공릉동 103-47	대	공원	3	3	서울시					3	3	서울시				
42	공릉동 103-48	도	공원	26	26	서울시					26	26	서울시				
43	공릉동 103-50	대	공원	7	7	서울시					7	7	서울시				
44	공릉동 103-53	대	공원	3	3	서울시					3	3	서울시				
45	공릉동 103-71	철	철도	16	16	국토교통부					16	16	국토교통부				
46	공릉동 39-2	철	공원	63	63	서울시					63	63	서울시				
47	공릉동 39-5	철	공원	456	456	서울시					456	456	서울시				
48	공릉동 39-63	철	공원	7	7	서울시					7	7	서울시				
49	공릉동 37-2	철	공원	921	921	서울시					921	921	서울시				
50	공릉동 37-6	철	공원	387	387	노원구					387	387	노원구				
51	공릉동 37-5	철	공원	438	438	서울시					438	438	서울시				
52	공릉동 29-61	철	공원	804	804	서울시					804	804	서울시				
53	공릉동 38-13	철	공원	532	532	서울시					532	532	서울시				
54	공릉동 29-51	철	공원	3678	3678	서울시					3678	3678	서울시				
55	공릉동 29-62	철	공원	249	249	노원구					249	249	노원구				
56	공릉동 103-40	도	녹지								73	1	국토교통부				

구로구공고 제2021-18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구로동 1-4 도서관 건립)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구로구고시 제2019-211호(2019.11.28.)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도서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로동1-4번지에 대하여 ‘구로동 1-4 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99조 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문화관광과(☎860-3036)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구로구청장

○ 실시계획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4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1)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도서관)

2) 사업명칭 : 구로동 1-4 도서관 건립

3) 사업내용 : 도서관 건립

다. 사업면적 : 부지 3,000㎡, 건축물 (지상3층, 연면적 1,500㎡)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ㄱ 성명 : 구로구청장

ㄴ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사. 열람기간 : 21.9.24.~10.8.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과(☎860-3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당초)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구로동 1-4 도서관 건립

연 번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계			13,055	3,000			
1	구로동 1-4	유지	13,055	3,000	구로구청장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공고 제2021 - 1830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01.)로 변경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구로동 584-12번지 외 1필지에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6, E-mail : kang9936201@guro.go.kr)

다.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 558-6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신도림로 16일대)	1,060,676.7	증)482.7	1,061,159.4	서고 제1997-30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 558-6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신도림로 16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증)482.7㎡	• 기정 구역계로 분할되는 구로동 584-12 잔여지(482.7㎡)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구역에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4	신설	중로	2	15	15~17	집산	194	구로동 584-12	구로동 473-28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32	기정	소로	2	48	8	국지	38 (-)	구로동 474-28	구로동 496-79	일반 도로	서고 319호 (2000.11.10)	금회 일부편입
	변경	소로	2	48	8	국지	39 (7)	구로동 473-28*	구로동 496-79	일반 도로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은 표기오류에 대한 정정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중로2-15	• 도로 신설 - L = 194m, B = 15~17m	•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신설
변경	소로2-48	소로2-48	• 도로 변경 - L = 38m → 39m	• 신설 도로(중로2-15호선) 교차점 가각전제 변경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나) 문화시설(신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도서관	구로동 584-12	-	증) 651.6	651.6	-	-

■ 문화시설 건축범위 결정조서

시 설 명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문화시설1	30%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

■ 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문화시설1	• 문화시설1 신설 - 위치 : 구로구 구로동 584-12 - 면적 : 651.6㎡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공간 신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최소·최대개발규모(미적용)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지 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C7	1	구로동 584-12	15,582.3	획지선지정	-
변경	C7	1	구로동 584-12	15,250.7	획지선지정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C7-1	• C7-1 획지면적 변경 - A=15,582.3㎡ → 15,250.7㎡ (감) 331.6㎡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획지규모 축소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간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 : 변경없음

(3)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가)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대형필지	6~8m	가로공원, 수림대로 활용
개발 완료 된 도로변(아파트 단지 등)	1~3m	

※ 신설 도로(중로2-15호선)변 C7-1 획지 내 상이한 건축한계선 폭원 일부 조정(2~3m → 3m)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안)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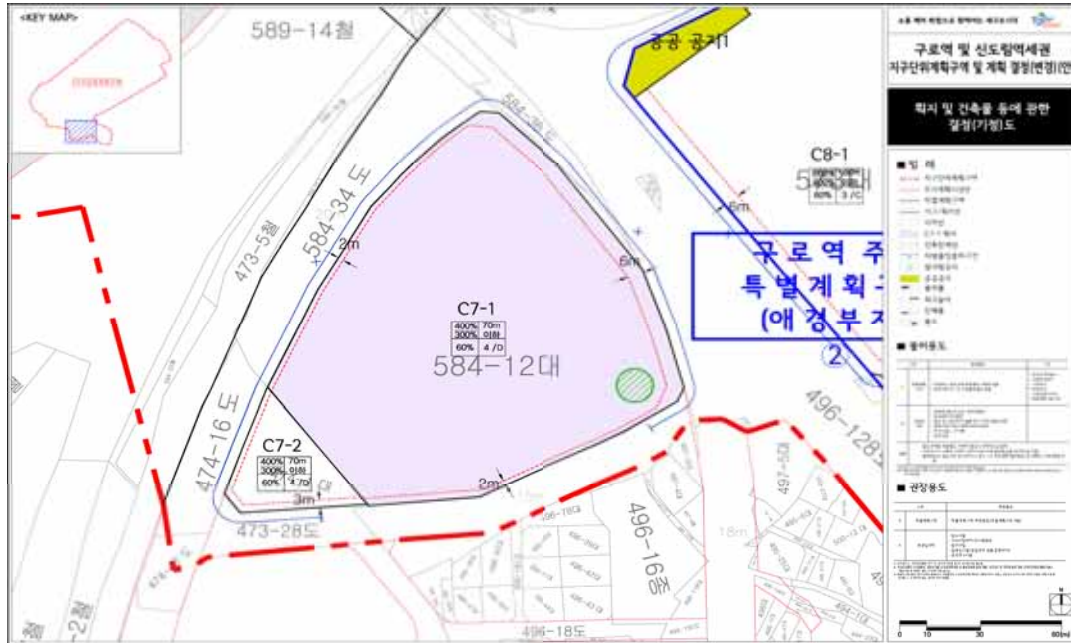


■ 변경(안)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안)



마. 관계도서 및 계획설명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공고 제2021-16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91호(2021.2.18.)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 등 일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 등 일대
- 면 적 : 2,630㎡
- 내 용 : 공원조성(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 (노량진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5,406	2,630							
1	동작구 흑석동 252-21	대	126.0	126.0	최*우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2길 *-*	1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2	동작구 흑석동 252-22	대	99.0	99.0	기획재정부		1				
3	동작구 흑석동 252-23	공	75.0	75.0	서울특별시		1				
4	동작구 흑석동 252-25	대	3.0	3.0	기획재정부		1				
5	동작구 흑석동 252-31	대	70.0	70.0	기획재정부		1				
6	동작구 흑석동 252-32	대	212.0	212.0	기획재정부		1				
7	동작구 흑석동 252-36	공	75.0	75.0	서울특별시		1				
8	동작구 흑석동 252-43	대	153.0	153.0	홍*희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	1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9	동작구 흑석동 252-48	대	69.0	69.0	정*환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	1/2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차*운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	1/2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10	동작구 흑석동 252-50	대	56.0	56.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1	동작구 흑석동 252-86	대	8.0	8.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2	동작구 흑석동 252-88	대	138.0	138.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3	동작구 흑석동 256-1	공	1,956.0	199.0	서울특별시		1				
14	동작구 흑석동 256-31	공	13.0	13.0	서울특별시		1				
15	동작구 흑석동 256-50	임	2,028.0	1,009.0	서울특별시		1				
16	동작구 흑석동 256-68	대	63.0	63.0	권*국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	1/2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이*정	경상북도 구미시 고이읍 문성로 **	1/2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17	동작구 흑석동 256-111	임	105.0	105.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8	동작구 흑석동 산61-35	임	99.0	99.0	서울특별시		1				
19	동작구 흑석동 산61-46	임	58.0	58.0	기획재정부		1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동작구공고 제2021-1634호**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4-52호(1974.05.03.)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6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인가 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2. 관계 서류는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동 214-210~211-17	360	6	1,994	상도4동 215-13	상도4동 210-18
변경	상도동 214-210~211-17	360	6	2,342.1	상도4동 215-13	상도4동 210-18

※ 변경사유 : 측량성과(현황, 분할) 반영에 따른 일부 도로선형 및 도로면적 변경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

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변경 없음	동작구 상도동	216-17	도로	36	36	김*생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8, *동 ****호 (도곡동, 우성캐릭터199.)				
							김*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동 ***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1-1	대	5,662	8	박*문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6 약수맨션아파트 *동 ***호	한국**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 (동대문지점)	근저당권	
							김*목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6 약수맨션아파트 *동 ***호	주식회사 한*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 (중부지점)	근저당권	
							이*수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 약수맨션 비동 ***호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 (소공동지점)	근저당권	
							김*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83 맨션 **동 ***호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 (소공동지점)	근저당권	
							차*선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 약수맨션 *-***				
	변경	동작구 상도동	211-1	대	5,662	0	박*문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11, *동 ***호 (상도동, 약수맨션아파트)	한국**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을지로2가, 동대문지점)	근저당권	
							김*목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11, *동 ***호 (상도동, 약수맨션아파트)	주식회사 한*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남대문로2가, 중부지점)	근저당권	
							이*수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11, *동 ***호 (상도동, 약수맨션아파트)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남대문로2가, 소공동지점)	근저당권	
							김*호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동 ***호 (이촌동, 한강맨션)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남대문로2가, 소공동지점)	근저당권	
							차*선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11, *동 ***호 (상도동, 약수맨션)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3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4-1	도	15,923	219	재단법인 지*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				
	변경	동작구 상도동	214-1	도로	15,455	0	재단법인 지*사	서울 동작구 양녕로25길 *-*(상도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214-452	도로	243	0	상동	상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214-453	도로	3	0	상동	상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214-455	도로	211	211	상동	상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214-466	도로	11	11	상동	상동				토지분할
4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5-37	대	233	2	이*수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 (상도동, ***빌딩)				
							김*숙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 (상도동, ***빌딩)				
	변경	동작구 상도동	215-37	대	233	0	이*수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 (상도동, ***빌딩)				
							김*숙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 (상도동, ***빌딩)				

동작구공고 제2021 - 1636호**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0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인가 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2. 관계 서류는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1동 46-443	280	6	1,147	사당1동 434-4	사당1동 1141
변경	사당1동 46-443	280	6	1,328	사당1동 434-4	사당1동 1141

※ 변경사유 : 측량성과(현황, 분할)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및 도로면적 변경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

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434-5	도로	145	115	고*정	서울 강남구 광평로10길 6, ***동 ***호 (일원동, 한솔마을아파트)				
	변경	동작구 사당동	434-5	도로	145	145	상동	상동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435-19	도로	889	528	유*수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				
	변경	동작구 사당동	435-19	도로	637	637	유*수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5, **-****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토지분할
		동작구 사당동	435-42	도로	207	-	상동	상동				토지분할
		동작구 사당동	435-43	도로	45	-	상동	상동				토지분할
3	기정	동작구 사당동	439-5	도로	169	141	유*수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5, **-****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변경	동작구 사당동	439-5	도로	169	169	상동	상동				
4	기정	동작구 사당동	439-8	대	132	124	유*수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5, **-****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변경	동작구 사당동	439-8	대	132	132	상동	상동				오기정정

동작구공고 제2021 - 1637호**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3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인가 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2. 관계 서류는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3동 162-61~161-41	370	5~6	843	사당3동 1157	사당3동 161-44
변경	사당3동 162-61~161-41	100	6	2,978	사당1동 443-2	사당1동 316-42

※ 변경사유 : 측량성과(현황, 분할)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및 도로면적 변경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

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161-33	도로	1,531	573	손*호	대구 중구 봉산동 ***				
							손*혁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손*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6-9 해청빌라 *-***				
							민*홍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				
	변경	동작구 사당동	161-33	도로	1,287	1,287	손*호	대구 중구 봉산동 ***				토지분할
							손*혁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손*혁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길 31, *-*** (서초동, 해청빌라)				
							민*홍	서울 서초동 서초중앙로 200, **-*** (서초동, 삼풍아파트)				
		동작구 사당동	161-119	도로	234	0	손*호	대구 중구 봉산동 ***				토지분할
							손*혁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손*혁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길 31, *-*** (서초동, 해청빌라)				
							민*홍	서울 서초동 서초중앙로 200, **-*** (서초동, 삼풍아파트)				
		동작구 사당동	161-120	도로	10	0	손*호	대구 중구 봉산동 ***				토지분할
							손*혁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손*혁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길 31, *-*** (서초동, 해정빌라)				
							민*홍	서울 서초동 서초중앙로 200, **-*** (서초동, 삼풍아파트)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161-31	대	139	2	주*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18-8, ***동 ***호	경**용 협동조합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 (제기동)	근저당권	
	변경	동작구 사당동	161-31	대	130	0	주*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18-8, ***동 ***호 (서교동, 서교스위트하우스)	경**용 협동조합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 (제기동)	근저당권	토지분할
		동작구 사당동	161-118	대	9	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토지분할
3	기정	동작구 사당동	141-22	도로	6,088	43	손*호	대구 중구 봉산동 ***				
							손*혁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손*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6-9 해정빌라 *-***				
							민*홍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				
	변경	동작구 사당동	141-22	도로	6,035	0	손*호	대구 중구 봉산동 ***				토지분할
							손*혁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손*혁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길 31, *-*** (서초동, 해정빌라)				
							민*홍	서울 서초동 서초중앙로 200, **-*** (서초동, 삼풍아파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동작구 사당동	141-264	도로	53	53	손*호	대구시 중구 봉산동 ***				토지분할
							손*혁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손*혁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길 31, *-*** (서초동, 해정빌라)				
							민*홍	서울 서초동 서초중앙로 200, **-*** (서초동, 삼풍아파트)				

동작구공고 제2021-16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8-428호(1978.08.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4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인가 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2. 관계 서류는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3동 313-36-256-4	120	5~6	623	상도3동 312-9	상도3동 310-2
기정	상도3동 313-36-256-4	120	5~6	558	상도3동 312-9	상도3동 310-2

※ 변경사유 : 측량성과(현황, 분할)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및 도로면적 변경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

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16	대	20	3	이*웅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2-16	대	18	0	이*웅	서울 동작구 등용로14길 ** (노량진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312-22	대	2	2	상동	상동				토지분할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	대	218	21	이*실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황*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강서** **조합	서울 강서구 양천로 ** (방화동, 강서** 본점)	근저당권	
							황*로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2-2	대	198	0	이*실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토지분할
							황*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강서** **조합	서울 강서구 양천로 ** (방화동, 강서** 본점)	근저당권	
							황*로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동작구 상도동	312-19	대	20	20	이*실	상동				토지분할
							황*희	상동	강서** **조합	상동	상동	
							황*로	상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3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4	대	255	3	명의인 없음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3-4	대	255	0	상동					
4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10	대	168	7	김*래	서울 동작구 상도동 ***-***	주식회사 한국**** *****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 (****운영부)	근저당권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3-10	대	167	0	조*애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주식회사 한국**** *****은행	서울 종로구 종로 ** (****운영부)	근저당권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313-42	대	1	1	상동	상동	상 동	상동	상동	토지분할
5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34	대	502	16	명의인없음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3-34	대	502	0	상동					오기정정
6	기정	동작구 상도동	256-4	대	198	4	김*옥	서울 관악구 상도동 ***-**				
	변경	동작구 상도동	256-4	대	195	0	최*자	서울 동작구 상도로11길 6, *동***호(대방동, 대방빌리지)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256-290	대	3	3	상동	상동				토지분할
7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11	도로	13	4	홍*유	서울 관악구 노량진동 산**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3-11	도로	10	0	홍*유	서울 관악구 노량진동 산**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313-43	도로	3	3	상동	상동				토지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8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41	대	14	18	정*름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36, ****동 ****호 (상동, 라일락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3-41	대	14	0	상동	상동				
9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18	대	23	2	김*재	서울 관악구 상도동 ***-***				오기정정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2-18	대	22	0	김*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312-23	대	1	1	상동	상동				토지분할
10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14	대	231	25	이*희	서울 동작구 상도동 ***-***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2-14	대	210	0	이*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312-21	대	21	21	상동	상동				토지분할
11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9	대	126	8	이*웅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2-9	대	120	0	이*웅	서울 동작구 등용로14길 ** (노량진동)				토지분할
		동작구 상도동	312-20	대	6	6	상동	상동				토지분할
12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37	도로	20	0	이*흥	서울 동작구 상도동 ***-*				
							홍*애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차*희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변경	동작구 상도동	313-37	도로	20	20	이*홍	서울 동작구 양녕로 *** (상도1동)				토지분할
							홍*애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차*희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동작구 상도동	313-44	도로	3	0	이*홍	상동				토지분할
							홍*애	상동				
							차*희	상동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선명)	점용기간	
췌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반포동)	잠실수중보~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인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반포동)	수상 레저사업	무동력 12척 (카약)	2021.9.23 ~ 2021.10.31.	2021. 9.23.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	마포구 당인동 312, 312-1	18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승강기 설치 관련 지반조사 및 지장물조사	2021.9.15. ~2021.9.30.	2021. 9.23.

사업소공고

관악소방서공고 제2021 - 34호

청문실시통지서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및 사업장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관 악 소 방 서 장

1. 처분의 제목: 청문실시통지서
2. 공고기간: 2021. 9. 30. ~ 10. 14.(14일간)
3. 공고내용

제 목	청문실시통지서					
당 사 자	성명(명칭)	서윤석 [주식회사 소방동우회]				
	주 소	관악구 인현2길 15-7, 10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라목 2차 등록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관악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인호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전화번호	02-883-7909
	일 시	2021. 10. 15(금) (10:00 ~)			장소	관악소방서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관악소방서 행정과 행정팀장		
		성명		허용		
	전자우편 주소	ilink200@seoul.go.kr			FAX전송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 정

구로구고시 제2021 - 2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3-71호(2013.6.13.)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1998-113호(1998.8.19.)로 결정된 개봉동 295-3~산64-41호간 및 개봉동 298-12~298-1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구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도로선형이 인근 건축물과 인접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다수의 민원이 있어 일부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8	국지 도로	195	개봉동 295-3	개봉동 산64-41	일반 도로	2013.06.13. (구로구고시 제2013-71호)	길훈아파트 진입로
변경	소로	3	1	6~8	국지 도로	195	개봉동 295-3	개봉동 산64-41	일반 도로	-	도로선형 일부 변경
기정	소로	3	2	5	국지 도로	175	개봉동 298-12	개봉동 298-1	일반 도로	1998.08.19 (구로구고시 제1998-113호)	개웅산 근린공원 진입로
변경	소로	3	2	5	국지 도로	175	개봉동 298-12	개봉동 298-1	일반 도로	-	도로선형 일부 변경

－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	소로 3-1	- 도로선형 변경	- 해당 도로선형이 인근 건축물과 인접하여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다수의 민원이 있어 해소코자 선형을 변경
소로 3-2	소로 3-2	- 도로선형 변경	- 소로3-1호선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을 변경함

3. 지형도면의 작성(정정 : 일부선형 조정)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S=1:1,000)



범례 : 기정

변경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